

韓國標準產業分類 6次改正(草案)



1990. 8.

카21



經濟企劃院

目 次

I . 중분류상의 신·구 비교	3
II . 6차 개정안의 구성	15
A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 02)	17
B . 어업 (05)	30
C . 광업 (10 ~ 14)	34
D . 제조업 (15 ~ 37)	43
E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0 ~ 41)	211
F . 건설업 (45)	215
G . 도소매업 (50 ~ 52)	232
H . 숙박업 및 음식점업 (55)	263
I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 64)	267
J . 금융 및 보험업 (65 ~ 67)	284
K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 74)	292
L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무 (75)	315
M . 교육 (80)	320
N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324

O .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 93)	329
P . 가사서비스업 (95)	345
Q .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99)	346

※ 신산업분류의 대분류 (A.B.C.....Q)의 뒷부분의 ()내의 숫자는 그 대분류에 포함되는 신산업분류의 중분류항목번호이며, 세세분류 뒷부분의 ()내의 숫자는 구산업분류 관련번호이며, 제외뒷부분의 ()내의 숫자는 신산업분류의 관련번호임.

I. 중분류상의 신·구 비교

신 분 류	구 분 류
<p>A . 농업 , 수렵업 및 임업 (01 ~ 02) (AGRICULTURE, HUNTING AND FORESTRY)</p> <p>01 . 농업 ,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AGRICULTURE, HUNT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p> <p>02 . 임업 (FORESTRY, LOGG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p> <p>B . 어업 (05) (FISHING)</p> <p>05 . 일반어업 , 양식업 및 어업서비스업 (FISHING, OPERATION OF FISH HATCHERIES AND FISH-FARMS:SERVICE ACTIVITIES INCIDENTAL TO FISHING)</p> <p>C . 광업 (10 ~ 14) (MINING AND QUARRYING)</p> <p>10 . 석탄산업 (MINING OF COAL AND LIGNITE:EXTRACTION OF PEAT)</p> <p>11 . 원유 , 천연가스 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EXTRA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SERVICE ACTIVITIES INCIDENTAL TO OIL AND GAS EXTRACTION EXCLUDING SURVEYING)</p> <p>12 . 우라늄 및 토륨광업</p>	<p>11 . 농업 및 수렵업</p> <p>12 . 임업</p> <p>13 . 어업</p> <p>21 . 석탄광업 (2909 의 “ 토탄 ” 포함) 35401 연탄제조업</p> <p>22 .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p> <p>23 . 금속광업 과 29 . 기타광업중에서 분리</p>

신 분 류	구 분 류
<p>(MINING OF URANIUM AND THORIUM ORES)</p> <p>13 . 금속광업 (MINING OF METAL ORES)</p> <p>14 . 기타광업 및 채석업 (OTHER MINING AND QUARRYING)</p> <p>D . 제조업 (15 ~ 37) (MANUFACTURING)</p> <p>15 . 음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AND BEVERAGES)</p> <p>16 . 담배제조업 (MANUFACTURE OF TOBACCO PRODUCTS)</p> <p>17 . 섬유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TEXTILES)</p> <p>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DRESSING AND DYEING OF FUR)</p> <p>19 . 가죽, 가죽제품 및 신발제조업 (TANNING AND DRESSING OF LEATHER:MANUFACTURE OF LUGGAGE, HANDBAGS, SADDLERY, HARNESS AND FOOTWEAR)</p>	<p>23 . 금속광업</p> <p>29 . 기타광업</p> <p>3 . 제조업 (35401 연탄제조업 제외)</p> <p>31 .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중 담배제외</p> <p>314 . 담배제조업</p> <p>321 . 섬유제조업</p> <p>322 . 의복제조업</p> <p>3232 . 모피 및 모피제품제조업</p> <p>3231 . 가죽제조업</p> <p>3233 . 가죽 및 대용 가죽제품 제조업</p> <p>324 . 신발제조업</p> <p>35591 . 고무신제조업</p> <p>35607 . 플라스틱성형 신발제조업</p>

신 분 류	구 분 류
20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MANUFACTURE OF ARTICLES OF STRAW AND PLAITING MATERIALS)	331 . 나무 및 코르크제품 제조업
2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PAPER AND PAPER PRODUCTS)	34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의 복제업 (PUBLISHING,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342 .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23 . 코우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MANUFACTURE OF COKE,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NUCLEAR FUEL)	353 . 석유정제업 354 .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35401 연탄제조업 제외) 35129 . N.E.C. 무기화학제품제조업중 핵연료처리포함
24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351 .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35129 중 핵연료제조 제외) 352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5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355 . 고무제품제조업 (35591 . 고무신제조업 제외) 356 . N.E.C.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607 . 플라스틱성형 신발제조업 제외)
2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신 분 류	구 분 류
<p>(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p> <p>27. 제 1 차 금속산업 (MANUFACTURE OF BASIC METALS)</p> <p>28. 조립 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EQUIPMENT)</p> <p>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MANUFACTURE OF MACHINERY AND EQUIPMENT N.E.C)</p> <p>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MANUFACTURE OF OFFICE, ACCOUNTING AND COMPUTING MACHINERY)</p> <p>31.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C.)</p> <p>32.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제조업 (MANUFACTURE OF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AND APPARATUS)</p>	<p>37. 제 1 차 금속산업 (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제외)</p> <p>381.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38194 . 난방용구제조업 제외) (38198 . 밸브제조업 제외) (3812 . 금속가구 제외)</p> <p>382. 기계제조업 (3825 제외, 38194 및 38198 포함)</p> <p>3833. 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p> <p>3825. 사무기계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p> <p>3831. 전기산업용기계 및 장치제조업</p> <p>3839. N.E.C.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3834 중 전자기기용연결 및 변환장치제조 포함)</p> <p>3832.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p> <p>3834.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기기용</p>

신 분 류	구 분 류
<p>33 . 의료, 전문,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MANUFACTURE OF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p> <p>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p> <p>35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p> <p>36 . 가구 및 기타제조업 (MANUFACTURE OF FURNITURE:MANUFACTURING N.E.C)</p> <p>37 . 재생재료가공처리업 (RECYCLING)</p> <p>E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 41)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p> <p>40 . 전기, 가스 및 증기업 (ELECTRICITY, GAS, STEAM HOT WATER SUPPLY)</p> <p>41 . 수도사업 (COLLECTION, PUR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WATER)</p>	<p>연결과 변환장치제조 제외)</p> <p>385 .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p> <p>3843 . 자동차 제조업</p> <p>384 . 운수장비제조업 (3843 제외)</p> <p>332 . 가구제조업 (3812 및 3320)</p> <p>39 . 기타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분야에서 독립신설 (3719 및 37239 등) • 38415 . 선박해체 <p>41 . 전기, 가스 및 증기업</p> <p>42 . 수도사업</p>

신 분 류	구 분 류
<p>F . 건설업 (45) (CONSTRUCTION)</p> <p>45 . 건설업 (CONSTRUCTION)</p> <p>G . 도 · 소매업 : 자동차, 모터싸이클 및 개인, 가정용품 수 선업 (50 ~ 52) (WHOLESALE AND RETAIL TRADE:REPAIR OF MOTOR VEHIC- LES, MOTORCYCLES AND PERSONAL AND HOUSEHOLD GOODS)</p> <p>50 . 자동차 및 모터싸이클 판매, 유지, 수리 및 차량연 료 소매업 (SALE,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RETAIL SALE OF AUTOMOTIVE FUEL)</p> <p>51 . 상품도매 및 중개업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p> <p>52 . 소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선업 (자동차 제외)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 ORCYCLES:REPAIR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p> <p>H . 숙박 및 음식점업(55) (HOTELS AND RESTAURANTS)</p> <p>55 . 숙박 및 음식점업 (HOTELS AND RESTAURANTS)</p>	<p>5 . 건설업</p> <p>6118 . 운수장비 도매업</p> <p>6217 . 개인 운수장비소매업 및 주유소 운영업</p> <p>9513 . 자동차 및 모우터싸이클 수선업</p> <p>61 . 도매업 (6118 제외)</p> <p>62 . 소매업 (6217 제외)</p> <p>951 . 기타수선업 (9513 제외)</p> <p>63 . 음식 및 숙박업</p>

신분류	구분류
<p>I . 운수, 창고 및 통신업(60~64)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p> <p>60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LAND TRANSPORT:TRANSPORT VIA PIPELINES)</p> <p>61 . 수상운송업 (WATER TRANSPORT)</p> <p>62 . 항공운송업 (AIR TRANSPORT)</p> <p>63 . 여행알선 및 운수보조, 유지서비스업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p> <p>64 . 통신업 (POST AND TELECOMMUNICATION)</p>	<p>711 . 육상운수업</p> <p>7116 및 7117 .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 제외</p> <p>712 . 수상운수업</p> <p>7123 . 수상운송 보조서비스업 제외</p> <p>7131 . 항공운송업</p> <p>7116 및 7117 .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p> <p>7123 . 수상운수 보조서비스업</p> <p>7132 . 항공운수 보조서비스업</p> <p>719 . 운수관련서비스업</p> <p>72 . 통신업</p>
<p>J . 금융 및 보험업(65~67) (FINANCIAL INTERMEDIATION)</p> <p>65 . 금융업 (FINANCIAL INTERMEDIATION,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p> <p>66 . 보험 및 연금업</p>	<p>81 . 금융업 (8103 제외)</p> <p>82 . 보험업</p>

신 분 류	구 분 류
<p>(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EXCEPT COMPULSORY SOCIAL SECURITY)</p> <p>67 .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INTERMEDIATION)</p> <p>K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74) (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p> <p>70 . 부동산업 (REAL ESTATE ACTIVITIES)</p> <p>71 . 기계장비 및 개인·가정용품 임대업 (RENTING OF MACHINERY AND EQUIPMENT WITHOUT OPERATOR AND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p> <p>72 . 컴퓨터 관련산업 (COMPUTER AND RELATED ACTIVITIES)</p> <p>73 . 학술연구 및 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p> <p>74 . 기타사업 서비스업 (OTHER BUSINESS ACTIVITIES)</p>	<p>8103 . 금융서비스업</p> <p>83 . 부동산업</p> <p>845 . 기계 및 장비임대업 (62 중 가정, 소비용품임대, 71173 중 렌트카 및 운수장비 임대, 94149 중 연극의상 및 소도구임대, 94970 오락장비 임대 등 포함)</p> <p>8431 . 자료조사, 처리, 제공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업</p> <p>84312 . 자료조사업 제외</p> <p>842 .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p> <p>932 . 학술연구기관</p> <p>84 . 사업서비스업 (8431 , 842 , 845 제외, 92090 중 청소 서비스, 9592 사진관등 포함)</p>

신 분 류	구 분 류
<p>L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무(75)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COMPULSORY SOCIAL SECURITY)</p> <p>75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무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COMPULSORY SOCIAL SECURITY)</p> <p>M . 교 육(80) (EDUCATION)</p> <p>80 . 교육 (EDUCATION)</p> <p>N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 (HEALTH AND SOCIAL WORK)</p> <p>85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HEALTH AND SOCIAL WORK)</p> <p>O .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90~93)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 ACTIVITIES)</p> <p>90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SEWAGE AND REFUSE DISPOSAL, SANITATION AND ACTIVITIES)</p> <p>91 . 회원 단체</p>	<p>91 . 공공행정 및 국방</p> <p>931 . 교육서비스업</p> <p>933 . 의료보건 및 수리서비스업</p> <p>934 . 사회복지기구</p> <p>92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청소 제외)</p> <p>935 .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p>

신 분 류	구 분 류
<p>(ACTIVITIES OF MEMBERSHIP ORGANIZATIONS N.E.C.)</p> <p>92 . 오락문화 및 운동경기 관련산업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ACTIVITIES)</p> <p>93 . 기타 서비스업 (OTHER SERVICE ACTIVITIES)</p> <p>P . 가사 서비스업(95)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p> <p>95 . 가사서비스업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p> <p>Q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99)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p> <p>99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 AND BODIES)</p>	<p>939 . 기타 사회서비스업</p> <p>94 .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94149 중 연주의상 및 소도구임대 제외) (94970 : 오락장비임대 제외)</p> <p>952 . 세탁 및 염색업</p> <p>959 . 기타 개인서비스업 (9592 사진관 제외)</p> <p>953 . 가사서비스업</p> <p>96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p>

Ⅱ. 한국표준산업분류 6차 개정(초안)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02)

이 대분류에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관련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 산업별 개요

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여기에는 작물생산업, 축산업, 혼합농업, 작물생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작물생산업은 노지 또는 특정시설내에서 보통작물, 과수 및 향신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의 재배 및 생산활동과 산림용 이외의 양묘 및 종자생산, 버섯재배 및 채취, 콩나물재배 등의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 번식하고, 가치를 증식시키는 활동으로서 이들 동물로부터 고기·젖·털·모피·알·꿀·누에고치 동물성물질을 생산하여 애완용·실험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산림보호 및 종족보호를 목적으로 이들의 육지동물을 사육, 번식, 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활동에 관련된 동물의 사육과 판매장에서 판매에 관련한 사육관리 및 판매목적이 아닌 애완용동물의 사육 관리는 제외한다.

○ 혼합농업 (작물생산과 축산)

작물생산 활동과 축산활동을 겸하면서 그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미만으로 혼합하여 운영되는 경우를 분류한다.

○ 농업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경을 위한 설계, 정원조성, 식재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경관련 서비스활동 원서비스업을 포함한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 및 축산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수렵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과 엽조수류를 증식하여 수렵장을 운영하는 수렵관련 서비스에 주로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나 스포츠 활동적인 사냥활동은 제외한다.

나. 임업 및 관련서비스업

육림활동, 산림용 증묘생산, 벌목활동 및 야생식물의 채취활동과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주로 구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본다.

나. 주로 자가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하는 경우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보지 않으나 별개의 제조공장등을 설치하고 그 제조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분리하여 파악한다.

다. 농지개량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원예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 농업관련 조합은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라. 농촌지도소등 농업활동의 지도, 조선, 알선, 감독등의 생산활동에 간접적인 보조활동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중 정부기관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되며, 생산활동 및 생산물 출하이전의 준비단계에서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보조활동은 각 서비스업에 분류된다.

마. 농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사방공사, 제방공사, 조경토목공사등의 활동과 건축 및 관련조경설계, 건설 및 관련조경, 식재활동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포함된다.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011 작물생산, 조경 및 원예업

0111 곡물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생산업

01110 곡물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생산업 (11111, 11114 중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제외, 11119)

노지에서 일년생 또는 다년생의 낱알곡물작물과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을 다량 함유한 뿌리작물 및 사료작물, 약용작물, 섬유작물, 유지작물, 공업용 원료작물 등의 재배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작물의 생산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

<포함>

- 밀과 메슬린
- 옥수수
- 쌀 (현미가 아닌 것)
- 보리
- 호밀, 귀리
- 수수, 조, 메밀
- 감자
- 건조한 채두류
-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함유한 뿌리 및 괴경
- 대두
- 낙화생
- 해바라기, 참깨, 잇꽃, 유채, 콜자 및 겨자씨

- 면화씨
 - 기름용씨 및 기름함유열매
 - 잎담배
 - 사탕무우
 - 사탕수수
 - 곡물의 껍질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불문); 스위트, 멥골드, 사료용의 근채류, 건초, 루우산(알파파), 클로버, 샌포인, 케일, 루우핀, 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불문)
 - 면(조면에 불문함)
 - 생것 또는 침지한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아마, 대마, 라미제외)
 - 생아마, 침지아마, 생대마, 침지대마: 사이잘마 및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섬유(생것에 한함): 코코넛, 아바카,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섬유(생것에 한함)
 -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
 - 사탕무우종자와 사료용 식물종자
 - 호프 및 루플린, 식용채소제품
 - 천연고무(일차제품, 판,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 <제외>
- 채소, 메론, 화훼작물생산과 작물의 종자생산(0112)
 - 과실, 견과(낙화생제외) 음료용 또는 향신용작물의 생산

- 및 재배(0113)
- 임산물 및 버섯이외의 야생작물의 채취(0200)
 - 시설재배, 종묘 및 화훼작물이외의 각종 농작물(01140)
-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생산업
- 노지 또는 특정시설내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과 각종 농작물의 종자 또는 묘목을 생산,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제외>
- 곡물,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구근 및 줄기, 공예작물 및 사료작물의 재배(0111)
 - 과실, 견과(낙화생제외), 음료, 향신용작물의 재배 또는 생산(0113)
 - 야생식물의 채취(버섯제외)(0200)
 - 산림수용의 묘목생산(0200)
- 01121 채소작물 생산업(11113)
- 노지에서 잎 및 줄기채소, 열매채소, 뿌리채소등 각종 채소작물을 주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깻잎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지에서 보통작물, 공예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 <포함>
- 채소(신선·냉장한 것): 토마토, 양파, 쪽파, 마늘, 부추, 파속의 채소, 양배추, 배추, 상치, 당근, 오이, 고추

<p>< 제 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코코아두, 차와 마태잎, 겨자등의 목본성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의 재배 (0113) •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시설작물의 생산 (0113) • 채소작물의 종자 및 묘목생산 (01124) <p>01122 화훼작물 생산업 (11115)</p> <p>화초, 잔디, 관상수등과 같은 장식, 관상 및 조원용 꽃, 풀, 수목 등을 주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식물; 인경, 피경 및 피근; 삼수와 접수; 버섯의 종균 (산림수 제외) • 절화 및 꽃봉오리 (꽃다발, 화환, 꽃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것 포함) <p>< 제 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생산 (01123) • 산림수의 종자 및 묘목생산 (02011) • 화훼작물의 식재관리활동 (01410) <p>01123 종묘생산업 (11117)</p> <p>각종 농작물의 종자, 묘목 및 육묘, 버섯종균 등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초종자 및 과실종자 • 채소종자 <p>< 제 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용 종자 및 묘목생산 (02011) <p>0113 과실, 음료 및 향신작물재배업</p> <p>01130 과실, 음료 및 향신작물 재배업 (11112)</p> <p>견과(낙화생 제외), 딸기를 포함하여 각종 과실생산과 커피, 차, 코코아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추야자, 무화과, 바나나, 코코넛, 캐슈넛, 파인애플, 애버카도스, 망고, 과아버 및 망고스틴 (신선 또는 건조한 것) • 감귤류의 과일 (신선 또는 건조한 것) • 포도 (신선 또는 건조한 것) • 과실 (신선 또는 건조한 것) • 견과류로 신선 또는 건조한 것 (탈각 여부불문) • 커피 (볶지 아니한 것과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발효하지 않은 녹차, 발효한 홍차, 반발효차들로서 내용량이 3kg 이하로 포장된 것 • 마태 • 코코아두 (생것 또는 볶은 것)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신료 (가공여부불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름추출용 열매생산(0111) • 호프, 치커리뿌리생산(0111) • 열매채소생산(0112) • 야생과실 및 견과의 채취활동(0200) • 포도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사업체에서 포도주생산(1552) • 과실, 커피, 차 및 향신료의 가공처리(15491) • 토마토생산(0112) <p>0114 콩나물 및 시설작물생산업</p> <p>01140 콩나물 및 기타 시설작물생산업 (11116)</p> <p>버섯재배, 콩나물생산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움막 및 기타 특정 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재배활동과 노지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작물을 수경재배시설, 공장설비등 특수 고정시설에서 특수한 기술과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온실,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하여 일반토양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작물 재배로 보지 않는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과 송로재배 • 콩나물재배 • 시설재배, 각종 작물 (종묘, 화훼 작물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훼 작물생산, 시설재배 (01122) • 종묘생산, 시설재배 (01123) <p>012 축산업</p> <p>0121 소, 말 및 양사육업</p> <p>젓, 고기, 털, 모피 또는 가죽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 말, 양을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01211 낙농업 (11121)</p> <p>낙농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젓소 및 젓양을 기르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낙농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젓을 살균하고, 병에 넣어 시판하거나 버터, 치즈, 기타 낙농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젓소 • 면양과 산양(살아있는 것) • 생우유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한 원유의 처리 및 가공(1520) <p>01212 육우사육업 (11122)</p> <p>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기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p>
--	--

한다.

<포 함>

- 소(젖소 제외)
- 소의 정액

01213 말 및 양사육업(11124 일부)

고기, 모피, 털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말 또는 양을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산양(유용)
- 말, 당나귀, 노새, 버새(살아있는 것); 종마 제외
- 작은 양모, 그리시(폴리스와시한 양모포함)

<제 외>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양털깎기(0140)
- 사육장 서비스활동(0140)

0122 기타 축산업

소, 말, 양을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을 사육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수렵활동에 부수되는 원피의 생산(0150)
- 도살활동에 부수되는 원피의 생산(1511)

01221 양돈업(11123)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기생산을 위하여 멧돼지를 인공적 시설내에서 사육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포 함>

- 돼지(산 것)

01222 가금사육업(11125)

고기나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의 각종 조류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가금류(산 것)
- 달걀(껍질이 붙어있는 것으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

<제 외>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관상용, 애완용, 기타산업용 조류의 사육활동(01229)

01223 양봉업(11126)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곤충류(벌)

<p>• 천연꿀</p> <p>01229 달리분리되지않은 기타 축산업(11124중 말, 양 제외, 11129, 11130)</p> <p>고기 및 기타 동물성물질 생산 또는 종급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유용 또는 고기용 소, 말, 양, 돼지, 난육용 가금, 꿀벌을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을 사육, 증식,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류(벌 제외) • 바다 달팽이를 제외한 달팽이(산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개구리 다리(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한 것) • 동물의 식용생산물 • 마모를 포함한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 제외) •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 • 생모피(토끼의 모피, 새끼양의 모피제외) • 토끼모피, 새끼양모피 • 동물 가죽(신선 또는 보존처리는 포함하나 가공처리한 것은 제외) •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여부불문) <p>013 작물 및 축산 혼합농업</p>	<p>0130 작물 및 축산 혼합농업</p> <p>01300 작물 및 축산 혼합농업</p> <p>축산활동과 작물생산활동을 겸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미만으로 혼합하여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과 동물의 혼합생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작물생산 또는 혼합축산업은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 <p>014 조경, 작물생산 및 축산관련서비스업</p> <p>0141 조경 관련서비스업</p> <p>01410 조경 관련서비스업(84212, 11140)</p> <p>작물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사업체 이외의 사업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장식,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등의 조성에 따른 관상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장식용 식물을 식재, 파종, 손질, 관리에 관련된 조경 계획 및 설계, 조성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관상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나무치료 활동을 포함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계획가 • 조경상담 • 조경식재 • 관상수손질 • 조경설계사 • 조경감리 • 조경용 파종 • 정원관리 • 잔디심기 • 관목관리 • 나무치료사 <p>0142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 (1121)</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각종 작물생산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01421 관개시설 운영업 (11212)</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 양수장, 관정등의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저수지 관리운영 • 관정운영 (농업용) <p>01422 농업용 기계장비 서비스업 (11211)</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조작자가 딸린 트랙터, 콤바인 등 동력으로 작동되는 각종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임대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심경 기계장비 임대 (조작자 딸린) • 식부 기계장비 임대 (조작자 딸린) • 비료살포기 기계장비 임대 (조작자 딸린) • 농약살포기 기계장비 임대 (조작자 딸린) • 수확기 임대 (조작자 딸린) • 탈곡기 임대 (조작자 딸린) • 농산물 선별기 및 정리기 임대 (조작자 딸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 (조작자 안딸린) (71210) • 수동식 기계장비 임대 (조작자 딸린) (01423, 01429)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개시설 운영 - 농업용수 공급업 • 양수장 운영 (농업용) 	<p>01423 원예 서비스업 (11213)</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채소, 화훼 및 과수작물의 파종, 육묘, 식재, 전지, 전정, 선과, 적과, 병충해방제, 분식등 채소, 화훼 및 과수작물 재배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포 함>

- 작물재배 및 보호관리 서비스; 원예작물
- 파종 서비스
- 육묘관련 서비스
- 식재 및 분식 서비스
- 전지 및 전정 서비스
- 적과 서비스
- 병충해 방제 및 성장촉진 활동
- 선별, 정리 서비스; 원예작물
- 선별, 정리 서비스-과실
- 세척 서비스-과실
- 견과 껍질 벗기기 서비스
- 수확관련 서비스
- 딸기따기
- 과일따기
- 견과 수확
- 채소 수확

<제 외>

- 동력식 기계장비 임대 서비스, 운전자 딸린 (01422)
- 채소, 화훼, 과수작물 이외의 기타 작물생산 관련 서비스 (01429)

01429 달리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 관련 서비스업 (11219)

달리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 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와 원예서비스업 이외의 작물생산관련서비스가 포함된다.

<포 함>

- 작물재배 및 보호 서비스; 보통 및 공예작물
- 파종 서비스
- 육묘관련 서비스
- 식재 및 이식 서비스
- 비료살포 서비스
- 약제살포 및 병충해 방제 서비스업
- 수확 및 정리 서비스; 보통 및 공예작물
- 수확 및 탈곡 서비스
- 사료작물 수확 서비스
- 사료작물 절단 및 사일로작업 서비스
- 선별, 정리, 포장 서비스-수확물
- 세척 서비스-수확물
- 조면 서비스
- 박피 서비스(도정 제외)
- 침수 및 냉각처리 서비스

<제 외>

- 동력식 기계장비 임대 서비스-조작자 딸린 (01422)
- 채소, 화훼, 원예작물 생산관련 서비스 (01423)

0143 축산관련 서비스업 (1122, 11230)

가축, 가금 등 각종 육지동물의 사육에 관련되는 보조적인 서비스

스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431 가금부화 및 감별업 (11221, 11229 중 가금감별업 포함)

가금의 부화 및 감별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가금부화 서비스
- 가금부화-수수료 또는 계약, 가금감별 서비스
- 가금부화-자영부화 판매, 압수감별

<제 외>

- 혈통검사 서비스 (01439)

01439 달리분류되지않은 축산서비스업 (11229 중 가금감별업 제외, 11230)

가금의 부화 및 감별 이외의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동물의 번식, 사육 및 보호관련 서비스
- 인공수정-동물
- 혈통검사-동물
- 목동 서비스
- 거세-동물
- 품종개량 서비스
- 양털 깎기 및 유사활동

- 동물우리 청소 및 배설물 수집 서비스
- 가금알 선별 및 세척 서비스
- 양잠(잠업) 관련 서비스
- 잠종생산
- 취잠생산

<제 외>

- 수의업 (8520)
- 수렵 관련 서비스활동 (0150)
- 가금감별업 (01431)

0150 수렵업

01500 수렵업 (11300, 13015 중 수생포유동물 포획 포함)

판매를 목적으로 각종 야생동물과 수생포유동물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렵용동물을 증식시켜 수렵장을 관리 운영 및 기타 수렵관련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포 함>

- 야생동물의 포획, 채집
- 야생조수의 포획
- 야생동물의 포획, 채집 (각종)
- 수생 포유동물 포획 (고래제외)
- 물개 포획
- 하마 포획
- 수렵 관련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렵장 관리 운영 • 수렵촉진활동 <p>< 제 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활동에 결합된 동물성 물질의 생산 (0122) • 고래의 포획활동 (05119) • 도살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의 생산 (1511) •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 수렵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9241) 	<p>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재식림, 산림보호, 임목지의 운영활동, 야생수액 및 야생식물 채취, 임업부산물의 채취 및 수집활동을 말한다.</p>
<p>02 임업</p> <p>020 임업</p> <p>이 분류는 산림에서 종자의 채취 및 산림용 묘목의 생산,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야생식물등을 채취하는 영림활동과 벌목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영림 및 벌목활동에 관련된 서비스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산림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야생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야생식물 채취활동으로 보며 이러한 활동이 영림업자와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에는 영림서비스업으로 본다. 수액 및 수목의 채취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p>	<p>02011 양묘업 (12101)</p> <p>산림에서 조림용 수목의 종자를 채취하거나 구입 또는 채취한 수종으로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수 (묘목) • 산림수의 종자 <p>< 제 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용 이외의 종묘생산 (01124) <p>02012 육림업 (12102)</p> <p>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의 식재-산림수 • 산림수관리 • 임야의 운영 • 임업부산물 생산-자영산림내에서
<p>0201 영림업</p>	

02013 야생임산물 채취업 (12109)

인위적인 관리와 보호가 없는 산림에서 의약용, 식용 또는 산업용 재료등의 각종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천연검 및 수지채취-야생
- 기타 임산물 채취-야생
- 천연콜크 채취-야생
- 식물부분 채취-야생
- 조물재료 채취
- 야생 식물성 물질 채취-야생
- 산삼채취
- 야생약초
-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아울, 치콜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
- 락, 기타 천연검, 수지 및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 천연의 코르크(조상의 것, 단순가공한 것)
- 꽃과 봉오리를 제외한 식물의 한부분, 장식용에 적합한 풀, 이끼 및 지의
- 편조물, 충전용, 비 또는 브러쉬용으로 사용하는 식물성재료,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원료; 기타 식물성 생산품

<제 외>

- 재배한 고무나무로부터의 천연고무 라텍스액 채취 (0111)
- 버섯, 송로의 재배 및 채취 (0112)

- 딸기와 식용견과류의 생산 (0113)
- 육림업자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임목지에서 임업부산물의 채취 및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02030)

0202 벌목업

02020 벌목업

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베어 재목과 연료목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원목생산
- 벌목업자-자영
- 벌목업자-계약
- 침엽수림 통나무
- 활엽수림 통나무
- 기타 원목(펠나무, 쪼갬말뚝, 뽕죽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 포함)

<제 외>

- 침엽수, 활엽수의 우드칩생산 (2010)

0203 임업서비스업

02030 임업서비스업 (12300)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영림관련 서비스업
- 산화방지 서비스
- 병충해방지 서비스-산림
- 산림경비 및 보조서비스
-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
- 식재-계약 또는 수수료
- 수목가지치기 서비스
- 임산물 채취-계약, 수수료
- 벌목관련 서비스
- 원목다듬기 서비스
- 원목절단 및 절재서비스
- 목재운반 이동서비스(벌목장내에서)

B. 어업(05)

이 대분류에는 일반어업 양식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 개요

가. 일반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양식업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인공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어업관련 서비스업

일반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어업 및 양식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직접적으로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직접가공할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으나,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공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상용종사자가 있는 경우 또는 공장형태의 선박을 별도 독립된 사업체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제조업에 분류된다.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어업서비스업

판매를 목적으로 바다, 강 또는 호수에서 선박 및 어도구 등으로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취, 채포, 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어업활동에 결합된 수산물 가공선박의 운영은 별도 독립된 사업체로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051 일반어업

해면 또는 내수면에서 각종 자연 수생 동식물을 채취, 채포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511 일반해면어업(1301)

원양, 근해 및 연안해역에서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각종 수산동식물을 채취, 채포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5111 원양어업(13011)

원양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 물고기 포획(지느러미 있는) - 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어(산 것) • 활어(신선, 냉장한 것) <p>05112 근해어업(13012)</p> <p>근해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고기 포획(지느러미 있는) - 근해 • 활어(산 것) • 활어(신선, 냉장한 것) <p>05113 연안어업(13013)</p> <p>연안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고기(포획 지느러미 있는) - 연안 • 활어(산 것) • 활어(신선, 냉장한 것) <p>05114 갑각류 및 연체동물 채취업(13014)</p> <p>원양, 근해 및 연안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각류 채취 - 해면 • 연체동물 채취 - 해면 • 수생 무척추동물 - 해면 • 갑각류(냉동한 것 제외) • 굴 • 무생무척추동물(산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p>05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일반 해면어업(130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일반 해면어업으로서 바다에서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와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조류 채취 - 해면 • 김 채취 - 해면 • 미역 채취 - 해면 • 진주 및 진주모패 채취 - 해면 • 스폰지(해면) 채취 - 해면 • 산호 채취 - 해면 • 고래 포획 - 해면 •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연체동물, 갑각류 또는 극피동물, 패각과 오징어뼈 • 동물성의 해면 • 해초류와 기타 조류(신선, 건조한 것), 분쇄여부 불문
---	--

<p>< 제 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 이외의 수산포유동물 포획 (0150) <p>0512 일반내수면어업</p> <p>05120 일반내수면어업 (13091)</p> <p>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물고기 등의 각종 기타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고기 포획 - 내수면 • 갑각류, 연체동물 채취 - 내수면 • 수산식물 채취 - 내수면 <p>052 양식업 및 어업서비스업</p> <p>0521 양식업</p> <p>해면이나 내수면에서 물고기,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05211 해면양식업 (13022)</p> <p>해면에서,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진주양식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고기 양식 - 해면 • 갑각류 양식 - 해면 • 연체동물 양식 - 해면 • 해조류 양식 - 해면 • 진주양식 - 해면 • 진주 (천연 또는 양식된 것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p>05212 내수면 양식업 (13021)</p> <p>내수면에서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업 - 내수면 • 수산동물양식 • 수산식물양식 <p>0522 어업 서비스업</p> <p>05220 어업 서비스업 (13092)</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어업 및 양식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족부화서비스 - 수산동식물 • 종묘배양 - 수산동식물
--	---

- 수산동식물 종묘배양
- 어족보호서비스
- 어획물 정리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
- 수산물 선별정리 - 수산물
- 어획선별서비스

< 계 외 >

- 스포츠 또는 오락적 낚시 및 관련서비스활동 (9249)

C.

광업 (10 ~ 14)

1. 광업의 개념

광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고 이를 손질 및 품질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비금속광물 채굴과 금속광물의 탐사, 광산개발, 시굴, 채굴 및 추출활동과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 파쇄, 체질, 선별, 부유, 용해, 원유토피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활동 등을 말하며, 광업활동은 생산되는 주된 광물의 종류에 따라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산업을 분류하였다. 광업사업체는 광산단위로 분류하며 관리사무소의 주소지가 사업장소가 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광천에서 천연수 및 광천수의 포장활동 (1554)

나. 채광, 채석활동에 결합되지 않고 수행되는 토사석, 암석 광물의 분쇄, 마쇄 또는 기타 처리활동 (2699)

다. 상수도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배수활동 (4100)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물탐사 활동 (7421)

10

석탄산업

무연탄, 역청탄, 갈탄 및 토탄 등의 석탄을 채굴 및 응집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품질을 개선하거나, 파쇄, 분쇄, 체질 및 선별을 주로 하는 사업체는 채광활동과의 결합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포함하며, 구입 또는 직접 채굴한 석탄으로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을 생산하거나 채광업체가 채광장에서 직접 석탄가스를 생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 광업권의 개발 및 준비작업 (45102)
- 구입한 석탄을 증류하는 코우크스 및 기체연료생산 (23100)

101 무연탄 산업

1010 무연탄 산업

10101 무연탄 채굴업 (21010, 21090)

지하 또는 노천광에서 무연탄, 역청탄 및 기타 고급석탄을 채굴하는 활동과 이의 선광활동을 채광활동에 연관된 응집가공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석탄 (응집하지 않은 것)

<p>10102 무연탄 가공업</p> <p>구입한 무연탄 및 기타 탄화석탄을 응집가공하여 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으로부터 가공한 연탄과 이와 유사한 고체형 연료 	<p>1030 토탄산업</p> <p>10301 토탄채굴업 (29099에서 분리)</p> <p>토탄을 채굴하는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탄 (응집하지 않은 것)
<p>102 갈탄산업</p> <p>1020 갈탄산업</p> <p>10201 갈탄채굴업 (21020)</p> <p>지하 또는 노천광에서 갈탄 및 중급석탄을 채굴하는 활동과 이의 선광활동, 채광활동에 연관된 응집가공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탄 (응집하지 않은 것) 	<p>10302 토탄가공업</p> <p>구입한 토탄 및 하급석탄을 응집 가공하여 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탄 (응집한 것)
<p>10202 갈탄가공업</p> <p>구입한 토탄 및 기타 중급석탄을 응집 가공하여 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탄 (응집한 것) <p>103 토탄산업</p>	<p>11 원유, 천연가스 채취 및 관련서비스업</p> <p>111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p> <p>11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p> <p>111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22000 중 관련서비스업 제외)</p> <p>각종 형태의 유전 또는 역청광에서 원유와 역청질 광물을 채굴, 채취하는 산업활동과 가스천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그들의 구성성분을 불문한다. 또한 원유를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부유처리, 탈염, 탈수, 침전, 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p>

<p>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역청질을 함유한 광물, 석유함유혈암, 타르모래를 채굴하는 산업활동과 수송을 위하여 직접 채굴한 산업체에서 천연가스의 액화 및 재가스화 작업과 유전 또는 가스전에서 액화탄화수소를 생산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함) • 천연가스의 액화한 것 또는 가스상태의 것. • 역청질혈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유전 또는 가스천의 천공, 유정의 완성과 관련 장치의 설치활동 및 기타 원유가스의 추출서비스활동(1120) • 정제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석유정제 과정에서의 액화가스 생산(2320) • 산업용 가스의 제조(2411) • 석유, 천연가스의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의 운영(6030) • 석유 및 가스천의 탐사(7421)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정 및 가스천의 운영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공서비스 • 굴착서비스 • 유정 탐 축조 • 유정 및 가스천의 축조 • 펌프작업 - 원유 및 가스채굴 • 유정 및 가스천 보수, 철거 및 매립작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및 가스유전탐사 또는 지질학적, 지리학적 조사활동(7421) • 유전 및 가스천의 운영업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관련 활동(1110)
<p>112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관련 서비스업</p> <p>11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관련 서비스업</p> <p>11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관련 서비스업(22000에서 관련 서비스업 분리, 51290 일부 포함)</p>	<p>12 우라늄 및 토륨광업</p> <p>120 우라늄 및 토륨광업</p> <p>1200 우라늄 및 토륨광업</p> <p>12000 우라늄 및 토륨광업(23029)</p> <p>역청우라늄광을 포함하여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 및 이들의 정광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라늄 및 토륨광과 그 정광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류 금속광석의 채굴활동 (1320) • 방사성 또는 핵연료용 물질의 생산 (2330) • 역청우라늄광 또는 우라늄 함유광석으로부터 우라늄 금속을 추출하는 활동 (2330) 	<p>13100 철광업 (23010)</p> <p>적철광, 자철광, 갈철광, 능철광, 각암 등 철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광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철광석의 정광 및 기타 부수적인 처리활동과 응집처리한 철광석의 생산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광과 그 정광 (배소한 황화철강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철광 및 PYRRHOTITE 채굴 (1421)
<p>13 금속광업</p> <p>철 및 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의 탐사, 개발, 채굴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채광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채광활동에 부수되어 수행되는 광석의 파쇄, 마쇄, 자성 및 중력에 의한 분리, 선별, 체질, 부유, 분말의 응집처리 (입상, 구형상, 원통상 등), 건조, 배소, 자화 또는 산화하기 위한 하소 (열처리) 등과 같이 기본적인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속광물의 정광처리활동이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기본적인 화학적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하소 및 배소처리 같은 정광활동도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라늄 및 토륨광의 채굴 (1200) 	<p>1320 비철금속광업 (2302 중 우라늄 및 토륨광 제외)</p> <p>철합금용 비철금속광석, 철합금용 이외의 비철금속광석, 귀금속광석 및 희토류 광석 등의 비철금속광석의 채굴과 이러한 광석의 정광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라늄 및 토륨광의 채굴 (1200) • 알루미늄, 동 또는 니켈의 매트생산 (2721) • 화학적 성분의 황화철을 주로 함유한 광석의 채굴 (1421)
<p>131 철광업</p> <p>1310 철광업</p>	<p>13201 텅그스텐광업 (23021)</p> <p>텅그스텐광의 채굴 및 정광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텅그스텐광과 그 정광 <p>13202 망간광업 (23202)</p> <p>망간광석의 채굴 및 그 정광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광과 그 정광, 아연광과 그 정광 <p>13206 몰리브덴 광업 (23026)</p> <p>몰리브덴 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간과 그 정광 <p>13203 금은광업 (23023)</p> <p>금, 은 및 백금류 등의 귀금속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배소한 것) •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배소한 것 제외) <p>13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철금속광업 (23129중 우라늄, 토륨 제외)</p> <p>달리분류되지않은 비철금속 광석을 채굴 및 정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금속광과 그 정광 <p>13204 동광업 (23024)</p> <p>동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 니켈광과 그 정광 • 주석광과 그 정광, 티타늄과 그 정광,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니오분광, 티타늄광, 바나듐광과 그 정광, 기타 비철금속의 광석 및 그 정광
<p>13205 연·아연광업 (23025)</p> <p>연광석 및 아연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을 말한다.</p>	<p>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p> <p>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탐사, 개발, 채굴, 채취활동과 이에 관련된 보조적인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41 토사석 채취업</p> <p>1410 토사석 채취업 (2901)</p> <p>건설용 또는 기념비용 판석 및 쇄석, 초오크 및 백운석과 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원료용 광물, 천연석고 및 무수석고, 도자기 또는 내화물 제조용 점토, 공업용 또는 건설용 모래, 자갈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보조적인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성분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 (1421) • 소금채굴 및 채취 (1422) • 기타 비철금속광업 (1429) • 구입한 석재의 절단, 성형 및 가공 (2696) • 점토가공 (팽창점토) (2699) • 구입한 특정 토사석의 분쇄 및 기타 처리활동 (2699) <p>14101 건설용 석재 채굴업 (29011)</p> <p>건설 또는 기념비용 석재 및 판석의 생산을 위하여 각종 암석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이트 (점판암) • 대리석 및 기타석비용 또는 건축용 암석 • 화강암, 사암, 기타석비용 또는 건축용 암석 	<p>14102 석고 및 석회석 광업 (29031, 29093)</p> <p>석고, 경석고 및 무수석고 채굴과 농업용 또는 도자기,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제조원료용 석회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고, 무수석고, 석회석용제,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석 (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소석고 및 프라스터 제조 (2694) <p>14103 쇄석 생산업 (29012)</p> <p>현무암, 휘록암, 섬록암, 편마암, 반력암, 운모편암, 사암 등 각종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재 및 철도로반용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 처리하여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쇄석: 대리석, 트래버티인, 에코신, 기타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과 알러바스터 및 화강암, 반암, 현무암, 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을 입상, 파편상 또는 분상으로 한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용 석영채취 (1429)
---	---

<p>• 구입한 암석의 파쇄처리 (2699)</p> <p>14104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 (29013)</p> <p>건설용, 도로포장용 등의 건설용 천연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 (공업용 모래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함유 모래는 주로 함유된 금속의 종류에 따라 금속 광업 (13)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 공업용 모래 채취 (29033) <p>14105 공업용 모래 채취업 (29033)</p> <p>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공업용 천연모래를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사 : 공업용 모래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용 천연모래 채취 (14104) 	<p>달리분류되지않은 토사석 채취활동으로서 요업제품 또는 내화물 제조 등에 사용되는 고령토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점토와 홍주석, 남정석, 규선석, 물라이트 및 샤모트 또는 다이아스어드 등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 토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소토 • 팽창점토 • 활성점토 • 점토혼합 제조품 • 규산 알루미늄을 기제한 : 물질로 구성된 점토 <p>142 달리분류되지않은 광업 및 채취업</p> <p>화학용 또는 비료용 광물채굴 및 소금의 채취활동과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비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421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광업</p> <p>14210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광업 (29020)</p> <p>질소, 인산, 칼륨을 함유한 광물 및 구아노, 천연바륨을 함유한 광물, 천연황산마그네슘, 색소토, 형석 등의 화학용, 비료용 광물을 채굴,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4109 달리분류되지않은 토사석 채취업 (29032 중 장석, 규조토 일부 제외)</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토크, 카아닐라이트, 실마이트 및 기타 조상의 천연칼륨염 • 황화철강(배소하지 아니한 것) : 조상의황 또는 정제하지 아니한 황 • 화학원료용 광물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채취(1422) • 하소한 황철강의 제조(2411) • 비료 및 질산화합물의 제조(2412) <p>1422 소금채취업(2904)</p> <p>14220 소금채취업(29040)</p> <p>암염 및 천일염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보조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과 순염화나트륨 : 해수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한 소금을 처리하는 활동 • 바다물, 호수물 및 기타 자연 염수를 처리하여 식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활동(4100) 	<p>1429 기타 광업 및 채석업</p> <p>달리분류되지않은 광물 또는 기타 천연 유출물을 채굴, 채취하는 활동을 말한다.</p> <p>14291 활석광업(29092)</p> <p>활석 및 천연동석 등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동석 및 활석 <p>14292 장석 및 규조토광업(29032)</p> <p>장석, 백류석, 하석 및 하석 섬장암과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채굴,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 섬장암,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 <p>142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광업 및 채석업(29091, 29094, 2909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비금속광물을 채굴,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연마재 • 귀석 및 반귀석
--	---

- 질석 및 유사광물
- 석영 및 규암
- 운 모
- 기타 천연유출물
- 천연아스팔트 및 역청광
- 천연아스팔트,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 보석 (공업용다이아몬드 이외의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것)
준보석원석과 가공되지 않고 단순히 자르거나 쪼갠 것.
- 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연마한 것) 부서, 금강사, 천연커럽덤, 천연석류석, 기타 연마용 천연광석
- 기타 광석

D.

제 조 업 (15 ~ 37)

이 대분류에는 각종 재료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모든 사업체가 포함된다.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무기 및 유기물질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동력 기계를 사용하거나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제품은 도매 또는 소매형태로 판매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원재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제련동은 동선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관습적인 구매 계통 및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 소유권하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가정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도매시장, 공장간이동, 산업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 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연관, 살수기,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 조직이나 각종 구조물의 규격부품 및 구성품을 건물이나 건축용지위에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45(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 사업체에 기계 및 장비의 조립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체는 그 설치 또는 조립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그러나, 대형 가정기기(스토브 및 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는 50 또는 52(기타수선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의 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라. 공업, 상업, 사무 및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여기에서 수선전문업체라 함은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수선과 수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비의 부속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선하는 경우로서 공장설비면에서 그 기계장비의 제조 및 조립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 가정용 기기 및 장비, 가정용품, 자동차 및 기타 소비자용품의 수선을 주로하는 사업체는 수선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50 또는 52(기타수선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된다.

바. 모든 형태의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혁신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이때의 적용기준은 시설면에서 그 제품의 개조 능력을 갖추고 그 제품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 제조하는 사업체는 그 구성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다만 금속의 주조, 압단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프라스틱의 사출이나 성형에 의하여 제조되는 구성품, 부품의 제조는 제외한다.

아.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조립품, 밸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 장비의 일반(비전용)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이 제품들이 장착 또는 부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영역에 분류된다.

자. 주로 주문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수선 서비스는 그 주문제조업이 분류된 항목에 포함한다.

차. 인쇄, 출판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카.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할 수 없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타.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소매업에 분류한다. 다만, 패션의류 디자인 및 생산은 제외한다.

15

음식료품 제조업

이 중 분류에는 짐승고기, 물고기 및 기타 수산물, 과일, 채소의 가공처리 및 저장품, 식용 및 비식용 동식물성 유지, 낙농제품,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설탕, 빵, 과자, 국수 및 기타 식료품 또는 식품과 음료를 제조,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된다. 산지에서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림·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생산업체에서 자기가 생산한 생산품을 원료로 음식료품을 제조할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도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제조업에 분류하지 않고 그 주된 생산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어업 활동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가공선의 운영은 여기에 분류된다.

151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

고래를 포함하여 육지동물의 도살 및 그 고기가공, 어류, 과일 및 채소의 가공, 동식물성 유지의 생산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

1511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업

고래를 포함하여 소, 말, 양, 돼지, 조류, 토끼, 수렵물 또는 기타 육지동물의 도축, 고기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축하여 신선, 냉장·냉동한 고기생산, 건조, 훈연, 염장, 염수장 또는 통조림 등의 방법으로 가공처리한 고기 및 고기제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용출 또는 정제한 라드 및 기타 식

용동물기름, 짐승고기의 분말 및 관련부산물 등의 생산활동이 포함된다. 육지동물의 고기의 냉동활동은 그 본질적 활동에 따른 보조적 또는 부수적활동으로 보며, 냉동활동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구입한 고기를 단순히 분할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제 외>

- 짐승고기를 함유하는 스프의 제조 (1549)

15111 도축업 (31119 중 자영도살, 31191 중 임도살)

고래를 포함하여 각종 짐승 및 가금을 도축하여 신선,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영 또는 임도살 여부를 불문한다.

<포 함>

- 뽑은 양모, 그리지 (플리시와시한 양모포함)
- 소와 마속동물, 면양, 새끼양, 산양의 원피
- 쇠고기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쇠고기 (냉동한 것)
- 돼지고기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돼지고기 (냉동한 것)
- 면양고기 (신선, 냉장한 것)
- 면양고기 (냉동한 것)
- 산양고기 (신선, 냉장·냉동한 것)
-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고기 (신선, 냉장·냉동한 것)
- 식용설육 (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 버새의 것)

<p>으로 신선·냉장·냉동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류육과 식용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 • 가금류육과 식용설육(냉동한 것) • 기타의 육(토끼고기는 포함하며 개구리다리는 제외)과 식용설육으로 신선·냉장·냉동한 것 <p>15112 육지동물 고기통조림 제조업(31111)</p> <p>직접 도축 또는 구입한 각종 짐승 및 기타 육지동물의 고기를 가공 처리하여 진공상태의 고기통조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고래고기, 번데기 또는 메뚜기 등의 통조림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시지 및 유사제품(육, 설육, 피로 만든 것) • 밀폐용기에 넣은 것(동물의 간장) • 밀폐용기에 넣은 칠면조고기 •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 및 돼지설육(간장제외) •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 및 설육(간장제외) • 밀폐용기에 넣은 기타동물의 고기 및 설육 <p>15113 가금고기 가공품 제조업(31119에서 가금고기 분리)</p> <p>토끼 등의 소형 가축을 포함하여 각종 가금류의 고기를 조제, 건조, 훈제, 염장 및 염수장 등의 처리를 하여 통조림 이외의 가금고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류의 것 조제 또는 저장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 제외) • 토끼, 개구리다리, 달팽이(바다달팽이 제외)고기 및 식용설육을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고기 통조림 제조(15112) <p>1511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살 및 도살고기 가공업(31119중 자영도살, 고기가공품 제외)</p> <p>달리분류되지않은 도살 및 도살고기 가공업으로서 가금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과 고래의 고기를 통조림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 분말의 생산과 동물기름을 용출 및 정제하여 라드 및 기타 식용동물 기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한 육과 식용설육:육 또는 설육의 식용분과 조분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엑스와 즙 비식용으로 만들어진 육 또는 설육의 분 • 조분, 펠리트 및 수지박:어류를 조제 또는 저장한 개 또는 물고기의 먹이 • 소, 면양, 산양, 돼지 및 가금의 지방으로 생것 또는 정제된 것(냉동, 염수장, 건조, 훈제, 라드된 돼지와 가금의
--	--

<p>지방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의 기타 생산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의 사체로써 비식용의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선, 냉장, 조상의 것은 (1546) <p>1512 수산물처리 가공업 (3114)</p> <p>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등 각종 수산물을 염장, 건조, 훈제, 절임, 통조림, 냉동 및 기타 가공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고기의 지느러미, 머리, 내장 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연체동물 및 갑각류의 껍질을 벗겨 사람의 소비에 적합한 상태로 가공 처리하는 활동도 제조활동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분류된다. 소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수산물의 포획활동을 하지 않고 수산물의 가공활동만을 수행하는 공장형태의 선박은 여기에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채취한 어류를 직접 가공하는 선박 및 사업체 (0511) 육상 또는 특수가공 선박에서 고래를 가공 처리할 경우 (15111) 수산물에서 유지를 생산할 경우 (1514)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고기를 	<p>함유하는 스프의 제조는 (154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임가공활동 (1549) <p>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31144)</p> <p>어류의 머리, 지느러미, 뼈 및 내장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저미거나 절단, 분쇄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신선, 냉장, 냉동상태의 저민 어육(피렛트), 절단어육, 식용어분과 이에 관련된 어란 및 간장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어업 사업체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갑각류, 연체동물의 탈각활동도 여기에 분류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류의 피렛트, 기타 어육 및 간장과 어란(신선 또는 냉장한 것) 어류의 피렛트와 어육(냉동한 것) 어분(식용)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 갑각류(냉동한 것):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조, 염장 및 염수장 훈제조리한 것 <p>15122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31144)</p> <p>어류를 분쇄 및 가공처리하여 발효생선, 생선페이스트, 생선소시지, 생선묵 및 기타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p>통조림 등 포장상태를 불문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선목 • 생선소시지 • 생선페이스트 <p>15123 수산물 통조림 및 유사조제식품 (31141)</p> <p>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물을 훈제, 조리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더이상 가공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장상태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진공상태의 통조림 또는 병조림 상태로 포장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운김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어육생산 (15151) • 어묵 및 생선소시지 생산 (15122) 	<p>경우 그 가공조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어류 (어류의 피렛트 및 얇게 썰은 고기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업, 수수료 또는 계약 (15492) <p>15125 수산물 건제품 제조업 (31145)</p> <p>수산동식물의 소건품, 자건품, 염건품, 동건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고기, 간장과 어란 (건조한 것) <p>15126 수산물 염장품 제조업 (31146)</p> <p>수산동식물의 염장품 및 기타 임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갈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 어란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조림 상태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 가공된 절임조리 수산식품의 제조 (15123) • 염장후 건조한 제품 (15125)
<p>15124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 (31142)</p> <p>구입한 수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하여 냉동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공조제된 수산식품을 냉동한</p>	<p>15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산물처리 가공업 (3114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수산물처리 가공업으로서 비식용 어분, 구입한 건어물의 세전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로 비식용의 것 <p>1513 과실 및 채소가공처리업 (3113)</p> <p>과실이나 채소로 통조림식품, 주스, 잼, 제리, 감자분말 및 기타 가공품 등을 제조하거나 조리, 절임, 건조, 냉동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과실,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한 음료용 과실채소 분말에 물을 첨가하여 원액 상태로 환원하거나 직접 추출하는 제조활동 (1554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채소 및 과일 가공활동 (1549) 건조한 채두류의 분과 조분의 제조 (1513) 	<p>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냉동한 것): 토마토, 버섯과 송로, 사우어크라우트, 감자, 스위트콘, 기타 채소(조제 및 가공처리한 것) 과실주스와 채소주스 잼, 과실제리, 과실 또는 견과류의 푸렛 및 페이스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제, 저장 처리된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 파인애플, 감귤류 과실, 살구, 버찌, 복숭아, 식물의 식용부분(조제, 저장처리한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공상태로 포장한 과실, 채소 절임식품 제조(15132) 조미료 및 기타 조미성 식품제조(1545)
<p>15131 과실, 채소 통조림 및 유사조제 식품제조업 (31131, 31139 중 비통조림겔상, 액상소스)</p> <p>포장방법을 불문하고 과실 및 채소를 가공처리하여 잼, 제리 주스 및 기타 유사식품과 더이상 조리, 조제 가공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진공상태의 통조림 또는 병조림 상태로 포장</p>	<p>15132 과실 및 채소절임 식품제조업 (31132)</p> <p>포장방법을 불문하고, 각종 과실 및 채소를 소금, 설탕, 식초, 기름, 혼합양념 등에 절임하여 반찬용에 적합한 김치, 단무지 등의 절임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조림 및 병조림 상태의 절임식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 저장처리한 채소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 과실.

<p>견과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식초 또는 초산으로 한 것)</p> <p>15139 달리분류되지않은 과일 및 채소 가공업 (31139 중 비통조림겉상, 액상소스제품 제외)</p> <p>달리분류되지않은 과일, 채소가공업으로서 과일 및 채소의 냉동, 건조, 껍질 벗기기, 씨제거, 분쇄 등의 활동과 감자의 분·조분 및 가공품, 채소의 조분, 조제한 채소분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채소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 • 채소 (직접 소비에 부적합한 상태로서 사용전 운송이나 보관을 위한 임시적 처리) • 감자의 분 및 조분, 플레이크 : 건조한 채소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 또는 분상의 것, 채두류 제외) • 냉동과실과 냉동견과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 • 임시저장된 과실과 견과 • 감귤류의 껍질 (신선, 냉동, 건조 또는 저장용액으로 임시 저장처리한 것) • 살구, 복숭아, 자두의 핵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 조미료 및 조미성 분말제조 (1549) <p>1514 동식물성유지 제조업 (3115)</p> <p>육지 및 수산동식물성 물질로 조유, 정화유등의 유지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드 및 기타 용출 또는 정제한 식용육지동물 지방의 생산 (15119) • 유지의 화학적 처리활동 (2429) • 방향유 및 설편화 기름을 생산하는 활동 (2429)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착유업 (15499) • 날 옥수수분 및 옥수수 기름생산 (1532) <p>15141 동물성유지 제조업 (31151)</p> <p>수산동물, 물고기 및 어류의 간등으로부터 식용기름을 추출하는 활동과 육지 또는 수산동물성 물질로부터 비식용 그리스 및 기타 비식용 기름을 추출·정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면양, 산양, 돼지, 가금의 지방을 제외한 동물의 기름 및 지방 (조상 또는 정제된 것)
	<p>15142 식물성 유지 제조업 (31152-3)</p> <p>깨, 면화씨, 콩, 피마자, 아마씨, 고추씨, 유채씨, 미강, 오동등과 같은</p>

기름을 함유한 식물성 물질의 분 및 조분의 생산과 이들로부터 식물성 기름을 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추출한 기름을 연관적으로 정제, 경화 처리하여 식용 또는 비식용 정제 및 경화류를 생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대두, 낙화생, 올리브, 해바라기씨, 잇꽃, 면실, 평지, 골자, 겨자의 기름(조상의 것)
- 팜, 코코넛, 팜핵, 바바수, 아마인 기름(조상의 것)
- 대두, 낙화생, 올리브, 해바라기씨, 잇꽃, 면실, 유채, 겨자 기름과 그 분획물(화학적 방법이 아닌 것으로 정제된 것): 올리브와 참깨기름으로부터 단순하게 얻어지는 기름과 그 분획물(화학적 정제가 아닌 것): 참기름
- 옥수수 기름과 그 분획물(화학적 정제가 아닌 것)
- 팜, 코코넛, 팜핵, 바바수, 아마인기름(화학적 정제가 아닌 것): 피마자유, 등유, 조조바유와 불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옥수수제외)와 그 분획물(화학적정제가 아닌 것으로 정제여부불문): 피마자유, 불휘발성의 식물성 유지
- 면린터
- 유박 및 기타 고흥잔유물(채소유지의 엑스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펠리트상이나 판상에 불문함)
- 기름용씨 또는 기름함유열매의 가루(겨자가루제외)

<제 외>

- 구입한 기름을 가공하여 식용정제 및 경화유를 생산하는 경우(15143)

15143 식용가공유 제조업(31153)

구입한 동식물성 기름을 더 가공, 변성, 정제 및 경화하여 식용 또는 비식용 가공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정제식용유(구입한 조유)
- 쇼트닝유(구입한 조유)
- 샐러드오일(구입한 조유)
- 수소첨가유, 산화유(구입한 조유)
- 경화유(마아가린)
- 대두, 면실유, 낙화생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잇꽃유, 유채유, 겨자유의 정제유 및 분획물
- 아마인유, 팜유, 야자유, 종려핵유, 바바수유의 정제유 및 분획물
- 마아가린과 유사 조제품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엘레이딘화한 것(더이상 조제되지 않은 상태로 정제의 여부는 불문함)
-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 식물성 왁스: 데그라스: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왁스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제 외>

- 동식물성 기름추출활동에 연관되는 정제, 경화 및 기타 처리활동과 구입한 동식물성 기름으로 비식용 가공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15141) 또는 (15142)에 각각 분류

<p>된다.</p> <p>152 낙농품 제조업</p> <p>1520 낙농품 제조업</p> <p>젖을 살균, 분리, 농축 및 건조, 발효, 냉동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액상 및 기타 형태의 각종 식용유제품과 식용빙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5201 시유 및 생크림 제조업 (31124 중 발효유 제외)</p> <p>젖을 여과, 살균 및 기타 처리하여 액상의 시유를 제조하거나 젖을 분리하여 생크림 및 액상 탈지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된 액체 상태 우유 • 크림 <p>15202 연유 및 분유 제조업 (31122)</p> <p>전지유, 탈지유 및 기타 액상유제품을 농축, 응축, 건조시켜 연유, 분유 및 기타 농축 유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 상태의 우유와 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와 크림으로 농축되거나 가당물질이 첨가된 것 (고체 상태 이외의 것) <p>15203 치즈 및 발효유제품 제조업 (31121 중 치즈만, 31124 중 발효유만)</p> <p>젖을 발효시켜 유산균발효음료, 알콜, 발효음료와 효소를 발효시켜 커드, 치즈 및 가공치즈, 카세인, 버터밀크, 크림치즈, 유장치즈, 가공치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르트와 발효, 산성화된 우유와 밀크 • 치즈와 커드 • 카세인 <p>15204 아이스크림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31123, 31174)</p> <p>주원료가 젖인지를 불문하고,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기타 냉동디저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크림과 기타식용얼음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크림 • 디저트냉동 • 롤리포프 (아이스한 것) • 샤벳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로닌 • 병과류 • 아이스콘 <p>15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낙농품 제조업 (31121 버터, 31122 유당 및 유당시럽, 31124)</p> <p>달리분류되지않은 낙농품 제조업으로서 젖을 원료로 버터 및 기타 유지방, 유당 및 유당시럽 기타 낙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에서 얻어진 버터와 기타의 지와 유 • 유당과 유당 시럽 • 기타 낙농 제조품 <p>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업</p> <p>1531 곡물가공업</p> <p>벼, 보리, 옥수수, 밀, 콩등 각종 곡물을 조정, 제분, 압착, 분쇄, 볶음, 튀김, 조리 조제 및 기타 가공하여 정미, 분말, 거친가루, 압착, 부풀린 식품 및 곡물을 주로 한 혼합분말, 곡물조리식품 및 유사식품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조된 콩과류의 분 및 조분, 식용건과 또는 식량 및 사료작물의 뿌리, 줄기를 분쇄, 처리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하지 않은 옥수수의 분쇄활동 (1532) • 감자의 분 및 조분의 제조 (1513) <p>15311 곡물 조정 및 제분업 (31161)</p> <p>구입한 벼, 보리, 밀등 곡식을 조정하여 쌀, 보리쌀, 밀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과 건조한 채두류를 압착, 분쇄하여 압맥, 곡분 및 콩가루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미 • 밀가루와 메슬린가루 • 곡분 (밀가루와 메슬린가루 제외) • 밀의 분쇄물, 조분 및 펠리트 • 곡물 분쇄물, 조분 및 펠리트 •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 : 가공 곡물 : 곡물의 배아 • 쌀 (제분한 것) • 건조한 채두류의 분과 조분 <p>15312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31162)</p> <p>분말을 혼합하여 곡물조리식품, 파이, 비스켓, 빵, 과자등의 곡분기저제품제조용 혼합분말이나 가루반죽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분말을 혼합하여 인조곡물을 제조하는 경우와 곡물기저의 떡고물 및 빵속의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p>
---	--

<포 함>

-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제 외>

- 빵, 과자등을 직접 제조(1541)
- 우유기저조제 분말 제조(15202)

15313 곡물조리식품 제조업(31163)

곡물기저의 포장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갓죽, 깨죽, 김밥, 도시락, 각종 식사용 곡물조리 식품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낱알성의 곡물 (옥수수 제외)

<제 외>

- 조리식품 제조용 혼합분말제조(15312)
- 빵, 과자, 밀가루부침 및 떡제조(1541)
- 녹말기저식품제조(15321)
- 우유기저식품제조(15202)
- 조제 조리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조제 조달하는 경우 (5520)

15319 달리분류되지않은 곡물 가공업(31169)

달리분류되지않은 곡물가공업으로서 곡물튀김 및 볶음,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등을 거칠게 분쇄하는 활동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콘플레이크 기타 유사한 조제 식료품
- 사고, 뿌리 또는 괴경의 분과 조분 : 과실 및 견과의 분
- 조분과 분말

1532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31225,31226)

식물성 재료로 전분 및 전분제품,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만든 타피오카대용품, 옥수수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감자의 분 및 조분의 제조(1513)
- 유당의 제조(1520)
- 설탕제조장에서 사탕수수처리 또는 설탕정제활동(1542)
- 인조꿀, 카라멜당 및 이눌린의 제조(1545)

15321 전분 제조업(31225 중 전분만)

각종 곡물, 감자, 매니옥 및 기타 식물성 재료로 전분, 텍스트린 및 기타변성전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건조되지 않은 옥수수분의 분쇄물과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만든 타피오카대용품의 생산활동도 포함된다.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기름과 그 분획물 (화학적 정제가 아닌 것) •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텍스트린과 기타의 변성 전분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 <p>15322 당류 및 기타 전분제품 제조업 (31226 기타 전분제품)</p> <p>자당을 제외한 포도당, 맥아당, 물엿, 과당등의 당류와 글루텐 등의 기타 전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 : 과당과 과당시럽 : 인조꿀 : 맥아당, 캐러멜 당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린의 제조 (15321) • 화학용 사카린 (24116) <p>1533 조제 동물사료 제조업</p> <p>15330 조제 동물사료 제조업 (31230)</p> <p>개, 고양이, 금붕어 및 기타 애완동물의 사료를 포함해서 가축 및 가금, 어류등의 각종 동물 사육용 또는 양식용 조제사료, 배합사료제조용 혼합 조제품 및 조제보조사료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껌 등 애완동물용 기호식품 제조활동도</p>	<p>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용사료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낫시용 미끼 제조 (36933) • 사료첨가용 동물약품 및 영양제 제조 (24235) • 특정 산업활동과 연관되어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유박 및 기타 부산물 또는 이를 직접 처리하여 단미사료를 생산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각각 분류 • 사료용 어분의 제조 (15129) <p>154 기타식품 제조업</p> <p>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p> <p>신선, 냉동, 건조한 각종 빵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굽지 않은 상태로 조제 혼합한 제빵용 가루반죽의 생산 (1531) • 식사료로 알려진 곡물조리제품 제조 (1531) • 건조, 신선 또는 조리된 면류의 생산 (1544) <p>15411 빵 제조업 (31171, 떡 제외)</p>
---	--

<p>신선, 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스크, 토우스트브레드와 기타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제품 ;귀리빵 • 진저브레드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식빵 및 베이커리 제품 <p>15412 떡 제조업 (31171 중 빵제외)</p> <p>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과 <p>15413 곡분과자 제조업 (31172)</p> <p>설탕과자를 제외하고 곡분을 주로하는 비스킷, 크래카 등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교적 장기간 현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건빵제품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플과 웨이퍼 : 스위트 비스킷 •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p>웨이퍼, 의약품 캡슐, 라이스페이퍼 및 유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이스페이퍼 <p>1542 설탕 제조업 (3118)</p> <p>사탕수수 및 사탕무우등으로 원당, 시럽 및 정제당을 제조하거나 원당을 정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5421 원당 제조업 (31181)</p> <p>사탕무우, 사탕수수등에서 정제당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탕무우와 사탕수수 (생것) <p>15422 설탕정제업 (31182)</p> <p>원당을 정제하여 정제당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한 사탕무우와 사탕수수,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고 고체상태의 것) • 정제한 사탕무우와 사탕수수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고 고체상태의 것) : 단풍당과 단풍당의 시럽
<p>15419 달리분류되지않은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31179)</p> <p>달리분류되지않은 빵 및 과자제조업으로서 성찬용 및 공업용</p>	

<p>15429 달리분류되지않은 설탕 제조업 (3118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설탕 제조업으로서 설탕시럽, 전화당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밀 <p>1543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p> <p>15430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31173)</p> <p>코코아를 분쇄 및 기타 가공하여 코코아분 및 기타 가공품, 코코아버터, 코코아유와 지, 초코렛 또는 초코렛조제품, 츄잉껌, 설탕과자 및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과일, 견과류 및 기타 식물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코아 페이스트(탈지여부불문) • 코코아 버터(지와유) • 코코아분말(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것) • 코코아분말(감미료가 첨가된 것) • 초코렛과 감미된 코코아 분말이외의 코코아로 만든 제품 (벌크상) • 초코렛과 감미된 코코아분말이외의 코코아를 만든 제품 (벌크상이 아닌 것) • 코코아를 포함하지 설탕과자와 백색초코렛 : 설탕으로 저장 	<p>처리한 과일, 견과류, 과피 및 식물의 기타부분</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코아 열매 생산(0113) • 고체 또는 액상의 자당 생산(1542) • 견과류를 볶는 활동(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15499) • 구운견과와 견과식품 및 페이스트 제조(15489) <p>1544 국수 및 유사식품 제조업</p> <p>15440 국수 및 유사식품 제조업 (31175)</p> <p>곡분으로 국수, 스파게티, 마카로니, 당면, 메밀국수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리 또는 조제된 면류, 라면등 각종 인스턴트 면류 제조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조제하지 않은 것) • 조리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조제하지 않은 것) : 쿠우스쿠우스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프만을 제조하는 경우(15454) <p>1545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p> <p>식품보조재료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장류,</p>
---	---

<p>식초 및 유사식품, 구루타민산소다, 혼합조제조미료, 후추가루, 고추가루, 고기유화제 및 기타 식품첨가재료를 생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p> <p>15451 천연조미료 제조업 (31214)</p> <p>구입한 고추, 후추, 겨자, 계피 등 천연조미재료, 향신료를 분쇄 및 기타 가공 처리하여 천연조미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스 : 혼합조미료 : 겨자의 분과 조분 : 겨자조제품 <p>15452 정제 및 발효조미료 제조업 (31212)</p> <p>정제, 발효 및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식용아미노산, 구루타민산 소다, 식초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제 및 발효조미료 제조에 연관된 혼합조미료를 생산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한 정제 및 발효조미료를 혼합하여 혼합조미료를 생산 (15454) • 장류제조 (15454) 	<p>15453 혼합 및 조제조미료 제조업 (31213)</p> <p>구입한 천연 또는 정제 및 발효조미료, 기타 향신료를 혼합, 조제하여 혼합소오스, 혼합양념, 조제스우프, 마요네즈, 캐첩, 빵속, 김치속등 혼합 및 조제조미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기저의 빵속 또는 떡고물 등의 제조 (15312) • 스우프, 부로드와 이들의 이용식품 <p>15454 장류제조업 (31211)</p> <p>콩, 보리, 밀, 탈지대두등을 발효하여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p>15455 누룩 및 종국 제조업 (31228)</p> <p>누룩, 종국, 효모, 베이킹파우더 등 양조 및 제빵용 첨가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모 : 기타 단세포 미생물 (죽은 것에 한함) : 조제한 베이킹파우더 <p>154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31219)</p>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으로서 색소용식품, 향미추출물, 고기유연제 등의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색소용식품
- 향미추출물
- 고기유연제

<제 외>

- 효모, 곡자 제조 (15455)

1548 달리분류되지않은 식료품 제조업

달리분류되지않은 식료품 제조업으로서 커피, 차, 두부 및 유사식품, 인삼 및 맥아제품, 달걀가공품 및 기타 식료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5481 커피 및 차 가공업 (31227)

커피 및 차를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탕무우, 울무, 치커리, 유자, 곡물등으로 각종 대용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대용품, 커피나 치커리의 엑기스, 추출물, 농축물의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품의 제조활동을 포함한다.

<포 함>

- 커피 (카페인을 제거하거나 볶은 것)
-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커피추출물, 에센스와 농축물과 이들 또는 커피를 기저로 한 조제품 : 볶은 치커리와 기타 볶은커피대용물 및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 발효하지 않은 녹차, 발효한 홍차, 반발효차 (내용량이 3KG 이하로 포장된 것)
- 차,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저로 한 조제품

<제 외>

- 인삼차의 제조 (15485)

15482 균질화식품 제조업 (31229 일부)

육류, 어류, 과일, 채소, 우유, 맥아추출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하여 균질화된 성분을 함유하는 유아용식품 또는 조제건강식품, 식탁용크림 음료용 또는 디저트용 혼합조제분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고기, 식물, 과일, 견과를 균질화한 조제품 : 유아용의 우유, 분, 조분, 전분, 맥아엑스의 조제식품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품

15483 수우프, 고기즙 및 유사식품 제조업 (31229)

냉동수프, 정제수프를 포함한 액체, 분말, 고체상태의 수우프,

<p>추출물 및 유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러한 육류, 어류, 연체동물 및 갑각류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파스타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우프 • 고기즙 <p>1548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31224)</p> <p>콩을 원료로 두부, 유부를 제조하거나 메밀, 도토리 등의 목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부 • 유부 • 목 (생선목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선목의 제조 (15122) <p>15485 인삼식품 제조업 (31222)</p> <p>백삼, 홍삼, 인삼분말, 즙, 주스, 인삼차, 인삼발효음료등 인삼가공품 또는 인삼기저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가공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인삼제품 또는 인삼에서 추출한 특정성분제조 (24231) • 인삼주 제조 (15514) <p>15486 맥아 및 맥아제품 제조업 (31223)</p> <p>보리, 밀, 맥아맥 등을 발아시켜 맥아를 생산하거나 맥아를 분쇄하거나 맥아추출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아 (볶음여부불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아 및 맥아분을 가공하여 맥주, 감주, 당류등을 제조하는 경우는 그 주된 활동에 각각 분류 <p>1548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식료품 제조업</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식료품 제조업으로서 달걀껍질까기, 흰자와 노른자의 분리 및 건조등 새알가공품, 굽거나 볶은 견과, 견과가공품 및 페이스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껍질을 제거한 달걀, 난황 (신선, 저장처리된 것), 난백
	<p>1549 식료품 임가공업 (3119)</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음식료품 및 식품재료를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구입한 재료를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업, 임가공 또는 자영 (15111) 	<p>나 합성하여 주정, 소주, 위스키, 고량주, 브랜디, 럼, 진 등 알콜성 음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틸알콜 이외의 알콜제조 (2411) • 알콜성 음료를 병에 포장하는 활동은 도·소매업에 분류
<p>15491 임가공 곡물 도정 및 제분업 (31192)</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등의 곡물을 도정하거나 제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떡방앗간도 포함한다.</p>	<p>15511 주정제조업 (31311)</p> <p>고구마, 감자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시켜 에틸알콜 및 증성주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5492 임가공 식품 냉동업 (31193)</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변성 에틸알콜 (알콜의 용량이 80%이상인 것) •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
<p>154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임가공업</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동물성기름 추출, 고추 및 조미재료분쇄, 튀김,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등의 산업활동이 포함한다.</p>	<p>15512 소주제조업 (31312)</p> <p>주정 또는 전분질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원료로 하여 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55 음료 제조업</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변성알콜 (알콜의 용량이 80%이하인 것) • 주정, 리큐르 및 기타주정음료 : 음료제조용 • 알콜성 복합제조품
<p>155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131)</p> <p>곡식, 과일 및 채소등을 발효하고 이를 증류 또는 정류하거</p>	<p>15513 과일 및 곡물 증류주 제조업 (31314,31315)</p>

포도, 사과, 딸기 등 당분을 함유하는 과실, 채소와 곡물을 발효시키고 이를 증류하여 브랜디, 위스키, 고량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과실주
- 브랜디
- 위스키
- 고량주

15514 인삼주 제조업 (31313)

인삼주를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인삼주

15519 달리분류되지않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1319)

달리분류되지않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으로 구입한 증류주, 주정등에 과실 또는 채소즙등 향미료를 첨가하여 합성 알콜성음료 및 기타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청주, 합성맥주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합성알콜성음료
- 합성청주

- 합성맥주

1552 발효주 제조업

곡식, 과실 및 채소등을 발효하여 알콜음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사과술, 배술, 꿀술과 기타 발효주(생포도로 만든 포도주와 맥아로 만든 맥주는 제외)

<제 외>

- 발효시키지 않고 주정이나 증류주에 열매등을 넣어 알콜음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발효한 것을 다시 증류하는 산업활동(1551)
- 맥주제조(15530)

1552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31321)

쌀, 보리, 밀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 약주 또는 주요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탁주
- 약주

15522 청주제조업 (31322)

<p>곡식을 발효하여 청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 <p>15523 과실발효주 제조업 (31323)</p> <p>포도, 사과, 딸기 등 당분을 함유하는 과실 및 채소를 발효하여 과실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포도로 만든 발포성 포도주 • 발포성 포도주를 제외한 생포도로 만든 포도주 및 포도즙 • 베르못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 (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향미를 가한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에 과실 향미를 첨가하여 합성주 제조활동 (15519) <p>15529 달리분류되지않은 발효주 제조업 (31329)</p> <p>달리분류되지않은 발효주 제조업으로서 생강, 유자등을 발효하여 알콜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553 맥주 제조업</p> <p>15530 맥주 제조업 (31330)</p>	<p>맥아를 원료로 하여 맥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맥주제조 (15519) • 맥주제조와 분리된 맥아제조 (15496) <p>1554 알음 및 비알콜성음료 제조업</p> <p>15541 알음 제조업 (31221)</p> <p>식용 또는 냉장용 알음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천연 알음채취 및 저장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수가 아닌 광천수, 탄산수 (단미가 첨가되지 않고 탄산화되지 않은 것) : 알음과 눈 <p>15542 탄산음료 제조업 (31341)</p> <p>탄산음료를 제조하거나 천연광천수 및 천연수를 병에 포장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향미 또는 가당한 광천수 (인조 또는 천연), 과실향 추출물 또는 기타 복합추출을 가미한 탄산음료등을 생산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우유, 주석산 또는 구연산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산음료 • 천연광천수 • 천연수를 병에 포장하는 활동 <p>1554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알콜성음료 제조업 (31349)</p> <p>달리분류되지않은 비알콜성음료 제조업으로서 두유 등 곡분음료, 구근제 음료 및 기타 강장음료, 과실음료등 탄산 및 광천수 이외의 비알콜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유 • 곡분음료 • 구근제음료 • 강장음료 • 과실음료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즙 및 기타 과실채소 원액추출생산 (15131) 	<p>16 담배 제조업</p> <p>160 담배 제조업</p> <p>1600 담배 제조업</p> <p>구입한 엽연초의 재 건조 및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16001 담배 재 건조업 (31401)</p> <p>구입한 엽연초를 재 건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재배업자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 (0110) <p>16002 담배제품 제조업 (31402)</p> <p>필터담배, 각연, 양절, 판상연, 여송연등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잎담배 또는 잎담배 대용품으로 만든 소형권련 • 기타 담배제품과 담배대용제품 :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필터만을 제조하는 활동 (36996)

17

섬유제품 제조업

이 중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1. 섬유를 가공하여 생사 및 각종 섬유사, 연사, 솜, 끈, 로오 프, 망 및 기타 끈제품 제조
2. 각종 섬유사로 광폭직물, 세폭직물, 편조원단 및 그 제품, 카페트 및 자리, 등의 직물 및 편조물 제조
3. 각종 섬유사,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의 염색, 표백 및 가공정리활동
4. 의복과 신발을 제외한 직물제품 필조
5. 직물에 도포, 삼투, 경포, 방수 및 기타 가공직물 제조
6. 펠트, 부직포, 충전솜 및 기타 섬유제품 제조

이러한 제조활동은 자기소유의 재료로 자기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재료의 제공여부를 불문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주문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포괄한다.

<제 외>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가죽가공 및 가죽제품, 의복, 신발 제조 (18 또는 19)
- 유리섬유, 광물섬유 및 그 제품제조 활동은 (27)에 포함되나, 단 유리직물과 제품제조는 제외
- 방적용 원료상태의 합성 및 재생섬유제조 활동은 (2430)

171

방적·직조 및 섬유염색 가공업

가중 섬유물질로 생산 및 기타 섬유, 사, 가공사, 광폭직물을

생산하는 제사, 방적·직조활동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섬유, 사, 직물 및 직물제품의 표백, 염색, 정리 및 기타 가공처리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편조원단 및 편조직물제품 제조 (1730)
- 세폭직물 제조 (1729)

1711 제사 및 방적업 (3211)

누에고치로 생사 및 견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섬유를 방적준비처리, 방적, 방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섬유 또는 연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

<제 외>

- 제사, 방적 및 방사활동에 결합되는 직조활동 (1712)
- 조면, 섬유용 식물의 수확처리 및 기타 농업 및 축산 활동에 결합되어 수행되는 섬유물질 처리활동 (01 또는 02)
- 원료상태의 합성섬유 및 재생섬유 제조 (2430)
- 유리섬유사의 제조 (2610)
- 석면사의 제조 (2699)
- 직접 생산하지 않은 사의 표백, 염색 및 가공활동 (1713)
- 고무사, 금속사, 장식사 제조 (1729)

17111 제사업 (32111)

주로 조사기를 사용하여 생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사 • 견웨이스트(카드 또는 코움하지 않은 것) <p>17112 견방직업(32115)</p> <p>주로 부잠사를 방직하여 견방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모(탈지, 탄화처리가 되고 카드, 코움되지 않은 것) <p>17113 모방직업(32113)</p> <p>주로 양모를 방직하여 모사 및 소모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그리스 • 양모(탈지, 탄화처리가 되고 카드, 코움되지 않은 것) •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 양모, 섬수모와 하급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 • 양모(양모 함유량이 85% 이상의 것으로 소매용이 아닌 것) • 양모(양모 함유량이 85% 미만의 것으로 소매용이 아닌 것) • 양모(소매용이 아닌 것): 섬수모사, 조수모사, 마모사 	<p>17114 면방직업(32112)</p> <p>주로 면을 방직하여 면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면의 함유량이 85% 이상의 것) •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것) <p>17115 인조섬유 방직업(32114)</p> <p>주로 합성 또는 재생섬유를 방직 또는 방사하여 인조섬유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학섬유 제조활동에 연관된 방사활동은 제외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 방직 준비처리한 것)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 방직준비처리한 것) •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로 소매용이 아닌 것(재봉사,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터, 비스코스레이온으로 만든 강력사, 텍스웨트사는 제외):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 제외)로 소매용이 아닌 것 •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이외의 것으로 합성스테이플섬유 함유량이 85% 이상인 것)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이외의 것으로 합성스테이플 섬유 함유량이 85% 미만인 것) •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사(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85% 이상의 것, 재봉사 및 소매용 제외)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사(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85% 미만의 것, 재봉사 및 소매용 제외):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은 포함) 	<p>사, 합사 등의 연사 및 가공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재봉사 • 인조필라멘트와 스테이플섬유로 만든 재봉사
<p>17116 마방직업(32116)</p> <p>아마, 대마, 황마, 저마 등 마섬유를 방직하여 마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마,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아마, 생대마, 라미는 제외하며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은 하지 않은 것):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한 것. • 기타 식물성 방직섬유(가공은 하였으나 방직은 하지 않은 것):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한 것. • 기타 식물성 섬유의사와 지(아마, 황마사, 코이어사, 생대마 포함) 	<p>1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사 또는 방직업(3211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사 및 방직업으로서 종이사 및 기타 섬유재료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1712 직조업</p> <p>각종 섬유사 및 혼방사로 일반용 또는 특수용 광폭 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직조활동에 관련하여 담요, 타올 등의 직물제품(의복제외)을 제조하거나 표백, 염색 및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폭직물, 타이어코드직물 및 기타 세폭직물 제조(1729) • 용단 및 돛자리의 제조(1722) • 편조 및 뜨개질 직물제조(1730)
<p>17117 연사 제조업(32117)</p> <p>각종 섬유의 원사로 재봉사, 편물사, 가연사, 자수사, 색취어드</p>	<p>17121 견 및 인조섬유직물 직조업(32123)</p> <p>견 및 인조섬유로 일반용광폭 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 또는 견웨이스트로 만든 직물 •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마이드, 폴리에스터, 비스코우스 레이온 등과 같은 강력사로 만든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합성필라멘트사로 평행하게 병렬시킨 층에 실을 가로지르게 하여 만든 직물(방직물 포함) •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 이상인 것) • 인조필라멘트사의 기타 직물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합성필라멘트 함유량 85% 이상) •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그 섬유의 함유량이 85% 이상인 것) • 면과 혼방한 인조섬유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직물 • 양모, 섬수모와 혼방한 인조섬유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직물 • 인조섬유의 기타 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직물(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85% 이상의 것) • 조수모 또는 마모의 직물 <p>17123 면직물 직조업(32121)</p> <p>일반용 광폭 면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85% 이상의 것으로 중량이 200그램/제곱미터 이하의 것)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85% 이상의 것으로 중량이 200그램/제곱미터 이상의 것)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으로 주로 인조섬유와 혼합된 것) • 기타 면직물
<p>17122 모직물 직조업(32122)</p> <p>일반용 광폭 모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아드한 양모 및 섬수모로 만든 직물(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85% 이상인 것) • 코움한 양모 및 섬수모로 만든 직물(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85% 이상의 것) 	<p>17124 마직물 직조업(32124)</p> <p>아마, 황마,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로 일반용 광폭 마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직물 • 황마 또는 방직용 인피섬유의 직물(아마, 생대마, 라미직물 제외)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직물: 지사의 직물

<p>17129 달리분류되지않은 직조업 (32129 중 탄성직물 및 망직물 제외)</p> <p> 다리분류되지않은 직조업으로서 종이직물, 유리직물 등 별개의외의 섬유로 일반용 광폭직물을 직조하거나, 포대, 타포린, 매트, 리노름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용의 광폭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의 파일직물과 셔닐직물 (테리타올 직물과 세폭직물이 아닌 것) • 인조섬유로 만든 파일직물과 셔닐직물 (테리타올직물과 세폭직물이 아닌 것) • 기타 파일직물과 셔닐직물 (테리타올직물과 세폭직물이 아닌 것) • 면제의 테리타올직물과 유사직물 (세폭직물이 아닌 것) • 기타의 테리타올직물과 유사직물 (세폭직물이 아닌 것) • 면가제 (세폭직물이 아닌 것) • 기타 가제 (세폭직물이 아닌 것) • 더후트직물 (카페트가 아닌 것) • 유리직물 (세폭유리직물 포함) <p> <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성직물, 금속사 직물과 튜올, 레이스 및 기타 망직물 직조 (1729) • 파일 또는 셔닐직물 테리타올, 거어즈직물 등은 일반직물 	<p> 로 보아 그 섬유종류에 따라 17121-17124에 각각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용직물 직조 (17299) <p>1713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3213)</p> <p> 계약이나 수수료 또는 구입한 각종 섬유, 사,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 등의 정련, 표백, 염색, 나염, 수축, 보풀내기 및 기타 가공활동을 말한다.</p> <p> <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직물 및 직물제품의 세탁, 염색가공활동 (9301) • 제사, 방적, 직조, 편조 및 직물제품 제조활동에 연관된 표백, 염색 및 가공활동은 주된 활동에 따라 각각 분류 • 직조물의 훌치기 가공 또는 자수를 놓거나 주름단을 내는 활동 (17213) <p>17131 섬유 및 사 염색 가공업 (32131)</p> <p> 각종 섬유사, 끈, 끈가공품 등을 기계로 염색, 표백 및 가공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713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32132)</p> <p> 각종 섬유의 직물 및 편조원단을 기계로 염색, 표백 및 가공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7133 나염 가공업 (32133)</p> <p> 각종 섬유의 직물, 편조원단, 직물제품을 나염 및 가공 정리</p>
--	--

<p>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계나염, 수나염을 불문한다.</p> <p>17139 달리분류되지않은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3213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으로서 각종 섬유, 사, 직물의 수염 및 가공과 직물제품 및 편조물 제품의 나염가공 이외의 염색, 표백 및 가공정리 활동이 포함된다.</p> <p>1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제품 제조업</p> <p>1721 직물제품제조업: 의복제외</p> <p>직조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체가 구입한 편직물, 뜨개질직물 및 기타 각종 직물을 절단 및 재봉하여 포대, 침구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캔버스제품, 자수제품 등의 의복을 제외한 각종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플라스틱 재료를 절단 및 재봉하여 의복 이외의 각종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직물을 편조 또는 직조하여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편조 또는 직조활동과 별도로 분리파악할 수 없을 경우(1712) 또는 (1720) • 플라스틱 성형활동에 관련된 경우 공업용 또는 기계용 직물제품의 제조(1729) 	<p>우편물, 모래 등을 담은 포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용의 빈포대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류의 가방 제조(19121) • 종이포대 제조(21022) • 직물직조에 연관된 포대 제조(17129) <p>17212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32142)</p> <p>구입한 재료로 베개 및 베개포, 모포, 이불, 침대포, 침낭, 깃털침구, 전기담요의 직물부분, 매트리스카바, 침대용, 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 침구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방석 및 방석카바 제조도 여기에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포류와 여행용러그(전기담요제외) •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렛린넨, 주방용린넨 • 기타 실내용품: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의 직물과 실로 구성된 셋과 이와 유사한 것. • 누비이불, 오리털이불, 쿠션, 퍼프, 베개, 스리핑백과 이와 유사한 것(고무, 플라스틱, 기타 물질, 스프링 등으로 채워진 것)
<p>17211 포대 제조업(32141)</p> <p>구입한 재료를 절단 및 재봉하여 밀가루, 곡식, 비료, 석탄,</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공 또는 기계자수제품(17123)

<p>17213 자수 재료 제조업(32144 중 장식용 직물제품 제외)</p> <p>각종 직물원단에 나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및 기타 자수제품제조용 직물 및 관련 재료를 소매용 셋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수 및 기타 장식용 직물제품의 제조(1729) <p>17214 캔버스제품 제조업(32143)</p> <p>구입한 재료로 텐트, 천막, 돛, 차양, 구명대, 캠핑용품, 차량용, 기계용, 가구용의 걸뒹개 등의 타포린 제품 또는 캔버스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포린, 돛, 천막, 차양, 텐트 및 캠핑용품 <p>17215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32145 중 직물벽지 제외)</p> <p>각종 커튼, 벽가리개, 벽뒹개, 국기 및 기타 깃발 페난트, 무대막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용 막 • 커튼(드레이프 포함), 실내용 블라인드: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벽지(21093) <p>17219 달리분류되지않은 직물제품 제조업(32149 중 기계용, 공업용 직물제품)</p> <p>달리분류되지않은 직물제품 제조활동으로서 낙하산, 먼지털이, 걸레, 행주, 접시닢이포, 구명자켓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하산 • 기타 직물제품(마루딱이포, 접시딱이포, 더스트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품, 구명자켓, 구명벨트) <p>1722 용단 및 자리 제조업(3216)</p> <p>17220 용단 및 깔개제조업(32161, 32162)</p> <p>각종 방직섬유 또는 섬유사로 직조, 편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용단, 마루뒹개, 깔개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실한 것) •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더후트 또는 속이 채워진 것이 아닌 직조한 것) •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더후트한 것)
--	--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물 재료로 엮은 매트류(갈개)제조(2029) • 직물에 콜크, 고무, 프라스틱을 도포하여 마루덮개를 제조할 경우 그 사용된 주재료의 종류에 따라(2029)(2519)(2520)에 각각 분류 • 리놀륨 및 경표면 바닥덮개의 제조(3699) <p>1723 끈 및 끈 가공품 제조업(3217)</p> <p>면, 종이, 대마, 황마, 아마, 인조섬유, 유리섬유 및 기타 섬유로 로오프, 케이블, 끈, 망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섬유를 꼬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하여 고무, 프라스틱 물질을 침적, 도포, 피복, 외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망의 제조(1810) • 낚시용 고기망의 제조(3693) <p>17231 끈 및 로오프 제조업(32171)</p> <p>각종 섬유, 종이, 유리섬유 및 기타 재료로 끈 및 로오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 코오디지, 로우프 및 케이블 • 절절한 망지(끈, 코오디지, 로우프로 만든 것): 방직용 섬유제로 된 망: 실, 스트립, 끈, 코오디지, 로오프 및 케 	<p>이불의 제품</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사의 제조(17294) • 금속보강 섬유사 제조(17294) <p>17232 어망 제조업(32172)</p> <p>어업용 도구인 어망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망(인조섬유제의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용 고기망의 제조(3693) <p>17239 달리분류되지않은 끈 및 끈 가공품 제조업(32179)</p> <p>달리분류되지않은 끈 및 끈가공품 제조업으로서 끈 및 로오프 등으로 어망 이외의 각종망, 출사다리, 끈으로 만든 걸레, 금속링이 부착된 로오프 또는 케이블 가공품 등을 제조하는 활동과 각종 경기넷트를 주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의 어망(인조섬유제의 것, 면제의 것): 합성모노필라멘트의 실,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품, 끈, 코드지, 로오프 및 케이블
---	--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망의 제조 (1810) <p>1729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제조업</p> <p>중분류 17, 18, 19 및 기타 다른 곳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각종 직물 및 방직용 섬유제품을 다양한 가공방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17291 세 폭직물 제조업 (32125)</p> <p>폭 30센티미터 미만의 각종 섬유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 폭직물, 자수제품이 아닌 라벨, 뱃지 및 유사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폭직물과 접착제로 접합시킨 경사만으로된 세 폭직물 (불턱) : 섬유제의 레이블, 뱃지 및 유사물 (자수되지 않은 것), 직조한 것. <p>17292 튜올 및 레이스제조업</p> <p>각종 방직용 섬유로 튜올 및 기타 망제품과 레이스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튜올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것,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게질 편직한 것 제외) : 레이스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 	<p>티프로 된 것)</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편조 튜올 및 레이스제품 제외 (1712 또는 1730) <p>17293 장식용 섬유제품 제조업 (32144 중 자수 및 유사서비스업 제외)</p> <p>각종 방직용 섬유제의 끈 가공 장식품, 장식술 및 바울술 등의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제의 레이블, 뱃지 및 유사물 (자수되지 않은 것), 직조한 것 제외, 원단상의 브레이드 :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게질 편직의 것 제외) : 타술, 폴풍과 이와 유사한 물품 •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 :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의 것 •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p>17294 자수업</p> <p>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수공 또는 기계로 자수를 놓고 주름을 잡거나 단을 만드는 산업활동과 단추구멍 만들기, 단추 싸기 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수포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
--	--

<p>17295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 (32192)</p> <p>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를 각종 접착물질로 침투, 도포, 피복, 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각종 펠트 및 부직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종이 등의 보조재를 사용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 등의 각종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접착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펠트 • 부직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착제로 접합한 세폭직물 제조 (17291) • 접착제로 접합사 제조 (17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연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 • 짐프사와 스트립 : 셔니일사, 루피웨일사 •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 (나이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p>17296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32119, 32193 타이어 코드직물)</p> <p>금속사, 장식사, 고무사 및 고무코드,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 침적, 피복한 섬유사 및 스트립, 타이어 코드 직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사 및 고무코드 (방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 : 방직용 섬유사와 스트립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시드한 것) • 금속드리사 	<p>17297 적층 및 도포직물 제조업 (32194)</p> <p>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스유도체, 규산염, 섬유부스러기, 왁스, 역청물질, 유리가루, 운모 등을 도포, 삼투 또는 적층하여 투사포, 타포린직물, 인조가죽, 유포, 접착섬유테이프, 캔버스용 버크랩 및 보강용적층 및 도포 직물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투, 도포, 피복된 방직용직물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 침투 및 적층활동 (1711) •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 (3699) • 고무도포직물 제조 (2519) •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셀룰라 플라스틱의 판 및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 (2520) • 섬유를 보강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셀룰라 고무의 판 및 기타 고무제품 제조 (2519) • 철망의 제조 (2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포, 적층직물의 가공품(의복제조)제조(1721) <p>17298 내장섬유 및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32191, 32196)</p> <p>각종 동식물성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내장물, 솜털 및 기타 유사재료와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기저귀 및 이와 유사한 위생섬유 충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제면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써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의 것, 방직용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제의 위생용품의 제조(2109) • 탈지면, 거어즈, 붕대, 반창고 및 이와 유사한 의류용 섬유제품의 제조(2423) <p>172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제조업(32149, 32199)</p> <p>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만든 섬유제의 심지, 여과포, 직물 호우드 및 관형직물, 콘베이어 벨트 및 벨팅류, 제지용직물 또는 펠트 및 기타 특수직물, 기계용 또는 공업용 직물 제품 제조활동과 비나 술에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의 빗질 및 기타 정리</p>	<p>가공생산 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방직용 제품과 물품(심지, 가스맨틀, 호오스, 전동용과 콘베이어벨트, 조임용에 쓰이는 천) • 기타 원단상의 솜을 넣어 누빈 방직용 섬유제품 <p>173 편조 및 뜨게질 직물 제조업</p> <p>1730 편조 및 뜨게질 직물 제조업</p> <p>각종 섬유를 손이나 기계로 편조 또는 뜨게질하여 편조원단, 편조의복, 악세사리 및 기타 편조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편조제품의 표백, 염색 및 가공활동(1713) •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 및 재봉하여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 •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 및 재봉하여 의복이외의 직물제품 제조활동(1721) <p>17301 원단 편조업(32155)</p> <p>각종 섬유로 의복용 또는 기타용의 편조원단을 환편, 경편, 횡편 및 평편 등의 각종 방식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레이스 원단의 편조도 여기에 포함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직물과 테리직물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 기타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편조한 원단을 연관적으로 재단·재봉하여 편조의복 및 그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 17302-17309 중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p>17302 양말 편조업 (3215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 등의 각종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 기타 양말류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형외과적 교정용 탄성 양말 제조 (33114) <p>17303 내의 편조업 (32152)</p> <p>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 등 각종 내의 및 잠옷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셔츠, 싱글라드 및 기타 조끼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등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한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 봉재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저,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181) <p>17304 외의 편조업 (32153)</p> <p>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의 외의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코트, 자켓, 긴바지, 짧은 바지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언더팬티, 파자마, 가운 등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코트, 자켓, 드레스, 스커트, 짧은 바지, 긴 바지 등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셔츠, 패티코트, 팬티, 나이트드레스, 가운 등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 유아용의류 및 의류부속물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p>17305 장갑 편조업 (32154)</p> <p>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 장갑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갑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한 각종 직물, 가죽, 모피 등으로 장갑 제조 (1828) 고무장갑의 성형제조 (25193) <p>17309 달리분류되지않은 편조업 (32156, 32159)</p> <p>달리분류되지않은 편조업으로서 : 탄성 또는 고무사의 편조물과 각종 섬유사의 의복 악세사리 등 각종 레이스 편조제품을 직접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레이스 제품편조는 재단 및 봉제활동없이 염색, 솜넣기, 단순한 장식물 부착 등 간단한 정리활동으로 최종 용도의 제품이 완성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울, 스카프, 머프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넥타이류 : 의류 또는 의류부속제품 부분품 	<p>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p> <p>181 의복제조업</p> <p>각종 직물, 가죽 및 모피이외의 기타 재료를 재단, 재봉하여 의복류, 모자 및 의복 악세사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의복생산기획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즉 원재료를 구입하고, 디자인 및 견본을 제작하여 계약 공장에서 의복을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복수선활동 (5260) 동일사업체에서의 편조원단 제조에 연관된 의복제조 (1730) 모피의복제조 (1820) 단, 모피모자제조는 (18127) 신발제조 (1920) 재봉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봉합접착한 고무 및 플라스틱 의복제조 (2519 또는 2520) 안전모의 제조는 그 주된 재료에 따라 (2520 또는 2899) 석면의류제조 (2699) 경기용 장갑 및 경기용 모자제조 (3693) <p>1811 개인 마춤복 제조업</p> <p>개인별 주문에 의하여 개인의 체형이나 요구에 맞게 재단 및 재봉하여 양복, 정장복, 양장, 한복 등의 남녀용외의, 소아용외의, 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을 개인 마춤제조하는 산업활동</p>
--	--

<p>을 말한다. 개인마춤 여부를 불문하고 의복악세사리와 가죽의복의 제조는 기성복 제조업에 분류된다.</p> <p>18111 남자용 개인 마춤양복 제조업 (32211)</p> <p>일상, 사무, 무대 및 공식행사에서 입는 양복, 정장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 남자용 개인 마춤양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코트, 자켓, 긴바지, 짧은 바지 등 (편직 또는 뜨게질이 아닌 섬유직물의 것) : 개인마춤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 별도의 하의, 작업복, 잠바, 승마복, 정장 이외의 유니폼, 가죽옷, 방수코트 등의 개인마춤 제조 (18113, 18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스커트, 싱글렛, 패티코트, 팬티, 나이트드레스, 가운등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이 아닌 섬유직물의 것) : 기성복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또는 민속적 의상 및 별도의 하의, 스커트, 브라우스, 셔츠 등의 개인마춤의 제조 (18113, 18119) <p>18113 개인마춤 한복제조업 (32213)</p> <p>남녀 및 소아용을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의 개인마춤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8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마춤복 제조업 (3221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마춤복 제조업으로서 남녀용을 불문하고 별도의 하의, 작업복, 잠바, 셔츠 및 브라우스, 체육복, 잠옷, 수영복 및 경기복, 방수코트 등의 개인마춤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18112 여자용 개인마춤 양장외의 제조업 (32212)</p> <p>일상, 사무, 무대 및 공식행사에서 입는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 등의 여자용 개인마춤 양장외의를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코트, 자켓, 드레스, 스커트, 긴바지, 짧은 바지 등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이 아닌 섬유직물의 것) : 개인마춤 	<p>1812 기성복 제조업 (32222)</p> <p>개인마춤이 아닌 각종 의복, 모자 (모피제 포함) 및 의복악세사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피의복제조 (18202) <p>18121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32221)</p>

일상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양복, 정장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 남자용 기성양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코트, 자켓, 긴바지, 짧은바지 등(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기성복

18122 여자용 기성외의 제조업(32223)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 등의 기성양장 외의와 브라우스, 스커트, 셔츠, 웨이스트드레스 등의 여자용 기성외의를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23 소아용 기성외의 제조업(32224)

소아용 드레스, 브라우스, 웨이스트, 셔츠, 코트, 양복, 반바지, 잠방이, 스파트, 스텍스, 비치웨어 등 소아용 외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24 셔츠, 작업복 및 관련기성복 제조업(32222)

스포츠셔츠, 하의, 반바지, 잠바, 작업복, 수영복, 와이셔츠, 여가복, 체육복, 경기복 등 남자전용 및 남녀가 공동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복류를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하는 것은 포함한다.

<포 함>

-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등(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이 아닌 섬유직물의 것)

18125 내의 제조업(32225)

남녀용 각종 내의, 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히프벨트, 임산부 복띠, 캐미솔, 슈미즈, 패티코트, 슬립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 언더팬티, 파자마, 가운등(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이 아닌 섬유직물의 것)
- 유아용 의류 및 의류부속물(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이 아닌 섬유직물의 것)
- 브래지어, 거들, 콜셋, 브레이스, 서스펜더, 가터와 이들의 부분품(편직 또는 뜨게질 여부 불문)

18126 가죽의복 제조업(32226 일부)

성별이나 개인마춤 여부를 불문하고 천연 및 합성가죽으로 의복을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가죽 또는 합성가죽 의복

18127 모자 제조업(32227)

펠트, 엮은 재료, 가죽, 모피, 깃 등으로 남녀용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보호모자(군 및 소방관 헬멧) 제조는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펠트제의 모자품, 모자몸체와 후드:펠트제의 플랫폼우 및 맨션:모체(엮은 것 또는 각종 재료의 스트립을 결합하여 만든 것)
- 기타 모자(펠트제, 엮은 것 또는 기타 물품의 스트립으로 결합하여 만든 것, 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헤이스와 기타의 원단상의 섬유직물로 만든 것, 모피제의 것):헤어넷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모자를 제외한 기타 모자, 안전모자, 석면모자:모자용의 밴드, 내장재, 커버, 헤드 화운데이손, 헤드프레임, 챙 및 턱끈

<제 외>

- 모자 편조업(17309)
- 철모제조(28912)
- 주형플라스틱 모자제조(25209)
- 운동경기용 보호모자제조(36932)
- 모자장식물 제조(17292)

18128 장갑 제조업(32228)

가죽, 합성가죽, 모피, 인조모피, 직물 등으로 장식용, 방한용, 작업용의 장갑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장갑류(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 및 기타의 것)
- 장갑류(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
- 장갑류(운동용으로 디자인한 것 제외)

<제 외>

-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6932)
- 완전편조장갑 제조(17305)

181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성복 제조업(322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성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종교 의식복, 무대의상복, 한복, 학사복, 방수복, 쇼울, 스카프, 머플러, 타이, 요대, 멜방, 육아용 턱받이, 띠 및 시계줄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장갑, 쇼울, 스카프, 베일, 타이, 크라벳과 기타 의류 악세사리(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의류나 의류악세사리 부분품(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
-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등(편직 또는 뜨게질한 것이 아닌 섬유직물의 것)
- 의복악세사리(장갑류 제외), 편조 또는 크로셋 직물의 제품의 것 제외
- 벨트와 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펠트 또는 부직포로 된 의류 : 프라스틱, 고무 기타 물질로 침투 또는 도포된 방직용 직물로된 의류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벨트 등 산업용 섬유제품 생산 (17299) <p>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p> <p>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232)</p> <p>원모피 및 머리부분이 달린 기타 원피를 가공처리하는 활동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과 인조모피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 또는 편조한 인조모피 제조 (1711, 1730) • 모피모자 또는 모자부속 제조 (1810) • 모피로 장식된 의복제조 (1810) • 모피 부분이 부착된 신발제조 (1920) • 모피제 가방 제조업 (1912) <p>18201 원모피 처리업 (32321)</p> <p>각종 동물의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및 염색처리하여 가공천 원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머리부분이 달린 원피처리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된 모피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모피 제품 제조 (18203) <p>18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32226, 32323 일부)</p> <p>천연모피를 조합하여 의복 (모자제외), 깔개, 덮개, 모피이불 및 기타 가정용품 등 신발 또는 가방 이외의 인조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피의류, 의류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모자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모피제품 제조 (18203) • 모피모자 및 모자제품 제조 (18127) <p>18203 인조모피 및 그 제품 제조업 (32322, 32323, 32226)</p> <p>각종 가죽 등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결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인조모피를 조합하여 의복, 깔개, 덮개, 모피이불 및 기타 가정용품 등 신발 또는 가방 이외의 인조모피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모피와 그 제품 (모자제외)
---	--

<p>19 가죽, 가죽제품 및 신발 제조업</p> <p>191 가죽 및 가죽제품 제조업</p> <p>1911 가죽 제조업</p> <p>원모피와 머리부분이 달린 원피를 제외한 각종 원피를 가공 처리하여 가죽을 생산하거나 재생가죽, 의복 및 신발이외의 각종 가죽제품, 각종 재료의 가방 및 여행용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모피 및 머리부분이 달린 원모피 가공 (18201) <p>19111 원피 가공업 (32311)</p> <p>소, 말, 양, 염소,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를 무두질, 다듬질, 끝손질, 돋음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와 마속동물의 탈모한 기타 가죽 • 탈모한 기타 가죽 (면양, 새끼양, 산양의 것) :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저로한 합성가죽 <p>19112 재생가죽 제조업 (32312)</p> <p>천연가죽조각 및 부스러기를 접착제 등으로 응집, 집합시켜 재생가죽을 생산하거나 세무가죽, 파치먼트가죽, 페이턴트 및 금</p>	<p>속화가죽 등 특수가공 가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가죽 : 페이턴트 가죽과 적층한 페이턴트 가죽 : 메탈라이즈드가죽 • 재생가죽 <p>1912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p> <p>천연가죽 및 재생가죽, 합성 또는 대용가죽, 플라스틱, 직물, 경화섬유판지 등으로 가방, 핸드백, 동전지갑, 안장 및 채찍, 벨트 등 신발 또는 의복이외의 제조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제의 의복 및 모자제조 (1810) • 신발제조 (1920) <p>19121 가방 제조업 (32332)</p> <p>가죽, 재생가죽, 직물 및 부직포 등으로 여자핸드백을 제외한 가방 및 여행용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 사용여부를 불문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이그젝티브케이스, 서류가방, 학생가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p>19122 핸드백 제조업 (32333)</p>
---	--

금속 및 등세공품을 제외한 각종 재료의 여성용 핸드백 및 지갑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핸드백 (표면이 가죽, 콩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제의 것)

<제 외>

- 등세공 가방 및 핸드백의 제조 (2029)
- 동전용 또는 증명용 지갑 (19123)

19123 가죽케이스 제조업 (32334)

가죽, 재생 또는 대용가죽, 기타 유사재료로 쌍안경, 악기, 카메라, 총기, 낚시도구, 칼, 골프클럽, 라디오 등의 특정용품의 보호용으로 설계된 케이스와 보석함, 브러쉬함, 담배갑, 지도케이스, 동전지갑 등 비교적 소규모의 개인 휴대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개인용의 여행세트 (화장용, 바느질용, 신발 및 의류 청소용의 것) : 쌍안경케이스,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총케이스, 권총케이스 이와 유사한 용기, 여행가방, 화장갑, 특삭, 핸드백, 쇼핑백, 돈주머니, 지갑, 지도용케이스, 담배케이스, 담배쌈지, 공구백, 운동용구백, 병케이스, 보석상자, 분갑, 칼집,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제 외>

- 여성용 지갑 (19122)

19124 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32331)

천연가죽, 대용 또는 합성가죽으로 시계줄, 기계용벨트, 섬유기계의 가죽제품, 가죽격막, 튜브, 호스, 장선 및 유사제품을 (장치하지 않은 정구라켓용줄 및 낚시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시계줄 (금속제 제외)
- 휴대용 시계의 줄, 밴드, 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금속제 제외) :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가죽제품과 재생가죽

<제 외>

- 소독한 수술용 장선 제조 (3311)
- 금속제 시계줄 제조 (33302)

1912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3233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 제조업으로서 가죽 및 대용가죽으로 안장 및 기타 마구류, 가죽병, 테이블보, 면도혁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동물류의 마구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 및 재생가죽의 기타 제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제의 마구류 제조 (2029) <p>192 신발 제조업</p> <p>1920 신발 제조업</p> <p>가죽, 플라스틱, 고무, 방직용 섬유물질, 목재 및 석면 이외의 기타 각종 재료를 재단 및 재봉, 접합, 주형 또는 기타 각종 가공방법에 의하여 정형외과용 신발을 제외한 각종 목적용 신발, 각반 정강이받이 및 유사제품과 갑피, 갑피 부품, 밑창 및 안창 등의 신발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창이 없는 방직용 섬유제의 신발제조 (1810) • 석면신발의 제조 (2699) • 정형외과용 신발제조 (3311) <p>19201 경기용 및 기타 특수용 신발 제조업 (32402)</p> <p>보호금속장치가 결합되거나 작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특수 설계된 작업화, 일반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도록 설계된 육상경기, 축구, 스키, 승마, 바레, 줄타기, 서커스, 카우보이용 등의 각종 경기용 신발 등과 같이 특정활동 목적용에 적합하도록 특수설계된 신발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키부츠와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보호용 금속 토우캡을 넣는 신발 <p>19202 일반가죽 갑피신발 제조업 (32401)</p> <p>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밑창에 가죽, 대용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갑피를 봉제 또는 접착시켜 남녀용, 일반용 등의 가죽 갑피 신발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샌들, 부츠 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면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 및 플라스틱으로 바닥깔개와 갑피를 만든 신발 (방수용신발, 스포츠용신발, 보호용 금속토우캡을 넣는 신발 등은 제외) • 신발 (갑피가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인 것) • 바깥바닥 및 뒷굽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p>19203 가정용 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32403)</p> <p>신발 밑창의 재료가 끈, 로우프, 종이, 모피, 직물, 펠트, 부직포, 리놀륨, 라피아, 짚, 나무, 콜크 등의 특수재료로 된 일반용 신발의 제조와 타이어 고무를 절단하여 만든 신발 또는 완전히 펠트로 되어 신발밑창이 없는 야외용 신발 및 가정용 슬리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신발용 갑피는 각종 재료로 만들어 질 수 있다.</p>
---	---

<포 함>

- 신발(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가죽제 끈으로 묶은 갑피의 것.)

<제 외>

- 샌들 및 유사신발 제조(19202)
- 고무프라스틱 슬리퍼 제조(19204)

19204 고무 및 프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35591, 35607)

고무 또는 프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슬리퍼, 방수신발 등의 각종 성형신발과 신발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발 밑창을 직접 성형제조하는 사업체에서 구입 또는 제조한 갑피를 봉제, 접합 또는 부착하여 각종 신발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고무 및 프라스틱으로 바닥 깔개와 갑피를 만든 방수용신발(보호용 금속 토우캡을 넣은 신발을, 제외함)

<제 외>

- 구입한 고무 또는 프라스틱 밑창에 갑피를 봉제, 부착 또는 접착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경우는 갑피의 종류에 따라 (19202) 또는 (19205)에 분류

19205 일반직물갑피신발 제조업(35591 중 일부)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프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밑창에 직물로 만든 갑피를 봉제 또는 접착시켜 남녀용, 일반용의 직물갑피 신발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샌들, 부츠, 정구화, 농구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경기용 신발을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제조할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신발(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
- 갑피가 방직용 섬유제로 된 신발(스포츠용 신발 제외)
- 정구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 기타 스포츠화(스케이트 신발 제외)

<제 외>

- 고무 프라스틱 물질의 성형활동을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그 성형활동에 관련하여 직물갑피 신발을 제조할 경우(19204)
- 특정경기전용 신발 제조(19201)

19209 신발재단업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발제조업(32404, 32409)

신발재단업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발제조업으로서 가죽 및 기타재료로 신발제조용 재단물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각반 등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양말 이외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신발(베이스나 플랫폼이 나무로 된 것으로 안창 또는 보호용 금속 토우캡을 넣지 않은 것): 기타 신발류
- 신발류의 부분: 갈아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용품: 각반, 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p>20</p>	<p>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p> <p>이 중분류에는 나무, 등 및 대나무, 버드나무 및 갈대 등 각종 나무 물질을 주 원료로한 제재목 및 건축용 조립구조물, 단판 및 합판, 목재처리 및 가공, 목재용기, 콜크제품, 목재 도구 및 장비등과 같은 가구를 제외한 각종 나무제품과 나무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악기 및 부분품, 완구, 오락 및 경기용기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69) • 건설활동과 결합되는 목공활동 (45) • 벌목과 벌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전주, 말뚝 및 기타 목재의 절단과 거칠게 다듬는 활동만을 주로 할 경우 (0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넬, 보드 및 합판용 단판의 제조 (2021) • 지붕양식 구슬선 및 쇠시리등의 생산 (2022) <p>20101 일반 제재업 (33111)</p> <p>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목 (두께나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궤도용 침목 (주약처리하지 않은 것)
<p>201</p>	<p>제재 및 목재가공업</p> <p>2010 제재 및 목재가공업 (3311)</p> <p>원목 또는 제재목으로 일반제재목, 대패질 또는 기타 표면가공목재, 무늬목 (박판), 방부처리 또는 기타 화학처리목재, 목모, 목분, 칩상 또는 파티클상의 목재, 마루용 모자이크 목재판, 칩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및 원목의 생산 (02020) 	<p>20102 가공목재 생산업 (33115 중 재생목재, 화이버보드등 압축재생판 제외 11197)</p> <p>제재활동의 결합 여부를 불문하고, 각종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세공, 무늬새김 또는 특정 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표본목공물, 목재건본, 표면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또는 면을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목재 (미조립의 폭 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지는 포함하며, 구슬형가공, 주형가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용 목제품제조 (20213) • 재생목재생산 (20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늬목 (박판) 제조 (20211) • 합판, 화이버보드 및 유사나무판 제조 (20212) <p>20103 목재방부 처리업</p> <p>목재에 방부제 또는 기타 물질로 도포, 침적하거나 또는 화학처리하여 방부 및 보존처리 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방부처리 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목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우트 기타 방부처리한 것) • 궤도용 침목 (주약처리한 것) <p>20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재목 및 목재 가공업 (33119)</p> <p>일반적인 제재 과정에서 생산되지 않고 특정 목적에 따라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인발재, 목면 및 목분, 충전재, 목재토막, 침목 및 나무조각판, 중간재료 상태의 목재가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모와 목분 • 칩 또는 삭편상의 목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쭈시개, 아이스캔디꽃이, 아이스크림용 나무스푼, 나무젓갈 등 최종 용도의 완성품 제조 (20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톱밥, 목분 및 기타 목질 물질을 압축하여 판, 봉상등의 제품 제조 (20212) • 조립된 마루용 판넬 제조 (20220) <p>202 나무, 콜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p> <p>2021 단판, 합판 및 관련나무판 제조업</p> <p>원목을 톱질, 세절, 환절 등의 방법으로 합판용 및 기타 용도에 적합한 얇은 단판을 제조하거나 접착제의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목재를 고압으로 압축처리하여 합판, 베니어판넬 및 유사적층목재, 파티클보드, 화이버보드 및 유사 가공목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0211 박판 제조업 (33113)</p> <p>합판 제조용 박판, 무늬목박판, 나무도시락 및 성냥갑 제조용 박판 등 각종 용도의 박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원목을 특수 제재하거나 또는 얇게 썰거나 나무통을 벗겨서 만들어지며 착색, 도포 및 침적되거나 종이 또는 직물 등을 접착하여 보강될 수 있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판과 합판용 단판 및 기타 목재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판제조 활동에 연관된 단판 제조(20212) <p>20212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33114, 33115 중의 재생목재 포함)</p> <p>단판을 접착하거나 단판 또는 합판에 나무블럭, 작은 널판등을 접착하여 블럭보드, 라민보드, 배튼보드 및 기타 유사 나무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판(쉬트만으로 구성된 것) 기타합판, 베니어패널 및 유사적층목재 파티클보드 및 이와 유사한 나무보드(목재 또는 기타 목질재료로 제조한 것) 섬유판 또는 기타 목질 재료의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재를 표면처리하여 화장목재, 표면처리 가공목재의 생산 활동과 방부처리 활동(20103) 표면가공 합판제조(20102) 하드보드 및 기타 재생목재판 제조(20213) 	<p>또는 전기적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재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 처리를 하여 강화목재를 생산하거나 접착제의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나무조각, 부스러기, 톱밥, 찻겨등 목질물질을 응집시켜 칩보드, 하아드보드, 파티클보드등 판, 브릭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밀도화 한 목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판이 부착된 재생목재판 제조(20212) <p>2022 건축용목제품 제조업</p> <p>20220 건축용목제품 제조업(33112)</p> <p>주로 건축산업에서 건축물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재료가 목재인 조립식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들보, 석가래, 지붕버팀목 및 기타 유사지지물, 문, 창문, 셔터 및 이들의 틀, 계단, 현관, 난간, 조립판넬 마루용모자이크 조립판넬, 목재구슬선 및 장식 쇠시리 지붕이 는 판자, 셀룰라우드판넬 건축용 목재 건구와 목공품(셀루로우드 패널, 조립한 쪽 판, 지붕이 는 판자 포함)
<p>20213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p> <p>목재의 밀도 및 경도를 증가시키고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식건물 (주재료가 목재인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루용 모자이크 판제조, 조립되지 않은 것 (20109) <p>2023 목재용기 제조업</p> <p>포장용 또는 운송용 케이스,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목재의 케이블드럼,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판, 통 및 이들의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물질이 피복되지 않은 목함 유사케이스의 제조 (2029) • 조물재료제의 케이스 제조 (2029) <p>20231 통 제조업 (33121)</p> <p>교접 또는 못질하지 않고 단순히 각종재료의 통태로 고정시켜 각종 용도의 목재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은 적어도 한면은 등근형태로 만들어진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의 드럼 및 케이블드럼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선용 드럼제조와 합판등을 등글게 말아 못질 또는 교접시켜 만든 등근 형태의 용기 제조는 (20232) <p>20232 목재교접상자 제조업 (33122)</p> <p>판재 또는 합판을 절단하여 모서리를 못질하거나 교접하여 화물 및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 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사이가 밀착되거나 떨어지도록 만들어질 수 없다. 권선용 드럼, 판재의 동물수송용우리,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판 등의 제조활동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의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및 포장용기 : 목재의 깔판류와 이들의 부분품 <p>20233 목재절목상자 제조업 (33123)</p> <p>못질 또는 교접하지 않고, 합판, 단판, 펄프판 및 기타 박판을 접거나 꺾어 도시락, 성냥갑, 버터, 치즈 및 기타 식품판매용 또는 포장용 상자 등의 절목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합제를 사용하여 종이등으로 보강될 수 있다.</p>
--	---

<p>2029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3312 일부, 3319 일부)</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제품 제조활동으로서 등 및 조물제품, 콜크제품, 위생용 또는 가정용 목제품, 목함 및 유사용기, 장식용 목제품, 목제 도구 및 기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직용 섬유물질로 매트, 매팅을 제조할 경우 (1722) • 다른 물질을 피복한 목제 케이스 및 가방제조 (1912) • 목제 신발 및 신발부품 제조 (1920) • 램프 및 조명장치의 제조 (3150) • 시계케이스 제조 (3330) • 가구 제조 (3610) 	<p>20292 돛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제조업 (33129 에서 분리)</p> <p>방적하지 않은 섬유재료 및 기타 조물재료를 조합, 직조, 기타 조립방법에 의하여 끈형태의 조립물, 돛자리, 매트, 발 및 기타 판상의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트류 및 발 • 조물재료, 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 (쉬이트상의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물세공용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구입한 끈 또는 판상의 조물제품을 재단·재봉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특정 조물제품을 제조할 경우 (20293)
<p>20291 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33191)</p> <p>천연콜크를 분쇄, 성형 또는 기타 가공하여 분말, 브록, 판, 띠등의 특정 형태의 콜크제품을 제조하거나, 콜크가루의 응집제품 및 기타 콜크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콜크 (외피를 제거하거나 거칠게 각을 만든 것으로 블록상, 판상, 쉬트상, 스트립상의 것) ; 파쇄, 입상 또는 분쇄한 것 ; 콜크찌꺼기 • 천연콜크의 제품 ; 응집 콜크와 그 제품 	<p>20293 조물세공용기 및 유사제품 제조업 (33125, 33129)</p> <p>각종 조물로 엮거나 엮은것을 조립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핸드백, 쇼핑백, 바구니, 병과집물, 새장 및 기타 조물세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세미제품의 제조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스켓제품, 지조세공품 및 기타의 제품과 수세미제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트제조, 방적용재료제의 것 (1722)

20294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33194)

각종 목재 도구, 기구와 각종 도구의 몸체, 손잡이, 대등의 도구의 목재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목재 도구, 도구 몸체, 도구 손잡이, 비 및 술의 몸체, 총대, 구두손, 질꾸리 및 실패, 빨래판, 재털이, 사다리, 용량기, 꽃말, 모형, 쟁기, 씨래, 멩애, 마개
- 목재의 공구, 공구의 몸체, 공구의 손잡이, 비 또는 부러쉬의 몸체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재골
- 스푸울, 콧, 보빈, 리일 및 이와 유사한 것 (목재의 것)

20295 주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33192)

주방용 또는 가정용 기구의 성격을 갖는 나무제품 및 위생용 목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목재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 밥주걱, 위생저, 이쭤시개, 스푼 및 포크, 도마, 조림식기, 양념통 및 기타 주방용기, 국수봉, 절구통 및 대, 술뚜껑, 조각목기

20296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33193 중 등갓 및 조명기구 제외)

각종 형태의 사진틀, 그림틀, 거울틀 및 유사제품, 복각 및 조상, 장식용 세공품 가구의 성격을 갖지 않는 소규모의 걸이식 약통 및 화장품상자, 장식성의 옷걸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기목세공과 상감세공한 목재, 목재의 카스켓과 목재의조상 및 기타 장식품
- 목재의 그림틀, 사진틀, 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제 외>

- 옷칠 및 모조장식 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36951)

20297 목함 제조업 (33124)

여행용함, 기구함케이스, 담배함, 보석함등과 같이 비교적 포장용상자 보다 정교하게 만든 목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목함은 손잡이나 개폐할 수 있는 뚜껑 또는 문등이 부착될 수 있다.

<포 함>

- 담배상자, 보석상자, 기구함케이스, 여행용함.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석함 제조, 옷칠 및 세공장식제를 부착된 것 (36951) • 목기와 양념함등의 주방용 용기 제조 (20295) • 목함, 다른 물질 (가죽, 판지, 경화섬유, 직물, 플라스틱)로 싼 것 (1912) <p>20298 목관 제조업 (33195)</p> <p>시체화장 및 매장에 사용되는 목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관 제조 (2811) <p>20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33199 중 신발 및 신발부품 제외)</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으로서 완전히 나무로된 새집, 동물우리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2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p> <p>210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341)</p> <p>이 중분류에는 나무, 님마, 고지 및 기타 섬유물질로 펄프를 제조하거나 펄프로 종이, 판지 및 화이버보드를 제조하는 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한 가공지 및 종이용기,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10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p> <p>각종 섬유물질을 기계적, 화학적, 반화학적 처리방법등에 의하여 펄프 및 기타 섬유질의 셀룰로우스 물질을 제조하고 이들 펄프로 종이, 판지 및 화이버보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구입한 종이 및 판지를 가공처리하여 골판지 이외의 가공지 및 가공판지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름지 및 골판지 제조 (2102) • 종이제품 제조 (2109) • 연마지 제조 (2699) • 도포 또는 침투 물질이 주재료가 되는 도포지 또는 침투지 제조는 그 도포 또는 침투 물질의 제조 활동으로 분류 <p>21011 펄프 제조업 (34111)</p> <p>나무 등 각종 식물성재료, 폐섬유, 님마, 고지 등으로 각종</p>
--	--

형태의 펄프와 기타 섬유질의 셀룰로우스성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학목재 펄프
- 기계목재 펄프 : 반화학목재 펄프 : 섬유질 셀룰로우스펄프

21012 수제지 및 판지 제조업 (34116)

창호지, 장판용지, 서예지등과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한지와 특수 수제지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수제지와 판지

21013 신문용지 제조업 (34112)

펄프, 고지 및 기타 재료로 신문 인쇄용지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의 신문용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신문용지

21014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34113)

펄프, 고지 및 기타 재료로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

화 등에 적합한 종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책 및 잡지지, 벽지원지, 계산기용원지, 그라비아인쇄원지, 석판인쇄 및 라벨용지, 지폐, 제표 카드, 문구지, 탄산복사지, 사진인화지, 투영, 바이블, 타자 및 포스타용 원지등
- 기타 도포하지 않는 종지와 판지 (필기용, 인쇄용, 기타 그래프용, 펀치카드용지, 펀치테이프용지용의 것)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 (34114)

제조 또는 구입된 황산펄프 (표백여부불문)만으로 크라프트지 및 판지플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크라프트라이너
- 크라프트포대원지
- 크라프트골심지
- 기타 도포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 ; 지대용 크라프트지 (축유 또는 압형한 것)

21016 상자용판지 제조업 (34117)

제조 또는 구입한 펄프 등으로 각종 식품포장용 고품표백판지, 마닐라판지 및 기타 상자제조용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을 수 없는 화물상자용 판지, 가방제조용 판지 및

기계장비의 부속품 제조용 판지등의 제조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21017 가공지 제조업 (34193 일부 골판지 제외)

구입한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물질, 금속망 및 금속박지, 플라스틱 물질등을 각종 방법으로 적층 또는 접합시켜 합성지 및 적층지를 생산하거나 제라틴, 물감, 기름등을 삼투, 도포, 표면착색 또는 표면장식한 종이와 포장용 종이와 같이 단순 인쇄한 종이 및 판지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겹붙인 지와 판지
- 축유, 압형, 천공한지 및 판지
- 카오린 또는 기타 무기질로 도포한 지와 판지
-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 침투, 피복, 표면착색 또는 인쇄한 것)

<제 외>

- 원지 제조활동에 결합,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가공처리 활동은 원지 제조업으로 분류
- 구입한 가공지원지를 특정용도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는 활동(2109)
- 아스팔트나 타르를 도포 또는 삼투한 종이 제조(26993)

- 사진감광지 제조(24295)
- 골판지 제조(21021)
- 벽지 및 장판지 제조(21093)

21019 달리분류되지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34119)

달리분류되지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으로서 수제지 및 판지, 신문용지, 인쇄, 필기, 도화용지, 크라프트지와 상자용판지를 제외한 각종용의 원지 및 판지와 순수한 화학나무 펄프 또는 면섬유로 만든 종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골판지 원지
- 양피지
- 산지 및 판지
- 순수화학 나무펄프
- 면섬유로 만든 종이
- 가정 및 위생용 원지
- 크레프트지
- 누름지
- 특수박엽지
- 카본지
- 스텐실원지
- 절연지
- 담배용지
- 차봉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황산 포장지 • 가스켓 원지 • 여과기 • 마분지 • 화장용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 타올 또는 내프킨 스톡과 이와 유사한 지, 셀룰로스 워딩 또는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 • 도포하지 아니한 반화학 후루팅지 (골심지) • 기타 도포되지 않은지와 판지; 권련지 (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 • 황산지, 내지지, 트레이싱지, 그라신지 및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광택지; 포장지 (특수처리지) <p>2102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p> <p>구입한 골판지원지로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종이, 판지, 골판지, 섬유보드 및 기타 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상자 및 기타 종이 또는 판지계의 용기 및 상자포장용지 지물 또는 셀룰로스충진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투제조 (21091) 	<p>21021 골판지 제조업 (34193 일부 골판지)</p> <p>구입한 골판지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형의지와 판지 <p>21022 종이가방 및 종이포대 제조업 (34122)</p> <p>구입한 종이 또는 판지로 시멘트, 석탄, 밀가루, 사료 및 기타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단겹 또는 여러겹으로 된 선적용포대 및 봉지등의 종이포대와 휴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쇼핑백, 식품백, 의복백등의 종이가방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포장대 <p>21023 골판지상자 제조업 (34121)</p> <p>골판지로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판지와 판지계의 상자류 <p>21024 위생용 종이 용기 제조업 (34124)</p> <p>구입한 특수위생처리 판지와 직접 위생처리한 판지로 접거나,</p>
--	--

짜맞춰 관, 병, 컵, 원추통, 상자등 각종 형태의 액체우유용기, 버터 및 마아가린포장용 파라투상자, 냉동식품 및 아이스크림용 용기등 식품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액체용기

21025 포장용 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 (34123, 34125)

구입한 판지 (골판지 제외), 경화섬유판 (파이버보드) 으로 포장, 운반 또는 선적 용기, 상품의 진열, 저장 및 판매용상자, 포장용 삽입물, 지지물, 칸막이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지와 판지제의 상자류 (골판지 제외)

<제 외>

- 포장용기보다 견고하고 내구적인 형태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서류, 캐비닛 및 편지함, 저장함등을 제조하는 활동 (21029)

21029 달리분류되지않은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34129)

달리분류되지않은 종이 및 판지용기 제조업으로서 경화섬유판 (파이어보드) 으로 포장용기보다 정교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내구적인 형태의 캔 및 드럼등의 용기와 섬유, 종이 및 기타 물질을 감는데 사용되는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서류캐비닛,

편지함, 저장함 및 유사제품 등 통상적으로 사무 및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물질로 보강되거나, 들쭉거, 손잡이 및 개폐장치등을 부착할 수 있다.

<포 함>

- 서류상자, 서류받침, 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10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으로서 펄프를 직접 압출 성형하여 만든 펄프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종이 및 판지를 절단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복사지 및 전사지, 봉투 및 통신용카드등의 인쇄되지 않은 종이문구류, 가정 및 위생용 종이제품, 여과용지와 판지, 펄프성형제품, 자동기록기기용으로 인쇄된 필기용 또는 기타 필기용 종이제품, 라벨, 벽지, 접착지, 빨대, 종이지형등의 인쇄, 압형, 천공 또는 재단 성형된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펄프로 종이 및 판지제조에 연관되는 원지상태의 종이 및 판지제조 (2101)
- 인쇄된 종이문구류 제조 (222)

21091 문구용용지 제조업 (34194)

구입한 인쇄용 또는 필기용원지 및 판지를 롤상, 스트립상,

시이트상 및 기타 일정한 형태로 절단하여 종이상태의 필기용지, 폴스카프지, 노트브록, 편지지철, 시험지, 인쇄되지않은 통신용카드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을 줄을 치거나 도안인쇄(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등 종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인쇄된 것도 포함한다.

<포 함>

- 카아본지, 셀프복사지, 기타 복사지 또는 전산지(벌크상이 아닌것);지제의 등사원지 및 읍셋플레이트;접착지
-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 봉합엽서, 우편엽서, 통신용카드;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 낭대, 필기첩 및 편지지
- 지 또는 판지의 레이블
- 필기용, 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프용의지와 판지

<제 외>

- 특정사항을 인쇄한것 또는 책형태로 인쇄, 제본된 종이문구류(222)

21092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용기제의(34192)

구입한 원지로 각종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가공 또는 절단된 위생용지 및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장지, 수건, 타올, 서비에트, 유아용내프킨, 탐폰 및 유사 가정용품, 병원용 위생용품, 의류등(종이펠프, 종이 셀룰로우스섬유의 셀룰로우스웨딩과 웨브로 만든것)

<제 외>

- 종이수저, 접시등의 제조(21099)
- 식품포장용 종이용기 제조(2102)

2109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34191, 32145중 직물벽지 포함)

구입한 종지와 판지로 벽지, 바닥갈개, 장판지, 링크러스타, 투명무늬지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방직용섬유로 직물벽지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포 함>

-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피복제와 창문용 투명지
- 방직용 섬유제의 벽피복제
- 지 또는 판지를 기저로한 바닥갈개

21094 펄프압형제품 제조업(34195)

펄프를 압형 또는 기타 성형하여 각종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여과브록(펄프압형한 것)
- 슬랙브록(펄프압형한 것)
- 판(펄프압형한 것)
- 컵(펄프압형한 것)
- 접시(펄프압형한 것)
- 포크(펄프압형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관 (펄프압형한 것) • 가스켓 (펄프압형한 것) • 파이프 (펄프압형한 것) • 달걀상자 (펄프압형한 것) • 골병 (펄프압형한 것) • 혼용제품 (탈, 조상 및 공예품 제외) •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럭, 슬랩, 플레이트 • 제지용 펄프제의 모듈드 또는 압형한 제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용지 제조 (21017) • 혼용지로 탈, 가면, 조상 및 공예품을 제조 (369) <p>21095 사무기계용 종이제품 제조업 (34196)</p> <p>구입한 종이 및 판지로 자동기록기기, 사무 및 회계기기에 전용될 수 있도록 적합하도록 특수 재단 또는 가공된 종이 및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은 인쇄 또는 천공여부를 불문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공카드기계용의 카드 (천공하지 아니한 것);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로울, 스위트 및 다이알; 천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된 통계, 회계기계용의 카아드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본지 및 복사지 제조, 절단한것 (29091) <p>210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3419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으로서 구입한 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 사진부착용, 기계용 또는 기타용의 종이 및 판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용지 • 종이울 • 사진부착용코너 • 가스켓 • 와셔 • 수저 • 접시 • 병마개 • 과자포장지 • 여과용지 및 판지 • 권련지; 여과용의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제의 보빈, 스푸울, 록 및 이와 유사한 권치용품; 지 또는 판지제의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및 이와 유사한 것
--	---

<p>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p> <p>여기에는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기타 간행물의 출판,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보조활동, 기록매체의 복제생산 활동이 포함된다.</p> <p>221 출판업</p> <p>인쇄시설의 유무를 불문하고 서적, 정기간행물, 음성 및 기타 기록매체 등의 출판물과 장부 및 유사제품, 화폐, 서식, 지도 등 각종 인쇄물을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활동(222) • 일반대중이 아닌 타사업체에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의 배부활동(9211) • 음반 또는 오디오, 비디오 원판 제작(9249) <p>2211 서적 출판업</p> <p>22110 서적 출판업(34213)</p> <p>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과 서적성격의 팜프렛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명부발행등도 여기에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서적, 소책자, 라이플렛 및 이와 유사한 단계로 된 인쇄물(광고물은 제외함) • 사전, 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속물 • 아동용 그림책과 동화책 • 도감과 기타 지도 또는 차트로 된 책 • 벽지도, 지형도 • 약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 <p>2212 신문 및 정기간행물발행업</p> <p>22121 신문 발행업(34211)</p> <p>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비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로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뉴스, 주간지, 일간전문지 발행(22122) • 신문사 또는 출판사에 뉴스자료를 제공하는 활동(92200)
--	---

<p>22122 정기간행물 발행업 (34212)</p> <p>전문 일간지를 포함하여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월간, 순보, 계간, 연보등의 정기간행물, 상업지, 만화신문등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로 1주에 4회 미만 간행되는 것 	<p>장, 바인더 (용지를 절할 수 있는 링만 부착된 것도 포함), 견본철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와 판지제의 장부, 회계부, 노트북, 편지지철, 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것, 흡취지장, 바인더, 서류철표지, 사무용 양식, 삼입식 카아본셋트,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p>2213 음성 및 기타현상 기록매체 출판업</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카바 및 제본되지 않은 문구용지 제조(21091) • 서식등 제본되지 않은 일반사무용 인쇄물(22199)
<p>22130 음성 및 기타현상 기록매체 출판업 (38256)</p> <p>영화를 제외하고, 음성 또는 기타 유사한 현상을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기록매체를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기록용 또는 이와 유사한 현상의 기록용이 된 레코드, 테이프와 기타 기록매체 (영화필름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코드 또는 오디오, 비디오 원판생산(9249) • 영화제작 생산(9211) 	<p>2219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출판업 (34219)</p> <p>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엽서, 시간표, 서식 및 기타 사무용인쇄물, 포스트, 예술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지 않은 우표, 수입인지 및 이와 유사한것; 스탬프를 압인한지; 수표, 지폐, 채권, 주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개인인사용, 전언용으로 봉투 또는 장식여부 불문) • 인쇄된 그림, 디자인 및 사진 • 전사지, 인쇄된 카렌더, 기타인쇄물
<p>2219 기타 출판업</p>	
<p>22191 노트, 앨범 및 유사 인쇄물 출판업 (34214)</p> <p>책형태로 인쇄 제본된 노트, 장부, 앨범, 일기장, 회계장, 연습</p>	

<p>22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p> <p>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서적등의 출판물과 광고포스터, 우표, 수입인지, 지폐, 앨범, 일기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과 인쇄활동을 보조하는 인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판, 프린트, 옵셋인쇄를 포함한 각종 인쇄제판 또는 등사기, 컴퓨터조정 복제기, 요철인쇄기, 사진복사 또는 열복사등의의 각종 방식에 의한 인쇄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자, 복사 및 자료처리서비스(74962) • 종이라벨 인쇄(2109) • 출판활동(221) • 출판원고 또는 원판지작은 저자의 기술적, 예술적활동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에 분류 	<p>마스타제판에 의한 인쇄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2219 달리분류되지않은 상업 인쇄업(3422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업인쇄업으로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그라비아제판, 스크린제판, 석각제판등에 의한 인쇄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선전물, 상업용카다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인쇄활동을 하지않고 인쇄용동판, 목판, 고무판등의 석각활동(22221) <p>2222 인쇄관련 서비스업</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용 원판제작, 제책 및 인쇄물 가공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자 제조(2929) • 인쇄제판용 재료의 생산은 그 재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p>2221 상업 인쇄업</p> <p>22211 일반인쇄업(34221)</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각종 인쇄물을 활판 및 관련 연판 또는 필름 사진제판에 의한 인쇄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2212 경인쇄업(34222)</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p>	<p>22221 제판업(34232, 34233)</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사진식자를 포함한 각종 인쇄용 사진원판을 제작, 활판식자, 조판 및 식자관련연판, 고무판, 프라</p>

<p>스틱 판 등의 제 판, 식각에 의한 동판, 목판, 석판 등의 각종 제 판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자의 식자, 인쇄용 판 및 시린더의 제작 • 인쇄용의 석판 및 기타 매체의 각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자 구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활동 (2891) • 인쇄목적 이외의 금속식각을 주로하는 산업활동 (2891) • 편집, 타자 및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 (7230) <p>22222 제책업 (34231)</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각종 서적 및 인쇄물을 제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2229 달리분류되지않은 인쇄관련 서비스업 (3423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인쇄관련 산업으로의 금박처리, 모서리다듬기, 재단등 인쇄물 가공활동 및 기타 인쇄관련 서비스업이 여기에 포함된다.</p> <p>223 기록매체 복제품 생산업</p>	<p>레코드,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과 플로피, 하드 또는 콤팩트디스크, 비주얼성 소프트웨어 및 필름등을 복제하여 복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의 복제 (2221) • 레코드 원판등의 중간생산품의 제조 (9249)
<p>2230 기록매체 복제품 생산업</p> <p>22300 기록매체 복제품 생산업 (38256, 38326)</p>	

<p>23 코우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p> <p> 석탄을 처리하여 코우크스 및 관련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원유, 역청광물 및 이들의 분유물을 정제하는 활동과 우라늄광에서 우라늄금속을 추출하거나 핵연료를 가공하는 산업활동이 분류된다.</p> <p>231 코우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p> <p>2310 코우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p> <p>23100 코우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35409)</p> <p> 석탄, 갈탄, 토탄등을 코우크스로에서 처리하여 코우크스 또는 반성코우크스 분류, 카본, 콜타르피치등의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코우크스의 응집처리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 <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갈탄, 토탄의 코크 및 반성코크;분류카아본 • 석탄, 갈탄,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기타의 광물성 타르 <p> <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타르 증류활동 (2411) • 코우크스로 가스, 도시가스 및 제조가스(수성카드, 발생로 가스등)의 생산활동(4020) 	<p>232 석유정제품 제조업</p> <p>2320 석유정제품 제조업</p> <p>23200 석유정제품 제조업 (35300)</p> <p> 원유의 일관된 정유처리 또는 원유의 분리제품 및 미가공된 석유분리 제품을 재정유, 분류 및 기타 처리하여 가솔린, 연료유, 조명유, 윤활유, 그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솔린 (항공유 포함) • 개솔린 형태의 제트 연료 • 기타 경질유와 역청질광물(원유는 제외)로 부터 추출한 경질유; 기타 경질유 조제품(원유를 제외한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이러한 성분의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인 것) • 등유 (등유형태의 제트류 포함) • 기타 중질유와 역청질광물(등유는 제외)로 부터 추출한 중질유; 기타 중질유 조제품(원유를 제외한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이러한 성분이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인 것) • 개스오일 • 기타 연료유 • 윤활유, 기타 증유, 기타 증유제품(원유를 제외한 석유 및 역청유의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이러한 성분이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인 것)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젤리 ; 파라핀왁스,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석유왁스, 슬랙 왁스, 오우조어라이트, 갈탄왁스, 토탄왁스, 기타 광물성왁스 및 유사제품 ; 석유코크, 석유역청, 기타 석유 또는 역청물질의 잔유물 • 기타 석유 또는 역청물질의 잔유물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 또는 가스전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활동(1110) • 조제유탄유 제조(2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 토륨과 그 화합물 ; 합금, 분산물,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 • 기타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 합금, 분산물,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 ; 방사성 잔재물 • 방사성을 조사하지 않은 연료요소
<p>233 핵연료 가공업</p>	
<p>2330 핵연료 가공업</p>	
<p>23300 핵연료 가공업 (37219에서 분리)</p> <p>역청우라늄광 또는 우라늄함유 광석에서 우라늄금속을 추출하는 활동과 우라늄, 플루토늄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 배합, 합금, 농축등의 처리를 하여 조사되지 않은 핵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우라늄과 그 화합물 ; 합금, 분산물,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 합금, 분산물, 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 	

24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이 중분류에는 화학적 처리를 주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 혼합, 화합 및 복합화합물 또는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1. 산, 알칼리, 염, 기타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등의 산업용 기초화합물,
- 2. 비료 및 질소화합물
- 3. 더 가공이 요구되는 원료상태의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화학섬유등의 중간화합물
- 4.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화학제품 도료 및 잉크, 의약품 및 의료용화학물, 비누 및 화장품등 특정 목적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된 달리분류되지않은 화학제품

<제 외>

- 원유정제품 및 코우크스로제품 제조 (23)
-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의 성형가공 (25)
- 동물성 유지, 베이킹 파우더 및 기타 식용발효제품 제조 (15)

241 기초화학물 제조업

2411 기초화학물 제조업

원소가스를 포함한 산업용가스 및 기타 화학원소, 무기산(질산제외), 무기안료, 알칼리 및 기타 무기화합물, 식물성 또는

동물성착색제, 합성유기염료, 나무화학물, 합성유기유연제 및 기타 기초유기화합물과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기초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액화 또는 압축공기, 아세틸렌, 냉동가스, 혼합가스 등의 산업용 가스

<제 외>

- 메탄제조 (1110)
- 에칠알콜제조 (1551)
- 에탄, 부탄, 프로판의 제조 (2320)
- 비료와 질소 화합물 (24112)
- 원료형태의 플라스틱물질 및 합성고무제조 (2413)
- 원료상태의 글리세롤 제조 (2424)
- 방향유 제조 (2429)
-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처리 가공 (2330)

24111 산업용 가스 제조업 (35123)

압축 또는 액화공기, 아세틸렌가스, 냉동가스, 산업용 혼합가스 등 요소가스를 포함한 산업용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수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및 희가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의 비금속 산화물

<p>• 압축공기</p> <p>24112 기초 무기 화학물 제조업 (35121, 35122, 35129)</p> <p>화학원소, 무기안료, 무기산 및 비금속 또는 귀금속의 산화물 알카리 및 달리분류되지않은 기초무기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산화망간, 산화철 및 수산화철, 어드칼러, 산화코발트 및 수산화코발트 산화티타늄, 산화연, 연단 및 오렌지연, 달리분류되지않은 무기염기, 금속산화물, 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 달리분류되지않은 화학원소 ; 무기산 (질산, 황질산 제외) ; 무기봉소의 산화물, 규소, 황 ; 비금속의 할로젠 화합물 또는 황화물 ; 수산화나트륨 ; 수산화마그네슘, 과산화마그네슘 수산화스트론튬, 과산화스트론튬, 산화바륨, 과산화바륨 ; 수산화알루미늄 ;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이들의 무기염 • 무기산의 염 및 과산화염과 기타 금속염 • 금속산의 염 ; 귀금속의 유기 및 무기화합물 • 동위원소 및 이들의 화합물 (중수포함) • 시안화물, 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 뇌산염, 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 규산염 ; 붕산염 ; 과산화붕산염 ;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 과산화수소 ; 인화물 ; 탄화물 ; 수소화물 ; 질화물 ; 아지화물 ; 규화물 및 붕화물 	<p>• 희토류금속, 이트륨, 스칸듐의 화합물</p> <p>24113 염료, 안료 및 유연제 제조업 (3513)</p> <p>천연인디고 및 컬러레이크를 포함해서 니트로조 및 니트로염료, 모노 및 폴리아조염료, 스틸벤염료, 티아졸염료, 퀴논이인염료 등 천연 및 합성염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고, 염료엑스, 합성무두재료, 식물성 무두질엑스, 탄닌산 및 그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유기착색제와 그 조제품 ; 합성유기 형광증백제나 합성유기루미노퍼 ; 레이크안료와 그 조제품 • 식물성유연엑스 및 탄닌과 그 염, 에테르, 에스테르, 기타의 유도체 ; 동·식물성착색제 (수탄제외) ; 식물성 또는 동물성착색제를 기제로한 조제품 •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 및 유연전처리용의 효소계조제품 • 기타 착색제 및 무기의 루미노퍼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안료 제조 (24112) <p>24114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35117)</p> <p>유연제엑스를 제외한 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피 치등을 증류하여 유연제 이외의 휘발성 물질 및 기타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 수단 ; 토올오일 ; 테르펜계유 (증류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침엽수에서 얻은것) ; 조상의 디펜틴 ; 조상의 파라시멘 ; 파인유 ;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 로진프스릿과 로진유 및 런검 ; 목타르 ; 목타르유 ; 목크레오소오트 ; 목나프타 ; 식물성피지 ; 브루어피치 목탄 	<p>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용 모노카르복시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알콜, 페놀, 페놀-알콜 및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공업용 지방성알콜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할로겐화합물, 과산화물과 과산화산 및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살리실산과 그 염, 살리실산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제외) 아민관능화합물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글루탄산과 그 염 제외) ;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및 그 염 ;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및 아민화합물 ; 니트릴관능화합물 ; 디아조화합물, 이조화합물과 아족시 화합물 ;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유도체 ; 기타 질소관능 화합물 유기황화합물 및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 ; 기타 산소헤테고리화합물 에테르, 과산화알콜, 과산화에테르, 에폭시드, 헤미아세틸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알데히드 관능화합물 ; 케톤관능 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 효소 ; 조제 효소 ; 기타 유기화합물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또는 기타 무기산의 에스테르 (할로겐화 수소의 에스테르 제외) 및 그들의 염 ;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p>24115 석탄 화학물 제조업 (35116)</p> <p>콜타르 및 기타 광물타르를 고온으로 추출하여 타르오일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조올, 톨루올, 크실올 ; 고온콜타르증류 생산물 ; 피치와 피치코크스 (광물성타르에서 얻어지는 것) 	
<p>24116 기초 유기화학물 제조업 (35111, 35112, 35113, 35119)</p> <p>탄화수소와 그 유도체, 알콜, 페놀, 페놀-알콜, 글리세린, 에텔 에폭시드 및 아세틸, 알데히드, 케톤 및 퀴논 관능화합물, 유기산 및 그 유도체, 무기산의 에스테르 그들의 염 및 유도체, 질소 관능화합물, 유기, 무기 및 복소환식 화합물등 달리분류되지않은 기초유기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화수소 및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니트로화 유도체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틸알콜 제조 (1551) • 콜타르 중화 생산품 (23100) <p>2411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초화학물 제조업 (35129 중 일부)</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초화학물 제조업으로서 정제한 유황, 배소한 황화철, 합성 귀석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한 황 (승화황, 침강황, 콜로이드황 제외) • 배소한 황화철강 •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 (가공하지 않은것) <p>24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p> <p>순수, 혼합, 화합, 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상업용 염화암모늄, 질산칼륨등의 질소, 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24121 질소비료 제조업 (35151)</p> <p>무기질 질소비료 및 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화암모늄 ; 아질산염 ; 질산칼륨 ; 인산삼암모늄 ; 탄산암모늄 • 무기질 질소비료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의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질 질소비료 제조 (24129) <p>24122 인산 비료 제조업 (35152)</p> <p>인산질 광물 또는 인산질 비료 제조용 기초 화학물을 화학 처리하여 인산질을 함유한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인산질 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다른 성분의 비료를 구입하여 인산질을 함유한 복합비료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산비료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의 것) <p>24123 칼리질 비료 제조업 (35153)</p> <p>칼리질 광물 또는 칼리질 비료 제조용 기초화학물을 화학 처리하여 칼리질을 함유한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칼리질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다른 성분의 비료를 구입하여 칼리질을 함유한 복합비료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산과 황질산,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리비료 및 칼리비료물질

24124 복합 비료 제조업 (35154)

두가지 이상의 비료성분을 함유한 비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서로 다른 비료성분을 구입 이를 배합하여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별성분의 비료를 주로 생산하면서 다른 성분을 구입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포 함>

- 복합비료

<제 외>

- 유기질 질소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혼합비료 제조 (24129)

24129 달리분류되지 않은 화학비료 제조업 (35159)

달리분류되지 않은 화학비료 제조업으로서 천연동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와 무기질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등의 생산과 구아노 화학처리활동등이 포함된다. 광스래그, 토질개량토사석, 이량 요소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또는 성분의 조정, 배합등 비료용으로 특별히 제조할 경우도 포함된다.

<포 함>

-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료
- 구아노
- 동식물성 물품을 혼합 또는 화학처리한 비료

241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원료형태의 각종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유도된 팩티스, 천연고무 물질의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131 합성고무 제조업 (35115)

합성고무(합성고무라텍스를 포함)와 기름에서 유도되는 팩티스, 천연고무 및 유사 천연검의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 및 혼합물과 이들의 천연고무와 유사한 천연검(일차제품, 판, 쉬트, 스트립상의 것)

<제 외>

- 상기 제품을 석유 또는 석유부생가스로부터 일관하여 제조하는 산업활동(2411)

24132 합성수지 제조업 (35114)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및 기타 일차 형태의 합성플라스틱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렌의 중합체 (일차제품의 것) •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젠화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의 것) • 아세탈수지, 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알키티수지, 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의 것) • 프로필렌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 아크릴중합체; 폴리아미드;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 초산비닐의 중합체, 비닐에스테르 중합체, 실리콘수지 (일차제품의 것) • 석유수지, 쿠마론수지, 인덴수지 또는 쿠마론 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폴리술폰, 푸란수지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제품을 석유 또는 석유부생가스로부터 일관하여 제조하는 산업활동 (2411) <p>24133 재생섬유 및 그 유도체 제조업 (35114)</p> <p>천연중합체를 처리하여 재생섬유소 및 그 화학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셀룰로우스;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천연중합체와 변성한 천연중합체 	<p>24139 달리분류되지 않은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p> <p>달리분류되지 않은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으로서 합성 또는 천연중합체를 기저로한 이온교환수지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온교환수지 <p>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p> <p>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인쇄잉크 및 매스틱, 의약품,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제, 비누, 세정 및 광택제, 화장품, 불꽃제품, 접착제 및 제라틴 유도체등의 산업사용자 또는 개인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상태의 각종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2421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p> <p>일반가정용, 공중위생용 또는 농업용의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 조절제, 소독제 및 기타 유사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42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35229)</p> <p>일반가정용 또는 공중위생용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포 함>

- 살충제 , 방충제 , 살균제 , 소독제 (가정용)

<제 외>

- 살서제 제조 (24 212)
- 가정용 세정 및 광택제 , 방취제 및 유사 위생제품 제조 (24249)

24212 농약 제조업 (35160)

병원균, 곤충, 곰팡이, 잡초, 설치류 등을 구제하기 위한 농업용 약제인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소독제, 제초제, 발아촉진제, 발아억제제 및 유사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제초제, 발아촉진제, 발아억제제 (가정용 제외)

<제 외>

- 가정용 또는 위생용 살균 및 소독제 제조 (24211)

2422 도료,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21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35211-35213, 35219)

요업용 조제착색제, 물감, 법랑유약, 유약용 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포함하여 각종 용도의 수성 또는 비수성 페인트 및 바니쉬, 에나멜, 라커 및 디스토포 등의 도료 및 유사 피막형성용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페인트와 바니쉬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수성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 페인트와 바니쉬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 액상수지;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 (에나멜, 래커 및 디스토포 포함)와 피혁의 완성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 안료;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 외>

- 옷칠 제조업 (24225)

24222 회화용물감 제조업 (39091 중 도화용물감)

화가, 학생, 간판도장공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튜브, 병, 접시 등에 포장 또는 주입된 회구류 및 유사물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가용, 학생용, 간판도장공용, 유희용의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회구류

<제 외>

- 크레용, 파스텔 제조 (36992)

<p>24223 인쇄잉크 제조업 (35297 중 필기용잉크 제외)</p> <p>농축 또는 고체상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용잉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용잉크 제조 (24291) 	<p>24229 달리분류되지않는 도료,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52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도료,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으로서 아마유나 기타 매체에 넣은 안료, 스탬핑포일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매질에 분산시킨 안료 (페인트, 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 스탬프용의 박 및 소매용 포장의 염료와 기타의 착색제
<p>24224 도료 관련제품 제조업 (35215)</p> <p>피터, 수지시멘트, 록킹화합물 및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페인트제거제, 희석제, 용제, 건조제, 확장제품의 도료제조 또는 도장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자용의 피터, 접목용의 피터, 수지시멘트, 록킹화합물과 기타의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유기혼합용제와 신나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 	<p>2423 의약품,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3522)</p> <p>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혈액, 미생물 및 그 배양액등으로 만들어지는 백신, 항독제등의 생물학적제제, 약용식물 및 합성품, 천연약물 유효성분인 의료화학제제 및 원료 형태의 항생물질, 약용식물 및 동물의약용 부분이나 분비물등을 조제 가공한 생약제제, 단일 또는 몇가지 종류의 의약제제를 배합, 조제하여 분말제 정제, 캡슐제, 시럽제, 주사제, 연고등 일정한 형태의 의약제제품과 의료용품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식품제조 (15)
<p>24225 옷칠제조업 (35214)</p> <p>칠기에 사용되는 옷칠 및 카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4231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35222)</p>

항생의약 물질을 제외하고, 천연동식물성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에서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물질을 추출, 가공하거나 합성 또는 조제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살리실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 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글루탐산과 그 염; 제사암모늄염과 수산화제사암모늄염;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비환식아미드와 그들의 유도체 및 염; 환식아미드(우레인 제외)와 그들의 유도체 및 염
- 기타 락톤,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불지 아니한 피타졸고리, 피리미딘고리, 피페라진고리, 불지 아니한 트리아진고리 또는 페노티아진고리를 가지는 화합물; 핵산과 그들의 염;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술폰아미드
-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것); 당에테르, 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 식물 알칼로이드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호르몬과 이들의 유도체 및 기타 스테로이드; 글리코신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의 기관(건조한 것) 및 그 분비물의 추출물,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것

<제 외>

- 항생 의약품 제조(24232)
- 생물학제제 제조업(24233)

24232 항생의약품 제조업(35223)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클로로테트라클린, 액티노마이신 등의 원료상태의 항생의약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항생물질

24233 생물학제제 제조업(35221)

미생물 및 그 배양액으로 만들어지는 박테리아비루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함유한 항혈청, 세균백신, 독소 및 유사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234 의약품 제조업(환자용 진단용시약 포함)(35224)

동물의약품을 제외하고 정,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 사람의 치과, 내과 및 외과 등 각종 질병의 치료, 진단 및 예방을 위한 최종적인 소요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환자에 투여되는 진단용 시약의 제조도 포함된다.

<포 함>

- 의약품(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24235 동물약제품 제조업 (35225)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예방에 사용되는 화학요법제, 구충제, 호르몬제, 생물학적제제, 사료첨가 및 영양비육촉진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사람이나 동물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제조 (24235)

24239 달리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38519, 32196 중 탈지면 붕대등 포함)

달리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으로서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으로 특수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달리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관련 제품을 포함한다.

<포 함>

- 탈지면, 거어즈, 붕대, 피복제, 반창고, 습포제
- 혈액형 분류용 시약; X선 검사용 조영제 및 진단용시약

2424 비누, 세정제 및 화장품 제조업 (3523)

각종 형태의 비누, 합성세제, 유기계면활성제, 원료상태의 글리

세린, 두발용 조제품, 인체방향성제,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조제품 및 기타 화장품, 치약 및 구강위생용품, 표면광택제, 조제왁스, 실내가향 및 방취조제품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의 제조 (2411)
- 방향유의 추출 및 정제 (2429)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조제품의 포장활동 (7495)
- 판매활동에 관련된 상품의 포장활동 (51 또는 52)

24241 유기 계면활성제 제조업 (35233)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음이온, 양이온, 양성이온, 비이온 등의 유기계면활성제 및 그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유기계면활성제 (비누제외)

24242 비누 제조업 (35231)

각종 형태의 지방산 내용의 비누 및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누가 도포, 침적된 종이, 펄트 및 기타 물질도 포함된다.

<포 함>

-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 ;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 워딩, 펠트와 부직포

<제 외>

-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 (24245)

24243 합성세제 제조업 (35232)

유기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비누이외의 합성세척제 및 조제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계면활성제, 조제세제 또는 조제청정제

24244 치약 및 기타 구강 위생용품 제조업 (35234, 35239 중 구강세척제, 구강위생제 포함)

치약, 치분 및 구강 또는 치과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구강 위생용품 또는 치과 위생용품

24245 화장품 제조업 (35235)

향수 및 화장수, 미용 또는 안면보호용 화장품, 두발용 또는 면

도용 조제품, 인체 탈취제, 목욕용 조제품,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향수 및 화장수 ;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및 메니큐어 제품류 ; 두발용 제품류 ; 면도용 제품류 ;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 탈모제, 향수, 기타 화장품

<제 외>

-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 조제품 (24249)

24246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업 (35295)

가구, 금속, 신발등의 광택용 왁스, 광택제 및 특수용도의 크리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 신발, 가구, 마루, 자동차 차체, 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
- 조제연마 페이스트, 조제연마본 및 기타 연마조제품

2424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누, 세정제 및 화장품 제조업 (35239 중 구강세척, 위생제 제외)

달리분류되지않는 비누, 세정제 및 화장품 제조업으로서,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제, 원료상태의 글리세린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글리세롤
-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

2429 달리분류되지않은 화학제품 제조업 (3529)

달리분류되지않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서 성냥화약 및 불꽃제품, 젤라틴과 젤라틴유도체, 접착제, 펩톤과 펩톤유도체, 정유, 섬유처리용 조제품, 용접용분과 페이스트, 금속표면처리용제, 활성탄, 윤활유첨가제,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안티녹제, 부동조제품, 환자투여용이 아닌 진단용 조제시약 또는 실험실용조제시약, 사진용 화학제품, 필기 및 제도용잉크, 음성기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업 (35297 중 인쇄용 잉크제외)

필기 및 제도용 잉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필기용, 제도용잉크

<제 외>

- 인쇄용잉크 제조(24223)

242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35298)

식물성의 방향유, 향수, 식품, 음료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레시노이드, 테르펜 부산물, 혼합물, 수성증류 및 용액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정유 및 콘센트레이트, 애큐어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루션; 레지노이드;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것)

242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5291)

아교, 접착제, 젤라틴, 펩톤 및 변성전분과 이들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글루우 및 젤라틴,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및 관련제품; 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텍스트린과 기타의 변성전분

242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5292, 35293)

여러가지 형태의 성냥과 추진화약, 조제폭약, 광업용 퓨우즈, 뇌관, 정확기,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폭약 ; 도화선 ; 도폭선 ; 뇌관 ; 정화기 ; 전기뇌관
- 발사화약 및 불꽃제품
- 불꽃, 신호용조명탄, 레인로켓, 안개증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

24295 기록용매체 제조업 (35296)

영상, 음향 및 기타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판, 필름, 종이, 판지, 테이프등의감광재료, 마그네틱재료 테이프 및 기타 재료의 기록매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 기록용의 매체 (영화용 필름 제외)

24296 사진용 화학물 제조업 (35296)

기록매체이외의 사진용 화학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사진용의 화학조제품 (바니쉬, 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것 제외) 및 사진용의 단일 물품 (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한 것); 사진용 화학물 (기록매체 제외)
- 사진인화지 : 사진플레이트, 사진필름과 인스턴트프린트필름

24297 조제 윤활유 및 윤활제품 제조업 (35402)

폐유를 정제하거나 구입한 광물성, 동물성 및 식물성재료등을 혼합, 조합 및 재 정제하여 조제윤활유 및 구리스, 방직용섬유재료, 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 또는 그리스처리용 조제품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조제윤활제 처리제품

<제 외>

- 석유 및 역청유를 정제하여 윤활유 및 구리스를 제조 (2320)

242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52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서 용접봉 분과 페이스트, 금속표면 처리용제, 활성탄소, 조제한 고무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 (환자투여용 제외)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된다.

<포 함>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 활성탄 : 촉매 및 촉매조제품 : 완성 가공제,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 매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티녹제,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 : 조제유압제동액, 부동조제품 • 조형용페이스트 : 치과용왁스 또는 치과용인상재료 ; 플라스틱을 기재로한 기타 치과용조제품 ;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 미생물용 조제배양제 ; 진단용조제시약 또는 실험실용 기타 조제시약 • 화학원소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p>243 화학섬유 제조업</p> <p>2430 화학섬유 제조업 (3514)</p> <p>방적준비를 하지않은 필라멘트,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 또는 인조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섬유 스테이플토우의 방적사 제조 (1711) <p>24301 합성섬유 제조업 (35143)</p> <p>나이론, 비닐론,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터, 폴리에틸렌, 아크릴, 폴리프로피렌 등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스테이플섬유, 합성필라멘트토우 : 나이론,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의 강력사, 단사 : 합성모노필라멘트 <p>24302 재생섬유 제조업 (35142)</p> <p>철연유기폴리머 (중합체)를 화학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하여 유기폴리머 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및 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하지 않은 것)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재봉사, 복합사, 케이블사 제외) 소매용의 것 제외 •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 • 비스코스레이온, 큐프람모니아레이온 및 아세테이트섬유등의 셀룰로오스섬유, 카제인섬유 및 기타 단백질섬유
---	---

<p>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p> <p>구입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사출, 압출, 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형태의 일차제품, 적층판 및 기타 단순가공품, 가정용, 산업용 또는 기타용의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51 고무제품 제조업 (355)</p> <p>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3551)</p> <p>항공기, 차량, 불도저, 가구, 이동기계장비, 완구, 기타용 타이어 및 튜브의 제조, 타이어재생, 타이어재생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어 및 튜브의 수선활동 (50203) <p>25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35511)</p> <p>각종, 차량, 항공기용 공기쿠션, 또는 솔리드 고무타이어, 자전거·모터사이클용 타이어, 튜브 및 타이어 재생용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신품), 승용자동차용의 것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신품), 모터사이클 또는 자전거용의 것 항공기용의 공기타이어 (신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무제의 인너튜브, 솔리드타이어 또는 쿠션타이어, 교환성 타이어트래드 및 타이어플랩 <p>25112 타이어 재생업 (35512)</p> <p>낡은 타이어를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 스트립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p>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3559)</p> <p>기타 고무제품 제조활동으로서 전체 또는 일부가 인조 또는 천연고무, 고무 유사점으로 만든 판, 쉬이트, 스트립, 로오드,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 벨트와 벨팅, 위생용 또는 의료용의 고무제품, 의류 및 마루덮개 등과 같은 일차형태 또는 반제품, 완제품 상태의 비가황 또는 경화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무농장에서 고무생산 (0111) 탄성직물의류 제조 (1810) 신발제조 (1920) 캐멀백 스트립 제조, 재생고무타이어용 (2511) 의료용, 치과용, 외과용 기구 제조 (3311) 과학기구 제조 (3312) 팽창성 부유물인 뗏목 또는 보트제조 (3511 또는 351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피를 씌우지 않은 셀룰라 고무매트리스 제조 (3610) • 스포츠용품 제조 (3693) • 오락용품 및 장난감 제조 (3694) • 소매 고무재생 처리활동 (3720) <p>25191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35592 중관, 호스, 벨트제외)</p> <p>비가황고무의 배합물인 용액과 분산액을 제조하거나 비가황고무를 압출, 성형하여 봉, 튜브, 고무형재 및 와셔, 고무사 및 기타의 비가황 고무제품과 비경화 가황고무를 압출, 성형하여 고무산 및 고무끈, 고무판, 슈이트, 스트립, 봉 및 형재등과 같은 파이프, 호스 및 벨트를 제외한 일차형태 및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고무 (일차제품, 판·슈이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 (일차제품, 판, 슈이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 고무봉, 고무관, 고무형재, 고무디스크, 링 및 와셔, 고무사 ; 가황고무사와 고무끈, 비경화 가황셀룰과 고무의 판, 슈이트, 스트립, 봉 및 형재 ; 비경화 가황, 년셀룰자 고무의 판, 슈이트, 스트립, 봉 및 형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호스, 벨트 및 벨트제품 제조 (25192) • 경화고무제품 (25195) • 재생타이어용 캐멀백 스트립 제조 (2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 (25193) • 일차 고무제품의 단순가공품 제조 (25199) • 고무화 직물 제조 (25192) <p>25192 고무관, 호스 및 벨트제조업 (35592 중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제외)</p> <p>비경화 가황고무를 압출, 성형하여 튜브, 파이프 및 호스, 벨트 및 벨팅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접착 직물테이프 등 고무화직물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의관, 파이프 및 호스 (비경화 가황고무의 것) • 고무제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및 벨팅 (가황한것)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황 고무제의 튜브 및 기타제품 제조 (25191) • 타이어 코드직물 제조 (17294) • 구입한 고무관, 호스 벨트의 단순가공품 제조 (25199)
	<p>25193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35593)</p> <p>비경화 가황고무를 압출, 성형하여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무제의 의류의 의류부속품 (경화고무 이외의 가황한 것) 고무장갑 (외과용의것 포함), 잠수복, 방사선 방호복 비경화 가황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젓꼭지 포함), 콘돔 <p>25194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조업 (35594)</p> <p>일차형태의 경화고무를 제조하거나 경화고무를 압출, 성형하여 각종 경화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질고무와 그 제품 <p>25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3559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고무제품 제조활동으로서 기타의 비경화발포 또는 비발포 성형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구입한 일차형태의 비경화 고무제품을 절단, 접합, 표면가공 및 기타 단순가공하여 각종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경화 셀룰라 가황고무제품과 년셀룰라 가황고무제품 (기타고무제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화고무제품 제조 (25193) 	<p>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p> <p>252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6,3560)</p> <p>구입한 플라스틱 재료를 가공 처리하여 각종 형태 또는 용도의 플라스틱 성형품 또는 일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 신발 제조 (1920) 플라스틱물질의 편조물 및 발 물질 제조 (2413) 플라스틱물질 제조 (2413) 인조 또는 천연고무제품 제조 (2519) 의료용, 치과용, 내과용 기구 제조 (3311) 과학기구 제조 (3312) 자동차부품 제조 (3430) 항공기부품 제조 (3530) 덮개를 씌우지 않은 발포 플라스틱 매트리스 제조 (3610) 스포츠용품 제조 (3694) 장난감 제조 (3694)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 (3699) <p>25201 제 1 차 플라스틱 비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35601 중 건축용 제외)</p> <p>배합원료 및 재생원료 생산을 포함하여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압출, 사출, 성형하여 필름, 시이트, 판, 봉, 관등 일차 형</p>
---	---

<p>태의 플라스틱 비발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물, 종이 및 기타 보강재료에 플라스틱 물질을 완전 침적, 적층, 도포하여 마루, 벽, 천정의 덮개, 플라스틱 레더, 적층판, 벨트, 호스, 관등의 건설용 이외의 일차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한것) • 플라스틱의 관, 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화학물을 증합, 축합 등 화학적 방법으로 원료수지의 생산활동에 연관된 일차 성형제품의 제조 (2413) • 녹음테이프, 사진필름 등 감광재료의 제조활동에 연관되는 일차제품 성형활동은 그 특정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 • 경화라스틱 일차제품제조 (25203) • 마루덮개, 벽 또는 천장타일 및 기타 피복제품 제조 (25204) 	<p>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 (발포, 성형한것) • 플라스틱 발포용기 <p>25203 산업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5604,35603 일부)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고, 텔레비전, 라디오, 진공소제기, 선풍기, 전화기 및 기타 기계장비의 조립용 상자 • 플라스틱제의 전기 절연용 물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한 플라스틱 재료를 조합 및 가공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활동 (3320) • 건설용 플라스틱 성형품 제조 (25204)
<p>25202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35602) 구입한 연성 또는 경성의 플라스틱 물질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등 각종 용도 또는 형태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p>	<p>25204 건축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5603,35601 일부) 틀상 또는 타일상의 마루, 천정, 벽 덮개의 성형제조를 포함하여, 특수보강재, 충전재 및 기타 강화제등을 사용하거나 기</p>

<p>타 방법에 의하여 건물 및 구축물의 구성품, 목욕통 및 배관 조직, 변기용 시이트 및 커버, 수세용 물탱크 등의 건설용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제의 바닥덮개, 벽 또는 천장덮개 • 플라스틱제의 목욕통, 세면기, 화장실용팬, 변기용시이트와 커버, 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 • 조립식건축물(플라스틱제의 것) <p>25205 가정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35605*)</p> <p>플라스틱 재료를 성형하여 개인, 가정, 식탁 및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과 화장용품 <p>25206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35606)</p> <p>플라스틱 재료를 성형하여 병, 통, 상자 등 플라스틱 포장 및 선전용기 및 마개 등의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기타 물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차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용기를 제조할 경우 (25207) <p>25207 제 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35608)</p> <p>포일, 필름, 판, 봉, 관 등과 같은 비발포 일차성형 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절단, 압단, 적층, 도포 및 증착 등 성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일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전문기기 및 플라스틱 물질과 다른 물질을 조합하여 조립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 • 사진, 영화 및 녹음용 필름 제조 (24295) <p>25209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p> <p>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서 안전모자 및 기타 플라스틱 모자, 플라스틱 성형 의복, 플라스틱 성형 인형, 장난감 및 유사소형품 등을 성형하여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자 (플라스틱제의 것) • 플라스틱제의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 가구용부착구 · 코오치 워크 ; 부채, 핸드스크린, 테이블 및 탁,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	--

<p>26</p>	<p>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p> <p>이 중분류에는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비구조용 비내화도자기제품, 구조용 비내화점토제품, 내화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인조석 및 콘크리트제품, 석제품, 석면 및 압면제품 등의 제조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재절단 및 토사석 분쇄 처리활동이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되어 수행될 경우 (1410) • 범랑제품 제조활동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학요소 제조 (광학적으로 가공된) (3320) • 유리제의 조립 장난감 제조 (3694)
<p>261</p> <p>2610</p>	<p>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p> <p>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620)</p> <p>용융석영, 용융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 또는 각종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망입, 유리장식, 착색, 강화 또는 적층, 식각 및 기타 가공활동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사의 직물제조 (1711) • 단열용의 유리솜제품 제조 (2699) • 광섬유케이블 제조 (3130) • 광섬유 제조 (피복되지 않은) (3320) • 주사기를 포함한 의료시험장비 제조 (3311) 	<p>26101 제 1 차 유리 제조업 (36201)</p> <p>광학유리를 제외한 판, 구, 봉, 관, 스토프, 피, 분등 각종 형태의 일차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차유리 성형과정에 결합 또는 연관적인 특수처리에 의한 안전유리 또는 강화유리, 적층유리의 제조는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피, 유리제의구 (마이크로스피어 제외), 봉 또는 관 (가공하지 아니한 것) : 유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주입법 및 롤법, 인상법,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가공하지 않은 쉬트상)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용의 다공질 유리 및 기타 제품제조 (26105) <p>26102 제 1 차 유리 가공품 제조업 (36202 중 유리용기 제외)</p> <p>구입한 일차 유리제품을 용해하지 않고 절단, 조립, 가열 및 냉각, 변형, 식각, 강화, 표면처리, 착색 및 표면장식 등에 의하여 거울, 차량용 유리제품, 가정용 유리제품 상자 및 케이스, 시계등의 유리구성품, 곡상유리제품, 유리병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판유리를 재가열 및 냉각처리 또는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복합처리하거나 수지물질을 적층하여 안전유리를 제조할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리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슈트상의 것) •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 • 유리(슈트상의 것): 구부린것, 가장자리 가공한것, 조각한것, 구멍을 뚫은것, 에나멜을 칠한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지아니한 것 • 유리거울, 백미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한 일차제품의 각종 처리와 함께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목걸이, 팔찌 등 소형의 모조장신품과 광학유리제품을 제조할 경우(36953) 또는 (3320) • 포장용 유리병 및 앰플 등을 제조하는 경우는(26104) <p>26103 유리섬유 및 그 제품 제조업(36207)</p> <p>유리섬유, 유리사 및 기타 유리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제의 슬라이버, 로빙, 실 및 단연사 • 유리섬유제의 보일, 웹, 매트, 매트리스, 보드 및 기타 제품(직물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한 유리섬유로 단열재를 생산하는 경우(26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섬유 직물 및 유리섬유 직물제품 제조(17) <p>26104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36204)</p> <p>취부,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음식료품용, 화장품용, 화공약품용 및 의약품용 등 각종 포장용 유리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유리관을 절단 및 가열처리하여 유리병 및 앰플등의 포장용기를 제조할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제의 병, 단지, 약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 (유리제의 앰플, 마개, 뚜껑 및 기타 마개류 제외) • 유리앰플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용 유리상자 및 케이스제조, 구입한 재료 가공(26102) <p>26105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36203)</p> <p>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전구용 유리관 및 구, 유리에 자 및 절연부착물, 조명기구용 유리제품, 이화학, 위생 및 약제용 유리제품, 벽돌, 타일, 스투브 등의 건축용 유리제품, 시계유리, 신호등, 보온속병의 유리제품 등 기타 산업용 성형유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용 블록, 벽돌, 타일 및 압축 또는 주형유리제품(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것):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것, 블록, 플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유리 •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 및 이들의 부분품(전구, 음극선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부착물이 없는것) • 이화학용, 위생용 유리제품 • 유리제의 램프, 조명기구, 조명용사인, 조명용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과 부분품 • 유리제의 애자 • 진공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제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학가공한 유리제품제조 (3320) • 광학 유리생지 제조 (26108) • 포장, 운반용 유리용기 제조 (26104) <p>26106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36206)</p> <p>식탁 및 주방용 유리제품, 화장용 또는 문구 유리제품 등 가정용 유리제품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제품:식탁용, 부엌용, 화장실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 	<p>도에 사용하는것(병, 단지 및 이와 유사한 유리제의 것 및 램프가공의 장식용 유리제품)</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상용 유리장식품의 성형 제조활동 (26109) <p>26107 광학유리 생지 제조업 (36205)</p> <p>광학기구 제조에 사용되거나 교정렌즈용 특수 광학유리 생지를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용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안경용의 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것) • 유리제의 광학용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한 광학유리생지의 가공활동 (3320) <p>2610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209)</p> <p>달리분류되지 않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으로 유리제의 모조진주, 모조귀석 및 준귀석, 유사 장식용품, 장난감용 인조눈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제의 비드, 모조진주, 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과 모조신변 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	---

<p>기타 장식용 유리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제외), 직경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은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유리제 입방체 및 기타 유리 세공품: 기타 유리제품</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용 인조눈의 제조 (3320) <p>2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9)</p> <p>2691 일반도자기 제조업 (3610)</p> <p>유약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재료를 성형한 후 이를 고온에서 구어서 각종 도기, 자기, 토기, 석기제품 등의 비내화성, 비구조용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식탁 및 주방용품, 연관부착물 및 비품, 전기산업용품, 장식용품, 실험실 및 이화학용, 공업용 및 농업용품, 화분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화용 도자제품 및 건축용 내화 도자제품 제조 (2692) • 인공치아 제조 (3312) • 장난감 조립제조 (3694) • 모조장식용품조립 제조 (3699) • 구조용 도자제품, 비내화성 (2693) <p>26911 가정용 토기 제조업 (36101)</p> <p>각종의 점토토기, 석회토기, 장식토기등 투광성이 없는 다공질의 식탁 및 주방용품, 가정용 항아리, 약탕기, 시루, 적색토기,</p>	<p>질그릇 등의 가정용 점토, 토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기제의 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 • 화분 (토기제의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관 및 건축용의 도자점토제품 제조 (2693) <p>26912 가정용 도기제품 제조업 (36102)</p> <p>가정 및 음식점에서 주방용 식탁용 및 화장용으로 사용되는 도기 및 자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제의 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토기제품 제조 (26911) <p>26913 위생도기 제조업 (36103)</p> <p>싱크대, 세면대, 설치용 물탱크등 상하수도 조직과 통상적으로 연결되어 건물내에 고정 설치되는 도기연관장치물 및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에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위</p>
---	--

<p>생도기 제품은 가정용으로 분류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제의 싱크대, 목욕통, 수세식변기통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p>26914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도기 제품 제조업 (36105)</p> <p>상품운송 및 제품포장용 도기제의 용기를 포함하여 도가니, 증발접시, 연소통, 약절구 및 절구대, 여과판, 비커, 눈금용기 등의 이화학용 도기제품과 펌프, 밸브, 분류통, 기타 산업용 도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품 및 이와 유사한 용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산업용 도기제품 제조 (26915)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제의 애자; 도자제의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가기용의 절연용 물품 <p>26916 장식용 도기제품 제조업 (36106)</p> <p>장식 및 완상용 조상, 화병, 개인, 장신구 등의 도기 및 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기장식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및 기타의 장식적인 도자제품 <p>26919 달리분류되지않은 일반 도자기 제조업 (3610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일반 도자기제품 제조업으로서 일반용의 상자 및 케이스, 잉크스탠드, 램프갓 및 램프부품, 문 손잡이, 간판, 숫자, 문자등을 제조하는 활동과 도기제조용 조제원료를 생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p>
<p>26915 전기전자용 도기제품 제조업 (36104)</p> <p>도기질의 전기애자, 기계, 장비 또는 기기용 도기제의 절연부착물등 전기, 전자 산업용 도기 및 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692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3694)</p> <p>규산질의 화석분이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성형한 후 이를 구워서 내열성 또는 내화성 도자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6921 내화벽돌 및 유사 구조제품 제조업 (36941)</p> <p>각종 내화물용 원료를 단열 및 내화용 벽돌판, 블록, 타일 및 기타 구조용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포 함>

- 규산질흙의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
- 내화벽돌, 내화블록, 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 (규산질흙으로 만든 제품제외)

26922 내화도가니 및 기타 성형내화제품 제조업 (36942)
 각종 내화물용 원료로 도가니 및 구조용 이외의 기타 성형내화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929 달리분류되지않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36943, 36949)
 달리분류되지않은 내화물 제조업으로서 내화용 시멘트, 몰타르등 부정형 내화물과 정형 또는 부정형의 내화물용 조제 배합원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내화시멘트, 내화모르타르, 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기타 혼합물
- 불에 굽지않은 내화성의 제품 :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

2693 비내화 구조점토제품 제조업 (3691)
 유약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점토를 성형하고 구워서 벽돌, 브릭, 판석, 기와, 타일, 파이프, 도관 및 관연결구류, 스토브라이닝, 굴뚝 등의 구조용 비내화 점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구조용 내화도자제품 제조 (2692)

26931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36911)

흙을 구워서 건물벽, 산업구조물 등에 통상 사용되는 벽돌, 포장용브릭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비내화성 도자제의 건축용벽돌, 바닥갈개용브릭, 서포트타일, 필러타일

26932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12)

흙을 구워서 건물의 지붕에 사용되는 기와, 굴뚝통, 굴뚝갓, 굴뚝내장제 등의 지붕용 점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기와, 굴뚝통, 굴뚝갓, 굴뚝용 내장제, 건축용 장식품 및 건설용품

26933 벽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업 (36913)

흙을 구워서 벽, 벽난로 또는 도로포장용에 사용되는 타일, 판석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 :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제 외>

- 포장용 브릭 및 유사제품 제조 (26931)

<p>2693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내화 구조점토제품 제조업 (369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비내화 구조점토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흙을 성형하고 구워서 파이프도관, 연탄난로라이너 등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내화성 도자재의 관, 도관, 흙통 및 관의 연결구류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철 용광로 슬래그 생산활동 (2711) • 킨스 또는 잉글리쉬 시멘트 제조 (26943) • 치과용 시멘트 제조 (3311)
<p>2694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p> <p>포트랜드, 천연메이슨리, 포조라나, 로만 및 킨스시멘트 등 각종형태의 시멘트, 수경성 석회, 소석회, 생석회 및 톨로마이트 석회와 프라스터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 시멘트 제조 (2423) • 내화용 시멘트 제조 (2692) • 시멘트 또는 프라스터의 제품 제조 (2695) 	<p>26942 석회 제조업 (36922)</p> <p>석회로를 이용하여 생석회, 소석회 및 수경성 석회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석회 <p>26943 프라스터 제조업 (36923)</p> <p>킨스시멘트, 잉글리쉬시멘트, 하소석고를 포함해서 황산칼슘 기저의 프라스터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스터(하소한 천연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것)
<p>26941 시멘트 제조업 (36921)</p> <p>알루미눔시멘트, 스투그시멘트, 수퍼셀데이트시멘트, 포조라나시멘트, 로망시멘트, 점토시멘트, 섬유질시멘트, 수경성시멘트, 메이슨서티시멘트, 천연시멘트등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클링커 • 포트랜드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 슬랙시멘트 및 이와 유사한 수경성시멘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으로 특별히 가공한 프라스터 제조 (3311) • 석고 및 경석고 채취 활동 (14102) <p>2695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 제품 제조업 (3693)</p> <p>석면시멘트 또는 셀룰로스 섬유시멘트의 제품을 포함하여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등의 광물성 접착제와 나무 및 식물성 섬유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을 혼합, 응집하거나 광물성 물질을 천</p>

<p>연 또는 인조수지 등의 비광물성 접착제로 응집, 성형하여 레미콘 및 혼합물 타르, 인조석 등 각종 시멘트, 프라스터 및 콘크리트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 및 식물성 물질을 천연 또는 인조수지등의 비광물성 접착제로 응집, 성형한 제품 제조 (2010) <p>26951 레미콘 및 모르타르 제조업 (36932)</p> <p>물의 첨가여부를 불문하고 시멘트 또는 비광물성 접착제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을 혼합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콘크리트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p><제 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스터 혼합물 제조 (26952) <p>26952 건축용 섬유시멘트제품 제조업 (36931)</p> <p>건축용 셀룰로스섬유 또는 석면시멘트 및 프라스터제품 제조를 포함하여 셀룰로스 등에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등의 광물성 접착제를 혼합, 응집, 성형하여 건축용 섬유시멘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스터제품 또는 프라스터를 기재로 조합한 제품 • 석면시멘트제품, 셀룰로스 화이버 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p>26953 콘크리트 기와, 벽돌 및 브릭 제조업 (36943)</p> <p>중량 또는 경량 혼합재료로 토목용, 건축용, 방파용 벽돌, 브릭,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드, 브릭 (식물성섬유, 짚, 목재의 대패밥, 광물성 결합제로 응결한것) •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제의 타일, 판석, 벽돌 및 이와 유사한 제품 <p>26954 콘크리트조립 구조재 및 철강보강 제품 제조업 (36935)</p> <p>문틀, 문지방, 벽판 등 건물조립용 구성품, 건물에 부착되는 장치물, 철강을 보강한 토목공사용 콘크리트 제품 및 관련부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제의 조립식 건축자재 (건축 또는 토목공사의 사용에 한함) <p>26955 기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36933)</p> <p>화학반응, 발포 및 기포제등을 첨가하여 성형한후 증기양생</p>
---	---

<p>또는 기타 처리방법으로 기포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철근 보강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p> <p>26959 달리분류되지 않은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제품 제조업 (36939)</p> <p>달리분류되지 않은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으로서 철근 보강재를 사용하지 않는 받침대, 묘석, 소형봉, 관, 지주등의 토목건설용 콘크리트제품, 보강재의 사용여부를 불문한 조상, 가구, 모형, 화병, 화분, 용기, 실험실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제의 기타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와 이들의 제품: 천연석재를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 세편 및 분: 응결슬레이트의 제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석활동에 결합된 석재가공활동 (1410) • 맷돌, 연마석 및 유사제품제조 (26992) <p>2699 달리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99)</p> <p>달리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서 압면 및 석면제품, 광물성 절연제품, 마찰재 및 연마재 아스팔트포장재 또는 이와 유사한 콜라르 피치의 제품, 가공운모 및 운모제품, 비전기용 흑연제품(내화물제외) 및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696 석제품 제조업</p> <p>26960 석제품 제조업 (36994)</p> <p>화강암, 대리석, 판석 및 기타 석재료를 절단, 성형, 가공하여 건물 및 기념비용 석제품, 포장용판석, 가구 및 장치물, 조상, 병, 그릇 및 용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재에 글자 새김활동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석, 트래버틴 및 엘러바스터, 가공한 것과 이들의 제품 (포석, 연석 및 판석, 타일, 큐브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제외):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 세편 및 분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솜의 제조 (2610) • 유리제의 인조보석 (26109) • 화학적으로 제조되는 합성귀석 (24119) • 인조보석을 가공하는 경우 (36910) • 전기용 흑연봉 제조 (31) <p>26991 석면제품 제조업 (36911)</p> <p>석면혼합제품, 석면사 및 직물, 종이, 판 및 펠트, 석면 및 유사물질 기저의 마찰재, 필터브릭, 타일, 충전재, 헬멧 및 장갑, 특수 보호용 의복 등 각종 석면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p>

말한다.

<포 함>

-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한 혼합물, 이들 혼합물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

<제 품>

- 건축용 석면종이 제조 (2101)

26992 연마재 제조업 (36993 중 강철습연마재 제외)

천연석, 응집된 천연연마재 및 인공연마재로 수동, 페달 및 동력기계용 등의 연마석, 연마휠 및 유사 연마재와 종이, 직물, 실 및 기타 재료에 천연 또는 인조연마재용 분말을 접착제로 접착시켜 연마포, 연마지, 연마사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밀스톤, 그라인드스톤, 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것 (천연석, 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연마재 또는 도자제의 가공한 석재 및 이들의 부분품) :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재료, 종이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

<제 외>

- 강철습 연마재

26993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35403)

아스팔트 및 유사물질의 건설용제품과 천연 아스팔트, 천연역청물질, 석유역청물질, 광물성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등을 기저로하여 역청물질 혼합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 역청질혼합물 (천연아스팔트, 석유아스팔트, 광물성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저로 한것에 한한것)

<제 외>

- 역청물 도포지 제조 (2101)
- 타르물 처리 목재 생산 (2010)

26994 암면 및 기타 유사제품 제조업 (36992)

석면을 제외한 광물면 및 절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스래그울 및 유사 광물면, 풍화된 흑운모의 가공, 팽창점토 및 유사 광물제품, 화석 및 탄화마그네슘, 유리섬 가공품등과 같은 광물질의 절연, 단열, 반응제와 브록, 벽돌, 타일, 튜브, 코드 등의 저밀도의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기타 비금속 광물성제품 (광물성울, 팽창한 광물성재료, 운모, 운모의 제품)

<제 외>

- 유리솜 제조 (26103)

26995 비금속광물 분쇄 처리업 (36995)

채굴 및 채취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토사석, 중정석, 석고, 활석, 석영, 천연보석등 연료광물 이외의 비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 스톨을 파쇄, 분쇄, 마쇄하여 쇄석 및 분말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269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6999 인조보석 제외)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서 인조커런덤, 가공운모 및 운모제품, 현무암을 용해하여 성형한 제품, 인조흑연 및 내화물 이외의 비전기용 흑연제품, 반제품 상태의 탄소제품, 이탄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저로한 조제품 (반제품형태의 것)
- 인조커런덤
- 기타 비금속 광물성 제품 (광물성을 팽창한 광물성 재료, 운모, 운모의 제품, 비전기용 흑연 제품 또는 기타 탄소 제품)

<제 외>

- 산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품 제조 (36910)
- 합성귀석 제조 (24119)

<p>27 제 1 차 금속산업 (37)</p> <p>각종 금속광, 금속스크랩 또는 찌꺼기를 제련 및 정련, 용해, 합금처리, 주조, 압출, 압연 및 연신, 금속표면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일차 형태의 금속반성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71 일차 철강 산업 (371)</p> <p>철강분, 철강괴, 펄들바, 파일링, 빌렛, 부름, 스톱, 대, 판, 궤도, 봉, 선재, 관 및 기타 각종 형태의 일차철강재 및 표면처리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캐철광석의 생산활동 (1310) • 독립적인 코우크스로의 운영활동 (2310) • 구입한 금속선을 가공하여 철선제품을 제조 (28992) • 전기용 절연선 및 절연케이블을 제조 (31300) • 주물제품제조 (273) • 고철분쇄처리 및 기타 재생 금속재의 가공 생산처리 (371) <p>2711 제철 및 제강업 (3711)</p> <p>철광석, 철강, 재생용 고철 및 부스러기등을 고로, 전기로, 반사로 등 각종 용해로 처리하여 선철, 주철, 철강, 합금철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압연 및 연신활동이 제철, 제</p>	<p>강활동에 결합, 연관될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봉, 판, 관 및 기타 형상 상태의 열간 또는 냉간 압연 제품만을 생산할 경우 (2712) <p>27111 제철업 (37111)</p> <p>철강석, 고철등으로 선철, 주철, 경철 등의 철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철활동과 결합되어 운영되는 합금철, 제강, 압연활동이 별도로 파악될 수 없을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철과 경철 (피그, 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 <p>27112 합금철강 제조업 (37112)</p> <p>구입한 철강재 및 합금용 비철합금재로 합금철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망간 (망간철) • 페로크로뮴 • 페로니켈 • 기타 페로일로이 • 잉곳, 기타 일차형상의 것 및 스텐인레스강의 반제품 또는 기타 합금강
--	--

<제 외>

- 제철, 제강 활동과 결합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27111) 또는 (27113)

27113 제강업 (37113)

선철, 고철을 처리하여 강괴, 퍼들바, 파일링, 형강 등의 일차 강재 또는 반성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금강, 압연 및 강관 제조활동이 제강활동과 연결되어 운영될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잉곳(기타 일차형상의것) 및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27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제철 및 제강업 (37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제철 및 제강업으로서, 순철, 원철, 바이메탈용등의 전자기 재료용 철강 및 분말야금용 철강분말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럼프, 펠레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것) 및 순도가 최저 전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프, 펠레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것) : 입과분(선철, 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에 한한다)

<제 외>

- 구입한 철강재를 분쇄하여 철강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27129)

2712 철강압연, 연신, 압출 및 제관업 (3712)

용해 또는 제철, 제강을 하지 않고, 구입한 강괴 및 형강, 기타 일차 형태의 강재를 열간 및 냉간압연, 압출 및 기타 성형 처리하여 판, 봉, 선, 관 및 반제품 형태의 기타 형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주물강관 제조 (27311)
- 제강, 제철활동에 결합 또는 연관된 압연, 압출, 연신활동은 (2711)
- 용해로 운영 (27111)

27121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37121)

구입한 철강재를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하여 강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 등 강관을 제외한 각종 형태의 일차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열간압연강재를 연관적으로 냉간압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것)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연간압연보다 더 가공

<p>하지 않은것, 폭이 600밀리미터 이하의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인레스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또는 비합금강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것,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 규소전기장 또는 고속도강의 제품제외) • 스테인레스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또는 비합금강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것, 폭이 600밀리미터 이하의 것, 규소전기장 또는 고속강도의 제품제외)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클래스, 도금 또는 도포한것 제외)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클래스, 도금 또는 도포한것) • 규소전기장의 평판압연제품 • 고속도강의 평판압연제품 • 스테인레스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선 제조 (27124) • 강관 제조 (27123) <p>27122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37122)</p> <p>구입한 열간압연강재를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하여 철강선과 강관을 제외한 각종형태의 일차 냉간압연 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것,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것)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것, 폭이 600밀리미터 이하의것) • 스테인레스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것,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것, 규소전기장 또는 고속도강의 제품제외) • 스테인레스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것, 폭이 600밀리미터 이하의것, 규소전기장 또는 고속도강의 제품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관 제조 (27123) • 철강선 제조 (27124) <p>27123 강관 제조업 (37123)</p> <p>주철강관을 제외하고, 구입한 재료를 단조, 인발, 압축 또는 고행봉에 구멍을 뚫거나 강판등을 용접하여 무계목강관, 단접강관, 용접강관, 박질강관등의 강관 및 관연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강관 또는 중고강관을 인발 또는 재생인발하여 강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철강제 (주철제 제외)의 무계목의 것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의 케이징 튜빙과 드릴파이프, 철강제 (주철제 제외)의 무계목의 것 • 철강제 (주철제 포함)의 기타의 관, 파이프 증공프로타일 (무계목의 것) •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철강제의 무계목 제외) •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징, 튜빙 (철강제의 무계목 제외) • 철강제의 기타의 튜브, 파이프 및 증공프로파일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p><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철강관 제조 (27311) • 제철, 제강활동과 결합되어 강관을 제조하는 경우는 (27111) 또는 (27113) <p>27124 철강선 제조업 (37124)</p> <p>구입한 선재, 봉, 바 등의 일차강재를 연신하여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생산된 철강선을 연관적으로 더 이상 가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 스테인레스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선 	<p><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한 철강선의 가공활동 (28992) <p>27129 달리분류되지않은 철강압연, 연신 및 압출, 제관업 (37129)</p> <p>달리분류되지않은 판, 봉, 선 및 반제품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순철압연품, 단공강재, 용접형강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단조, 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압연후 또 임가공된 것 포함) • 스테인레스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봉 (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 • 스테인레스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봉 : 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고속도강 또는 실리콘, 망간강의 봉 제외)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열간압연, 열간압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철강제의 강시판과 용접된 형강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 기타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는것 포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철강제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포함) • 스테인레스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봉 (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것,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고속도강 또는 실리콘망간강의 봉) :중공드릴 봉 • 스테인레스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형강 <p>2719 달리분류되지않은 철강산업 (3719)</p> <p>구입한 철강재, 압연강재 및 각종 형재의 표면처리 및 가공, 절단, 분쇄하여 중간재 상태의 특수용 철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의 분쇄처리 (371) • 주철강재 생산 (2731) • 단공강재 생산 (27129) • 재생 금속재료 회수처리 (371)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금속처리 (2892) • 강재성형 과정에 연관된 표면가공활동은 그 성형활동에 따라 분류 <p>27191 표면처리강 제조업 (37192)</p> <p>구입한 철강재를 적층, 피복, 광택, 도장, 도색, 주름처리 및 기타 표면 가공처리하여 적층강재, 석판, 아연도판, 도장철강판, 도장금속선재, 비닐강판, 주름철강판, 표면처리강재를 생산하는 산</p>	<p>업활동을 말한다.</p> <p>27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철강산업 (3719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철강산업으로서 구입한 철강재를 분쇄하여 철강분 제조와 철강재를 특정 일차형태로 절단, 가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272 일차비철금속 산업</p> <p>귀금속을 포함한 각종 비철금속의 분, 피, 바, 빌렛, 스톱, 판, 대, 봉, 관, 선 등 각종 형태의 일차비철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알루미늄원광 (보오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p> <p>2721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p> <p>각종 용해로를 설치하고 동, 알루미늄, 연, 아연, 니켈, 주석, 마그네슘 및 귀금속등의 비철금속광 또는 비철금속 부스러기를 제련 및 정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련 및 정련에 연관되는 합금, 압연 등 각종 활동을 병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련 및 정련을 하지 않는 사업체가 비철금속을 분말 또는 일정형태의 조각으로 분쇄처리할 경우에는 (27290) • 수집한 재생용 비철금속의 단순한 분쇄 또는 회수처리 활동 (371)
---	--

27211 동 제련 및 정련업 (37211, 37221)

동광석 또는 동부스러기를 처리하여 동을 제련 및 정련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동합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동의 매트와 시멘트동
-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정해정제용의 동양극
- 정제한 동과 동합금 ; 동의 마스터얼로이

27212 알루미늄 제련 및 정련업 (37212, 37222)

알루미늄 원광 (보오크사이트),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부스러기를 처리하여 알루미늄을 제련 및 정련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알루미늄원광을 처리하여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알루미늄 합금 제조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알루미늄괴
- 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 인조커런덤제외

27213 연 제련 및 정련업 (37213, 37223)

연광석, 연의 부스러기 (설) 및 찌꺼기 (드로스) 등을 처리하여 연을 제련 및 정련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연합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 함>

- 연 및 연합금

27214 아연 제련 및 정련업 (37214, 37224)

아연광석, 아연의 부스러기 및 찌꺼기를 처리하여 아연을 제련 및 정련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아연합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아연 및 아연합금

2721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 (37219, 3722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으로서 금, 은, 백금등의 귀금속 광석과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간, 크롬, 텅스텐, 폴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등의 비철금속 광석과 이들의 부스러기 및 찌꺼기를 처리하여 제련 및 정련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기타 비철금속합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은 (가공하지 아니한 것)
- 금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백금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니켈의 매트,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 생산물
- 니켈 및 니켈합금
- 주석 및 과석합금
- 텅스텐, 폴리브덴, 탄탈륨, 마그네슘, 코발트, 카드뮴, 티타늄, 지르코늄, 베릴륨, 갈륨·하프늄, 인듐, 니오븀 및 탈륨과 이들

의 피 및 웨이스트, 스크랩과 이들의 분(마그네슘의 분 제외):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제련의 기타 중간 생산물(가공하지 아니한 것)

- 비스머드, 안티모니, 망간, 크로뮴, 케르마늄 및 바나듐과 이들의 제품 마그네슘 분
- 서메트와 그 제품

2722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3723 일부)

용해로를 설치하지 않고, 주로 구입한 제련 및 정련한 일차 비철금속재 또는 비철금속합금재를 압연, 압출, 인발, 기타 처리 방법에 의하여 일차형태의 박판, 쉬이트, 플레이트 봉, 바, 대, 선 및 관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압연활동에 결합된 적층 및 표면처리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외>

- 비철금속의 분, 조각, 페이스트의 제조(2729)
- 비철금속분의 증착필름 및 쉬이트 제조는 그 기저 재료에 따라 분류
- 압연, 압출이외의 방법으로 비금속판 박판을 제조(27290)

27221 신동품 제조업(37231)

주로 일차형태의 황동, 청동등의 동 및 동합금을 압연, 압출 및 인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 동의 봉과 프로파일
- 동의 선
- 동의 판, 쉬트 및 대(두께가 0.05 밀리미터를 초과한 것)
- 동의 박(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동제의 관 또는 관 연결구류

27222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37232)

주로 일차형태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을 압연, 압출, 인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 알루미늄의 선
- 알루미늄의 판, 쉬트 및 대(두께가 0.2 밀리미터 초과한 것)
- 알루미늄의 박(두께가 0.2 밀리미터 초과하지 아니한 것)
- 알루미늄제의 관과 관 연결구류

27229 달리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37239)

달리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압연 및 인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은 (일차 반제품의 것)
- 금 (일차 반제품의 것)
- 백금 (일차 반제품의 것)
- 니켈의 붕과 프로파일
- 니켈의판, 쉬트, 대 및 박
- 니켈제의 관과 관 연결구류
- 연의봉, 프로파일과 선
- 연의판, 쉬트, 대 및 박, 분과 플레이크
- 연의판, 쉬트, 대 및 박, 분과 플레이크
- 연제의관과 관 연결구류
- 아연의 붕, 프로파일 및 선 : 아연의 판, 쉬트, 대 및 박
- 아연제의관과 관 연결구류
- 주석의봉, 프로파일과 선
- 주석의판, 쉬트, 대 및 박 : 주석의분 및 플레이크
- 주석제의관 및 관 연결구류
- 마그네슘의 분 (가공하지 아니한 것)

2729 기타 일차 비철금속산업

27290 기타 일차 비철금속 산업 (3723 일부)

압연, 압출, 연신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판, 봉, 선, 바, 대 및 관을 제외한 일차형태의 비철금속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로 용해로 없이 구입한 일차 또는 반성비철금속재로 비철금

속분말, 조각, 프레이트 제조 또는 표면처리 재생산 등이 포함된다.

<포 함>

- 은의 분
- 금의 분
- 백금의 분
- 금을 입힌 비금속 또는 은 (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것)
- 은을 입힌 비금속과 백금을 입힌 비금속, 은 또는 금 (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동이 분과 플레이크
-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 아연의 더스트, 분과 플레이크
- 주석의 붕, 프로파일과 선
- 비스머드, 안티모니, 망간 크롬, 게르마늄 및 바나듐과 이들의 제품

<제 외>

- 폐 비철금속 및 스크랩의 분쇄처리 및 기타 가공활동 (3710)
- 금속 증착필름 또는 접합지 제조는 그 기저제의 종류에 따라 (21017) 또는 (2520)에 분류

273 금속 주조업

철강 및 비철금속과 그 합금등으로 거칠은 상태의 금속 주조

<p>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장비 및 조립제품등 특정 제품을 직접 조립하는 사업체에서 조립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그 조립되는 특정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 <p>2731 철강 주조업 (3713)</p> <p>주철관을 포함한 주괴 주형, 기계장비용 주물, 주철 솥, 맨홀 뚜껑 등 거친상태의 철강 주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7311 주철강관 제조업 (37131)</p> <p>구입한 철로 주형, 또는 원심분리등에 의하여 주철강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강제 (주철제포함)의 관, 파이프, 중공프로파일 <p>27312 선철주물 주조업 (37132)</p> <p>구입한 선철로 주철관 이외의 선철(회)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금철주물 제조 (27319) <p>27313 강주물 주조업 (37133)</p> <p>구입한 강재로 주강관 이외의 강주물을 제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합금강 주물 제조도 포함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단 주철강 주물제조 (27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금철강 주물제조 (27319) <p>27314 가단철강 주물 제조업 (37134)</p> <p>구입한 철강 및 합금철강재로 가단철강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27319 달리분류되지않은 철강 주조업 (3713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철강 주조업으로서 구입한 재료로 합금철강, 주물, 정밀주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금강 주물제조 (27314) <p>2732 비철금속주조업</p> <p>주로 비철금속 및 그 합금으로 거칠은 상태의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27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37241 일부)</p> <p>주로 알루미늄 및 그 합금으로 거칠은 상태의 알루미늄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27322 동 주물 제조업 (37241 일부)</p> <p>주로 동 및 그 합금으로 거칠은 상태의 동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2732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철금속 주조업 (37241 일부)</p> <p>달리분류되지않은 비철금속 주조업으로서 알루미늄, 동을 제외한 비철금속 및 그 합금으로 거칠은 상태의 기타 비철금속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된다.</p>
---	--

<p>28. 조립 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p> <p>금속가구와 각종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각종 조립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발생기 및 중앙난방 증기보일러, 금속압단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와 금속임가공 처리업,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금속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조립금속제품들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금속 제품의 제조 (36910) • 금속가구 제조 (36101) • 기계 및 장비 제조 (29)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용 또는 동력용 보일러의 부품제조 (28130) • 조립된 철도궤도 및 철도궤도 연결 부착물 제조 (28999) • 선박 또는 부유구조물의 부분품 제조 (3511) <p>28111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38131)</p> <p>금속장갑문, 보통금속제문, 창고문, 격납고문, 스크린도어, 틀링도어, 샷시문, 셔터문, 창틀, 비상문 및 유사 건물부착용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제 또는 알루미늄제의 문,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p>281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p> <p>철 및 비철금속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발생기 및 중앙난방 증기보일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8112 건축용 장식금속 공작물 제조업 (38132)</p> <p>울타리 및 말뚝, 발코니, 베란다, 계단 및 사닥다리, 창살, 난간 및 비상구, 금속쇠시리 및 유사 건물부착용 금속장식공작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811 구조금속제품 제조업</p> <p>철강제 또는 비철금속제로 건물, 교량, 선박, 철탑 및 기타 구조물의 금속구조재 및 부분품, 각종 구조용철물 및 관련제품 구조용 금속판제품, 건축용 장식금속공작물, 금속 조립건물등 건설용지위에 직접 조립, 설치, 축조될 수 있는 상태의 이동가능한 금속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직접 제조한 구조재로 금속구조물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28113 구조용 금속판 제품 제조업 (38133)</p> <p>금속지붕벽면 및 물흡통, 난방, 환기, 공기조절 및 먼지흡수장치용의 철판제품, 도관 및 관개용 금속판제품, 처마용 및 채광용의 철판제조, 간이차고, 구조용 금속판상자등의 구조용 철판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8114 금속구조재 제조업 (38135)</p> <p>관, 봉, 판등 각종 강재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조물의 금속구조재 및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재의 다리와 교량, 탑과 격자주, 교량 및 탑구조재, 격자주, 지주, 기둥, 대들보, 형구, 아취, 서까래, 전망대 지주, 수문, 교각, 각주, 방파제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재의 조립식건축물 (28119) 	<p>마개 등이 부착되거나 계측눈금이 그려질 수도 있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 드럼, 캔, 상자등 상품운반 및 포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용기의 제조는 그 크기에 관계없이 (28993 : 상품포장용기 제조업) • 위의 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에 기계적 장치나 가열장치가 부착된 것 (2912 :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 운송용 차량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컨테이너 제조 (3420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p>28119 달리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38132, 38133, 38139)</p> <p>달리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 제조업으로서 구입한 철강재를 가공하여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부분품, 금속제 거푸집 및 건축용 형틀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재 또는 알루미늄의 조립식건축물 	<p>28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38194 중 난방용 온수 및 저압증기 보일러)</p> <p>비전기식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 저압증기보일러 및 라지에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용 부속기기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 철강재의 방열기 (중앙난방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가열식의 것 제외) :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전시가열식의 것 제외), 철강재 • 중앙난방용보일러 (온수 또는 저압증기 발생) • 중앙난방용 보일러 (저압증기 또는 온수 발생한것)의 부분품
<p>28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p> <p>압축, 액화가스용 금속용기를 포함하며, 중앙난방용 보일러 및 라지에터 (방열기), 저장 또는 가공용 장치물로 설치될 수 있는 상태의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금속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용기는 금속이외의 물질로된 뚜껑, 덮개</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식 난방기기 제조 (2930) • 증기보일러 제조 (2813) <p>28122 금속탱크 및 기타 저장용기 제조업 (38136)</p> <p>압축 및 액화가스용기를 포함하며, 용지위에 설치될 수 있는 통 및 탱크선박 및 공업용 기계장비에 부착될 수 있는 용기, 가공 또는 저장용 금속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용기가 부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이를 함께 생산할 경우에는 그 제조되는 기계장비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재료용의 철강제, 알루미늄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기계장치나 가열,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한 것) • 철강제, 알루미늄제의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제의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것 제외) (2899) 	<p>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 <p>28132 증기발생기 제조업 (38134)</p> <p>증기 및 과열수발생 보일러와 관련 보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기발생보일러 (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온수보일러 제외)와 과열수 보일러 및 이들의 부분품 • 보일러용 부속기기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및 이들의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난방온수보일러 및 저압증기보일러 제조 (28121)
<p>2813 증기발생기 제조업</p> <p>28131 핵반응기 제조업</p> <p>동위원소 분리기를 제외한 각종 목적용 핵반응기를 제조하는</p>	<p>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서비스업</p> <p>2891 금속압단,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p> <p>단조, 압축, 압연 및 회전조형 또는 분말야금의 방법으로 각종 상품의 반제품, 완제품등의 특정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개별 제품들은 다른 산업활동 영역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생산될 수 있는 제품류의 특성을 갖게 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분말의 제조는 (2710,2720) <p>28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8141)</p> <p>금속분말을 혼합, 주입, 압착, 소결등의 방법으로 기계부품을 포함한 각종 금속분말야금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자석 및 자성재 제조 (2710,2720) <p>28912 금속압단 및 압형제품 제조업 (38142)</p> <p>활자제조를 포함하여 금속판 및 브릭등을 단공, 처내기 (타발) 굽히기, 휘기, 길이, 짜기, 압축등의 방법으로 기계장치 부분품, 의료용품, 장식용품, 가구부속품, 가정용품, 모형등의 특정제품 및 조립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압단제조에는 간단한 용접결합, 손잡이 또는 부착물 부착, 그 표면처리활동등의 부수적인 활동이 병행될 수 있으나 이들제품과 다른 부분품을 연관적으로 조립하여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p> <p>2892 금속처리서비스업</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및 금속제품의 도금, 표면정리, 전해연마, 착색, 조각, 인쇄, 경화, 열처리, 표피제거, 모래취부가공처리, 용접, 연마 및 기타 전문처리 활동이 이 분류에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또는 구축물에 엘리베이터, 중앙공기조절장치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거나, 공장에 산업용 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전문도급건설업자로 보아 (4530 : 건물부착물 설치공사업)으로 분류 <p>28921 금속열처리업 (38143)</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철강재, 금속제품, 기계부분품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8922 전기도금 및 관련처리업 (38144 중 전기도금 , 38149 중 표면연마 포함)</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금속 및 금속제품을 전기적 방법으로 증착, 도금 및 기타 피막형성 및 착색활동과 전해연마등 전기적 표면가공 처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금속제품의 전기도금제품 생산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28923 용융도금 및 포장업 (38144 중 전기도금 제외)</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금속 및 기타 물질에 용융도금, 에나멜,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 물질의 도장 및 피복처리, 인쇄, 범랑처리등 비전기적 방법에 의한 피막형성 증진 및 착색 활동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p>289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금속처리서비스업 (38149 중 전해연마 등 금속표면 연마제외)</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금속처리서비스업으로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인쇄용 이외의 금속식각 및 조각품 제조활동과 금속 열처리, 도금, 도장, 착색 및 전기적 표면처리 이외의 금속처리 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나사누금내기등과 같이 표면처리를 함으로서 특정제품형태로 변형 또는 가공될 경우에는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p>	<p>도기 및 면도날, 손톱깎기 및 기타 날붙이의 금속제 손잡이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칼(기계적 것 제외) 및 가위 및 아들의 날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서 대상인것 포함) 칼붙이의 기타 제품: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용 칼 및 칼날 제조(28936) 무기용 대검, 단검, 창 및 칼집 제조(28999)
<p>28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p> <p>칼 및 칼날, 날붙이 및 가정용 금속제품, 식탁용 또는 주방용 금속제품, 농업용, 목공용, 대장간용, 기계조립작업용, 철판작업용 및 기타 상업용등의 수공구, 톱 및 톱날, 기계용 또는 공구용 칼날 및 칼날을 포함한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 자물쇠 및 건물, 가구, 차량 또는 기타 기계장비에 부착되는 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제 그릇의 제조는(2899) 귀금속제의 제조(3691) 수지식 구동공구의 제조(2992) 	<p>28932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38111)</p> <p>포크, 수저, 저, 국자, 식탁용칼등 귀금속 이외의 금속제 식탁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푼, 포크, 국자, 스킴머, 메이커서버, 생선용칼, 버터용칼, 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 <p>28933 수공구제조업 : 농업용제외 (38113)</p> <p>농업용 이외의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장공이, 미장공, 목수, 가구제조공, 마구공, 제본공, 시계제조공, 광부, 도로공, 석공, 채석공등이 사용하는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28931 날붙이 제조업 (38112)</p> <p>식탁용 이외의 각종 용도의 칼 및 칼날, 가위, 비전기식 면</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공구 줄, 금속절단용가위, 수동식의 스패너, 블루우렘프 및 클램프) <p>28934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38116)</p> <p>농림업 및 정원용의 각종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래, 삽, 곡괭이, 포오크와 쇠스랑, 도끼, 빌후크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의 전지가위, 낫, 초절기, 울타리 전단기, 제재용 쇠기 및 기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공구 <p>28935 톱 및 톱날 제조업 (38116)</p> <p>나무, 금속, 석재 및 기타 재료를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수동식 톱 및 톱날, 기계용의 톱날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식 톱 : 각종의 톱날 <p>28936 호환성공구 제조업 (38236)</p> <p>기계용 또는 수공구용 칼 및 칼날을 포함한 호환성공구, 공구용의 판, 봉, 팁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공구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 (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다이와 착감용 또는 굴착용 공구 포함) : 기계용칼 : 공구용의 판, 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 (소결한 금속탄화물제 또는 서멧트제의 것으로서 정착하지 아니한것) <p>28937 일반철물 제조업 (38117)</p> <p>자물쇠 및 열쇠제조를 포함하여, 문 및 창문용, 건물용, 가구용, 선박 및 차량등 운수장비용, 가방용 및 기타 일반용의 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구 성격이 아닌 비금속제의 옷걸이, 타올걸이, 커어튼 및 차량등의 부착물 제조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속제의 자물쇠, 비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제 열쇠 경첩, 카스터, 모타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건물용으로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가구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비금속제의 모자걸이,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 자동문 폐지기
--	--

28939 달리분류되지않은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38119)

달리분류되지않은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제조업으로서 구
두손, 비전기식 다리미 및 인두, 연탄집게, 부지깥이등 수공구 성
격의 가정용 기기, 식탁, 주방, 가정용 물품과 부품을 제
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수동식 소형기구 제조, 주방 또는 가정용 (28994)

2899 달리분류되지않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싱크 및 기타 금속위생용품, 상품포장 또는 운반용의 용기
및 마개류, 금속파스너, 시계용 이외의 각종 금속스프링, 금속선
가공품, 검류, 창 및 이와 유사한 무기, 식탁 또는 주방용의
용기류, 식품가공, 조리, 제공에 사용되는 주방용 수동식 소형기
구, 금속제 사무용품(가구제외), 금속제 금고, 철도레도 및 궤
도용 부착물, 소상 및 기타 금속장식품, 바늘 및 핀 등 기타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저장 또는 가공처리를 위한 장치용의 용기 제조 (28122)
- 금속가구 제조업 (36101 : 금속가구 제조업)
- 스포츠용품 제조 (369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게임용품 및 장난감 제조 (369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
품 제조업)
- 각종기계 및 운수장비의 부분품의 제조는 그 제품의 구

성요소가 그 기계 장비의 제조업과 같은 항목에 각각 분
류된다.

2899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38195,38196)

못, 볼트, 너트, 리벳트, 와셔, 산업용파스너등 금속, 목재, 철판
등에 사용되는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철강제, 동제, 알루미늄제의 못, 압정, 스테이플(대상의 스
테이플제외) 스크루, 볼트, 너트, 스크루후크, 리벳트,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8992 철선제품 제조업 (38196)

구입한 철선으로 비절연로프 및 케이블선 및 유사제품, 철망
제품, 발판, 철선 울타리, 콘크리트용 철망, 새장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철강 연선에 연관된 철선제품제조는 제외하
다.

<포 함>

- 철강제의 연선, 로프, 케이블, 위은밴드, 사슬 및 이와 유
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 제외)
-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끈 것과 느
슨하게 끈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동제
또는 알루미늄제의 연선, 케이블, 위은밴드 및 이와 유사

<p>한 것 (전기절연한 것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또는 동선의 클로드, 그릴, 망, 울타리 ;익스팬디드 메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크립등의 사무용 철선제품 제조 (28998) • 못 제조 (28991) <p>28993 상품포장 금속용기 제조업 (38191)</p> <p>통상 물품의 운반용 또는 포장용 금속제 콘테이너, 통, 상자 드럼, 캔, 유연성 튜브, 상자 및 유사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알루미늄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 제외)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의 것. • 비금속제의 캡과 뚜껑 (스크루캡 및 점적구용전) 병용의 맵슈울, 나선형의 마개, 마개용커버, 시일 및 기타의 포장용 부속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설치용 또는 장치용의 금속용기 제조 (28122) • 차량 설치용의 금속용기 제조 (28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가스용의 금속용기 제조 (28122) <p>28994 수동식 식품가공기기 및 금속가정용품 제조업 (38115;39192 일부)</p> <p>가정용 비전기식 소형 수동기계기구로서 통상 카운터 위나 벽 또는 캐비닛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양념마쇄기, 고기세절기, 분쇄기, 압축기, 국수절단 및 압출기, 캔 및 병개폐기, 아이스크림 제조기와 달걀, 크림, 마요네즈등을 짓는 도구등 식품요리 또는 가공용 수동식 기계기구, 식품저장, 조리, 공급용의 용기류 및 기타 가정용 금속조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용 식품가공기기의 전용부품의 제조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동,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 부엌용품 또는 기타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철강, 동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패드,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것 ; 수동식 기계기구 (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1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것)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압단, 압형제품 제조 (28912) • 식품조리 및 난방기구, 비전기식제조 가정용 (29306) <p>28995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38193)</p> <p>상·하수도 조직에 연결되어 영구적으로 고정설치되는 세면기, 개수통, 비데, 변기, 목욕통등의 금속연관 및 위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p>연관 부착물 및 비품의 제조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제, 동제, 알루미늄제의 설것이통, 세면대, 목욕통 및 기타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브제조 (29122) • 비설치용 금속위생용품 제조 (28994) <p>28996 금고 제조업 (38197)</p> <p>금고, 장갑금고실¹⁾, 금고실 라이닝, 금고실문, 현금피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제의 장갑한 또는 보강한 금고, 스토롱박스²⁾와 스트롱룸용의 문과 저장실, 현금함 또는 손금고 및 이와 유사한 것 <p>28997 금속스프링 제조업 (38196 중 선스프링, 38199 중형 또는 코일스프링)</p> <p>선형, 코일형, 나선형등의 각종 금속스프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동제의 스프링 	<p>28998 금속제 사무용품 제조업 (38199 일부)</p> <p>서류정리함, 카드인덱스함, 페이퍼트레이등 각종 용도의 금속제 사무 및 문구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퍼트레이, 페이퍼레스트, 펜트레이,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 • 비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 서신용 클립, 레터코너, 서류용클립, 색인용택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제의 사무용품, 비금속제의 대상의 스테이플 <p>2899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38199)</p> <p>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속제품으로서 체인, 선박용 프로펠러 및 그날, 비전기식 벨, 중 및 유사제품, 조상 및 기타 금속장식물, 바늘, 핀, 버클, 후크, 금속제 세정용품, 사인판, 명판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 봉, 관, 판, 용접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납땜, 납접, 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를 도포하였거나 심에 충전한 것) 과 비금속분을 응결하여 제조한 금속 취부용의 선 및 봉 • 철강제의 체인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 제외) 과 그 부분품 : 동제의 체인과 이들의 부분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제의 소상과 기타장식품, 비금속제의 사진틀, 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제의 거울 • 철강제의 수봉침, 수편침, 돛바늘, 크로세뜨계질의 바늘, 자수용 천공수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제의 안전핀과 기타의 핀; 비금속제의 유금, 유금이 붙은 프레임, 버클, 버클유금, 후크, 아이, 아이렛 및 이와 유사한 것 (의류, 신발류, 차일, 핸드백, 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 비금속제의 관, 리베트 구슬과 스펅글 •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 비금속제의 플렉시블튜브, 비전기식 벨, 정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그 부분품, 사인판, 명판, 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 철강제의 닳과 그 부분품, 비가단 주철제 추물제품, 철강추물제품, 철강 단조물, 철강선의 제품, 방직기계용 보빈, 동제, , 니켈제, 연제, 아연제, 주석제, 알루미늄제의 제품 • 검류,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p>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p> <p>291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p> <p>2911 엔진 및 터어빈제조업 : 항공기 및 차량용 제외</p> <p> 항공기,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이외의 정지식 이동식 기기용,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불꽃점화 또는 압축점화 내연피스톤 엔진 및 부분품과 항공기용 터보제트 또는 터보 프로펠러식 이외의 증기, 가스 및 수력터어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어빈과 보일러 터어빈 셋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정지식 증기기관의 제조활동이 포함된다.</p> <p> <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엔진의 전기·전자부품 또는 내연기관용 전기·전자장치 및 구성품 제조는 (3190) • 자동차, 항공기, 모터사이클용엔진 제조는 (3410), (3530), (3591) <p>29111 내연기관 제조업 (38211)</p> <p> 석유, 등유, 알코올, 가스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스톤식 내연기관 (자동차 및 항공기용엔진 제외)
--	--

<p>29112 증기 및 가스터어빈 제조업 (38212)</p> <p>증기기관을 포함해서 증기터어빈, 수증기터어빈, 가스터어빈등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기터빈과 이들의 부분품 • 가스터빈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 제외) 과 이들의 부분품 	<p>사용되는 탭, 코크, 밸브 및 이와 유사한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경화고무제, 도자재료제, 유리제의 탭, 코크, 밸브 및 유사 장치의 제조는 그 재료에 따라 (2519,2691,2610) 에 각각 분류 • 기계부품의 성격을 갖는 밸브제조는 그 기계제조업과 동일산업에 분류
<p>2911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관 및 터어빈 제조업 (38219)</p> <p>달리분류되지 않은 기관 및 터어빈제조업으로서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엔진, 스프링조작 모우터 및 풍차, 추조작식 모우터, 수력터어빈, 수차등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력터빈과 수차 와 이들의 부분품 (조정기 포함)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펌프가 결합된 유압엔진 및 수력모터 제조 (2912) 	<p>29121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38291)</p> <p>공업용펌프, 계량용펌프, 양수기, 공기펌프, 진공펌프, 압축기 등 일반산업용펌프 및 펌프장비와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니어액팅식의 것 (실린더), 액압 및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및 이들의 부분품 • 액압 및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및 이들의 부분품 •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및 이들의 부분품 • 기체 또는 진공펌프와 기체압축기 및 이들의 부분품 • 터보제트이외의 반동엔진과 이들의 부분품 •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와 이들의 부분품
<p>2912 펌프, 압축기, 탭 및 밸브제조업</p> <p>강력펌프로 구성되는 유압엔진 및 모우터 제조를 포함하며,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 펌프 및 압축기 제조와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등에</p>	

<p>2912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38198)</p> <p>액체 또는 흐름을 조정하는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압 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제조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코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연기관용 밸브제조는 그 내연기관의 부품제조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 	<p>와 기어링 볼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과 이들의 부분품</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식 클러치 제조 (3190) • 차량 및 항공기의 부분품 성격인 동력전달장치 제조는(34) 또는 (35)에 각각 분류
<p>2913 베어링, 기어 및 구동요소 제조업</p> <p>29130 베어링, 기어 및 구동요소 제조업 (38297)</p> <p>볼 또는 로울러베어링, 전동축 및 크랭크, 베어링하우징,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 및 기어링, 플라이휠, 풀리, 클러치, 축연계 및 동력전달체인등과 같은 항공기용 또는 차량용 이외의 각종 기계장비용 동력전달장치, 속도변환 및 기타 구동요소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과 이들의 부분품 •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 	<p>2914 오븐·로 및 로용버너 제조업</p> <p>29140 오븐·로 및 로용버너 제조업 (38299 에서 분리)</p> <p>광석, 황철광, 비금속광물, 금속 및 기타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의 전기식 및 비전기식 또는 공업용 및 이화학용의 로와 오븐, 액체, 고체, 기체연료용 버너와 기계식 스토커, 화격자, 재방출기 및 유사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체연료용, 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버너, 기계식 스토커, 기계식 화격자, 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 (비전기식 베이커용 오븐 제외) : 기타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및 유전식의 가열기와 이들의 부분품 • 비전기식 베이커리용 오븐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빵용 오븐 및 식품, 음료, 담배용 가열설비 및 장비 제조 (2925) • 비전기식 제빵용 오븐 제조 (2925) • 펄프, 종이 또는 기타 산업용 재료의 가열용 설비 및 장비 제조 (2929) • 의료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제조 (3311) • 가정용의 버너 및 난로제조 (2930) <p>2915 산업용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p> <p>도로주행용 차량 이외의 물품, 상품, 사람등을 이동시키는 기계장비, 데릭 및 크레인, 폴리태클, 호이스트, 윈치 및 캐스트, 잭 및 기타 물품양하취급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인양 및 취급장비용 내연기관 제조는 (2911) • 농업용 트랙터의 제조는 (2921) • 건설용 장비 및 지하작업용으로 특수설계된 물품취급장비 제조 (2924) <p>29151 산업용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38294)</p> <p>공장, 창고, 부두, 공항등에서 비교적 단거리간의 각종 화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도로주행용 이외의 기계식 추진 또는 비기계식 추진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및 적하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 (권양용 또는 하역용장비 부착여부 불문) : 철도역의 플랫폼포움에서 사용하는 트랙터와 이들의 부분품 <p>29152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38293)</p> <p>산업용트럭 및 적하기를 제외한 물품인양 또는 취급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장비에는 단순식 또는 복합식, 연속동작식, 고정 또는 로타리식 및 운송 장비에 완전 장착된 이동식의 것이 포함될 수 있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태클과 호이스트 (스킵호이스트제외), 윈치와 캡스터 및 잭과 이들의 부분품 • 데릭, 크레인, 이동식양하대, 스트래들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과 이들의 부분품 •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에스칼레이터와 무우빙워크웨이와 이들의 부분품 • 뉴우머틱식 및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연속자동식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및 이들의 부분품 • 크레인, 엑스카베이터 (굴착기) 용의 버켓, 셔블, 그랩과 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

<p>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p> <p>실험실용 감광저울을 제외한 각종 용도의 저울과 상업용냉장 또는 냉동장비, 공기조절장치, 액체 또는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포장기 및 포장용기의 세척기, 증류기 또는 정류기, 열교환기, 기체 액화용의 기기와 가스발생기, 산업용 선풍기, 압착로올러 및 기타 압연기, 원심분리기 가스켓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등의 달리분류되지않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 및 전용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특정산업 또는 다수의 관련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의 제조 (292) • 농업용에 사용되는 분무기의 제조 (2921) • 금속용 또는 유리용의 압연기 제조 (2923, 2929) • 크림 분리기 제조와 식품의 여과 또는 정화기 제조 (2925) • 산업용 의복건조기 제조 (2929) • 가정용 냉장 또는 냉동장비 제조와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선풍기제조 (2930) • 감광저울의 제조 (3312) 	<p>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측정기기 (감량 50 밀리그램 이내의 저울 제외) • 저울추와 저울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광정밀저울 제조 (3312) <p>29192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38263)</p> <p>상업 및 산업용 냉동장비 및 냉장고와 기타 유사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고, 냉동기구 (산업용의 것) • 냉장고, 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갖춘 기계의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냉장고 제조 (29301)
<p>29191 일반저울 제조업 (38254)</p> <p>감광저울을 제외한 산업용 저울, 상업용 및 가정용등의 각종저</p>	<p>29193 냉난방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38264)</p> <p>가정, 상업 및 산업용 공기조절장치, 향온합습기등 각종 냉난방 공기조절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조절기 • 향온합습기

<p>• 공기조절기의 부분품</p> <p>29194 액체 여과 및 청정기 제조업 (38269 중 일부, 38299 중 내연기관용 여과기)</p> <p>가정, 상업 및 산업용의 액체용의 여과기, 청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p>29195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38299 일부)</p> <p>농업용 이외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농업 또는 원예용기기 제외) 와 이들의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분무기 제조 (29210) 	<p>29196 포장기 및 용기세척기 제조업 (38299 일부)</p> <p>병 및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와 병, 깡통, 상자, 자루,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합, 시일, 캡슐포장 또는 상표부착용 기계 및 기타의 포장기계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기계, 병, 깡통, 상자, 자루, 기타용기의 충전, 봉합, 시일, 캡슐, 취부 또는 레이블취부용의 기계와 기타의 포장기계 및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와 이들의 부분품 <p>29197 산업용 송풍기 및 공기청정기 제조업 (38292 중 공기여과 청정기 제외)</p> <p>산업, 상업용송풍기, 배기장치 및 환풍장치, 공기여과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팬 (가정용의 것 제외) : 원심분리기 (크림분리기 및 의류탈수건조기 제외) • 원심분리기 (원심탈수기포함) : 액체용 또는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풍기 제조, 가정 및 사무실용 (2930) <p>29198 자동판매기 제조업 (38261)</p> <p>각종 상품의 자동판매기 및 판매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판매기용 동전조작장치 및 동전교환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자동판매기와 이들의 부분품 <p>2919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38299,383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으로서 가스발생기, 증류기 또는 정류기, 열교환기 및 기체액화용기기, 압축로울러, 기타의 압연기, 원심분리기,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와 그 부분품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발생기, 아세틸렌가스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발생기 ; 증류기 또는 정류기 ; 열교환기 ; 기체액화용의 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 가스켓 (금속판) • 팬 (가정용의 것 제외) ; 원심분리기 (크림분리기 및 의류탈수건조기제외)와 이들의 부분품 •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타 기계와 	<p>이들의 부분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 (금속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 제외)와 이들의 부분품 • 실린더 : 농업 또는 원예용의 액체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 비전기식 기계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심분리식 크림분리기 제조 (29250) • 원심분리식 의복건조기 제조 (29297) <p>292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p> <p>2921 농업용 기계 제조업</p> <p>29210 농업용 기계 제조업 (38220)</p> <p>토양의 정리 및 정지, 작물의 식부, 수확, 비료살포 및 착유, 농장에서 시장출하용 농산물처리, 낙농, 부하, 가축사육 및 기타 농업, 축산, 원예, 임업용 기계와 양봉용 또는 마초처리기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 (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와 잔디 또는 공원 또는 운동장의 잔디깎는 기계 • 풀베는 기계 ; 건조제조용기계 ; 짚 또는 건조용의 결속기 ; 수확기와 탈곡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운전형트랙터 (기차역 플랫폼에서 사용하는것 제외) • 트랙터 (무한궤도식트랙터, 기차역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세미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와 트랙터 제외) •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와 분무용의 기기 •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 조란, 과일, 종자,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기계;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농업, 원예, 임업, 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기계 • 조란, 과일 또는 농산물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의 부분품;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부분품; 농업, 원예, 임업, 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기기 선별기의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원예, 임업용 수공구 제조 (2893) • 농장용 콘베이어 제조 (2915) • 작업용트럭 및 플랫폼트랙터 제조 (2915)로 분류되고 건설 및 광업용트랙터 제조 (2924) • 크림분리기 제조 (2915) • 세미 트레일러용 도로주행 트랙터의 제조 (3410) <p>292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p>	<p>레이저, 광자비임 및 기타 유사처리 방식에 의한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를 포함하여, 금속, 소결한 탄화물 또는 세라믹, 석재, 목재, 코르크, 뼈, 경화고무, 경화프라스틱, 냉간유리 및 기타 경질물질을 녹로세공, 드릴링, 밀링; 조형, 평삭, 보오링, 연삭 및 기타 절삭가공기기, 스탬핑, 프레스, 절단, 분쇄, 단조등의 금속성형기기, 용접기, 수지식, 구동공구, 목분보드제조용 압축기 및 이들의 부분품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공구 또는 기계공구용 호환성 공구 제조 (2893) • 금속처리용 또는 주조용 기계 제조 (2923) • 광업, 채석용 기계와 작동중에 손으로 잡지않는 암석용 드릴기의 제조는 (2924)에 분류되고 암석용 압축공기식수지 드릴기 제조도 포함 <p>29221 전자용용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p> <p>레이저광선, 광자비임, 초음파, 방전, 전기화학, 전자비임, 이온비임, 플라즈마젯트 등의 방식에 의하여 금속 및 기타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 (레이저 또는 기타광선, 광자빔, 초음파방전, 전기화학, 전자빔, 이온빔, 플라즈마아크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
---	--

29222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 (38231)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및 트랜스퍼 머시인을 포함하며, 절단 매체를 사용하여 금속의 수직, 수평 및 원주표면을 분할, 절단 또는 절삭, 연마하여 필요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일반목적용 또는 특수목적용의 기계 및 단일용도 또는 복합용도의 절삭가공기계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그러한 기계는 통상 호환절삭구와 부속품을 사용한다.

<포 함>

-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 유니트콘스트럭션머시인 (싱글스테이션의 것)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시인
- 금속절삭가공용의 선반
- 금속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로서 드릴링, 보어링, 밀링으로 사용하는 것
- 나선가공 또는 탭핑용으로 사용하는것 (선반제외)
- 디버어링, 샤프닝, 그라인딩, 호닝, 랩핑,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연마재, 광택재로 금속, 소결한 금속, 탄화물이나 서메트를 가공한것 ; 플레이닝용, 세이핑용, 슬로틴용, 부로칭용, 기어절삭용, 기어연삭용, 기어사상용, 톱질용, 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 소결한 금속탄화물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

<제 외>

- 수지식 동력구동기계 제조 (29224)

29223 금속압단 및 압형기계 제조업 (38232)

공작물을 절삭하지 않고 단조, 압형, 압출 및 회전등을 하여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기계, 철판의 절곡기, 절단기, 금속선가공용 기계공구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기계는 통상 요구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 및 기타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금형 및 기타 보조장치의 제조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 함>

- 단조, 햄머링, 다이스탯핑용의 금속가공기계, 굽힘, 접음, 교정, 펼침, 전단, 펀칭, 닛칭용의 금속가공기계와 상기이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 금속, 소결한 금속탄화물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 (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

29224 목재 및 유사경화물질 가공기계 제조업 (38235, 38245, 38248 중 절단 가공기계)

나무처리용 기계를 포함하며 석재, 도자기, 콘크리트, 냉간유리 및 기타 유사한 광물성 재료의 가공기계, 목재, 뼈, 경화고무, 경화프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질물질의 가공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계는 통상 동력 구동식이나 수동식 또는 족동식의 것을 포함한다.

<포 함>

- 석, 도자기, 콘크리트, 석면시멘트 또한 이와 유사한 광물

<p>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가공기계 및 이들의 부분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 코르크, 뼈, 경화고무, 경질프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 : 파티클보드,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물질로 제조된 것)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와 이들의 부분품 • 목재, 뼈, 경질프라스틱 가공에 사용되는 수지식공구의 부분품 및 부속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지식동력 구동구 제조(29224) <p>29225 수지식 동력 구동공구 제조업(38234)</p> <p>여러가지 목적과 재료를 다루는 수지식동력구동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도구를 통상 압축공기모우터, 내연기관모우터, 자장전기모우터 및 기타형의 모우터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중에 손으로 잡고 있거나 작업이 진행중에 직접 손으로 조종하는 이동식 공구이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지식공구(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것 또는 압축공기식의 것에 한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수지식 전동공구(전동기를 자장한것에 한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p>29226 용접기 제조업(38119 중 수지식, 가스식, 38315)</p> <p>가스 또는 전기식,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광자비임, 초음파 자기파동식 또는 플라스마 아크식의 납땀 또는 용접기,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탄화물의 가열 분사용의 전기기계와 표면 열처리용의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땀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 ; 표면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한것) ;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탄화물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p>2922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3823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으로서 공작물 파지장치,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및 활출대, 공구잡이와 달리분류되지않은 금속가공기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구호울더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가공용 호울더,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 수지식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틀호울더와 이들의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형 및 금형의 제조(2929) <p>2923 금속처리용기계 제조업</p>
---	--

29230 금속처리용 기계 제조업 (38223)

금속주조 및 야금기계등 가열된 금속을 처리, 취급하는 기계 장비와 금속압연기 및 그 로울러, 금속표면처리용 기계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전로, 레이들, 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 (야금용 또는 금속 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 ; 금속압연기와 이들의 부분품 (압연기용 로울러포함)

<제 외>

- 바, 튜브, 프로파일, 철선등을 압출, 인발하는 기계의 제조 (2922)
- 주조용상자 및 주형의 제조 (2929)
- 금속 또는 유리용 이외의 압연기 제조 (2919)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0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38241)

지하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물품인양 및 취급장비를 포함 하며, 굴착기, 정지기등의 각종토목공사용 장치 및 장비, 고체 광물성 재료의 처리, 혼합, 성형용기계, 무한 궤도식 트랙터 및 파일추출, 드라이버, 도로포장기등 건설장비와 기타 건설용 또는 광업용 기계장비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물품 또는 재료용의 연속자동식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지하작업용으로 특수설계 제작된것)
- 석탄 또는 암석절단기와 터널뚫는 기계 ; 기타천공용 또는 시굴용기계
- 자주식의 불도저와 앵글도저
- 자주식의 그레이더와 레벨러
- 자주식의 스크레이퍼
- 자주식의 탬핑머신 및 로드로울러
- 자주식의 프론트엔드 셔블로우더
- 메카니컬셔블, 엑스카베이터와 셔블로우더 및 360도 회전 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 (프론트엔드셔블로우더제외)
- 메카니컬셔블, 엑스카베이터와 셔블로우더 및 360도 회전 의 상부구조를 가진기계 ; 이동, 정지, 지균, 스크레이핑, 굴착, 탬핑, 콤팩팅, 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 블레이드
- 향타거와 향발기 ; 스노우플라우와 스노우블라우더 ; 기타의 이동, 정지, 지균, 스크레이핑, 굴착, 탬핑, 콤팩팅, 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 (자주식의것, 토양 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
- 선별기, 기계식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
- 무한궤도식 트랙터
- 천공 또는 시굴용기계부분품 및 데릭, 크레인, 이동식리프

팅 후레임, 스트레들매리어 및 크레임을 갖춘 작업트럭부
 분품 ; 기타의 이동, 정지, 지균, 스크레이핑, 굴착, 탬핑, 콤팩
 팅, 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 (토양, 광석 또는 광물용
 의 것) ; 향타기와 향발기의 부분품 ; 스노우플라우와 스노
 우블라우어의 부분품

<제 외>

- 무한궤도용 이외의 비도로 주행용트랙터 제조 (2921)
- 석재를 분할, 절단, 가공용 기계공구 제조 (2922)

2925 식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식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38243)

농장형의 것을 제외한 우유가공, 곡물가공, 고기가공, 물고기가
 공, 과일 및 채소류 가공기계와 설탕과자제조용, 제빵용, 음료제조
 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낙농기계
- 제분업용기계 또는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기계
 (농장형것 제외)
- 포도주, 사과술, 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 크러셔어 및 이와 유사한 기계
- 베이커리용오븐 (비전기식) ; 농산물용의 건조기 ; 뜨거운 음

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것 (가정용기계와
 제외)

-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기타 공업기계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류 포함)
- 담배조제 또는 제조기
- 착유기 및 낙농기계 부분품
- 종자,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
 기의 부분품
- 담배제조용기계 부분품

<제 외>

- 가열장치 또는 기계적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통, 탱크의
 제조 (2812)
- 조란, 과일, 기타곡물의 세척, 분류, 선별기의 제조 (2919)

2926 섬유 및 의복용기계 제조업

각종방직용 섬유처리, 방직, 섬유사처리, 직조 및 편조용기계,
 사, 직물등의 섬유제품의 표백, 염색 및 기타 정리용기계, 세탁
 기 및 건조기, 재봉기 및 기타 섬유직물 가공처리용 기계와
 원피, 모피, 가죽처리 가공용기계 및 관련제품등을 제조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29261 재봉기 제조업 (38295)

가정용의 것을 포함하며, 각종 용도의 재봉기 및 재봉기용 바

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재봉기 (제본용 재봉기와 가정용 재봉기 제외)
- 재봉기용 도구, 밀판, 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및 부분품
- 재봉기 (가정용)

<제 외>

- 재봉기 설치용 금속캐비닛 제조 (36101)
- 제책용 재봉기 제조 (29293)
- 수침바늘 제조 (3699)

29262 산업용 세탁 및 섬유처리기 제조업 (38262, 38242 일부)

섬유, 사, 직물, 섬유제품의 상업 또는 산업용 세탁, 크리닝, 표백, 염색, 다림질, 정리, 코팅과 침적 및 적층 권취, 절단등의 각종 섬유물질처리 가공용의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펠트 또는 성형펠트 (부착포 포함)의 제조, 완성가공용기계 (펠트모자 제조용 기계포함) 및 모자제조용의 형; 수세용, 청정용, 쥐어짜기용, 다림질용, 프레스용, 표백용, 염색용, 드레싱용, 완성가공용, 도포용, 침지용의 기계류 (방직용의 사, 직물류 또는 이들제품에 사용하는것,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 건조겸용기 제외) 리틀룸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

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치용, 재권치용, 접음용 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와 이들의 부분품

- 세탁소형의 세탁기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세탁기); 드라이크리닝기; 직물 또는 직물제품 건조기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한것)와 이들의 부분품
- 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유평준비기, 유평기 및 가공기계 또는 원피, 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 수선용기계 (재봉기 제외)와 이들의 부분품

<제 외>

- 가정용 및 동전조작용 세탁기 및 건조기, 전기다리미 제조 (3833)
- 가죽 및 원피가공용 또는 신발제조, 수리용기계 제조 (29269)

29269 달리분류되지않은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 제조업 (38242일부)

달리분류되지않은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제조업으로서 방직용 섬유의 방적준비용기계, 직조 및 편조용기계, 섬유 및 원피, 가죽처리 가공용기계등 재봉기, 세탁 및 섬유물질 정리가공기계 이외의 각종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인조섬유의 방사, 연신, 텍스춰 또는 절단용의 기계 ; 방 적준비기계 또는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 ; 직조, 편조 및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 및 준비기계와 이들의 부분품
- 직기 (직조기)
- 편조기, 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 튜울, 레이스, 자수포, 트 리밍, 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기계와 이들의 부분품
- 섬유의 방사,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직조기, 편조기의 보조 기계

2927 무기 및 실탄 제조업

29270 무기 및 실탄 제조업 (38298)

군용, 경찰용, 수렵용, 경기용등 각종 용도의 탱크 및 장갑차 량, 로켓트발사기, 유도미사일, 공기 또는 가스총을 포함한 소형 소화기 및 증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자주식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 군용화기 (연발권총, 단발권총 및 검과 이와 유사한것)
- 연발권총, 단발권총, 기타 화기 및 유사한 장치 : 기타의 무 기

-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 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통과 기타 총포탄, 발사체와 이들 의 부분품 (산탄알 및 탄약통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
- 군용화기 및 기타무기의 부분품

<제 외>

- 폭발장치, 너관, 불꽃제품 제조 (2429)
- 단도, 군도 및 유사 무기 제조 (2899)
- 은행권 또는 귀금속 운반용 장갑차량 제조 (3410)
- 미사일 보관시설 및 격납고의 설치 (4520)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달리분류되지않은은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인조섬유 방사, 연사, 텍스춰용기계, 고무 및 플라스 틱의 사출, 압출성형기, 펠트, 종이, 판지 및 그 제품 제조 기 계와 인쇄 및 제책용기계, 금속 또는 세라믹 및 기타 성형제 품제조용 주형 및 금형, 원심분리기, 의복건조기, 유리제품 열간 가공기계, 전기 또는 전자램프 및 유리제 밸브등의 조립용 기 계와 특정산업에 전용되는 각종기계 및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산업용 로봇트

29291 종이산업용 기계 제조업 (38246)

섬유셀룰로오스의 펄프, 종이 또는 판지제조 또는 가공용 기계와 펄프, 종이, 판지의 제품 제조용 기계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기계와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 (제본기계:제외)와 이들의 부분품

29292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용기계 제조업 (38245 중 절단가공기계 제외)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로 고무 및 제품을 성형제조하는 기계 및 장비와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와 이들의 부분품

<제 외>

- 경화고무 또는 경화플라스틱 가공기계 제조 (29221)

29293 인쇄 및 제책용기계 제조업 (38247)

활자주조기, 활자식자기, 인쇄용판, 브록 및 실린더제조기, 인쇄기 및 인쇄보조장치, 제책용기계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제본기계 : 식자용기계 및 이와 유사한것 ; 인쇄기와 인쇄보조용 기계 (스위트식의 사무실용기계인 오프셋인쇄기계 제외) 와 이들의 부분품
- 스위트식의 사무실용 기계인 오프셋기계

29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 (38237 중 관련장치 제외)

금속 탄화물, 유리, 고무, 플라스틱, 광물성물질등의 주조 또는 성형용 주형, 금형 및 기타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금속주조용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 (잉곳용제외), 금속탄화물, 유리, 광물성물질,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제 외>

- 지그 및 관련장치 제조 (29229)
- 잉곳용 주형제조 (2923)

29295 유리 및 요업용기계 제조업 (38248 중 절단 가공기기 제외)

전등 및 전자관 조립용기계, 유리 및 유리제품의 성형제조 또는 열간가공기계, 고체연료, 벽돌 및 시멘트제품, 흑연전극, 초크 및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용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피기, 형입기 및 성형기와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 전기 또는 전자램프, 튜우브, 밸브 또는 플래쉬밸브 <p>29296 산업용 건조기 제조업 (3824 중 목재분리)</p> <p>온도변화 방법에 의하여 목재, 제지용펄프, 종이 또는 판지용의 건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용의 건조기 및 기타 재료의 건조기 (농산물용 건조기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건조기 제조 (2925) <p>29297 원심의류 탈수기 : 제조업 (38262)</p> <p>세탁용, 염색가공용등에 사용되는 원심분리식의 의류탈수건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심의류탈수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 의복건조기 제조 (2930) 	<p>작업환경의 변수에 따라 순환운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종 상이한 공구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용도의 산업용 자동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형 로봇 제조, 산업용 • 지능형 로봇 제조, 산업용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지시형 산업용로봇 제조는 그 기능에 적합한 용도의 기계제조업에 분류 <p>292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특수용기계 제조업 (3824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금속처리용의 기기 (전선권선기포함), 동위원소분리용의 기기 및 그 부분품과 개별 기능을 가진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세척기, 금속도금기,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기, 전선권선기;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로우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혼합기, 반죽기, 파쇄기, 분쇄기, 기계식채, 시프팅기, 균질기, 유화기와 교반기 및 이들의 부분품
<p>29298 산업용로봇 제조업 (38296)</p> <p>센서에 의하여 작업환경에 의한 정보를 획득 및 분석하여</p>	<p>293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정용기구 제조업</p>

<p>2930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정용기구 제조업</p> <p>29301 가정용냉장 및 냉동고 제조업 (38331)</p> <p> 가정용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냉장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p> <p> <포 함 ></p> <p> • 냉장고, 냉동고 (가정형,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p> <p>29302 가정용세탁 및 세척기 제조업 (38333,38339 중 접시세척기 포 함)</p> <p> 가정용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의류 및 린넨용의 세탁기 및 건조기, 접시세척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p> • 접시세척기 및 의복, 린넨세탁기 또는 건조기 (가정형,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것)</p> <p>29303 가정용 선풍기 제조업 (38332)</p> <p> 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선풍기, 환풍기와 연탄가스 배출기등을</p>	<p>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p> • 팬 및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가정 형의 것)</p> <p>29304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38334)</p> <p> 즉시식, 저장식 또는 투입식의 전기가열기, 난방용 또는 조 리용 및 가정용 전열기기와 전열용 저항체 (탄소제의 것제외) 등 각종 전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자레인지등 의 전자식 조리기구 제조를 포함한다.</p> <p> <포 함 ></p> <p> • 전기모포</p> <p> • 커피탕기, 토우스터, 전기보온밥통등의 가정용 전열기기</p> <p>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오븐 ;쿠커, 조리판, 보일릴링, 그 릴러와 로우스터</p> <p> • 전열용 저항체 (카본제외)</p>
--	---

<제 외>

- 전기안마기와 이·미용용의 전열기기의 제조 (29305)

29305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38335)

전기를 사용하는 이·미용기구와 전기안마기, 손건조기등의 위생용의 전기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면도기, 이발기, 모발건조기, 이용용전열기기, 손건조기와 이들의 부분품

<제 외>

- 의료용 기계식 안마기기 제조 (33113)

2930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제조업 (38265 일부, 38194 일부)

비전기식 레인지 및 기타 유사조리용기구, 난로, 화덕, 가정용 중앙난방설비, 온수기 및 열판등의 각종 비전기식 가정용요리 또는 난방용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조리용기구와 가열판, 철강제의 비전기식 가정용기구:동제의 조리용기구 및 가열기구(가정용의것과 비전기식)와 이들의 부분품
- 철강제의 스토브, 화상, 화로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기구(조리용기구와 가열판 제외)
- 공기가열기, 온풍배분기 및 그 부분품
-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

-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바베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의 부분품

29309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기구 제조업 (38339)

달리분류되지 않은 : 가정용기구 제조업로서 가습기, 마루광택기, 비가열식 살균소독기, 음식료품 가공기등의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전기기구 및 그 부분품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진공소제기 및 마루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및 채소즙 추출기;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기타의 전기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난방기구와 토양가열기, 전열기기의 부분품

<제 외>

- 가정용 전열기기, 가열조리식 전기기구 제조 (29304)
- 이미용 및 위생용 전기기기 제조 (29305)
- 공기청정기 제조 (21497)
- 정수기 제조 (29194)

30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리기계
300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적어도 동일 하우징속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를 내장한것)
3000	<p>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p> <p>자동자료처리기계 (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를 포함하여 등사기, 주소인쇄기 및 낱장식의 사무실용 옵셋인쇄기, 수동 또는 전동타자기와 자동타자기, 사진복사기, 수지식 또는 탁상용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 회계기, 현금등록기, 우편요금계산기, 표발행기 및 기타 계산장치가 결합 또는 결합되지 않은 유사한 기계, 동전분류기, 포장 및 계산기, 현금자동지출기, 봉투투입기, 연필깎는기계, 천공 또는 스테플링기 및 기타 사무용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기용 전자부품의 제조 (3210) • 전자식 게임용 기계장비 제조 (3694) • 사무계산 및 회계기계의 유지·보수활동 (7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자료처리의 디지털형 처리장치 (기억장치,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속에 내장된 것) •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시스템의 나머지 기기와 함께 제시되었지만 동일 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 불문) • 자동자료처리의 기억장치 • 컴퓨터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료매체의 기계 포함) •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속품 및 부분품 (커버, 휴대용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외) <p>30002 타자기 제조업 (38255)</p> <p>수동식 또는 전동식 타자기, 자동타자기등의 각종 타자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타자기와 워드프로세싱 머시인과 그 부분품 • 타자기와 그 부분품
30001	<p>자동자료 처리장비 제조업 (38251)</p> <p>작성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종 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자동처리하는 전자자료 처리조직과 그 주변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 	<p>30003 계산기 및 회계기 제조업 (38252)</p> <p>자동자료 처리장비 및 구성품 이외의 수지식 또는 탁상용</p>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 회계기, 현금등록기, 표발행기 및 기타 계산장치가 결합된 유사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계산기와 회계기, 금전등록기,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것에 한함)와 이들의 부분품

30004 등사 및 복사기계 제조업 (38253, 38525)

등사기, 주소자동인쇄기, 사무실용 옵셋인쇄기, 광학식 또는 밀착식 사진복사기 및 열복사기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와 열식복사기
- 슈이트식의 사무실용기계와 이들의 부분품

30009 달리분류되지않은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38259)

우편물의 구분기 및 기타 우편물처리기, 계산장치가 결합되지 않은 현금자동지불기, 동전분류기 및 동전계산기, 연필깎기, 스탬프 지우개, 종이 천공기, 스테플링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기타의 사무용기계(등사기, 주소인쇄기, 현금자동지불기, 주

화분류기, 주화계수포장기, 연필절삭기, 천공기, 지철기 포함)와 이들의 부분품

<제 외>

- 화폐 교환기 제조 (29198)

<p>31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p> <p>311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p> <p>3110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p> <p> 교류 또는 직류발전기세트, 전기발전기, 전기모우터, 회전변환기와 각종 변압기, 정전변환기, 정류기, 안정기, 배터리 충전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 발전기 및 크랭크회전용 모우터 제조 (3190) • 다이오드의 제조 (3210) • 전자용의 변성기 제조 (3250) <p>31101 발전기 및 전동기 제조업 (38311)</p> <p> 전기모우터, 발전기세트, 회전변환기 및 이들의 전용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 (출력 37.5 와트이하의 것); 기타 직류전동기; 직류 발전기 • 교류, 직류 겸용전동기 (출력 37.5 와트 초과의 것); 기타 교류전동기; 교류발전기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전기전동기, 발전기 및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 	<p> <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내연기관용 발전기와 크랭크회전용 모우터 제조 (31901) <p>31102 변압기 제조업 (38312)</p> <p> 전력용 또는 송·배전용변압기, 전력조절기, 승압기, 반응기 및 전기용 유사장비, 특수변압기, 계기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압기 <p> <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전관용의 안정기 제조 (31109) <p>31103 전자기기용 변성기 제조업 (38345)</p> <p> 전자용의 변성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변성기 <p>31109 달리분류되지않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8319)</p> <p> 달리분류되지않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으로서 방전관 또는 램프용의 안정기를 포함하여 정지형 변압기 및 기타 유도자와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 정지형변환기 ; 기타의 유도자 변압기, 정지형변환기 및 유도자의 부분품 <p>312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p> <p>212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p> <p>전력공급조직 또는 산업장비, 주거용 및 가정용 전기,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 또는 접속용의 기기 및 배전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스틱, 유리, 도자기 재료로 주형 또는 성형제품 제조 (2520), (2610), (2691)에 각각 분류 • 퓨즈용의 선 또는 스트립의 제조 (2720) • 탄소 또는 흑연제의 전극제조 (3190)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보오드, 패널, 콘솔등의 제조 (3220) <p>31201 전력개폐 및 보호장비 제조업 (38313)</p> <p>전기공급 조직에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 접속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전압 1000볼트를 초과한 것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드, 콘솔, 캐비넷, 기타의 기반 및 전기개폐기기 • 전기제어 또는 배분기기(전압 1000 볼트를 초과한 것) • 전기제어 또는 배분기기의 부분품 <p>31202 전기배선장치 제조업 (38396)</p> <p>계전기를 포함하여 주거용 및 산업용 장비 또는 가정용 기기에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 접속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전압 1000 볼트를 초과하지 않은것) • 보드, 콘솔, 캐비넷, 기타의 기반 및 전기개폐기기, 전기제어 또는 배분기기(전압 1000 볼트를 초과하지 않은것) • 전기제어 또는 배분기기의 부분품 • 전기도체(전압 1000 볼트 이하의것) <p>31203 전자기기용 접속자 제조업 (38314)</p> <p>전자기기용 접속자, 연결자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31204 산업용 전기제어장비 제조업 (38314)</p> <p>모우터, 산업용 AC 및 DC 전동장치, 견인장비용 모우터 등의 시동, 정지, 속도조정 및 제어용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p>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p> <p>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p> <p>3130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8391)</p> <p>구입한 비철금속을 연신 및 절연 처리하거나 광섬유를 절연 피복하여 전기가설, 전기기계 및 장비용의 피복선, 에나멜선, 알루미늄 절연선 또는 절연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연전선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세트(자동차, 항공기, 선박용의것) • 전기도체(전압 1000볼트 이하의것) • 전기도체(전압 1000볼트 초과한것) • 광섬유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것에 한함)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절연 비철금속선의 제조(2720) • 비절연 금속케이블 또는 전기도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피복케이블의 제조(2899) • 구입한 절연선을 가공하여 내연기관용 배선장치 제조(3190) • 피복되지 않은 광섬유 또는 광섬유케이블 제조(3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배선용의 전선가공품 제조(31202) <p>314 축전지 및 건전지 제조업</p> <p>3140 축전지 및 건전지 제조업</p> <p>31401 일차전지 제조업(38394)</p> <p>규모나 용도를 불문하고, 건식 또는 습식등의 일차전지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전지와 그 부분품 <p>31402 축전지 제조업(38393)</p> <p>축전지 및 축전지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전지와 그 부분품 <p>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p> <p>3150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p> <p>사진용 섬광전구를 포함한 각종 전구와 달리분류되지않은 조명시설 및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싸이클 및 자동차용 전기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의 기기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조 (3190)</p> <p>31501 전구 제조업 (38392)</p> <p>백열전구, 산업용전구, 장식용전구, 살균램프, 형광램프, 적외선 또는 자외선전구, 수은램프, 아아크램프 및 전구, 사진용 전구 등 각종 전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크램프 •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 필라멘트램프, 방전램프, 아크램프의 부분품 <p>31502 조명장치 제조업 (38395)</p> <p>싸이클용 및 차량용의 전기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를 제외한 실내 및 실외용 조명장치, 탐사등, 조사등, 표시등, 휴대용 전등과 같은 전기조명장치와 비전기식 램프 및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전등 (건전지, 축전지, 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 기능을 갖춘것,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의것 제외); 천정용, 벽부착용의 전기식조명기구 (공공장소나 통행로에서 사용하는것 제외); 전기식의 램프 (테이블, 책상, 침대 또는 마루스탠드용의 것에 한함); 비전기식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 기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 포함) • 휴대용전등 (자체전원기능을 갖춘것,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의 것 제외); 램프 및 조명용기구의 부분품; 조명용사인, 조명용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및 차량용 조명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제조 (3190) • 도로, 철도, 수로, 공항등 전기식 신호 및 교통관제장비 제조 (3190) • 의료용 검사램프 제조 (3311) <p>319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장비 제조업</p> <p>3190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장비 제조업</p> <p>내연기관용의 전기점화 또는 시동장치 및 배선장치, 자전거 및 차량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신호용 기기, 화재 및 도난 등의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경보 및 신호장비, 전기식 차량유리청소기, 전기식 교통관제장비, 전자석과 자석의 척, 브레이크, 커플링 및 유사장치, 전기절연체 (유리 또는 도자제의것 제외), 미립자 가속장치, 신호발생기, 광택탐지기등의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기계 및 기구와 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제 외>

- 램프용 유리외피 제조 (2610)
- 전기식 수지분사기 제조 (2919)
- 전기식 잔디깎는기계 제조 (2921)
- 전기면도기 제조 (2930)
- 전자관 제조 (3210)
- 전기식 의료 또는 치과용 수공구 제조 (3311)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38316)

차량용 전기장치를 포함하며,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의 내연기관용 전기시동 또는 점화장치와 크랭크 회전모터,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기계용 배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점화용 와이어링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세트(자동차, 항공기, 선박용의것)
-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전기기기; 내연기관에 부착되는 발전기와 개폐기;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필라멘트 또는 방전램프제외), 윈드스크린 와이퍼, 제상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3190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8324)

전기교통통제장비, 차량용 이외의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신호

장치, 인터폰, 부저, 벨등의 전기경보장치 및 내부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자전거 또는 자동차용의것과 운송설비의 전기식 교통관제기기 제외)와 이들의 부분품

31903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38141, 38297 일부)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 클램프,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의 커플링, 클러치 및 브레이크, 리프팅헤드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 클램프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적자석의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

3190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83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으로서 유리제 또는 도자제를 제외한 전기 절연체 및 절연부착물, 전기저항체를 갖춘 제무기 및 제상기, 신호발생기, 광택탐지기, 전기도금용 또는 전기분해용 기기, 전자용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 전자기관부 부품 및 달리분류되지않은 전자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

등을 말한다.

<포 함>

- 접시세척기(가정형의것 제외)
- 신호발생기, 전기도금, 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용기기, 전기이온정수기와 이들의 부분품
- 오디오믹서, 이퀄라이저 및 이들의 부분품
-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판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댄 것에 한한다)
- 탄소전극, 탄소부러쉬, 램프용탄소, 전지용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에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 불문)

32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 제조업

유선전신·전화용기기, 방송수신기 및 관련 소비용 기기, 영상 또는 음성기록 및 재생기, 음성증폭기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엑스선관 제조(3311)

321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0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소자, 초소형집적회로, 인쇄기회로판, 전자콘덴서, 전자저항기와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특정 회로기판에 각종 초소형 전자회로 및 장착하여 특정기계용 구성품을 조립할 경우는 그 부품이 사용될 기계제조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
- 변성기 제조, 전자기기용(31103)
- 스위치 제조 및 기타 전자기기용 접속자 제조(31203)
- 전열저항제 제조(29304)

32101 전자관 제조업(38341)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등 라디오 및 텔레비전수상기용 전

<p>자관, 산업용 및 기타 특수목적용 전자관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음극선관 포함)과 이들의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엑스선관 제조(3311) <p>3210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38342 중 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제외)</p> <p>광전지를 포함하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 소자, 감광 반도체,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와 이들의 부분품 <p>32103 인쇄회로기판 제조업(38349)</p> <p>각종 인쇄회로기판 및 인쇄 배선기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회로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회로기판에 각종 전자부품등을 조립·장착하여 특정기기용 구성품을 제조하는 경우 그 구성품이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분류 <p>32104 전자축전기 제조업(38343)</p> <p>전자기기용 축전기(고정 및 가변등 축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축전기 전기축전기의 부분품 <p>32105 전자저항기 제조업(38344)</p> <p>전자기기용 저항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저항기(가열저항기 제외) 전기저항기의 부분품 <p>32106 전자집적회로 제조업(38342에서 분리)</p> <p>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	---

<p>• 전자직접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및 이들의 부분품</p> <p>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p> <p>3220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p> <p>32201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38322)</p> <p>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회로에 전류흐름의 변화로 음성 또는 기타 소리를 두지점간에 전달해주는 유선통신장치로서 전화기셋트, 자동 또는 수동식 교환기, 전신장치 및 방송통신조직용 특수장치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p>•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p> <p>32202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38323)</p> <p>유선전화 및 전신장치를 제외한 상업, 산업 및 군사용등의 무선전기, 전자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동무선조직, 휴대용 무선통신장비, 통신위성 및 기타 무선전신, 전화기기, 팩시밀리 및 기타 전송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중계용 송신기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조직, 텔레비전 카메라등 무선통신 응용장치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의 여부불문)와 이들의 부분품</p> <p>• 텔레비전 카메라와 그 부분품</p> <p>323 음향 및 영상 관련기기 제조업</p> <p>3230 음향 및 영상 관련기기 제조업</p> <p>32300 음향 및 영상 관련기기 제조업 (38321)</p> <p>텔레비전수상기, 모니터, 라디오수신기, 전축,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 영상복사 및 재생기, 확성기, 마이크로폰, 헤드폰, 이어폰 및 기타 음성증폭기, 무선전신·전화송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장치와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p>• 라디오 송수신기용 기기(자동차용제외),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의 수신기능을 갖춘것과(음성기록, 재생기와 시계가 결합된것 여부불문) 이들의 부분품</p> <p>• 라디오 방송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전원없이 작동할 수 없는것에 한하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의 수신기능을 갖춘것을 포함)와 그 부분품</p> <p>• 텔레비전수상기(라디오 방송수신기,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는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불문)와 그 부분품</p> <p>• 턴테이블, 레코드플레이어, 카세트플레이어와 기타의 음성재생기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이들의 부분품</p>
<p><포 함></p> <p>•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것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그네틱 테이프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 재생기를 갖춘지의 여부 불문)와 이들의 부분품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 이어폰과 마이크로폰, 스피커 복합세트·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와 이들의 부분품 • 무선전화·무선전신수신용의 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p>33 의료·전문·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p> <p>331 의료·측정·시험 및 기타 전문기기 제조업 ; 광학기기 제외</p> <p>3311 의료용기기 제조업</p> <p> 내과, 외과, 치과, 수의용의 가구 및 기구, 정형외과용 기기, 의치, 인조관절 및 기타 인공인체부분, X선응용장치, 기계요법 및 진단용기기,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과용 피복용품, 탈지면, 붕대, 장선 및 기타 봉합사 제조(2423) • 치과용 시멘트 제조(2423) • 온도계 제조(3312) • 교정용 안경렌즈, 테, 복합 광학현미경의 제조(3320) • 치과 의사, 검안사에 의한 치열교정 및 안경맞춤활동은(85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p>331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진단요법기기 제조업(38325)</p> <p> 의료용 또는 기타 용도의 X선, 방사선 장치와 전기, 전자식진단 또는 요법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선이나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식 진단용기기 및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기식 진단·요법기기 제조 (33113) <p>33112 치과용기기 제조업 (38514)</p> <p>형태 또는 규모별 표준인조치아 제조를 포함하여, 치과드릴 및 기타 치과기기, 호환용 연삭도구등 치과 전용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의 기타기기 (주사기, 바늘 및 이와 유사한 것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의료용 수도구 제조 (33119) • 특정 환자용으로 치과 전문의사의 주문에 의하여 인조치아를 가공하는 활동 (85192) • 치과용 시멘트 제조 (2423) <p>331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38513)</p> <p>각종 기능을 기계적으로 회복시켜 관절 및 근육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요법 기구와 안마용기기, 인공호흡장치 및 가스마스크, 심리학적 검사용 기구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p>	<p>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요법용기기, 맛사지용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기기 및 오존흡입기, 산소흡입기, 에어로졸치료기, 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 기타의 호흡용기기와 가스마스크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마스크 제외) <p>33114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38515)</p> <p>신체적 결함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외과용품, 부목, 인공장기, 보청기 및 기타 신체에 주입 또는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보정용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용의 것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형외과용의 기기 :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및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보청기와 기타의 기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눈의 제조 (3320) • 장선, 봉합사 및 피복제 제조 (2423) <p>33115 의료용가구 제조업 (38511)</p>

내과, 외과, 치과 및 수의용의 각종 전문기구, 이·미용실용 의자 및 이와 유사한 회전 또는 상하이동장치가 결합된 의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 ; 뒤로 젖히거나 상하조절 및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33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의료용기기 제조업 (38512, 38519 중 반창고등의 의료용품 및 해부도, 해부모형 제외)

달리분류되지않은 의료용기기 제조업으로서 의료용 또는 실험실용의 살균기, 시력측정기, 주사기, 바늘, 내시경등의 광학식 의료기기 및 기타 비전기·전자식 의료처치용 또는 진단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타기기 (주사기, 바늘, 캐디터, 케틀러, 안과용기기 및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포함)

331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전문기기 제조업 ; 산업처리제어장비 제외

산업처리 제어장비와 시계, 사진 및 광학기기를 제외한 과학, 측정, 시험, 제어 및 기타 전문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제도용 기구, 계산자 및 수지식 길이측정용구, 비광학 현미경

및 회절기기,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 기기, 산업처리제어장비 이외의 자동조절 또는 제어용 기기, 항해, 기상, 지구물리 및 관련기기, 레이더기기 및 원격조정기, 기체, 액체, 전기의 공급기기, 물질의 물리적 특성시험기기,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기기, 액체 또는 가스의 유량, 수준, 압력 및 기타 상태의 검사, 측정기기, 비중계, 온도계, 적산화전계, 택시미터기, 균형시험기기, 광학용측정기 및 광학식 측정검사기기, 기타 측정, 검사, 시험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측정장치가 결합된 펌프제조 (2912)
- 의료용 기구 제조 (3311)
- 산업처리제어용 장비 제조 (3313)
- 쌍안경, 광학현미경 및 기타 광학장치 제조 (3320)

33121 항해 및 측량기구 제조업 (38541, 38549 중 항해, 항행용기구 포함)

방향탐지용 콤팩스 및 기타 항해용 또는 항행용기구 및 장치, 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 토지, 수로, 해양, 수리측량기기와 기상관측기, 지구물리학용의 기구 및 측거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방향탐지용 콤팩스와 기타의 항행용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 토지측량기기, 수로측량기기, 해양측량기기, 수리계측기기, 기

<p>상관측기기, 지구물리학용기기(컴파스 제외) 및 측거의와 이들의 부분품</p> <p>3312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38542, 39091 중 학생용의것 포함)</p> <p>제도가, 건축가, 공학기술자들이 사용하는 형태의 제도용구, 설계용구 및 계산용구, 눈금이 든 끈은자와 줄자, 측정봉, 분도기 등의 수지식 길이측정기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학생용의 것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 및 기타의 제도용구, 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와 그 부분품 • 수지식의 길이측정용구(끈은자와 줄자,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포함)와 그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탐지용 컴파스 제조(33121) • 기계, 장비 제조공이 사용하는 생산물 정밀측정기 제조(28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리선의 검사 검출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 음극선 오실로스코우프와 음극선 오실로그래프 및 그 부분품 • 전압, 전류, 저항, 전력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기록장치가 없는것에 한한다)(음극선 오실로스코우프 및 오실로그래프, 전기적산용계기 제외)와 그 부분품 • 전기통신용의 기기(음극선 오실로스코우프 및 오실로그래프 제외)와 그 부분품 •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타 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급계기 제조(33127) <p>33124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38544)</p> <p>천문, 수로 및 지구물리형상의 측정용기계기구와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물리, 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체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온도계, 고온계, 기압계, 습도계 및 건습습도계와 이들의 부분품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 액면, 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항행용기기, 수리계측기기 또는 기상관측기기, 기체·액체용 적산계기 및 자동조절용 또는
<p>33123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3854 중 전기공급계기 제조 제외)</p> <p>전기공급계기를 제외한 전기적량 또는 특성, 전기 및 전자회로장비의 시험, 측정, 분석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체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온도계, 고온계, 기압계, 습도계 및 건습습도계와 이들의 부분품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 액면, 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항행용기기, 수리계측기기 또는 기상관측기기, 기체·액체용 적산계기 및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기기 제외)와 이들의 부분품

-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점도, 포로시티, 팽창, 표면장력등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와 열, 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33125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제조업 (38543)

금속, 섬유, 종이 및 판지, 리놀류, 플라스틱 및 고무등과 같은 각종 산업용 재료의 경도, 강도, 연성, 약화등을 시험하고 기계기구와 각종 기계장비의 기능 및 특성등을 측정, 검사하는 평형 및 균형기, 역량계, 검사기, 진동, 장력, 충격 또는 부조화 검사기, 내연기관 및 자동차 브레이크시험용 시험대등과 같은 측정 및 검사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재료의 기계적성질 시험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제 외>

- 전기기계장비의 전기적량 및 측정, 시험분석기 제조 (33123)

33126 기체, 액체 및 전기적산용기기 제조업 (38545, 38547 의 전기공급량계 포함)

전선 또는 파이프를 통하여 흐르는 전기, 가스, 열, 증기, 기체 및 액체의 생산 및 공급총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기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요금계산장치가 결합될 수도 있다.

적정공급 여부를 측정하는 계기도 여기에 분류된다.

<포 함>

- 기체, 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 및 이들의 부속품 및 부분품

33127 회전속도계 및 유사 계산장치 제조업 (38546)

회전계, 속도계, 회전속도계 (측량기구 제외), 생산량계, 적산택시미터기, 주행거리계, 보수계 및 이와 유사한 적산용 계기와 스트로보스코우프등 각종 단위의 총량을 지시하는 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수로측량기기 및 기상관측기기 제외) 적산회전계, 생산량계, 택시미터, 주행거리계, 보수계 및 스트로보스코우프와 이들의 부분품

<제 외>

- 전기, 가스 및 액체용의 적산계기 제조 (3312)

33128 기기용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8548 중 각종기기 부착용)

난방기 및 공기조절장치, 냉동기기, 가정용기기등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온도자동조정장치, 공기유입조정장치, 안전판 및 가스버너 조정장치, 습도조정기등의 각종 기기용 자동조정제어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 기기용 및 이들의 부속품 및 부분품 : 기기용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처리 자동조정 제어장비 제조 (3313) <p>33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전문기기 제조업 (38549, 38527 중 비광학현미경 및 회전장치, 38329 중 레이더 및 무선원격조정기)</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전문기기 제조업으로서 감광저울, 비광학 현미경 및 회절기기, 레이더기기 및 무선원격조정기 및 기타 측정, 검사, 시험, 분석용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더기기, 항행용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정기기와 그 부분품 • 감량 50밀리그램이내의 저울 • 현미경 (광학현미경 제외) 및 회절기기와 그 부분품 •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광학기, 사진기, 영화용의 촬영기의 측정, 검사, 정밀용의 기기와 의료용 또는 외과용기기 및 기계의 부속품 및 부분품 	<p>3313 산업처리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p> <p>33130 산업처리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8548 중 각종기기 부착용 제외)</p> <p>생산품이나 재료가 제조 또는 기타 처리중에 있을때 그 처리에 적합한 상황이 산업처리공정에 연결되어 유지·조정되도록 이에 관련된 압력, 유입량, 습도 유입되는 가스 및 액체의 배합상태, 온도, 위치, 빈도, 밀도, 비중, 기계적부합등 각종 변수를 계속적으로 측정하여 자동조정하는 산업처리용 자동측정, 조정,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산업처리용) 및 이들의 부속품 및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또는 상업환경의 자동조정 제어기구 제조 (33128) • 액상유리 및 바이메탈 제조 (26105 또는 27119) <p>332 사진 및 광학기 제조업</p> <p>3320 사진 및 광학기 제조업</p> <p>절연, 피복되지 않은 광섬유 및 광섬유케이블, 유리 또는 기타 재료의 광학요소, 렌즈, 안경 및 안경테, 망원경, 광학현미경 및 기타 광학기기와 정물 또는 영화촬영기, 영사기, 투영기, 확</p>
---	---

대기, 사진현상실용 기기등 사진용기기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사진용 화학물의 제조 (2429)
- 연마되지 않은 광학유리생지 제조 (2610)
- 광학식, 접착식 사진복사기와 열복사기 제조 (3000)
- 절연피복된 광섬유 및 광섬유케이블 제조 (3130)
- 사진용 섬광전구 제조 (3150)
- 텔레비전 카메라 제조 (3220)
- 광학요소가 결합된 의료용 기구 제조 (3311)
- 광학요소가 결합된 측정, 검사용 기기의 제조 (3312)

3320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38521, 38522)

실리콘수지, 플라스틱물질 및 기타 재료로 광섬유 및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및 기타 재료를 광학적으로 연마 및 가공하여 각종 광학요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카메라, 영사기, 사진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 이외의 장치 및 기구에 부착할 수 있도록 틀을 장착한 광학요소의 제조활동도 포함한다.

<포 함>

-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광섬유케이블 (섬유를 개별피복한 것 제외)
- 편광 재료제의 판; 렌즈, 프리즘,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

- 장착여부불문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 제외): (카메라용, 영사기용 또는 사진확대기, 사진축소기용의것 제외) (콘택트렌즈, 유리제의 안경렌즈,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제외)

<제 외>

- 절연피복 광섬유 및 케이블을 제조 (31300)
-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의 제조 (33203)
- 광학적 연마 가공을 하지않은 유리생지 제조 (2610)

33202 안경렌즈 및 안경 제조업 (38528)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렌즈, 안경테 및 각종 용도의 완성된 안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활동에 따른 안경조립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포 함>

- 콘택트렌즈, 유리제의 안경렌즈,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 시력교정용, 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안경, 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그 부분품

33203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38527)

쌍안경, 단안경, 기타 광학식 망원경 및 이들의 장착구, 광학식 천체관측기구와 광학현미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안경, 단안경, 기타 광학식 망원경 ; 기타 천체관측용기기 (전파관측용기기 제외) • 광학현미경 •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의 부속품 및 부분품 <p>33204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38524)</p> <p>각종 형태의 사진 또는 영화촬영기 및 영사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용, 영사기용, 사진확대기 또는 사진 축소기용의 대물렌즈 • 사진기 (영화용의것 포함)와 그 부분품 • 영화용영사기, 환등기 및 기타의 투영기 (마이크로포음 리이더 제외) <p>33205 사진실 및 영사실장비 제조업 (38526)</p> <p>촬영기 및 영사기를 제외한 사진실용 또는 영사실용의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용섭광기구 (섬광전구제외) ; 사진 (영화용 제외)확대기와 축소기 ; 사진현상실용의 기기 ;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과 이들의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실용 용기류제조는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p>33209 달리분류되지않은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852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으로서 망원조준기, 잠망경,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레이저다이오드 제외), 기타 사진 또는 광학기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액정디바이스 ; 레이저기기 (레이저다이오드 제외) 및 기타의 광학기기 •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체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포음리이더와 이들의 부분품 <p>333 시계 제조업</p> <p>3330 시계 제조업</p> <p>각종 시계와 시계구동부를 갖추고 시간을 측정, 기록 또는 기타방법으로 시각을 지시하는 기기 및 타임스위치, 귀금속을 포함한 금속제의 시계 케이스 및 시계줄, 시계구동부, 기타 시계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제 이외의 시계줄의 제조 (1912) • 전자시계용 전자부품 제조 (321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유리 제조 (26105) <p>33301 일반시계 제조업 (38531)</p> <p>수동, 전기, 축전기 등 각종 동력원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식 구동부를 갖춘 각종 시계 및 기타 시각 측정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계식 시계구동부의 제조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 • 패종시계 •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로서 시간을 측정, 기록 또는 알리는기와 타임스위치 (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 전동기를 갖춘것에 한한다) • 휴대용 시계 또는 클록무브먼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제 이외의 시계줄의 제조 (1912) • 전자시계와 전자부품의 제조 (3210) • 시계유리 제조 (26105) <p>33302 전자시계 제조업 (38532)</p> <p>기계식 구동부를 갖추지 않은 전자식의 각종시계 및 기타 시각측정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33303 시계부품 제조업 (38533)</p> <p>유리부착여부를 불문하고 각종 시계의 케이스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시계부분품 (보석, 케이스 및 금속제시계줄 포함)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구동부 제조 (33301)
--	---

<p>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p> <p>3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p> <p>3410 자동차 제조업</p> <p>자동차용 엔진, 엔진을 갖춘 샤시, 도로주행용 트랙터, 승용·화물용 또는 기타 특수목적용의 각종 완성 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체, 트레일러 및 기타 자동차 부품의 제조(342 또는 343) • 자동차 수리활동(5020) <p>34101 자동차엔진 제조업(38432)</p> <p>도로주행차량, 트랙터, 작업트럭 및 장갑차량용, 압축점화식, 왕복식 또는 로우터리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실린더용량 50시시 이하의 것)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실린더용량 1000시시 초과한 것) • 차량추진용에 사용되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내연기관(철도 	<p>차량용의 내연기관 제외)</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 엔진의 부분품 제조(3430) <p>34102 자동차 제조업:엔진제외(38431)</p> <p>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특수목적용차,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등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엔진을 갖춘 각종 차량의 샤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레일러 • 대중수송형 승용자동차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대중수송형자동차, 설상주행용차량 및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제외)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것) • 화물자동차 • 기중기 • 사람을 수송할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설상주행용차량;골프용차 및 이와 유사한 차량 • 엔진을 갖춘 샤시(자동차용의 것) • 특수목적용 차량 <p>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p>
--	---

34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8431)

승용, 화물용 또는 기타 특수 목적용 자동차의 차체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수설계된 차체, 캡 및 그 구성단위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와 이들의 부분품, 각종 운송장비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액체용 또는 기타용의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차체 (자동차용의것)
- 컨테이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것)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및 캠핑용의것)
- 기타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화물트럭용 자주식의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포함)
-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부분품; 기타 자동차 부분품 (프로펠라 제외)

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38432)

3430 자동차부품 제조업 (38432)

34300 자동차부품 제조업 (38432)

자동차용엔진의 부분품을 포함하여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및 자동차용 엔진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압축점화식 또는 로타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
- 자동차용의 기타 부속품 및 부분품 (브레이크, 기어박스, 구동차축, 로우드휠, 서스펜션 쇼업소오버,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클러치, 핸들, 운전대 및 운전박스 및 이들의 부분품)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부분품 : 기타 자동차부분품 (기타구동식이 아닌것)

<제 외>

- 자동차 엔진 및 차대제조 (3410)
- 자동차 차체 제조 (3420)
- 내연기관용 공기 및 액체 여과장치 제조 (2919)

35

기타운송비장비 제조업

351

선박, 보우트건조 및 수선업

각종 재료로 각종 유조선,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저장용선박, 냉동선 및 기타 화물선, 화객선, 순항선, 유람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여객선, 각종 페리보우트,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등의 각종 항해용선박과 준설선, 시추대 및 기타 부유작업대, 기타 비항해용 선박 및 부유구조물을 건조,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 선박해체업 (37101)
- 선박부품(전체조립물 제외) 제조는 그 주된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
- 선박용 엔진 제조 (2911)
- 항해 및 기타 선박용기구 제조 (3311)

3511

선박건조 및 수선업

오락 및 유람용, 경기용 또는 낚시용등의 보우트 및 유사소형 선박을 제외한 각종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 유람용 또는 경기용 보우트, 돛단배 및 카누우의 건조 (3512)
- 수륙양용 자동차 제조 (3410)

35111 강선건조 및 수선업 (38412)

주로 철강을 사용하여 각종 유조선,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저장용의 선박, 냉동선, 기타 화물선 및 화객선, 순항선, 유람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여객선과 각종 페리보우트, 군함 및 구명보우트,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강과 같은 항해용 선박을 건조 및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강선
- 탱커
- 냉동선(탱커제외)
-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강선
-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강선
-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 군함, 구명보우트, 기상관측선, 어업지도 및 조사선, 학술연구 및 시험선, 병원선

35112 목선건조 및 수선업 (38413)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저장선, 화물선, 여객선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을 건조 및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항선,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 목선 • 탱커 • 냉동선 (탱커제외) •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목선 •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목선 <p>35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선박조건 및 수선업 (3841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선박건조 및 수선업으로서 철강이나 목재이외의 재료로 각종 항해용 선박을 제조하거나 또는 철강, 목재를 포함한 각종 재료로 비행해용선박, 준설선, 시추대 및 기타 수상부유작업대, 수상구조물을 건조 및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설선, 조명선, 소방선, 기중기선, 발전선, 해난구조선, 공작선, 시추선, 부선거 • 시추대 또는 작업대 (물에 뜨거나 잠길수 있는것에 한한다) • 물에 뜨는 구조물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체가 오락용 보우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장치된 보우트 제조 (3511) <p>3512 오락, 경기용보우트 건조 및 수선업</p>	<p>35120 오락, 경기용보우트 건조 및 수선업 (38414)</p> <p>선내 또는 선외모터, 바람,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우,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유람용, 경기용 또는 낚시용 보우트를 건조 및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밀이 평평한 작은어선, 노로 추진되는 소형범선 및 구명정, 커터, 카약 등의 건조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선 (인플랫터블식의것 제외), 보조모터 부착여부 불문 •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짓는 보우트와 카누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체가 오락용보우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등으로 특별히 설계장치된 보우트 제조 (3511) <p>352 철도장비 제조업</p> <p>3520 철도장비 제조업</p> <p>철도, 궤도용의 자주식 기관차 또는 비자주식의 차량과 이들의 전용부분품 및 철도용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35201 철도차량 제조업 (38421, 38422)</p> <p>증기, 전기 및 디젤내연기관 및 기타 수단에 의하여 자체 추</p>
---	--

진력을 갖는 철도, 궤도용의 기관차, 탄수차 및 비자주식의 각종 궤도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철도용 기관차 (외부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것)
- 디젤 전기기관차
-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 (유지 또는 보수용차량 제외)
-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 (자주식의 것인지 여부 불문)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자주식의 것 제외), 수하물차, 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 (유지 또는 보수용차량 제외)
-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 (자주식의것 제외)

35202 철도차량부품 제조업 (38423)

기관차 또는 철도차량의 전용부품과 철도선로용 장치물 및 철도, 도로, 내륙, 수로, 주차장, 항만 또는 공항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또는 전자기계식의 신호, 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차량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선로용 장치물과 이들의 부분품; 기계식의 신호, 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제 외>

- 철도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제조 (2911)
- 조합되지 않은 레일 제조 (2710)
- 구조 또는 단조제품의 제조 (2891)
- 전기모우터 및 발전기를 포함한 각종 전기장치 제조 (3110 또는 3190)
- 일반 목적용 기계 및 기구제조 (291)
- 차량용 가구 제조 (3610)
- 차량용 일반철물 제조 (2893)

353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530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각종 목적용 고정날개식 또는 회전날개식의 유인동력비행기, 활공기, 활강기 및 비동력 항공기, 비행선, 항공학용 또는 기상학용등의 기구, 우주선, 우주선 운반로켓트,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항공기용 모터 및 엔진을 포함하며, 각종 비행기 또는 항공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항공기 및 항공기용 엔진의 개조 및 수리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기계적 부분품의 제조 (2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제조 (2927) • 항공용 엔진의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부품의 제조 (3190) •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행용기기 및 기타 전문과학기기 제조 (3312) <p>35301 항공기 제조업 : 부품제외 (38451)</p> <p>각종 비행기,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로켓트, 비행선, 기구, 활공기등을 제조, 개조 및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라이더와 헬기라이더 • 기구와비행선 : 기타의 무동력항공기 • 헬리콥터 • 자중 2,000킬로그램이하의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 자중 2,000킬로그램초과의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 우주선과 우주선운반 로켓트 <p>35302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8452)</p> <p>비행기용 또는 우주선용의 모우터 및 엔진을 제조, 개조 및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용엔진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리식의 피스톤 내연기관) • 터보제트 및 터보프로펠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보제트이외의 반동엔진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엔진을 직접 조립하지 않은 사업체가 엔진부품을 제조 (35303) <p>35303 항공기부품 및 보조장치 제조업 (38452)</p> <p>우주선발전장치, 감관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여 동체 및 그 부분품, 프로펠러, 회전자, 바퀴통등의 항공기 전용부품,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로켓트의 전용부품 항공기용 엔진의 부분품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발전장치, 감관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 터보제트 및 터보프로펠러 부분품 • 항공기 및 우주선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또는 항공기용 엔진을 직접 조립하는 사업체에서 이들의 부품을 제조할 경우는 (35301 또는 35302) <p>359 달리분류되지않은 운수장비 제조업</p> <p>3591 모우터싸이클 제조업 (38442)</p>
--	---

35910 모터싸이클 제조업

모페드를 포함한 모터싸이클 및 보조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모터싸이클용 엔진, 사이드카 및 모터싸이클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모터싸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실린더용량 50 시시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의것)
- 모터싸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실린더용량 50 시시 초과한 왕복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의것)
- 모터싸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제외) : 사이드카아
- 모터싸이클 및 사이드카아 부속품 및 부분품

<제 외>

- 자전거 및 신체장애자용 자동차량의 제조 (3592)

3592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20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8441)

한개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자전거, 동력식 또는 기타 기계적 추진식의 신체장애자용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
- 신체장애자용 차량과 이들의 부속품과 부분품

<제 외>

- 어린이용 삼륜자전거 제조 (3694)
- 보조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제조 (3591)
-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 (3591)

35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38490)

3599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수동추진식 또는 동물견인식 차량, 상여등의 기계구동식이 아닌 차량과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기타의 차량 (기계구동식이 아닌것)

<p>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p> <p> 361 가구 및 기타 제조업</p> <p> 3610 가구 제조업</p> <p> 목재, 등, 대, 금속, 유리, 가죽, 플라스틱과 석재, 시멘트 또는 도자재 이외의 각종 재료로 가정용, 사무용, 요식숙박업용, 공공기관용등의 각종 가구, 침대스프링 및 매트리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가구 및 장치물들은 주택, 호텔, 음식점, 병원, 극장, 사무실, 교회, 학교, 선박, 항공기, 자동차등 각종 장소에서 각종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과학, 의료 또는 실험실 장비가 장착된 가구는 제외된다.</p> <p> <포 함></p> <p> • 도자재, 콘크리트 또는 석재의 가구제조 (2691, 2695, 2696)</p> <p> • 조명장치 및 램프제조 (3150)</p> <p> • 의료용 또는 수의용 가구의 제조 (3311)</p> <p> 36101 금속가구 제조업 (38121)</p> <p> 실내용 또는 실외용을 불문한 각종 용도의 금속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주방 및 목욕탕용 캐비닛의 제조를 포함한다.</p> <p> <포 함></p> <p> • 의자, 프레임이 금속제인것 (항공기용, 차량용, 기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용 금속제가구 • 가구(금속제) • 가구 부분품(금속제) •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 및 건조기(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재봉기용 바늘 및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 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틀을 가진 내장가구 제조(36104) • 가구용 철물 제조(2893) <p> 36102 일반목재가구 제조업 (33201)</p> <p> 등가구, 나전칠기가구 및 내장가구를 제외한 각종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자, 프레임이 목제인것 • 사무실용 목제가구 • 부엌용 목제가구 • 가구 및 가구의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가구 제조(3610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들을 갖는 내장가구 제조 (36104) • 나전칠기 가구제조 (36103) <p>36103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3203)</p> <p>장식용 패각 또는 옥돌등의 장식용재료를 세공하여 장식하거나 옷칠을 도장하여 각종 나전칠기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전칠기제의 목제가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석함 등 가구의 성격을 갖지않는 장식용 나전칠기 제품제조 (39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트리스서포트; 매트리스, 스프링을 부착시킨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합한 것 또는 셀룰로스코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 (피복여부 불문) <p>36105 등가구 제조업 (33204)</p> <p>대, 등, 버들 및 유사재료로 실내 및 실외용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재료들이 장식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된 가구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나무, 버드나무, 대나무,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p>3610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구 제조업 (3320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가구제조업으로서 석재, 시멘트, 도자재, 금속, 목재, 등 및 유사재료의 나전칠기가구 및 내장가구를 제외한 달리분류되지않은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재료의 가구 (등가구 제외) • 플라스틱제의 가구
<p>36104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33202)</p> <p>거실, 사무실, 공공건물 및 상업사업체등에서 사용되는 내장가구, 가구용 매트리스, 매트리스지지물, 침대스프링, 스프링 쿠션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자의 속, 용수철, 카바를 덴 의자 • 침대겸용 의자 (프레임이 목제인것) • 침대 (프레임이 목제인것) 	<p>369 기타 제조업</p> <p>여기에는 다른 소분류에서 분류되지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으로서 귀금속제품, 약기류, 운동 및 경기용구, 인형, 장난감</p>

및 오락용품 모조장식 및 장식품, 흥행 및 유희용품, 사무 및 회화용품, 우산 및 지팡이, 비, 술, 단추, 라이타 및 기타 잡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성형제품 제조 (251 또는 252)
- 금속의 구조제품 제조 (273)
- 요업제품 제조 (26)
- 합성귀석 제조 (24119)

3691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10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9010)

구입한 천연 또는 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및 기타 용품의 제조 또는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화용의 동전 및 기타 법정메달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및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 (공업용다이아몬드 및 압전기용석영 제외), 가공한것 (단순히 톱질하거나 원석 또는 조개것, 거칠게 성형한것) 실로 펜것, 장착 또는 세트된것 제외
- 공업용 다이아몬드(가공한것);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 및 기타의 제품;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것)의 제품
- 주화

<제 외>

- 장신, 장식용메달, 상패등의 제조 (3695)
-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 (3330)
-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의 제조 (2423)
- 연마재의 제조 (2699)
- 귀금속을 도금한 비철금속제품의 제조는 28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 모조장신구의 제조 (3699)

3692 악기 제조업

피아노, 울젠, 현악기, 관악기 및 타악기등의 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축음기, 마이크로폰, 헤드폰 및 이와 유사한 음향기기 제조 (3220)
- 장난감 악기의 제조 (3694)

36921 피아노 및 기타 현건반악기 제조업 (39021)

피아노, 하프시코오드, 스피넷과 같은 현건반악기를 제조하는 산

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피아노 및 기타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제 외>

- 전자식 현건반악기의 제조 (36926)

36922 현악기 제조업 (39023)

현건반악기를 제외한 현악기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현악기

<제 외>

- 국악현악기 제조 (36927)

36923 건반관악기 제조업 (39022)

올젠, 하모니움, 아코디온, 콘서티나, 반도니온과 같은 건반과 파이프 또는 리드가 결합되어 바람으로 연주하는 악기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취주악기 (파이프오르간·아코디언 및 금관악기 포함)

<제 외>

- 전자식 건반관악기 제조 (36926)

36924 관악기 제조업 (39024)

플루이트, 피리, 바순, 클라리넷, 색스폰 등 목관악기와 트럼펫, 클라리온, 색스폰 등 금관악기, 배그파이프 등 관악기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현악기 (파이프오르간·아코디언 및 금관악기 포함)

<제 외>

- 국악관악기 제조 (36927)

36925 타악기 제조업 (39025)

드럼, 북, 심벌 등 타악기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북, 목금, 심벌, 캐스터네츠, 마라카스, 탬버린 등의 타악기

<제 외>

- 국악타악기 제조 (36927)

36926 전자악기 제조업 (39026)

소리가 전기 또는 전자적으로 발생 또는 증폭하도록 설계된 전자건반악기, 전자현악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

36927 국악기 제조업 (39027)

가야금, 거문고, 장고, 북, 아쟁, 통소, 징, 바라등 각종 한국고유의 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국악용)

36929 달리분류되지않은 악기 제조업 (39029)

달리분류되지않은 악기 제조업으로서 오케스트리온, 바렐을젠, 톱악기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악기용 현 및 기타 악기부분품, 박절기, 음차 및 각종의 조음적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뮤우지컬박스, 페어그라운드오르간, 메카니컬 스트리트오르간, 기계식 자명조, 뮤우지컬 소오
-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박절기·음차와 각종의 조음적

369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체조, 육상, 실내외경기, 수영 및 수상경기등의 각종 운동 및 경기용의 기구, 각종 공, 라켓, 배트 및 골프채, 낚시대 및 기타 여가 낚시용품, 수렵, 등산, 운동용품, 운동용의 글러브와 헤드기어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보우트용의 돛제조 (1721)
- 운동복 제조 (1810)
- 안장 및 마구류 제조 (1912)
- 경기용 신발 제조 (1920)
- 무기류 제조 (2927)
- 터보진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이외의 경기용 차량 제조는 (34)또는 (35)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분류
- 경기용 보우트 제조 (3512)
- 당구 및 볼링장비 제조 (3694)

36931 체조 및 어린이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9031)

목마 (체조용), 스프링보드, 평행봉, 링, 크라이밍로프, 바렐, 흉위확장기등과 같은 제조장비 및 기계식 체력단련기기, 트랙 및 육상경기용구, 어린이놀이터용 장비, 복싱링 장비, 농구장 장비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복싱글러브 및 보호물제조 (36932)

36932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제조업 (39032)

라켓, 배트, 스틱 및 해머, 볼, 글러브 및 보호물, 조립네트등의 코트 및 필드 게임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운동용장갑, 공, 골프채, 탁구용구 및 테니스라켓 포함):수영장용품과 패딩풀 용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용공 및 기타 골프장비 제조(36939) <p>3693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39033, 39039 중 수렵용품 포함)</p> <p>낚시대 및 릴, 낚시바늘, 인조미끼, 부찌, 선감는 틀등과 같은 낚시, 양궁, 사격 및 수렵용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대 및 기타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 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렵 및 경기용 무기류 제조(29270) <p>369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3903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으로서 골프장비, 등산장비, 탁구용구, 동계경기용장비, 수중경기용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스키·파도타기널판·세일보오드와 기타의 수상운동용구 • 골프채·골프공, 테니스라켓 포함;수영장용품과 패딩폼용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클럽 제조(36932) • 당구 및 볼링장비 제조(3694) • 탁구공 및 야구공제조(36932) • 스케이트이외의 빙상, 하키용구 및 탁구용구 제조(36932) • 사격 및 양궁장비 제조(36933) <p>369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p> <p>사람모형 또는 기타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바퀴달린 승용장난감 및 어린이용 삼륜자전거, 비승용장난감, 유희용구 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 전자식게임기, 축조모형 및 유사한 오락용모형, 각종 퍼즐 및 기타 완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3592) • 축제, 카니발 및 흥행장용품 제조(3699) <p>36941 인형 제조업(39041)</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상스키와 기타의 설상스키용품;아이스스케이트 및 로울러스케이트 	<p>사람이나 동물모양 또는 가상형태를 형상화하여 어린이 유희용 또는 순수 장식용 및 인형극용등의 각종 용도의 봉제인형 및 기타 조립인형, 꼭두각시 및 유사제품, 인형부분품 및 악세</p>

<p>사리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이러한 인형은 섬유재료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를 혼합하여 조립되며 소리장치 또는 동작장치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모형의 인형 : 동물을 모방한 완구 또는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 사람모형의 인형의 부속품 및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인형을 제조하는 활동 (2520) • 금속주조 인형 제조 (2891) • 인형용 완구등 도다제 및 유리제의 인형부품 제조 (2691, 2610) <p>36942 승용장난감 제조업 (39042)</p> <p>페달추진식 또는 다른 사람이 밀거나 끌도록 설계된 아동용차와 유사 장난감자동차, 유모차, 아동용 세발자전거 및 스쿠터, 바퀴달린 승용장난감, 동물, 오토스키프등 아동이 탈수 있도록 설계된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인형용의 차 :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 (3592) • 로울러스케이트를 포함한 아동용스키 및 썰매 제조 (36939) <p>36943 비승용장난감 제조업 (39043)</p> <p>인형과 동물을 제외한 아동용장난감 제조활동으로서 과학용장난감, 동력식장난감, 장난감무기, 장난감 집 및 모형, 알파벳 셋트, 아동용 조립목제품, 장난감 악기 및 기타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식 기차완구 및 제도, 신호기와 이들의 부속품을 포함하고 •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와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 • 퍼즐 • 기타의 완구 (완구용 악기류 포함) <p>36949 달리분류되지않은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9044, 3904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으로서 장기, 바둑, 체스등 판게임용장비, 스포츠오락용기계, 당구, 볼링등 오락용테이블 및 장비, 동전조작게임장비, 비디오게임장비, 도박게임장비등 유희용구, 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용카드 • 비데오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기타 유희용구, 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당구용구, 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보울링 유희장용구 포함), 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카니발 또는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3699) 	<p>모발, 동물털 및 기타 섬유를 가공하여 가발, 가눈섭, 가수염, 헤어네트 및 유사제품 또는 귀금속이외의 재료로 모조장신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모(정돈, 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와 가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용으로 조제한 양모나 기타의 수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가발, 가수염, 눈섭, 속눈섭, 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기타인모제품 • 모조신변장식용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모 가공재료 또는 장식용 제조(39052)
<p>3695 모조장신 및 장식품 제조업</p> <p>36951 장식용 칠기 제조업(39051)</p> <p>정교하게 만든 소규모의 상자, 집기, 담배함, 보석함등에 옷칠, 나전칠등을 하여 장식용 칠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목세공과 상감 세공한 목재, 목재의 카스켓과 목재의 조상과 기타 장식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전칠기가구 제조(36103) 	<p>36953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칠기제외(39052)</p> <p>각종 재료제의 인조꽃, 무, 잎, 과일등의 제조를 포함하며, 거북껍질, 상아, 패각, 뼈, 뿔, 산호, 깃털, 흑옥 및 유사물질, 호박, 해포석 및 기타 장식용 재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 및 광물성 물질을 가공한 조각용 재료 및 이들의 장식용제품, 밀랍, 스테아린, 천연검, 수지 및 비경화젤라틴등의 장식용 재료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 또는 뿌리의 블록으로서 파이프의 제조용으로 거칠
<p>36952 가발 및 모조장신품 제조업(39055)</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 또는 뿌리의 블록으로서 파이프의 제조용으로 거칠

<p>게 성형한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 또는 성형재료의 제품, 인조의 꽃, 잎,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및 인조의 꽃, 잎 • 과실로 만든 제품; 우모피와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기타 부분, 새의 솜털 및 이들의 제품 • 쇼윈도우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및 기타 부분품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기제품 및 표구용품의 제조 (36951, 36954) <p>36954 표구 및 표구제품 제조업 (39053)</p> <p>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이외의 표구제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한다.</p> <p>36955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9097)</p> <p>인쇄물 및 활동적인 진열물을 제외한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36956 전시형 모형 및 기기 제조업 (38549 중 일부, 38519 중 생물학적 해부모형 및 견본)</p> <p>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설명용에만 적합한 기기와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설명용에만 적합한 기기와 모형 	<p>36959 달리분류되지않은 모조장신 및 장식품 제조업 (39059)</p> <p>달리분류되지않은 모조장신 및 장식품 제조업으로서 상패, 명패 및 뺏지, 감사패, 트로피, 대형의 실내장식용 메달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3699 달리분류되지않은 제조업</p> <p>달리분류되지않은 제조업으로서 만년필, 연필 및 기타 필기용구, 금속 또는 고무스텝프 및 스텝실, 회화용구, 우산, 지팡이, 바늘, 편, 파스너, 단추, 비와 솔, 라이터, 담배파이프, 광고용 진열물 및 기타 잡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36991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구 제조업 (39049)</p> <p>카니발, 축제 또는 기타 흥행장용품을 포함하며, 회전목마, 그네, 실내사격연습장용구 및 기타 유희장용구, 순회서커스용, 순회동물원용 및 순회극장용의 용품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목마, 그네, 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 축제, 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 (요술용품과 기술용품 포함) <p>369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9091)</p> <p>펜, 만년필, 도화용, 필기용의 연필, 크레용, 초크, 파스텔, 석판</p>
---	---

및 흑판, 수동식스탬프 및 봉인기, 타자기용 리본 및 잉크패드, 인주, 인장등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 회화, 문구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펜, 철필, 연필, 펜홀더 및 이와 유사한 홀더와 이들의 부분품; 크레용, 연필심, 파스텔,
- 도화용의 목판 및 초오크
-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것); 일부인 봉합용스탬프, 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수동식의 콤포징스틱 및 콤포징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세트; 타자기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인쇄에 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것); 잉크패드

<제 외>

- 인장재료 제조(36953)
- 회화용 물감 제조(24222)
- 자 및 제도용기구 제조(33122)

36993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39092)

각종 우산 및 양산, 지팡이, 등산용 지팡이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칼등이 복합된 다용도 지팡이 제조도 포함된다.

<포 함>

- 우산, 양산,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부분품

36994 단추 및 파스너 제조업(39095, 39096)

각종 재료의 단추, 커프링크 및 기타 유사 장식못, 프레스파스너, 스냅파스너, 슬라이드파스너 등 각종 파스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프레스파스너,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이들의 부분품; 단추; 슬라이드파스너
- 단추의 몰드와 단추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슬라이드파스너 부분품

36995 비 및 솔 제조업(39093)

동물털, 식물성섬유, 모노필, 로프, 금속선등을 재료로 비, 솔 및 걸레(자루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계부착용솔, 기계용솔 및 개인위생용 솔의 제조도 포함된다.

<포 함>

- 비, 부러쉬,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것)
- 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솔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 제외)

36996.ライタ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9094)

각종ライター,ライター들 및 기타 유사발화성합금,ライター연료 및 유사제품,각종 재료의 담배파이프,담배대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담배필터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담배용ライター와 기타의ライター: 연용 파이프와 시가 호올더, 시가렛호올더 및 이들의 부분품(나무 또는 뿌리의 블록으로서 파이프의 제조용으로 거칠게 성형한것 제외)
- 라이터의 부분품:페로세륨,기타의 발화성 합금: 메탈드 하이드,헥사메틸렌트레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합한 것:알코올을 기초로 한 연료 및 유사 조제연료:고체 또는 반고체형태,불꽃수지,점화용 및 유사품 연용ライター 및 유사 라이터,충전 또는 재충전용의 용기에 넣어진 액체연료와 액화가스연료

36997.보온병 및 가정용 진공기 제조업 (38192 일부)

보온병과 기타의 질공기(케이스를 갖춘것) 및 그 부분품,여과 필터를 장착한 정수통 및 여과용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기(케이스를 갖춘것)및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 제외)

-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보온병,마네킹인형,쇼윈도우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및 기타 부분품

<제 외>

- 보온병 속유리 제조(2610)
- 정수기 및 기타 액체여과장치 제조(29194)

36998.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업 (32194 중 일부)

코르크,고무 또는 인조프라스틱물 이외의 물질을 종이,섬유 등의 각종 지지물에 도포 또는 피복하여 리놀륨 및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3699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제조업 (39099)

달리분류되지않은 소도구 및 화장용품,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회전낙화장치,머리빗 및 머리핀등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우산,양산,지팡이,시이트스틱,채찍 및 이와 유사한 부분품.트리밍과 부속품
- 화장용의 분침과 패드;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분무기 및 그 두부;빗,헤어슬라이드,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커얼링핀,커얼링크림,헤어커얼러,이와

<p>유사한 물품 (전기가열기기 제외) 및 부분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냥 •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 마 네킹인형과 기타 모델용인형 및 자동인형, 기타 쇼윈도우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 커트 (누에의 커트제외) 고울드비터스킨, 방광 또는 건의 제품 	<p>37 재생재료가공처리업</p> <p> 특정제품 제조용 원료로 그 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의 금속 또는 비금속폐기물, 스크랩 또는 특정제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약간 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료상태로 전환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에서 투입물 또는 생산물의 특성은 모두 폐기물 및 스크랩상태의 것이며, 만약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특정사업체 또는 경영단위내의 일개 부서에서 이러한 산업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경영단위의 전체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아 그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산업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p> <p> <제 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품 및 기타 재생재료의 수집 및 관련 처리활동 (51496) <p>371 금속재생재료 생산업</p> <p> 3710 금속재생재료 생산업</p> <p> 철강, 비철금속 또는 귀금속의 폐품, 스크랩 및 특정제품을 처리하여 재생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37101 선박해체업 (38415)</p> <p> 각종 선박 및 기타 부유구조물의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37102 고철가공 처리업

폐품, 고철, 스크랩 및 찌꺼기 상태의 철강 재생재료를 가공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고철 분쇄처리 제조업, 재생용
- 고철 분쇄처리업, 재생용
- 폐금속제품 해체처리, 재생용
- 찌꺼기 상태의 철강, 재생용

<제 외>

-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 (37103)

37103 비철금속 가공처리업

폐품, 스크랩, 찌꺼기상태의 귀금속 및 기타 비철금속 재료를 가공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귀금속제품 해체 처리업, 재생용
- 귀금속회수처리, 재생용
- 비철금속 분쇄처리, 재생용
- 비철금속 정선처리, 재생용
- 비철금속 회수처리, 재생용
- 비철금속 화학처리, 재생용

372 비금속재생재료 생산업

3720 비금속재생재료 생산업

음식료품 및 담배 부산물, 가죽 및 섬유폐품, 고무, 플라스틱 목재, 종이 및 기타 비금속물질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처리하여 비금속재생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7201 폐섬유 및 종이 재생재료 생산업

폐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가죽재료를 처리하여 재생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섬유웨이스트
- 견웨이스트 (카드 또는 코움하지 않은것)
-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
-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 면웨이스트 (가아넷스톡 제외)
- 기타 면웨이스트; 가아넷스톡
- 인조섬유의 웨이스트
-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 냅마 및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폐물 (방직용 섬유제의것)
- 가죽웨이스트, 가죽의 더스트와 분
-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37202 폐프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제조업

폐고무 및 프라스틱 물질을 처리하여 이들의 재생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고무의 웨이스트, 페어링 및 스크랩 (경질고무 제외) 과 이들의 분 및 입
- 중고고무 공기타이어
- 프라스틱의 웨이스트, 페어링 과 스크랩

37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금속재생재료 생산업

달리분류되지않은 비금속 재생재료 생산업으로서 종이섬유 및 가죽제품, 고무 및 프라스틱 물질 이외의 비금속물질을 처리하여 이들의 재생재료를 생산하고 산업활동을 포함된다.

<포 함>

- 폐물 (생것, 식용이 아닌것), (돼지털, 동물의장, 새의 우모피, 새의 깃털, 뼈 및 아이보리 포함)
- 밀기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밀류 (곡물 또는 채두류 처리시에 생기는것)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펠리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 비트펄프, 버개스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 커피의 각과 피
- 코코아두의 각 피와 기타 코코아웨이스트
- 양조 또는 증류박
- 포도주박과 생주석
- 담배부산물
-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 (리그닌술폰산을 포함하나 톨올오일 제외)
-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 41)

이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송·배전사업, 가스제조 및 공급사업, 증기, 온수의 생산 및 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공급사업이 포함된다.

1. 개요

○ 전기업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송·배전 활동과 이에 관련된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스제조 및 공급업

연료용 및 난방용 제조가스 또는 혼합가스의 생산활동과 생산 또는 구입된 가스의 배관공급 및 정압저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증기 및 온수공급업

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용의 열, 증기, 온수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여 산업활동을 말한다.

○ 수도사업

개인, 가정 및 사업체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동일기업체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기발전소가 동일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보다 많은 양을 가정 및 타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별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발전업에 분류

나. 정유공장에서의 가스 생산활동 (23200)

다. 관계시설의 운영활동 (014)

라. 하수시설의 운영활동 (90021)

마. 차량용 가스충전소 활동 (50502)

바. 가스충전공급업 (도매) (51413)

사. 충전가스공급업 (소매) (52273)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01

전기업

4010

전기업

가정,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기 위하여 발전, 수력, 송·배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력생산은 수력, 풍력, 화력, 원자력, 태양에너지, 조력등에 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다. 동일기업내에서 모기업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p>자가발전소가 모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그보다 많은 양을 다른 이용자에게 공급전기를 모기업과 분리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한다.</p>	
<p>40101 발전업 (41011)</p> <p>수력, 풍력, 화력, 원자력, 태양에너지, 조력 등에 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 전기에너지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아트리지) 	<p>가스공장에서 연료 및 난방용 가스를 제조하는 활동과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활동 및 배관공급자 또는 소매용 가스충전업자등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402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41021)</p> <p>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공장에서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가스, 혼합가스 및 기타 연료용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제조한 가스 또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구입가스를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제조 : 연료용, 난방용 • 제조가스 • 혼합가스 • 가스배관공급(제조공급, 구입공급) •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제외)
<p>40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업 (410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업으로서 발전소와 분리된 변전소를 포함하여 송·배전소 전기사업소의 본사 및 지사, 영업소 등 전기사업의 관리적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소 : 본사, 지사, 영업소 • 송·배전소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파이프라인 운영 : 수수료 또는 계약 (6030) • 산업용 압축, 액화가스 제조 (2411) • 차량용 가스충전소 (5050)
<p>402 가스제조 및 공급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소매용 가스충전소 : 도매 (5227)
<p>4020 가스제조 및 공급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게 가스를 직접 충전 또는 구입한 충전가스 공

<p>급 (5227)</p> <p>4020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 (4102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으로서 배관공급자 및 가스충전 공급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를 송출 및 정압처리하는 가스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스관리사업 본사 및 지사, 영업소 등 가스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관리사업소 : 본사, 지사, 영업소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스연료를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는 활동은 (6030) <p>403 증기 및 온수공급업</p> <p>4030 증기 및 온수공급업</p> <p>40300 증기 및 온수공급업 (41030)</p> <p>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열, 증기 및 온수를 생산, 배관조직을 통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배관조직을 통한 온천수의 공급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생산, 공급업 • 증기생산, 공급업 • 온수생산, 공급업 • 온천수개발, 공급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수개발 : 도급건설업자가 수행 (45) • 광천권 임대 (7011) • 지질조사 및 탐사업 (7421) <p>41 수도사업</p> <p>410 수도사업</p> <p>4100 수도사업</p> <p>41000 수도사업 (42000)</p> <p>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 수도사업 • 취수장 • 정수장 • 수도사업 관리사무소
--	--

- 생활용수 관리사업소
- 공업용수 관리사업소
- 공업용 수도사업
- 취수 집수장
- 정수 급수장

< 제 외 >

- 농업용 관개시설 운영 (1040)
- 하수시설 운영 (9001)
- 천연광천수 및 천연음료수 병포장 공급 (1554)

F. 건설업 (45)

1. 개요

각종 건설재료로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각종 건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선 및 보수, 해체 등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건물 또는 구축물을 용지위에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도급종합건설업자 또는 자영건설업자에 의한 건물건설활동, 도급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토목공사 및 관련구축물 설치공사, 종합 또는 전문도급 건설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조립식 건물의 설치공사, 기타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각종 전문건설 활동이 분류된다.

○ 도급종합건설업

설계된 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자기책임하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주공사를 전문 건설체와의 재도급 계약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다.

○ 도급 전문건설업

도급종합 건설업자와의 재도급계약 또는 특정 토목공사발주자,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소유자와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토목공사 또는 종합건물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활동중 특수전문기술 또는 장비가 요구되는 특정 전문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 자영건설업

판매를 위한 건물을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동일기업을 위한 건설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의 일개부서도 별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계약에 의한 조정설계, 정원조성 및 유지관리 활동은(0140)에 분류되나 풍치도시 건설설계 활동은 (7421)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건설활동 (1120)

다. 계약에 의한 광업권개발 또는 채굴준비 공사활동 (4510)

라. 계약에 의한 광산지역에 건물, 도로 및 기타 구축물의 설치공사는 건설업

마. 조립식 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으로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은 건설업으로 분류

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

<p>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제공 (7421)</p> <p>사. 건물이외의 부동산 (토지, 광업권등) 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70)</p> <p>아. 선박해체업 (371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철거 및 파괴공사 • 건물 해체공사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해체 (3710)
<p>45 건설업</p> <p>451 지반 조성공사업</p> <p>4510 지반 조성공사업</p> <p>계약에 의하여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 토공사 및 기타 지반조성공사, 광업권 및 광산용지의 개발, 준비공사 등의 건설부지 또는 기타 용지를 개발, 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45101 건축물 해체공사업 (52830)</p> <p>계약에 의하여 도급건설업자가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해체, 철거 또는 파괴하는 공사를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관련하여 지반정리공사와 해체결과 얻어지는 부수물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p>	<p>45102 토공사 및 기타 지반 조성공사 (52810)</p> <p>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부지 및 기타 지반조성공사에 관련된 발판, 암석제거, 굴착, 흙운반, 땅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광업권 및 광산용지의 개발과 채광에 관련된 각종 준비공사 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철거 및 파괴공사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조성공사 • 토공사, 토지조성 • 광산용지 조성관련공사 : 시굴, 암석 및 장애물 제거, 터널 굴착 및 지주설치공사, 관련 배수로공사, 흙운반공사, 지면 정리공사 등 • 농지개발 및 정리공사 • 공업용지 조성공사 • 묘지조성공사 • 용지조사사업 • 용지조성 및 정리사업 • 굴착공사 및 땅고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용지 개발사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축조 기초공사 (45231) • 도로공사 (45221) • 터널공사 (45223) • 수로·하수로공사 (45225) • 파일공사 (45231) <p>452 건축물구조 및 토목공사업</p> <p> 각종 건설재료로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보수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또는 구축물을 용지위에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축조하는 종합건물건설, 토목건설 활동과 건축물 축조공사의 일부만을 계약에 의하여 건설하는 건축물 축조전문건설 활동이 포함된다. 도급 종합건설업자는 도급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도급 계약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않고, 도급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업에 분류된다.</p> <p>4521 종합건물건설업</p> <p>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각종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건물건설에 연관되는 토목건설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p>	<p>45211 도급건축관리업 (51111 중 일부)</p> <p> 종합도급건축물 건설업자가 계약된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서 도급공사의 전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재도급 계약에 의하여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도급 건물건설 :전부 재도급 공사관리 <p>45212 건물자영건설업 (51120)</p> <p>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건물건설 활동에만 주로 종사하는 동일 기업체내의 일개부서로서 별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건물건설 분양·판매 • 건물건설, 자영, 판매, 분양 • 주택건설, 자영 • 단층, 다층 주거용 건물건설 • 기타 주거용 건물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건물건설 임대 (701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건설 임대 (7010) <p>45213 주택도급건설업 (51111 중 일부)</p> <p>계약에 의하여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같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층, 다층 주거용 종합건물건설업 • 다세대 주거용 건물건설업 • 단독주택건설 • 연립주택건설 • 아파트건설 • 주택건설, 도급 • 아파트식 호텔건설 • 기타 주거용 건물건설 • 조립식 주택건설 <p>< 제 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기숙사 및 유사용 건물건설 (45214) • 행형시설건설 (45214) • 군대막사건설 (45214) • 오피스텔건설 (45214) 	<p>건물, 상업용 및 특수사업용 건물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 건물건설 • 은행 건물건설 • 공공사무용 건물건설 • 호텔·기숙사·군인막사 건설 • 학교건설 • 병원건설 • 극장·교회·회관·도서관 • 박물관 및 유사 건물건설 • 상업용 및 특수사업용 건물건설 • 상점건설 • 쇼팡센터 건설 • 음식점 및 주점건설 • 교도소건설 •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 공중목욕탕 및 화장실 건설 • 상업용 종합건물 건설업 • 호텔, 음식점 및 유사건물 건설업 • 교육용 건물건설 • 건강용 건물건설 • 공공오락용 건물 건설
<p>45214 사무 및 상업용 건물도급건설업 (51112)</p> <p>계약에 의하여 전문 및 일반 사무용건물, 정부 및 공공용</p>	

<제 외>

- 특정용 창고건설 (45219)
- 일반창고 건설 (45215)
-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 (45229)

45215 공업용 및 측정산업용 도급건설업 (51119 에서 분리)

계약에 의하여 각종 제조공장 및 유사한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일반공업용 건물 건설
- 단층건물 (공업용) 건설
- 다층건물 (공업용) 건설
- 특정산업용 건물 건설
- 발전소용 및 관련 건물활동
-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 금속산업용 건물 건설
- 냉동시설 건물건설, 냉장시설 건물시설
- 일반 산업용 건물건설
- 산업용 종합건물 건설
- 제조공장 건물 건설업
- 산업용 건물 건설
- 발전소 건설
- 광산건물 건설
- 화학공장 및 화학설비 건설

- 기타 제조공장 건설

4521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물도급건설업 (511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물건설 활동으로서 주거용 건물, 사무 및 상업용건물, 공업용 및 유사건물을 제외한 기타 건물을 계약에 의하여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농업용 건물건설
- 운수관련 건물건설
- 여객터미널 건물건설
- 화물터미널 건물건설
- 특정용 창고건물 건설
- 화학물 및 석유저장소 건물건설
- 주유소 건물건설
- 격납고건설
- 영묘정건설
- 동물원용 건물건설

4522 토목건설업

계약에 의하여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물을 제외한 각종 구축물, 산업시설 및 설비를 용지위에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21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업 (51210, 51240)

계약에 의하여 고가도로를 제외한 차량도로, 시가도로, 활주로 등의 각종 도로건설과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에 의한 각종 용도의 지면포장공사 활동을 말한다. 도로건설 활동에 결합하여 수행되는 도로관련구조물, 차선분리대, 공로표지 등의 설치공사와 도로주변 조명공사, 교통선 굿기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도로공사
- 차량도로공사
- 시가도로공사
- 활주로공사
- 포장공사
- 아스팔트 포장공사
- 콘크리트 포장공사
- 판석 포장공사
- 고속도로(고가고속도로 제외) 및 도로건설, 철도
- 고속도로(고가고속도로 제외)공사, 도로공사

<제 외>

- 교량 및 지하도(도로건설과 분리된)공사(45222)
- 교통통제조직 및 조명시설공사(45229)
- 건물건설에 관련된 판석공사(45237)

45222 교량 및 고가로건설업(51220)

계약에 의하여 철교, 콘크리트교량 등 각종 교량, 고가도로

및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수로용 또는 철도용 고가로의 건설이 수로공사 및 도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교량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철교건설
- 콘크리트 교량건설
- 이동식 교량건설
- 고가도로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교량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목재, 석재 교량건설
- 로우프 다리건설
- 교량:고가 고속도로

45223 터널, 지하철 및 철도건설업(51240)

계약에 의하여 각종 목적용 터널건설과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 및 관련구축물을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수중 터널공사
- 산 및 지상장애물통과 터널공사
- 강 및 수로 터널공사
- 철도 및 관련구축물 건설
- 지상철도 로반공사

- 지하철도 로반 및 관련 터널공사
- 철도노선 설치공사
- 철도조차장, 철도측선 및 연합구조물공사
- 철도관련구축물 설치공사
- 신호교공사
- 신호탑공사
- 저수통공사
- 터널 및 지하도건설
- 철도공사
- 지하철건설

<제 외>

- 차량 및 사람통행용 지하도건설 (45222)
- 철도공사와 분리되는 고가로공사 (45222)

45224 댐 및 저수시설 건설업 (51230)

계약에 의하여 댐, 강 제방, 뚝 및 유사 저수시설을 건설하는 활동으로서 항만시설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러한 저수시설은 발전, 운하, 오락, 급수 및 관개, 홍수 및 사태방지 등을 위한 수위조절에 이용될 수 있다.

<포 함>

- 흙 및 암석댐 건설
- 강 제방, 뚝 및 유사구조물 건설
- 콘크리트댐 (중력 및 아취댐) 건설

- 댐 및 저수지건설
- 철 및 목재댐 건설

<제 외>

- 인공호수 (굴착) 건설 (45229)
- 수로공사 (45225)
- 운하건설공사 (45229)

45225 수로 및 배관시설 건설업 (51290)

계약에 의하여 수로, 송수 및 배수시설 공사와 파이프라인, 도시가스관, 배수관, 하수관 등의 배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및 통신시설용 배관시설공사가 전기 및 통신시설 설치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수로 및 배수시설공사
- 관개 수로시설 (관공사 제외) 공사
- 하수로 (관공사 제외) 공사
- 수로, 배수시설공사
- 파이프라인 및 배관시설공사
- 파이프라인공사
- 도시가스 배관공사
- 송, 급수관 공사
- 배관공사, 토목
- 파이프라인 (장거리), 통신 및 전력라인 (케이블)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공사 • 수로(도관)공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로터널공사(45223) • 전기 및 통신시설공사와 결합되는 배관시설공사(45229) • 건물내부 배관공사(45231) <p>45226 산업설비조립 및 설치공사업(51290)</p> <p>계약에 의하여 각종 중화학공업용 설비 및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산업용설비를 용지위에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이러한 설치공사에 관련되는 기초공사, 탑설치 공사등의 부수적 관련공사가 결합될 수 있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조립, 설치공사 • 물탱크조립, 설치공사 : 산업용 • 도시가스 저장탱크조립 • 화학물처리 및 저장탱크 • 산업설비 설치공사 •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 광산설비 설치공사 • 오븐, 로 및 유사설비 설치공사 • 발전설비 설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 및 정수설비 설치공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기계장치(기조립된)의 설치공사(453) • 상업설비설치용 건물건설(4521) <p>45229 달리분류되지않은 토목건설업(51290)</p> <p>계약에 의하여 달리분류되지않은 구축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하, 항구 및 유사구축물 건설 • 운하건설 • 항구 및 유사구축물 건설 • 항구건설공사 • 방파제 및 유사구축물 건설 • 부두, 잔교 및 유사구조물공사, 부표의 설치공사 • 경기장 및 유사오락시설공사 • 스타디움공사 • 운동장 및 코트공사 • 수영장 및 탈의실공사 • 전기 및 통신배선공사 • 배전선공사 • 통신선 및 관련구조물 설치공사 • 통신탑 설치공사
---	--

- 해저케이블 설치공사
-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군사용 구조물 설치공사
- 삭도 및 유사구조물 설치공사
- 인공호수(굴착) 건설
- 토목공사(기타)
- 공중편의시설공사
- 가로 조명시설공사
- 교통통제 시설공사
- 기타 스포츠 및 오락용 건물 건설(수영장, 테니스코트, 골프장)
- 통신라인(TV, 라디오, 전보, 전화 및 기타전송라인) 설치공사
- 전력라인(케이블) 설치공사

〈제 외〉

- 전기통신공사와 분리되는 배선, 배관공사(45225)
- 농지개발 및 정지, 광업관련계약공사(4510)

4523 건축물축조 관련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자와의 재도급계약 또는 건물, 구축물 소유자와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건물 및 구축물의 골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할 공사중 일부공사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조한 이후 그 건축물에 부착, 설치되어야 할 설비를 설치하는 설비공사와 건축마무리공사 관련활동은 여

기에서 제외된다.

45231 파일 및 기초공사(5281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축조에 관련되는 파일박기 및 관련공사, 건축물 굴착 및 관련 흙운반공사, 배수로공사(기초공사관련), 축조용 재지굴착 및 기초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크레인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부지기초공사 및 관련공사
- 파일박기 및 관련공사(크레인 및 항타기 운영활동 포함)

〈제 외〉

- 건설용지, 토지 및 광산개발 관련공사(4510)
- 크레인 및 항타기 임대는 조작자의 유무에 따라(4550 또는 7122)

45232 우물공사업(5282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우물굴착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우물공사
- 가정용 우물공사
- 공동용 우물공사
-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정공사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호수, 연못, 수영장 건설 (45229) <p>45233 비계 및 형틀공사업 (52750)</p> <p>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 설치공사, 콘크리트 형틀설치공사, 기타 건축공사 보조물 설치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 발판가설공사 • 특수중량물 설치공사 • 건축공사 보조물 설치공사 • 형틀(콘크리트) 설치공사 • 비계공사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공사와 결합수행하는 형틀공사 (45236)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공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구조물(철탑, 철교등) 조립·설치공사 (4522) • 철강구조재의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2811) <p>45235 철근공사업 (52712)</p> <p>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철근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공사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공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철근공사 (45236)
<p>45234 철골공사업 (52711)</p> <p>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철골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4523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2760)</p> <p>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콘크리트공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사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콘크리트공사 (45231)

- 콘크리트 구축물 건설공사 (4522)
- 벽면, 바닥의 회반죽공사 및 미장공사 (45403)

45237 벽돌조적 및 석축공사업 (52410, 5242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물, 굴뚝 및 기타 구축물의 축조에 관련된 벽돌쌓기, 블록쌓기, 석재, 대리석 및 조립식 벽면 설치공사 등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벽돌조적공사
- 콘크리트블록 조적공사
- 재조적공사
- 벽널구조재 설치공사
- 석재공작물 설치공사
- 콘크리트 및 석재구조재 설치공사
- 석조건축사업

<제 외>

-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 (45333)

45238 지붕잇기 및 합석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합석, 루핑, 동판, 기와 등 각종 재료의 지붕잇기 공사와 건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합석 및 기타 금속판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기와 지붕잇기
- 합석 지붕잇기
- 스테이트 지붕잇기
- 재료 지붕잇기
- 합석 및 기타 금속판공사 (건축관련)
- 물받이 및 홈통설치공사
- 지붕공사 및 방수작업

<제 외>

- 합석공사 (배관공사 관련) (45301)
- 지붕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도장공사 (45404)

4523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축물축조 관련 전문건설업 (52910, 52990)

달리분류되지않은 건축물축조에 관련되는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잠수 및 수중공사
- 건물이전공사
- 기타 전문건설업

453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4530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완전한 전문건설 활동의 요소적 건설기능 활동으로서 건축물 골격을 축조한후 또는 건축물 완성과정에서 그 건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장치물, 시설물, 부착물 및 기타 설비를 부착 또는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급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제 외>

- 건축물 축조후 그 건축물의 마무리단계에서 축조물에 부착되어야 하는 창호 및 금속공작물 등의 부착, 설치공사 (4540)
- 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설비설치공사 (452)

45301 배관, 냉난방 및 관련공사업 (5210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물축조에 관련되는 배관·냉난방 및 공기조절장치의 설치, 보수공사를 말한다. 여기에는 건물과 결합된 하수시설 및 부폐조절의 시설 및 화장실공사,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공사가 포함되나, 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하수관 및 하수처리시설의 건설은 제외된다.

<포 함>

- 배관공사 및 관련공사, 건축물 축조관련 난방 및 공기조절 시설설치, 보수공사
- 냉동, 냉장공사
- 송풍도관 건설

- 보일러공사
- 살수시설 및 펌프설치공사
- 화장실공사
- 배관, 냉난방 및 관련공사, 건축물 축조관련
- 난방, 환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공사업
- 배관 및 배수시설 공사업
- 가스고정 설비작업

<제 외>

- 합석 및 판금공사 : 배관공사와 분리 (45231)
- 냉장고, 룸에어콘등 가정용기기의 수선, 설치 (52)
- 배관 토목공사 (45225)

45302 전기공사 (5231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전기난방공사, 전기배선 및 조명시설을 설치,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전기난방공사
- 배선 및 옥내 배전기기 설치공사
- 조명시설공사
- 경보·신호조직 설치공사
- 발전기 및 변압기등 전기기계
- 장비설치공사, 건물내 (45305 관련)

- 전기선 배관공사업
- 전기배선공사업
- 도난방지 경보기 설치공사
- 기타 전기설비 공사
- 경비(신호)장치 서비스업

<제 외>

- 발전시설의 조립설치와 옥외 송배전선 설치공사(45229)
- 가전제품 전문수선업자에 의한 가전품의 설치(52)

45303 통신공사업(5232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통신배선, 통신장비 및 전화등을 설치,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통신배선공사
- 전화 및 레이다 설치공사
- 안테나 및 레이다 설치공사

<제 외>

- 통신설비 및 구조물의 조립설치(4522)
- 가정용 전기통신기기 전문수선(5250)
- 사업용 통신장비 전문수선(3220)

45304 방수, 방음 및 내화공사업(5243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에 관련하여 건물의 벽

및 천정등에 각종 차단물질을 주입 또는 설치하여 방수, 방음 및 내화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방수, 방습공사(미장공사 제외)
- 내화공사
- 방음 및 음향조절공사
- 방열공사

<제 외>

- 미장방수공사(45402)
- 난방배관공사(45301)

45305 건물기계장비 설치공사업(52720)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축설비 및 장치를 용지위에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물품이동장치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에스칼레이트 설치공사
- 식품이동장치 설치공사
- 콘베이어 설치공사
- 기계장치 설치공사(토복공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자동조정장치 설치공사 (토목공사 제외) • 물레방아 설치공사 (토목공사 제외) • 산업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토목공사 제외) •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공사 성격의 공장설비공사 (4522) • 배관공사 (45301) • 전기통신장비 설치공사 (45302 또는 45303) • 문 및 창호설치공사 (45401) •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45401) <p>454 건축마무리공사업</p> <p>4540 건축마무리공사업</p> <p>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완성 또는 마무리하는데 기여하는 각종 건설 활동을 말한다.</p> <p>45401 유리공사업 (52730)</p> <p>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각종 유리공사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공사 • 유리끼우기공사 • 유리세공공사 • 유리공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공사 및 창문설치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유리끼우기 (5020) <p>45402 창호공사업 (52740)</p> <p>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각종 창호공사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호공사 • 강제 창호설치공사 • 경금속 창호설치공사 • 목재 창호설치공사 • 플라스틱 창호설치공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문 및 자동개폐문 설치 (45305) <p>45403 미장 및 타일공사업 (52420)</p> <p>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에 관련된 회반죽공사, 타일 및 대리석 부착, 모자이크공사등의 미장 및 정리공사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일 및 테라조공사 • 타일부착공사

- 대리석 부착공사
- 모자이크공사
- 표면치장 판넬부착
- 회반죽공사 및 관련 미장공사
- 회바르기 및 관련 미장공사
- 프레스코공사
- 벽면처리공사
- 프라스터공사
- 모래취부공사
- 점각공사
- 테핑공사
- 미장공사업
- 마루 및 벽타일 공사업

<제 외>

- 블록·벽돌석재 조적공사 (45236)
- 지붕공사 (45238)
- 석재 조적공사 (45237)

45404 도장공사업 (5220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구축물에 도장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교량 및 기타 구축물도장

- 도로선 표시도장 (도로건설과 분리된)
- 건물내, 외부도장
- 선박도장
- 도장공사업

<제 외>

- 벽면도화 치장공사 (45403)

45405 도배 및 카펫트공사 (5220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와 카펫트, 경표면 마루덮개 등으로 바닥을 덮는 공사를 말한다.

<포 함>

- 도배공사
- 벽지부착
- 카펫트공사
- 장판공사
- 모노륨공사
- 비닐공사
- 마루덮개공사, 목공 제외
- 마루, 벽, 기타 도배공사

<제 외>

- 목재 마루 깔기공사 (45406)

45406 미장 목공사업 (5250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목공공사 및 마루깔기공사 등을 말한다.

<포 함>

- 미장 목공사
- 목재 마루깔기공사
- 벽면 목공사
- 목공물 부착공사
- 목세공 공사
- 나무 및 금속결합 목공사업

<제 외>

- 문 및 창호공사 (45401)
- 형틀 목공사 (45235)

45407 장식용 금속공작물 설치공사 (5299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축물에 부착 설비되는 장식용 금속공작물 등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장식 금속공작물 설치공사
- 아취 금속설치공사
- 금속울타리 설치공사 (토목공사 제외)

- 차광막 설치공사
- 화재대피시설 설치공사
- 철사다리설치공사
- 발코니 금속공사
- 건축물 용접공사
- 울타리, 난간 및 관련 금속구조물 설치 공사
- 실내장식공사
- 장식 공작물설치 공사

<제 외>

-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 (281)

45408 보우링 및 그라우팅공사업 (5284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보우링, 그라우팅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보우링, 그라우팅공사

4540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축마무리공사업 (52990)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기타 건축마무리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기타 건축설비공사업

- 기타 건물완성 및 마무리공사
- 모래깔기공사(건축구내)
- 보도블록깔기공사(건축구내)
- 바닥정리 및 청소공사
- 증기청소공사(건축물)
- 차광발 설치공사(금속공사 제외)
- 커튼고리 부착공사

455 건설장비임대업 :운전자 딸린

4550 건설장비임대업 :운전자 딸린

45500 건설장비임대업 :운전자 딸린

다른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의하여 각종 건설용기계, 장비를 그 기계장비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포 함>

- 건설용 기계장비임대 :운전자가 딸린
- 건물 및 토목공사의 장비임대업 :운전자가 딸린

<제 외>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임대업 :운전자 없이(7122)

G.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선업 (50)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도·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리하여 상품판매 또는 구매하는 상품중개 및 경매활동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기타 개인가정용품등의 소비자용품의 수선활동이 포함된다.

5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판매 및 차량연료소매업

신품 또는 중고자동차, 모터사이클의 도소매, 유지 및 수리활동과 이들의 부품 및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판매 및 중개, 자동차세차 및 광택, 차량건인 활동과 차량연료, 윤활유, 냉각제의 소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 운전자가 딸린 개인용 차량, 트럭의 임대 (6023)
- 운전자없이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의 임대 (7111)

501 자동차판매업

5010 자동차판매업

신품 및 중고자동차를 주로 도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특수승용자동차(앰블런스, 이동주거용차량, 마이크로버스등), 특수지형용자동차(지-프, 농·공업용 경자동차등), 핸들(조종)장치

를 갖춘 기타 승용차량, 화물차량과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의 도·소매활동이 분류된다.

<제 외>

- 설상용 차량 판매(50401)
- 모터사이클 판매(50401)

50101 자동차 도매업 (61181)

신품 또는 중고자동차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매매의 중개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자동차(신품)도매
- 자동차(중고품)도매
- 자동차 매매중개
- 자동차 도매업

50102 자동차 신품소매업 (62171)

신품자동차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자동차(신품)소매
- 자동차 소매업

50103 중고자동차 소매업 (62171)

중고자동차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중고품)소매 • 중고자동차소매 <p>502 자동차 수선업</p> <p>5020 자동차 수선업</p> <p>자동차의 세척, 광택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를 유지,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터싸이클 및 설상용 차량 수선 활동(50402) <p>50201 자동차 종합수선업(95131)</p> <p>기관, 전기장치, 운전기어, 차축, 제동기, 클러치, 배기조직, 방열조직, 차체 등의 자동차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실제 각 부분의 수선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수선업, 자동차 • 자동차수선, 종합 • 자동차수선, 각 부문 • 자동차 유지 및 수선서비스업 <p>50202 자동차전문수선업(95132, 95133)</p>	<p>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등을 제외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수리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수선, 전문 • 전문수선업, 자동차 • 자동차수선 특정부문, 일부 • 포장, 자동차 <p>50203 자동차타이어수선업(95135)</p> <p>자동차타이어 및 튜브를 주로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어수선, 자동차 • 자동차 타이어수선 • 튜브수선, 자동차 • 자동차 튜브수선 <p>50204 자동차세차업(95136)</p> <p>자동차세차, 광택, 윤활유주입, 일상정비등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차장 운영, 자동차 • 윤활유주입 서비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광택처리서비스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도장활동(50202) <p>50209 달리분류되지않은 자동차 수선업(95132, 9513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자동차 수선업으로서 자동차 내장품수선, 차량유리교체, 자동차구난 및 견인활동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구난 • 자동차 견인활동 • 자동차 내장품수선(내장품판매 제외) • 차량용유리 교체서비스(판매제외) <p>503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p> <p>5030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p> <p>신품 또는 중고상태의 자동차용 각종부품, 구성품 및 부속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부품 및 악세사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판매에 결합되는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의 판매활동(5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의 부품판매(50402) <p>50301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판매업(61183, 62172)</p> <p>자동차타이어 및 튜브를 주로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어 판매(도·소매), 자동차용 • 튜브판매(도·소매), 자동차용 <p>50302 자동차내장품 판매업(61183, 95132)</p> <p>자동차 내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내장품 판매(도·소매) • 차량유리 판매 <p>50309 달리분류되지않은 자동차부품 판매업(61183, 62172, 95132)</p> <p>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내장품을 제외한 기타의 각종 자동차 부품, 구성품 및 부속품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부품판매(내장품 및 튜브 제외) • 자동차 구성품 판매(차량유리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유리 판매(50302) • 차량내장품 판매(50302)
---	---

<p>504 모터사이클 판매 및 수선업</p> <p>5040 모터사이클 판매 및 수선업</p> <p> 신품 또는 중고상태의 모터사이클, 설상용 차량 및 그 부품, 구성품 및 부분품을 도·소매하는 활동과 이들 차량을 유지, 수선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50401 모터사이클 판매업 (61182, 62171)</p> <p>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p> • 모터사이클 판매 (도·소매)</p> <p> • 설상용 차량 판매 (도·소매)</p> <p> • 모터사이클, 스노우모빌 및 관련부품 판매업</p> <p>50402 모터사이클 수선 및 부품판매업 (61182, 62171, 95134)</p> <p>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의 수선활동 또는 이들의 부품,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p> • 모터사이클 부품판매</p> <p> • 설상용차량 부품판매</p> <p> • 모터사이클 및 스노우모빌의 유지 및 수선 서비스업</p> <p>505 차량용 연료소매업</p>	<p>5050 차량용 연료소매업</p> <p> 휘발유, 가솔린, 액화석유가스등 각종 자동차, 모터사이클용의 연료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에서는 윤활유, 냉각제, 광택제 및 기타 차량에 사용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기도 하며 또한 조명용등의 다른 용도의 연료도 부수적으로 함께 판매할 수 있다.</p> <p> <포 함></p> <p> • 자동차연료소매업</p> <p> <제 외></p> <p> • 연료도매업 (5141)</p> <p> • 연료소매업 (조리 또는 난방용) (5227)</p> <p>50501 주유소 운영업 (62173)</p> <p> 차량용 각종 액체연료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p> • 연료(액체)소매업, 차량용</p> <p> • 주유소 운영</p> <p>50502 차량용 가스충전업 (62174)</p> <p> 차량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p> <p> • 가스충전소, 차량용</p>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1.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상품을 팔거나 구입하고자 할 때 관련된 중개 또는 대리 활동이 포함된다. 도매업에 관련하여 대량의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병에 소량으로 분할포장,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등이 부수될 수 있으며 고객에게 판매장려 활동, 상표등을 부착할 수 있다.

2. 상품도매 및 중개업의 형태

가. 일반도매업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특정상품을 도매하는 도매업자, 도매상, 산업 또는 상업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이동공급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상품집하장, 공동구매조합, 폐품수집상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운영하는 별개의 도매사무소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되나 주문만 받고 제품의 출하는 공장이나 광산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품중개업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 공동판매조합등이 있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자동차, 모터사이클, 이들의 부품 및 부속품의 판매와 수리, 개인, 가정 및 차량소비용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는 50에 분류된다.

나. 배관에 의한 가스, 상수도공급, 판매는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 분류한다.

다. 도매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활동에 따라 도소매에 분류된다.

라.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상품을 제조토록 하여 이를 자기명의로 도매하는 사업체는 도매업으로 분류된다.

마. 산업기계 및 장비, 건축 자재판매 및 기타 산업용품의 판매와 상업 및 기타 산업사용자에게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본다. 다만, 사무용 기계 장비, 목재, 페인트, 벽지, 종자, 농약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기사용자에게 직접 분할 또는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

<p>511 상품중개업</p> <p>5110 상품중개업</p> <p>타인의 계정이나 타인을 대신하여 상품을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분류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함께 모이게 하여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주인의 입장에서 상업적 거래를 대신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모터사이클의 판매대리 (50) • 자기의 계정이거나 타인의 계정이거나를 불문하고 자기명의로 상품을 도매하는 활동은 (5121-5190)에 분류 • 상품의 교환활동은 (67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 보험대리 활동은 (6720) • 부동산 대리활동은 (70)에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작물중개업 • 화초 및 식물중개업 • 종묘중개업 • 농산물 및 산동물 판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면, 실, 가죽등의 가공품의 중개 (51109) • 도살고기 통조림 및 기타 조제된 고기제품의 중개 (51109)
<p>51101 미가공 농축산물 중개업 (61201)</p> <p>미가공상태의 각종 농축산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또는 대리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및 사료중개업 • 과일 및 채소중개업 • 산동물중개업 • 원피, 원모, 원면 및 조면, 누에고치 중개업 	<p>51102 수산물중개업 (61201)</p> <p>각종 미가공 수산물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중개 또는 대리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선 및 물고기 중개업 • 건어물중개업 • 해조류중개업 • 갑각류 및 연체동물 중개업 • 수산물 (신선, 냉동, 건조, 염장) 중개업, 실크상태 (도매용으로 포장된 것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조림 및 소매용으로 포장된 기타 조리, 조제된 수산물 중개 (51109)

<p>51103 골동품 및 예술품 중개업 (61201)</p> <p>골동품 및 예술품과 귀금속등의 거래에 관련되는 대리 또는 중개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상품중개업</p> <p>농축산물 및 수렵물, 수산물, 골동품 및 예술품을 제외한 기타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되는 대리 또는 중개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2 농축산물, 음식품 및 담배도매업</p> <p>5121 미가공 농축산물 도매업</p> <p>과실 및 채소이외의 곡물, 종자, 사료, 채유열매, 화초 및 산식물, 잎담배, 산동물, 원피 및 원모피, 가죽등 주로 공업용원료로 사용되는 원재료 상태의 미가공 농축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211 곡물 및 사료도매업 (61111, 61119)</p> <p>미가공의 곡물, 도정곡물, 곡물분말, 기름용씨 및 기름함유열매, 종자, 동물용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제분, 도정한 것 포함) • 곡물, 종유, 과실유, 종자 및 사료도매업 	<p>51212 화초 및 산식물도매업 (61119)</p> <p>화초 및 산식물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초 및 작물도매업 <p>51213 산동물 도매업 (61119)</p> <p>산육지동물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동물 도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수산동물의 도매 (51223) <p>51219 달리분류되지않은 미가공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61119)</p> <p>잎담배, 원피 및 원모피, 원면가죽, 기타 미가공 농산물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담배, 원모피, 가죽도매업 • 종묘, 누에고치 도매업 • 공업용 농산물 도매업(곡물 제외) • 원피가죽 도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산물 도매업
---	---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란 및 낙농품 도매 (5122) <p>5122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p> <p>과실, 채소, 낙농업, 조란 및 식용유지, 도살고기, 수산물, 설탕, 설탕과자 및 빵류, 음료, 커피, 차, 코코아 및 조미료, 가공담배 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51221 과실 및 채소도매업 (61114)</p> <p>과실 및 채소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 (054) ; 054.2 제외 과실 (053) 과실 및 채소도매업 <p>51222 고기도매업 (61112, 61118)</p> <p>가금 및 기타 조류, 수렵물 및 가축의 도살고기를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고기를 가공하지 않고 냉장, 냉동 또는 분할 및 포장하여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조림 또는 기타 고기 조리 조제품 도매 (51227) <p>51223 수산물 도매업 (61113)</p>	<p>지느러미 물고기, 해조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산것, 신선,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산물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통조림 및 기타 조제된 것은 제외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및 수산물제품 도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통조림 및 기타 수산물 조리 조제식품도매 (51227) <p>51224 빵 및 과자도매업 (61115)</p> <p>식빵, 고급빵, 캔디, 비스킷, 껌, 떡 등의 빵과 과자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탕, 설탕 및 밀가루과자류, 빵제품도매업 <p>51225 알콜음료도매업 (61117)</p> <p>맥주, 청주, 탁주, 약주, 소주, 고량주, 위스키 등 알콜음료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한 알콜성음료를 병에 포장하는 활동 <p>51226 비알콜음료 도매업 (61116)</p> <p>콜라, 사이다, 밀크, 탄산수 등의 비알콜음료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도매업 <p>51227 가공 및 조제식품 도매업 (61118)</p> <p>음료, 빵, 과자를 제외하고 설탕, 조미료, 장류, 면류 및 각종 통조림 식품등의 가공 및 조제식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차, 코코아 및 향신료 도매업 <p>51229 달리분류되지않은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611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으로서 담배, 꿀, 조란, 식용유지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꿀 • 식용유지 (411 중 29, 42 중 19) • 조란 (025) • 담배 • 음식료품 및 담배 판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 • 담배도매업 • 낙농품, 달걀 및 식용유지 도매업 • 달리분류되지않은 식품도매업 	<p>513 가정용품 도매업</p> <p>5131 섬유, 의복 및 신발도매업</p> <p>재봉사와 가정용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솜, 연사, 각종 직물, 가정용 가죽, 모피 및 직물제품, 의복, 신발 및 의복악세서리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이외의 솜 및 방직용사 도매업 (52239) • 원면 및 조면, 모피 및 원모피, 운피 및 가죽도매 •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 • 산업용 가죽제품 도매 <p>51311 섬유, 사 및 직물도매업 (61121, 61122)</p> <p>천연 및 화학섬유의 재봉사 및 소매용으로 포함된 연사와 솜, 각종 세포직물 및 광폭직물을 포함해서 천연 및 화학섬유의 직물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직포 및 편조원단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의복, 신발판매업 (섬유만) • 섬유도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직용 섬유 및 사의 도매 (51494)

<p>51312 외의 도매업 (61124)</p> <p>남녀의의 (유아용 포함)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의복, 신발 판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 (의복만) • 의복도매업 • 모피제품도매업 <p>51313 내의도매업 (61125)</p> <p>남녀내의 (유아용 포함)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314 신발도매업 (61126)</p> <p>각종 신발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 섬유의복판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 (신발만) • 신발도매업 <p>51315 의복악세사리도매업 (61128)</p> <p>모자, 장갑, 넥타이, 양말, 머플러, 손수건, 쇼울, 스카프, 요대 등의 의복악세사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악세사리도매업 <p>51316 직물제품 도매업 (61123)</p>	<p>커어튼, 담요, 카아펄트, 용단, 자리, 수건, 린넨, 스립카바, 이불, 요, 베개, 수예품, 직물포대등 직물제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의복은 제외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린넨류 도매업 <p>51319 달리분류되지않은 섬유, 피복 및 신발도매업 (6112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섬유, 의복 및 신발도매업으로 단추, 파스너, 가발, 버클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32 가구 및 가정용기기 도매업</p> <p>가구, 가정용기기, 날붙이 및 가정용철물, 조명기구, 가전제품, 악기, 레코드, 테이프 및 뮤직스코어, 유리 도자제 및 목재제품, 벽지 및 마루덮개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321 가구도매업 (61155)</p> <p>각종 재료의 가정용가구, 매트리스, 침대스프링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가구, 철물판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 • 가정용가구 도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 및 수의용 가구도매 (51508)
---	---

51322 가정용 전기기구 및 조명장치 도매업 (61154, 61159)

조명기구 및 장치, 비설치용 난방기구를 포함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라디오, 전기냉장고, 전기청소기, 가정용 공기조절장치, 전기스토브, 선풍기, 환풍기, 전기담요, 토스터 및 믹서, 전기다리미, 전축, 영상 및 음향 테이프레코더, 녹음기, 전기난방기 등 가정용 전기기구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가정용기구 도매업
- 라디오, 텔레비전, 음향기기 및 레코드, 테이프등 도매업

<제 외>

- 설치용배관 및 난방장치도매 (51436)

51323 식탁 및 주방용품 도매업 (61153, 61159)

가정용철물, 날붙이와 목재, 도자기 또는 유리제의 식탁 및 주방용품을 포함하여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 등, 알루미늄 및 스테인레스 스틸식기, 바게스, 물통, 요리집기, 금속제 가정용식탁 및 주방용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야, 요강, 쓰레기통등의 가정용품 등도 포함된다.

<포 함>

- 가정용철물 및 가구판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
- 날붙이, 가정용 철물제품 및 조명기기 도매업

<제 외>

- 식탁용 또는 주방용 이외의 도자기, 목재 및 유리제품도매 (51329)

51324 양탄자 및 유사 마루덮개 도매업

리놀륨, 양탄자류 및 이와 유사한 바닥깔개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벽지 및 마루덮개 도매업

51325 장식용품 및 선물용품 도매업 (61197)

유리, 도자기, 목재 및 등, 기타 재료로 장식용 축세공품, 보석함, 나전칠기 공예품, 장식용도자기제품, 모조장식품등 각종 장식용공예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유리제품, 도자기 및 도기도매업

5132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구 및 가정용기기 도매업 (6115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구 및 가정용기기 도매업으로서 재봉기, 악기등의 도매활동과 식탁, 주방 또는 장식용 이외의 목재, 유리 및 도자기제의 가정용품등의 도매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버들세공품, 코르크제품, 통제품 기타 가정용 나무제품

<p>도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기구, 장비, 물품도매업 <p>5133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p> <p>51331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 (61131)</p> <p>항생제, 생물제제, 생약제제 및 약화학물 및 가정용 소독살균제 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보청기, 의족 등 신체보정용품 및 정형외과용품의 도매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및 화장품 판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 • 의약품 도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구 및 의료용 기계기구 도매 (51508) • 원료상태의 의약제제 및 의료화학물 도매 (51491) <p>51332 화장품 도매업 (61132)</p> <p>향수, 크림, 화운데이션, 로우션, 치약, 샴푸, 머리염색약 및 머리기름등化妆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및 화장품 도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 • 향수, 화장품 및 비누도매업 <p>51333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61133)</p>	<p>화장비누, 약용비누, 세탁비누, 중성세제등의 비누 및 세정제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수, 화장품 및 비누도매업 <p>5134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p> <p>51341 종이 및 종이제품 도매업 (61193)</p> <p>신문 및 필기용원지, 판지, 벽지 및 장판지, 플라스틱필름과 종이, 비닐제의 백 및 상자, 포장지등과 화장지등의 위생용 종이제품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및 골판지 도매업 <p>51342 서적 및 기타인쇄물 도매업 (61191)</p> <p>각종서적, 간행물, 팜프렛, 신문 및 기타인쇄물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적, 잡지, 신문 및 문구용품 도매업 <p>51343 문구용품 도매업 (61192)</p> <p>만년필, 연필, 볼펜, 모필등 필기용구와 크레용, 도화물감, 도안용 재료등 회화용품, 복사지, 봉투, 편지지, 서예지등 문구용품, 침, 핀, 호치키스, 펀치, 인주, 스탬프, 고무판, 잉크, 베틀, 먹, 분</p>
---	---

<p>필, 사무용 접착테이프등 사무용품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적, 잡지, 신문 및 문구용품 도매업 <p>5139 달리분류되지 않은가정용품 도매업</p> <p>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정용품 도매업으로서 가정 또는 소비자용 사진 및 과학용품 오락 및 장난감, 시계 및 귀금속제품, 운동 및 경기용품, 가방 및 여행용품, 자전거 및 그 부분품 기타 가정용 또는 소비자용의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391 사진 및 광학용품 도매업 (61145)</p> <p>안경틀, 렌즈, 현미경 및 망원경광학기구, VTR 카메라, 마그네틱 공테이프 (카세트용), 사진기 및 사진필름등 가정용 사진 및 광학용품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및 광학용품 도매업 <p>51392 오락용품 및 장난감 도매업 (61194, 61196 인형, 장난감 및 모조 장신품도매업)</p> <p>인형, 어린이용 삼륜자전거, 장난감, 유희용구 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 전자식 게임기등 각종 오락용 기계장비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 및 장난감 도매업 <p>51393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61195)</p> <p>각종시계, 시계케이스 및 시간장치용 구동부등의 시계 부품, 보석, 금, 은등의 귀금속 및 각종 귀금속제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p>5139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61194)</p> <p>트랙 장비, 제조 및 훈련 장비, 경기장용품, 각종 공·라켓, 배트, 낚시도구, 등산장비, 당구, 보울링, 바둑, 장기용품, 오락용기계장비 등 운동·경기 및 오락용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395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 의복제외 (61127, 61129)</p> <p>가방, 핸드백, 트렁크, 지갑, 열쇠케이스등 각종 재료의 가방, 여행용품 및 의복이외의 기타 가죽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제품 및 여행악세사리 도매업

51396 자전거 및 자전거부품 도매업 (61182)

자전거 및 기타 비동력식 운동장비와 그들의 부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자전거 도매업

<제 외>

- 모터사이클등 동력차량과 이들의 부품판매 (5040)

513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으로서 광택제, 집착제등의 소비자용 화학제품 및 기타 가정용 또는 소비자용 잡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판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
- 청소용품 도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도매업

514 산업용 비농산자재 및 폐품도매업

514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61199)

고체, 액체 및 기체연료 등의 각종 연료와 이들의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료용광물의 도매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연료, 금속광물, 목재, 건물자재 및 산업화학물판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 (연료만)
- 고체, 액체 및 가스연료 관련제품 도매업

514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용도의 고체연료와 이들의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4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용도의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4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용도의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42 금속광물 및 일차금속제품 도매업

금속광물과 일차형태의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연료, 금속광물, 목재, 건물자재 및 산업화학물 판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 금속광물만)

<p>51421 철근도매업 (61171)</p> <p>각종 크기의 건물 및 구조물 보강철근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422 철강도매업 (61172)</p> <p>고압도관을 포함하여 상하수도용철관 파이프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423 금속판재 도매업 (61173)</p> <p>각종 철 및 비철금속 판재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용판제품 제외 (5143) <p>51424 금속선 도매업 (61174)</p> <p>금속선과 철 및 비철금속선재, 로프등의 건축용 철선제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용선제품 도매업 (5131)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광물 및 철광석 도매업 <p>514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금속 및 광물도매업 (6117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금속 및 광물도매업으로 일차금속 및 반성재의 철강, 형강, 스위트바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43 건축재료,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p> <p>원목 및 제재목, 석재 및 시멘트, 유리, 페인트등의 금속제품 이외의 각종 건축재료와 철물, 배관 및 난방장치, 위생용품등의 건축관련용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료, 금속광물, 목재, 건물자재 및 산업화학물 판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용 난방기구 도매, 비설치용 <p>51431 목재도매업 (61161)</p> <p>원목, 각재, 판재, 분할재, 합판, 재생목재, 건축용 목공물 및 구조대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425 금속광물 도매업 (61175중 금속광물 분리)</p> <p>각종 금속광물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목 및 일차가공목제품 도매업

<p>51432 시멘트 도매업 (61162)</p> <p>석회 및 각종 시멘트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433 골재 및 콘크리트제품 도매업 (61164)</p> <p>쇄석, 자갈, 모래등의 골재와 콘크리트제의 건설자재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재와 적벽돌, 기와, 석재타일, 위생용 도자재등의 도자재 건축재료 도매 (51439) <p>51434 유리도매업 (61165)</p> <p>유리섬유를 포함하여 판유리, 건축용 유리제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학용 유리는 제외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재료 및 판유리 도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유리제품 도매 (5132) <p>51435 도료도매업 (61136)</p> <p>유성 및 수성도료,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 옷칠 및 도료관련 제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436 철물, 수공구 및 난방장치 도매업 (61151, 61152)</p>	<p>철물, 수공구, 배관 및 난방용 장비용품등의 건설용 결합장치용 철물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43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축재료,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61169, 61174)</p> <p>달리분류되지않은 건축재료,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으로서 방열단열재, 석재, 대리석, 루핑지타일, 위생도자재 및 도자재의 건축자재등의 도매활동이 포함된다.</p> <p>5149 기타 산업용 비농산자재 및 폐품도매업</p> <p>산업용 기초화학물, 농약, 비료, 합성수지 및 일차형태의 플라스틱제품, 방직용 섬유, 폐품 및 재생용 재료등의 기타 산업용 비농산자재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491 산업용 기초화학물 도매업 (61139)</p> <p>산업용 기초유기화학물, 기초무기화학물등의 공업용화학물 및 관련제품 및 별재 이외의 화학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1492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61137)</p> <p>각종 안료, 염료, 착색제 및 유연제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인트, 바니쉬 및 락카 도매업
---	--

<p>51493 농약 및 비료 도매업 (61134)</p> <p>질소, 인산, 칼리질비료와 혼합, 화학 및 복합비료등과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 제초제, 성장조절제, 소독제등의 농업용 약품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용 또는 위생용 살균, 살충 및 소독제 도매 (51331) 	<p>51496 폐품취급업 (61198)</p> <p>금속찌꺼기 및 폐품, 폐석유, 폐지, 폐유, 폐고무, 폐프라스틱물질등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품 및 스크랩 재생품 도매업
<p>51494 합성수지 및 일차형태의 프라스틱물질 도매업 (61139)</p> <p>일차형태의 합성수지, 재생섬유소 및 합성고무등의 프라스틱 물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산업화학물, 비료, 합성레진 및 프라스틱물질 도매업 	<p>51499 달리분류되지않은 산업용 기타 비농산자재 및 폐품 도매업</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산업용 비농산기계 및 폐품도매업으로서 별제 이외의 산업용 비농산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간제품 도매업 (농업 제외)
<p>51495 방직용섬유 도매업 (61121)</p> <p>천연 또는 합성 및 재생섬유의 필라멘트사 및 방직용섬유 천연섬유의 직조용 방적사등의 섬유산업용 섬유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직용섬유 도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매용섬유 도매 (51311) 	<p>515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p> <p>5150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p> <p>51501 농업용 기계 및 장비도매업 (61141)</p> <p>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수확기, 탈곡기, 잔디깎는 기계, 낙농장비, 부화기, 농산물건조기, 선별기, 청정기, 정원용기계등 농업용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용 기계 및 장비도매업 (트랙터 포함)

51502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61142)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래퍼, 쇼벨, 콘크리트믹서, 도로포장기, 드릴, 파쇄기, 스크린, 인양기, 기중기, 호이스트, 산업용트럭, 적하기, 착암기, 굴정기등 건설 및 광업용기계 또는 장비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수송장비 도매업 (자동차, 모터싸이클 및 자전거제외)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 및 장비도매업

51503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매업 (61143)

선반, 밀링기, 형삭기, 드릴링기, 용접기, 프레스기, 압연기등 금속절삭 및 성형기계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장비도매업

51504 사무용 기계장비 도매업 (61146)

타이프라이터, 전자계산기 및 장비, 상사 또는 계수형 컴퓨터, 계산 및 회계기, 금전등록기, 복사기 및 주소인쇄기, 스테플기등 사무용기기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사무용 기계 및 장비도매업

51505 일반 목적용기계 및 장비도매업 (61144)

수송장비용 기관을 제외한 각종기관,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공기 및 가스펌프, 공기압축기, 산업용송풍기 및 환풍기, 불 및 로울러베어링, 기계적 동력전달장비, 벨브 및 벨브부착물, 가스킷, 벨트등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506 통신장비 도매업 (61148)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장치, 전화 및 전신용 통신기기 및 장치, 경보신호장치, 탐지장치, 레이더장치, 전화용선 및 케이블등 유선·무선통신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507 산업용 전기기계 및 전자부품 도매업 (61147)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정류기, 전기로, 축전기, 전기송배선장치, 전기용선 및 케이블, 전구, 옥내배선장치, 전기측정기기등의 산업용 전기기계 및 장비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반도체, 트랜지스터등의 전자부품도 포함된다.

51508 전문 및 과학기구장비 도매업 (61145)

X선기구, 의료용가구, 내과, 외과, 치과 및 수의기기, 의료용 공급물 및 장비, 안경틀, 렌즈, 건축가용 제도 및 측량기구, 항해용기구, 항공기 시스템기구, 이화학용기구, 산업공정 및 통제기구, 물리시험기구, 영화촬영기, 영화용필름등 전문 및 과학기구, 장비를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과 및 정형외과용 기구도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 (51331) <p>51509 달리분류되지않은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6114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 및 장비도매업으로서 식품산업용 기계 및 장비, 섬유산업용 기계 및 장비, 종이산업용 기계 및 장비, 인쇄 및 제본용기계 및 장비, 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플라스틱, 고무, 돌, 유리, 도기산업용기계 및 장비, 자동차를 제외한 수송장비 및 관련장치, 산업용로봇,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활동이 포함된다.</p> <p>519 종합 도매업</p> <p>5190 종합 도매업</p> <p>51900 종합 도매업</p> <p>특정상품만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경우로서 512-515 항목의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 수입이 전매활동에 대한 수입액의 50%미만일 경우에 종합 도매업으로 분류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산업용 기계 및 장비도매업 · 생산관련 기계 및 장비도매업 · 산업 및 상업용기계 및 장비도매업 <p>518 기타 전문도매업</p> <p>5180 기타 전문도매업</p> <p>51800 기타 전문도매업</p> <p>달리분류되지않은 전문도매업으로서 별개 이외의 특정상품</p>	<p>52 소매업 및 소비용품 수선업(자동차 제외)</p> <p>1. 소매업 및 소비용품 수선업의 개요</p> <p>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판매소, 소비조합, 행사인, 시음장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활동이 분류된다. 대체적으로 소매상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p> <p>가. 타이프라이터, 문구류, 페인트 또는 목재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p>

<p>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본다.</p> <p>나. 소매업 분야에서 판매된 상품을 소비재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식물, 광물, 원유, 산업용 화학물, 철강 및 산업용기계장비등의 판매는 소매업으로 보지 않는다.</p> <p>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약간의 상품 처리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p> <p>라. 또한 이 산업분야에는 소매활동에 결합되어 수행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리 및 설치활동이 포함된다.</p> <p>2. 소매업의 형태</p> <p>가. 종합소매업</p> <p>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나. 일반소매업</p> <p>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신품 일반소매업, 특정중고품 일반소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p> <p>다. 특수소매업</p> <p>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우편배달,</p>	<p>노점, 이동판매 및 자판기 및 기타 매장이외의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특정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3. 타 산업과의 관계</p> <p>가. 농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농업"</p> <p>나.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그 부분품 판매와 차량연료 판매 ; (50)</p> <p>다. 자동차 또는 기타 상품을 단체 및 산업사용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50 및 51)</p> <p>라. 구내소비를 위하여 식품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5520)</p> <p>마. 일반대중에게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7130)</p> <p>521 종합 소매업</p> <p>5210 종합 소매업</p> <p>백화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등과 같이 단일경영 주체가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포함한다.</p> <p>52101 슈퍼마켓 (62202, 62209)</p> <p>단일 경영체제하에 식료품 및 담배를 위주로 한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매장내에 진열된 상품을 구매자가 자기구매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계산할 수 있는 대형 종합소매점인 사</p>
--	--

<p>업체를 말하며, 식료품을 판매하는 본점의 지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의류, 가구, 기구, 철물, 화장품등과 같은 기타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망 조직을 갖고 운영되기도 한다.</p>	<p><제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판매 (일반매장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에 의한 소매 (524) </p>
<p>52102 백화점 (62201)</p> <p>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음식료품 및 담배를 위주로 소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백화점은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여러개의 매장으로 구획되며, 각 매장마다 전용판매원이 고정배치되어 직접매매 및 계산활동이 이루어진다. 백화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의 각 영업부분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되면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는 개별적인 사업체는 일반소매업의 각 해당항목에 분류한다.</p>	<p>5221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6211)</p> <p>과일 및 채소, 고기 (조류고기포함) 및 고기제품, 빵 및 곡물과자, 음료, 낙농 및 조란, 수산물 및 그 제품, 설탕과자, 가공담배, 기타 식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활동이 분류된다.</p>
<p>52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종합소매업 (6220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종합소매업으로서 슈퍼마켓 경영체제와 비슷한 소규모 각종잡화 연쇄점 및 여러 형태의 소규모 종합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211 곡물소매업 (62111)</p> <p>쌀, 보리, 콩 및 기타 잡곡등의 곡물과 곡분등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용 사료의 소매도 포함된다.</p>
<p>522 신상품일반소매업</p> <p>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을 개설하고 그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212 고기소매업 (62112)</p> <p>소, 돼지, 닭고기등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 (가금포함) 및 육제품 소매업 <p>52213 수산물 소매업 (62113)</p> <p>생선, 건어물, 미역, 다시마, 김등 수산물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냉동, 염장의 것을 포함한다.</p> <p><포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및 수산물 제품' 소매업 </p> </p>

<제 외>

- 소매용으로 포장된 조리 및 조제 수산식품 소매 (52219)

52214 채소 소매업 (62114)

배추, 무우, 시금치, 상치, 파, 마늘, 고추, 호박, 오이등의 채소 및 고구마, 감자등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채소 소매업

52215 과일 소매업 (62115)

사과, 배, 감, 꽃감, 대추, 호두, 귤, 자두, 포도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과일 소매업

52216 빵 및 과자류 소매업 (62119 에서 분리)

식빵, 고급빵, 캔디, 비스켓, 껌, 떡 등의 빵과 과자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빵과 과자 소매업

52217 식품조합 소매업 (62117)

빵, 과자, 알콜성 또는 비알콜성 음료, 통조림, 조미료, 설탕등

각종 음식료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그 주된 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식료잡화 소매점을 말한다.

<포 함>

- 유제품 및 달걀소매업
- 설탕과자 소매업
- 음료수 소매업

<제 외>

- 식품을 위주로 각종 상품 종합소매 (5210)

52218 담배 소매업 (62116)

각종 담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담배 소매업

52219 달리분류되지않은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62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으로서 곡물, 고기, 수산물, 채소, 과일 및 담배를 제외한 음식료품중에서 주로 특정 단일음식료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품소매업

<p>5222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소매업</p> <p>의약품 및 의학, 정형외과용품, 향수, 화장품, 화장비누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62141) <p>5222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62141)</p> <p>각종 의약품과 한약,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의료용품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52222 외과 및 정형외과용 기구, 장치 소매업 (62199에서 분리)</p> <p>외과 및 정형외과용 기구·장치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52223 화장품 소매업 (62142)</p> <p>향수, 크림, 로우션, 약용비누, 샴푸등의 화장품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수, 화장품 및 세면용비누 소매업 	<p>522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p> <p>섬유, 의복, 모피, 의복악세서리, 신발, 가죽제품 및 여행용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 (52246) <p>52231 섬유 및 직물 소매업 (62125, 62129 중의 섬유)</p> <p>각종 섬유, 사 및 직물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소매업 <p>52232 내의 소매업 (62122)</p> <p>각종 남녀 (유아용 포함) 내의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52233 외의 소매업 (62121)</p> <p>각종 남녀 (유아용 포함) 외의 및 작업복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 및 모피 제품소매업 <p>52234 신발 소매업 (62133)</p> <p>남녀신발, 고무신, 운동화를 각종 재료의 신발 및 각반을 주</p>
--	--

<p>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 소매업 <p>52235 의복악세서리 소매업 (62127)</p> <p>모자, 장갑, 손수건, 넥타이, 양말, 머플러, 쇼울, 스카프, 요대등의 의복악세서리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악세서리 소매업 <p>52236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62124)</p> <p>핸드백, 가방, 트렁크, 지갑, 열쇠케이스등 각종 재료의 가방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제품 및 여행용악세서리 소매업 <p>52239 달리분류되지않은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62129 중 섬유섬 제외)</p> <p>달리분류되지않은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으로서 머리핀, 단추, 파스너, 버클등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24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 소매업</p>	<p>가구, 가정용기기, 날붙이, 돌기, 유리제품, 라디오, 텔레비전, 악기, 레코오드, 악보 및 테이프, 조명용품, 커튼, 넷트 및 가정용섬유제품, 나무, 콜크제품, 등세공품 및 기타 가정용기기 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기기 및 장비 소매 (5230) <p>52241 가정용가구 소매업 (62131)</p> <p>책상, 걸상, 옷장, 캐비닛, 침대, 응접세트등 각종 가구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가구 소매업 <p>52242 가정용영상, 음향장비 및 기타 전기기기 소매업 (62132)</p> <p>냉장고, 세탁기, 룸쿨러, 이동식 난방기구, 선풍기, 믹서, 재봉틀, 진공소제기, 풍로, 열판, 토스터, 오븐등 가정용기기와 라디오, 텔레비전수상기, VTR, 전축, 녹음기등 영상 및 음향장비와 전화기 및 기타 통신기기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기구 소매업 • 라디오, 텔레비전, 음향기기, 레코드, 음악악보 및 테이프 소매업
--	--

<제 의>

- 조명장치 및 전기용품 소매 (52245)

52243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62133)

목재 및 건물재료, 스테인레스스틸, 양은등 각종 재료의 접시, 주발, 냄비, 후라이팬, 주전자, 바게스등 가정용 식기와 칼, 도마 등 각종 식탁 및 주방용품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그릇, 칼붙이, 도자기, 유리그릇, 자기 및 도기등 기타
- 가정용품 소매업

52244 악기 소매업 (62134)

음반, 테이프, 콤팩트디스크등을 포함하여 각종 악기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245 조명기구 및 전기기계 소매업 (62193)

전기용품, 옥내배선, 전구, 플러그, 퓨우즈, 스위치 및 조명장치 등 각종 조명, 전기장치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조명기구 소매업

52246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62126)

커어텐, 담요, 카아펫트, 융단, 자리, 수건, 린넨, 스립카바, 책상보, 이불, 요베개, 수예품, 직물포대등의 직물제품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커텐, 네트등 가정용 섬유제품 소매업

52247 골동품 및 예술품 소매업 (62197)

고가구, 도자기, 서예품등 각종 골동품 및 예술품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248 자전거 및 자전거부품 소매업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24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정용기기 및 장비 소매업 (62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정용기기 및 장비소매업으로서 식탁 주방용품 및 예술품이외의 가정용 목제품 및 등세공품, 자동차, 모터싸이클, 자전거이외의 개인용 운수장비, 우산 및 양산, 낚시용품, 이·미용기구, 각종 기계장비등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버들세공품, 코르크등 가정용 목제품 소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기구 및 장비 소매업
- 반제품 물품 및 기구 소매업

<p>5225 철물, 페인트 및 유리 소매업</p> <p>자기사용자를 대상으로 전열난방용구를 제외한 각종 철물 및 난방용기기, 도료, 유리 및 유리제품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주로 판매할 경우 (5143)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인트 및 도료관련 소매업 • 유리 및 유리제품 소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판용 광택제 소매 (52291) • 식탁 및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 (52243)
<p>5225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62135)</p> <p>못, 너트, 볼트, 스크류, 와사등 철물과 삽, 쟁이, 호미등 농업용 수공구, 해머, 끌, 대패, 톱, 드라이버, 전지가위, 양철가위, 펜지등 수공구, 난방용보일러, 정치식·이동식난로등 난방장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열난방용구는 제외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물소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용 철물 및 용품소매 (52243) 	<p>5226 서적, 문구 및 사무, 광학, 정밀기기 소매업</p> <p>서적 및 신문, 문구용품,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기, 안경, 사진, 광학 및 정밀기기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261 서적 및 신문소매업 (62162)</p> <p>참고서, 교과서, 신문, 정기간행물등 각종 서적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262 문구용품 소매업 (62163)</p> <p>각종 인쇄 및 필기용지, 노트, 일기장, 카렌더, 복제사진 및 유사제품 연하장등 문구용구, 연필, 만년필, 볼펜등 필기용구와 물감, 크레용, 붓등 회화용구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252 페인트 및 유리제품 소매업 (62149 중 일부, (도료). 62139 중 일부 유리 제외)</p> <p>자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리, 도료 및 관련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거울등 가정용 유리제품의 소매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적 및 신문, 잡지, 문구용품 소매업 <p>52263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기 소매업 (62139)</p> <p>컴퓨터 및 범용성소프트웨어, 계산기, 타이프라이터, 복사기 및</p>

기타 사무용기기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사무용기기 소매업
- 컴퓨터 및 비주문 소프트웨어 소매업

52264 안경 소매업 (62191)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를 포함하여 각종 안경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265 사진, 광학 및 정밀기기 소매업 (62198)

사진필름, 사진용 화학물등을 포함해서 사진기, 영사기, VTR, 카메라, 쌍안경, 현미경등 광학용품과 사진용품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안경은 제외한다.

<포 함>

- 사진, 광학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5227 가정용연료 소매업

고체, 액체 또는 가스성 가정용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연료, 가스(통에 들어있는), 석탄 및 나무소매업

52271 연탄소매업 (62181)

구공탄, 알탄등 석탄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272 석유소매업 (62182)

석유, 경유등 조명, 난방 및 취사용 유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273 가스소매업 (62183)

가정소비용가스를 직접 충전하여 주거나 프로판, 부탄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27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정용연료 소매업 (6218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정용연료 소매업으로서 보조탄, 착화탄, 장작, 숯, 알콜등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29 달리분류되지않은 신·품 일반소매업

52291 벽지 및 마루덮개 소매업 (62161)

벽지, 장판지, 창호지, 특수제지 등 각종 지물류 및 비닐장판, 비닐벽지등 유사제품과 니스, 에나멜등의 표면광택제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벽지 및 마루덮개 소매업

<제 외>

- 용탄자 및 유사마루덮개 소매 (52246)

<p>5229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6215)</p> <p>손목시계, 회중시계, 탁상시계, 패종시계 등 각종 시계와 금, 백금, 은,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초, 씨앗, 비료 및 애완동물 소매업
<p>52293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62195)</p> <p>등산장비, 낚시장비, 동계스포츠장비, 골프장비,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테이블게임장비, 수렵용장비, 수중경기용장비 등 각종 스포츠 및 경기용품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용품 소매업 	<p>52296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62194)</p> <p>각종 재료의 장식성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품 소매업
<p>52294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62195 중 오락게임용구, 62196)</p> <p>바둑, 장기, 오락용 기계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p>522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신제품일반 소매업 (6219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일반신제품 소매업으로서 별개 이외의 특정신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식품 소매업
<p>52295 비료, 종자 및 애완동물 소매업 (62149, 62199)</p> <p>비료, 꽃, 종자, 종묘와 애완동물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3 중고품 일반소매업</p> <p>5230 중고품 일반소매업</p> <p>매장을 개설하고 특정 중고상품을 전문소매하는 활동이 포함되고 또한 저당물 판매업은 여기에 분류된다. 중고자동차 소매는 “ 50 ” 에 포함된다.</p> <p>52301 중고가구 소매업</p> <p>중고가구를 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52302 중고서적 소매업</p> <p>중고서적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420 노점 및 구역내 이동판매업</p> <p>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내에서 노점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303 저당물 판매업 (81026)</p> <p>개인의 저당담보자산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판매 또는 경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49 달리분류되지않은 특수판매업</p> <p>달리분류되지않은 특수판매업으로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는 외판원에 의하여 판매하는 활동과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판매하는 활동등이 분류된다. 그러나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을 가정에 배달하는 경우는 521-523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된다.</p>
<p>52309 달리분류되지않은 중고품 소매업</p> <p>달리분류되지않은 중고품 소매업으로서 별개 이외의 각종 중고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52491 자동판매기 운영업</p> <p>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사진기의 운영 (74941) • 자동세탁기의 운영 (93010)
<p>524 특수소매업</p> <p>일반대중을 상대로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각종 특정상품을 우편주문, 배달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매장판매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p>	<p>52492 계약 배달 판매업</p> <p>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기간동안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41 우편판매업</p>	<p>524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특수판매업</p> <p>달리분류되지않은 특수판매업으로서 외판원, 구역간(차량이</p>
<p>52410 우편판매업</p> <p>각종 상품을 카다로그나 우편주문에 의하여 소매하는 활동으로 카다로그에 의하여 선택, 주문한 특정상품 구매자에게 송부,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42 노점 및 구역내 이동판매업</p>	

<p>동등) 이동판매업등이 포함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내 이동소매 (52420) <p>525 개인 및 가정용품 수선업 ; 자동차 제외</p> <p>5250 개인 및 가정용품 수선업 ; 자동차 제외</p> <p>상품의 제조 또는 도·소매활동에 결합되지 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선·유지활동이 분류된다.</p> <p>52501 신발 및 가죽제품 수선업 (9511)</p> <p>각종 신발, 가방, 지갑, 핸드백과 가죽 또는 대용가죽의 벨트, 가죽장갑 및 유사가죽제품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 및 가죽제품 수선업 <p>52502 철물 및 가정용기기 수선업 (95192)</p> <p>칼, 가위, 톱 및 기타 공구날갈이, 전지가위, 가정용 가스기기, 운반식 석유히터, 재봉틀, 저울, 가정용집기등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503 시계 및 장신품 수선업 (9514)</p> <p>시계, 시계인자판 및 금속시계줄, 보석, 귀금속의 장신구를 전</p>	<p>문으로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 및 귀금속 수선업 <p>52504 악기 수선업 (95193)</p> <p>피아노, 율겐, 기타아등을 전문으로 수선하고 조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505 가전제품 및 전기수선업 (95121)</p> <p>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전기기기 및 용품의 수선과 일반전기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전기기기 수선업 <p>52506 자전거 수선업 (95191)</p> <p>자전거, 자전거타이어등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2509 달리 분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 수선업 (9519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 수선업으로 카메라, 타자기, 가구, 운동구, 낚시용품, 라이터, 만년필등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포 함>

- 의복 및 가정용 섬유제품 수선업

<제 외>

- 컴퓨터 및 기타 사무회계기계 수선활동 (7250)

H.

숙박 및 음식점업 (55)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포함된다.

가. 숙박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단기적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숙박업에 결합 운영되는 음식제공 설비와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침대차의 운영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음식품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각종 음식점, 직접 소비용음식물의 출장조리 또는 조달활동, 독립적인 식당차의 운영활동 등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철도운수 사업체에서 운수활동에 결합된 침대차 또는 식당차의 운영 (6010)

나.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 (70)

다. 자판기에 의한 음식품의 판매활동 (5259)

라. 도시락 및 기타 유사조리식품 제조 (15313)

55 숙박업 및 음식점업

551 숙박업

5510 숙박업

수수료를 받고 단기간 숙박 또는 야영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제공하거나 특정조직의 회원에 한정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숙박설비 제공에 결합하여 운영되는 음식설비운영은 여기에 분류된다. 또한 독립적으로 침대차의 운영과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기숙사, 영빈관, 하숙, 유스호텔, 캠프장시설 운영 등이 포함된다.

<제 외>

- 철도회사에서 통합 운영되는 침대차 운영은 (6010)
- 장기간 숙박시설 임대는 (70)

55101 호텔업 (63201)

호텔, 모텔 등과 같이 룸서비스, 데스크서비스, 개별봉사서비스, 벨보이서비스, 라운지설비, 연회, 집회설비 등 전서비스의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포 함>

- 호텔업
- 모텔업

55102 여관업 (63202)

여관, 여인숙 등과 같이 전호텔서비스중 공중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룸서비스, 개별봉사서비스 등이 없거나 제한된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103 하숙업

약정 기간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특정회원만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55104)

55104 회원숙박시설 운영업

일반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특정회사 및 회원단체의 소속원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회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포 함>

- 회원전문 숙박소
- 공제조합 숙박소
- 유-스호스텔

- 회사의 합숙소
- 회사의 기숙사
- 클럽회원 전용숙박소

<제 외>

-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아파트식 호텔을 분양, 임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산업활동은 (70)

55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 (63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으로서 캠프장 시설운영이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아동용 휴일 캠프
- 휴가센터 및 휴식소
- 민박업
- 산장
- 캠프 및 카라반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숙박업

552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음식점, 식당, 간이식당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조달, 공급하는 활동과 음식물의 출장조리활동, 별도의 독립된 식

당차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자동판매기로 판매할 경우 (5259)
- 숙박업에 결합되어 운영하는 식사제공 활동은 (5510)
- 철도운수업체에서 통합 운영하는 식당차의 운영은 (6010)
- 조리사만을 공급하는 경우 (74911)

5521 식당업

한식집, 일식집, 중화요리집 등과 같이 각종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주류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음식점
- 음식점 (직접 조달)

55211 한식업

한국식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2 중국음식업 (63112)

중국식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3 일본음식업 (63113)

일본식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4 서양음식업 (63114)

서양식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5 음식 조달전문업 (63119)

연회장 등과 같은 특정장소에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소비자들 대상으로 직접 조리, 조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음식조달 서비스

55219 달리 분류되지않은 식당업 (63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식당업으로서 스낵, 간이음식, 모밀국수, 잿죽, 깨죽, 구내음식 등 간이음식물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기타 음식점

5522 주점업

요정, 바, 나이트클럽, 비어홀, 디스코클럽, 카바레, 극장식 주점, 대포집 등과 같이 주로 술과 이에 따른 요리를 판매하는 사업체 및 무도유흥주점 등을 말한다.

55221 일반유흥주점 (63121)

싸롱, 바, 비어홀 등과 같이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p>서양식 일반유흥주점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료제공서비스업 (오락시설없이) <p>55222 무도유흥주점 (63122)</p> <p>디스코클럽,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과 같이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료제공서비스업 (오락시설과 함께)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도장 및 무도교습소 (92191) 	<p>55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 (6312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으로서 대포집, 선술집, 간이주점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523 다과점업</p> <p>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생과자, 떡 등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55231 제과점업 (63131)</p> <p>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 생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빵, 우유 또는 청량음료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p>
<p>55223 한국식 유흥주점 (63123)</p> <p>요정과 같이 접객요원을 두고 이에 따른 요리를 제공하는 한국식 고급유흥주점을 말한다.</p> <p>55224 극장식 주점 (63124)</p> <p>극장식 카바레, 극장식 식당 등과 같이 무대시설을 갖추고 술과 요리를 판매하는 주점을 말한다.</p>	<p>55232 다방업 (63132)</p> <p>접객시설을 갖추고 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우유 또는 청량음료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p> <p>55239 달리분류되지않은 다과점업 (63139)</p>
<p>55225 외국인 전용유흥주점 (63125)</p> <p>외국인 전용으로 지정된 유흥주점을 말한다.</p>	<p>달리분류되지않은 다과점업으로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휴게실 등과 같이 우유, 청량음료, 인삼즙 등을 판매하거나 떡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64)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수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을 운송 활동, 창고 및 기타 운수관련서비스활동 통신활동이 포함된다.

○ 운송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철도, 도로, 수상 및 항공운수 시설에 의하여 일정노선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과 터미널시설, 화물운송대리, 여행알선, 화물창고 운영 등의 운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통신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의 접수, 운반, 배달하는 우편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 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분류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특정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주된 산업활동을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되나 동일기업체를 위한 장거리운송, 하역, 육상운수, 파이프라인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운수업에 분류되며

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스튜디오 (9213)

다. 자동차 이외의 운수장비의 수선 및 개조활동 (35)

라. 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 등의 건설, 유지수선활동 (4520)

마. 자동차의 유지수선활동 (5020)

바. 운전자 또는 조작자 없이 운수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수장비의 종류에 따라 (711)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60 육상운수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1 시외철도사업

6010 시외철도사업

60100 시외철도운수업 (71111)

도시간 또는 교외간 철도차량에 의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철도차량 전철활동 등 관련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도시간 철도운수
- 여객철도운수 : 도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철도운수 : 도시간 • 도시간 여객 철도운수업 • 시내 또는 교외간 여객 철도운수업 • 냉동 또는 냉장품 화물철도운수업 • 액체 및 가스화물 철도운수업 • 컨테이너 화물철도운수업 • 철도우편화물업 • 기타 철도화물운수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침대차 운영 (5510) •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 (5521) • 도시내 철도운수 (6021) • 철도운수 관련서비스 (630) • 철도차량의 단순한 유지, 보수 • 통신서비스 : 철도운수사업체의 단위부서 (6420) • 호텔운영 : 철도운수사업체의 단위부서 (5510) • 수상운수 : 철도운수사업체의 단위부서 (61) • 학교버스, 노선왕복버스 등과 같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부 정기적으로 운송시설을 운영할 경우 (60219) 	<p>6021 노선여객 육상운송업</p> <p>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도시내, 도시간 및 육상운송시설 (도시간 철도운수업 제외)에 의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운송활동은 여객버스, 사도차량, 무궤도전차, 도시내 철도 등에 의하여 수행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버스, 공항버스, 노선관광버스, 케이블카 등에 의한 운송활동이 포함된다.</p> <p>60211 구역내 철도운수업 (71112)</p> <p>철도차량에 의하여 일정한 도시구역내에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철도운수 • 시내철도운수 • 지하철 : 도시내 • 전기철도 : 도시내 <p>60212 고속버스 운송업 (71121)</p> <p>도시간의 전고속도로 구간을 노선으로 정하고 정기로 전구간 직통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간 고속버스운송업 • 정기고속노선 도로운송
<p>602 기타 육상운수업</p> <p>이 분류에는 도로운송시설, 구역전철, 케이블카 등을 포함한 각종 육상운송시설 (도시간 철도제외)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고속버스 우송업
- 직통여객버스 운행, 전구간 직통
- 시내 및 시외 특별노선 운수업
- 도시간 특별노선 운수업

<제 외>

- 시외버스 운송전문업체에서 근거리 직행버스를 복합 운영할 경우 (60213)

60213 시외버스 운송업 (71122)

고속버스와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도시간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시외버스 운송업
- 정기노선 여객버스 운송
- 직통 여객버스 운송, 경유지 있는
- 도시간 노선버스 운송
- 시외 정기노선 운수업
- 도시간 정기 여객 운수업

60214 시내버스 운송업 (71123)

일정한 도시 또는 읍면의 한정 구역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항버스 및 특정구역 정기순환 미니버스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구간을 정

기적으로 순환하는 운송시설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구역내 노선 여객버스운송
- 노선 여객버스 : 도시내, 구역내
- 시내노선버스 운송
- 시내 및 교외 정기노선 운수업

60219 달리 분류되지않은 노선여객 육상운송업

달리분류되지않은 노선여객 육상운송업으로 무궤도 고가차량, 케이블카, 삭도차량 등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내 여객운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무궤도 고가차량 여객운송 : 정기노선
- 케이블카 여객운송 : 정기노선
- 삭도차량 여객운송 : 정기노선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노선여객 운수업

<제 외>

- 관광지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되는 삭도시설 운영 (9499)

6022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

택시, 운전자가 딸린 차량임대, 전세버스, 유람용 및 기타 수시운행차량 운영, 인력견인 또는 동물견인 여객운송활동이 포함된다.

<p>< 제 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앰블린스의 운영은 (8519) <p>60221 택시운송업 (71131)</p> <p>소형승용차에 의하여 통상 주행거리 또는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송업 : 비노선 • 소형승용차 운수업 : 비노선 • 택시임대 : 운전자 딸린 • 택시업 • 승용차 임대업 (운전자 딸린) <p>60222 전세버스 운송업 (71132)</p> <p>일정한 노선없이 수시 계약에 의하여 운행되는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임대 : 운전자 딸린 • 비노선버스 운영 : 여객 • 전세버스 운영 • 버스 및 대형버스 임대업 (운전자 딸린) <p>60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노선여객 육상운수업 (7113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노선여객 육상운수업으로 일정한 노선 없이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 등에 의한 여객운송산업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견인차량 운영 : 여객운송 • 동물견인차량 운영 : 여객운송 • 비동력차량 운영 : 여객운송 • 인력 또는 동물견인용 여객운수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노선 여객운수업 <p>6023 도로화물운송업</p> <p>정기, 부정기적으로 도로화물차량에 의하여 각종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으로서 원목, 가축, 냉동화물, 중기, 벌크화물, 가구 등 다양한 화물운송활동이 포함되며, 인력견인 또는 동물견인차량에 의한 화물운송과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이 포함된다.</p> <p>60231 정기도로화물운송업 (71141)</p> <p>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각종 도로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60232 특수화물 일반운송업 (71142)</p> <p>위험화물 등 특정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특수장치를 설비한 냉동차량, 컨테이너차량, 탱크차량, 크레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각</p>
---	--

중 부정기적으로 일반노선 없이 구역간 또는 구역내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특수화물운송업
- 냉동화물운송
- 컨테이너화물운송
- 탱크액체화물운송
- 벌크화물운송
- 덤프트럭화물운송
- 원목운반
- 중기운송화물
- 액체화물운송
- 냉동 및 냉장품 운송업
- 액체 및 가스 육상운송업
- 컨테이너 화물육상운수업
- 우편 육상운수업

<제 외>

- 정기노선 특수화물 운송 (60232)

60233 일반구역화물 운송업 (71143, 71144)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않고 각종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상업활동으로서, 특수화물운송업은 제외한다.

<포 함>

- 일반구역화물
- 비노선 일반화물운송
- 가구운송업

<제 외>

- 특수화물 부정기운송, 구역내 또는 구역간 (60232)

60234 장의차량 운영업 (71145)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장의차량 운영

<제 외>

- 장의사가 운영하는 장의차량은 (9303)
- 상여 등으로 시체만 운구하는 활동은 (9303)
- 묘지개발 및 분양은 (7012)

6023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화물운송업 (7114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화물운송업으로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 등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동물견인차량 운영 : 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건인차량 운영 : 화물 • 인력 또는 동물건인용 육상화물운수업 • 기타 육상화물 운수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우터 및 지게 등 인력에 의한 수화물운반은 (9309) <p>603 파이프라인 운송업</p> <p>6303 파이프라인 운송업</p> <p>60300 파이프라인 운송업 (71150)</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스, 액체 및 기타 상품을 파이프라인에 의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펌프장 운영과 파이프라인 유지 관리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이프라인 운송업 • 가스운송 : 파이프라인 • 액체운송 : 파이프라인 • 파이프라인 유지관리업 • 펌프장 운영 • 파이프라인 연료 운송업 • 파이프라인 기타 상품운송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공급 : 배관 (40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기공급 : 배관 (40300) • 수도공급 : 배관 (41000) <p>61 수상운송업</p> <p>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 설비에 의하여 운송하는 활동으로서 건인보우트, 관광 또는 순항용보우트, 유람선 또는 관광선, 수상택시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으로 선상에서 음식점 및 주점 운영활동은 (5520) 에 분류되나 운송활동에 결합 운영되는 경우는 운송업 • 화물의 적하, 보관, 부두운영과 도킹, 수로안내 (도선), 거룻배 운영, 선박구난활동 및 구난선 운영 등의 기타 수상운송보조활동은 (63) 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된다. <p>611 해상운송업</p> <p>6110 해상운송업</p> <p>연근해 및 원양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대호수내의 수상운송도 포함된다.</p> <p>61101 내항여객 운송업 (71211)</p> <p>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수상운송 : 국내항간 • 수상운송 : 국내항간 여객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순항 여객선 운영 (항간이동 제외) (61109) <p>61102 내항화물운송업 (71212)</p> <p>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운송 : 국내화물 • 내항화물운송 • 화물수상운송 (국내항) <p>61103 외항여객운송업 (71213)</p> <p>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항여객운송업 • 여객수상운송 : 외국항로 • 외항 선박 여객운송업 • 기타 외항선박 여객운송업 	<p>61104 외항화물운송업 (71214)</p> <p>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항화물운송 • 화물수상운송 : 외국항로 • 외항 냉장 및 냉동품 운송업 • 외항 액체 및 가스선박 운송업 • 외항 컨테이너 선박운송업 • 기타 외항 선박 화물운송업 • 외항 선박 임대업 (승무원 딸린)? <p>61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 (7121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으로 공해 및 근해상의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인선 운영 : 공해, 근해상 • 유선업 운영 : 연안 (항간이동 제외)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수로상의 예인선 운영 (61209) • 조난선의 구조예인선 (63045) • 항구내의 거룻배 운영 (61209)
--	--

<p>• 항만내 수로여객 운송 (6120)</p> <p>612 내륙수상 운송업</p> <p>6120 내륙수상 운송업</p> <p>강, 운하, 항만내 수로에서 보우트, 거룻배, 예인선, 바지선, 관광선, 수상택시 등의 각종 선박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61201 내륙수상 여객운송업 (71221)</p> <p>강, 운하, 항만내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도선 여객운송을 위한 각종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수상여객운송 • 수상택시 운영 : 내륙수상 • 여객운송 : 강, 운하, 항만내 • 관광선 운영 : 내륙수상 • 내륙선박여객운송업 • 기타 내륙선박여객운송업 <p>61202 내륙수상 화물운송업 (71222)</p> <p>강, 운하, 항만내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도선이동 화물운송을 위한 각종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수상화물운송 • 수상화물운송 : 강, 운하, 항만 • 내륙선박 임대업 (승무원 딸린) • 내륙수상 냉장 및 냉동품 운송업 • 내륙수상 액체 및 가스 운송업 • 내륙수상 기타 화물운송업 <p>61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내륙수상운송업 (71229)</p> <p>달리분류되지않은 내륙수상운송업으로 내륙수로 예인선 운영 및 유선업 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인선 운영 : 내륙수상, 항만 • 유선업 : 내륙수상 • 내륙선박 견인 및 예인 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 (6301) <p>62 항공운송업</p> <p>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또는 항공기 엔진의 분해·수리활동은 (3520) <p>62043 유료도로운영업 (71171)</p> <p>도로, 터널, 교량 등의 설비를 수수료를 받고 사용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가로, 교량 및 터널운영업 <p>621 정기항공운송업</p> <p>6210 정기항공운송업</p> <p>62100 정기항공운송업 (71310)</p> <p>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항공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항공운송 항공여객 운송 : 정기 항공화물운송 : 정기 항공여객 노선운송업 <p>622 부정기 항공운송업</p>	<p>6220 부정기 항공운송업</p> <p>62200 부정기 항공운송업 (71310)</p> <p>일정한 운행دت선을 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항공여객, 화물을 운송하거나 항공기를 조종사와 함께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우주선에 의한 운송활동도 여기에 분류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기 항공운송 항공화물운송 : 부정기 항공여객 운송 : 부정기 우주선 운영 항공기 임대 : 조종사 딸린 항공광고업 항공약품살포업 항공측량용 임대 : 조종사 딸린 항공촬영용 임대 : 조종사 딸린 항공여객 비노선 운송업 컨테이너 항공화물운송업 기타 항공화물운송업 우주항공운송업 항공기 임대업 (조종사 딸린) 서적 및 신문, 잡지, 문구용품 소매업
---	---

<p>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p> <p>63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p> <p>6301 화물취급업</p> <p>운송수단을 불문하고 화물 또는 여행자 수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63011 육상 및 항공화물 취급업 (71174, 71320)</p> <p>철도, 도로, 항공운수에 관련된 각종 육상 및 항공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취급업 • 기타 화물취급업 <p>63012 수상화물 취급업 (71233)</p> <p>항구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및 하역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취급업 	<p>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관세부과지역에서 설치되는 무역상품 보관시설 운영활동이 포함되며, 이러한 보세창고는 보세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세분항목에 분류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소에서의 의복보관 (9301) • 수화물 임시보관소 (95995) • 은행의 안전예금금고 서비스는 (65) • 천연 및 제조가스 저장공급업은 (40209) • 영화필름 및 영화용 비데오테이프 보관은 (94122) • 주차시설의 운영 (6303) <p>63021 보통 창고업 (71921)</p> <p>물자의 보관을 위하여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저장 가능한 물자를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물품 보관창고 • 보통창고업
<p>6302 보관 및 창고업</p> <p>곡물창고, 일반상품창고, 냉장창고 등과 같이 타인을 위하여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섬유, 식품 및 농산</p>	<p>63022 냉장창고업 (71922)</p> <p>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기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포 함>

- 냉장창고업
- 냉동식품보관업
- 얼음보관업
- 냉동물품보관업
- 냉장 및 냉동품 창고업

63023 위험물품보관업 (71973)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품 등 안전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가스성화물보관소
- 액체인화물보관소
- 화학물 창고업
- 위험물 창고업
- 액체 및 가스창업

63024 농산물 창고업 (71924)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을 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곡물창고업
- 농산물 보관업

63029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 (71929)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으로서 차량장기보관소 운영, 목재하치장(수면목재 창고포함), 각종 물품의 야적장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다만, 비축시설 운영업은 비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적합한 항목에 분류된다.

<포 함>

- 목재하치장 운영
- 수면목재 창고업
- 일반물품보관 야적장 운영
- 주류보관 창고업
- 기타 보관 및 창고업

6303 철도운수유지 서비스업

63030 철도운수유지 서비스업 (71111, 71112)

철도운수에 관련된 여객 또는 화물터미널 시설운영 및 기타 철도, 운수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철도차량 정류장
- 철도여객 터미널 운영
- 철도화물 터미널 운영
- 철도차량 조차장 운영
- 철도차량 전철소 운영
- 철도차량 주차장 운영
- 철도운수 보조서비스업

<p>6304 도로운수유지 서비스업</p> <p>63041 여객 자동차 정류장시설 운영업 (71161, 71162)</p> <p>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 • 자동차 정류장 : 여객 • 버스 정류장업 <p>63042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 운영업 (71162)</p> <p>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 • 자동차 정류장 : 화물 <p>63044 주차장 운영업 (71172)</p> <p>유개, 무개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장기보관소 운영 (63029) <p>630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로운수유지 서비스업</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로운수유지 서비스업으로서 도로차량 전문 점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 <p>6305 수상운수유지 서비스업</p> <p>63051 항구 및 유사시설 운영업 (71234)</p> <p>항구, 선창, 도크, 잔교 및 기타 해상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및 수로운영업 (화물취급 제외) <p>63052 수로안내 (도선)업 (71231)</p> <p>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서 수로안내 활동을 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로안내 및 정박서비스업 <p>63053 선박정소업 (71232)</p>
--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선박 갑판 및 탱크의 청소, 살균, 훈증, 소독, 해충박멸 및 유사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선원이 이러한 자기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63054 선박 구난업 (71235)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외항선박 견인 또는 예인서비스업
-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업

63059 달리 분류되지않은 수상운수 유지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않은 수상운수 및 관련 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수상운수보조 서비스업
- 등대운영업
- 운하운영업
- 항해조력 서비스업
- 수로, 갑문운영업
- 항해 보조서비스업
- 기타 수상운수 보조서비스업

6306 항공운수유지 서비스업

63061 항공터미널 시설운영업 (71320)

항공여객 또는 화물의 승강, 적하를 위하여 항공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공항운영 서비스업

63069 달리 분류되지않은 항공운수유지 서비스업 (7132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항공운수, 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항공관련 서비스업
- 공항설비 운영서비스업 : 항공터미널 제외
- 기관운수 보조서비스업
- 공항지상 서비스업
- 항공기 유지서비스업
- 비행관제탑 운영서비스업
- 비행관제 서비스업
- 항공교통통제 서비스업
- 기타 항공운수 보조서비스업

6307 여행알선업

여행자 및 관광객을 위하여 여행정보, 조인 및 여행일정 계획 등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숙박 및 운송을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행자 안내활동과 대표대리활동도 포함한다.

<포 함>

- 여행 대리업
- 여행사 운영업
- 여행사 안내업
- 숙박 알선업
- 대표 대행업
- 여행알선 및 여행사 운영업
- 관광안내 서비스업

63071 국제여행 알선업 (71912)

국제여행자를 위하여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국제여행 알선업

63072 국내여행 알선업 (71912)

국내여행자를 위하여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국내여행 알선업

63073 일반여행 및 알선업 (71912)

국내여행 및 국제여행관련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09 기타 운수관련 대리업

화물운송대리 및 중개, 통관업무대리, 선박 및 항공기중개, 화물포장 및 검수 등 화물운송에 관련된 대리 중개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091 화물운송 대행업 (71911)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각종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운송 대행업

63092 화물운송 중개업 (71913)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통관 및 관세 중개서비스, 화물증서 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의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

<포 함>

- 통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중개업 • 화물요금 결산 대리 • 화물운송 대리점 • 화물운송 중개 • 운송회사 업무대행 • 화물수송 알선업 <p>63093 선박 및 항공기중개업 (71914)</p> <p>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항공기의 임대 및 판매에 관련하여 이를 중개 또는 알선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임대중개업 • 선박 매매알선업 • 항공기 임대중개업 • 항공기 매매알선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항공기 임대는 : 조종자 딸린 (6110 , 6220) <p>63094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71915)</p> <p>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운수화물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포장업, 운수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검수, 운수관련 • 화물형량 및 유사서비스, 운수관련 <p>630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운송대리업 (719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운수부대 서비스업으로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 가축사육장 운영, 가축형량, 가축 하역 등 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운송보조 서비스업 <p>64 통신업</p> <p>641 우편업</p> <p>6411 우편업</p> <p>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접수, 운반,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64110 국영 우편업 (72001)</p> <p>우편함 또는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수집, 이를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국영기관이 우표판매 활동과 우편물 구분,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업(편지관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업 (소포관련) • 우체국 서비스업 • 기타 우편 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활동과 결합되어 수행되는 우편지로 및 우편저축 등의 기타 금융활동은 (6519) <p>64120 사설우편업 (72001)</p> <p>사설우편기관이 편지, 소형우편물, 우편화물 및 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활동으로서 항공운송시설 이외의 단일운송수단만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하나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운송수단은 자기사유 운송수단이나 공공운송수단일 수 있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달 서비스업 • 기타 송달 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우편기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우편활동은 (64101) • 항공우편 배달활동 (62200) 	<p>렉스 통신과 통신망의 유지활동이 분류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9213), 유선 또는 무선 <p>64200 전기 통신업 (72002)</p> <p>전신, 전화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통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업 • 전신업 • 정보전송업 • 전자우편서비스 • 해저전신서비스 • 팩시밀리전송서비스 • 사진전송서비스 • 무선전신서비스 • 유선전신서비스 • 텔리타이프서비스 • 텔렉스서비스 • 음성 및 영상전송서비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통신 위성서비스 • 무선통신서비스
<p>6420 전기통신업</p> <p>유선, 방송, 중계 또는 위성통신시설에 의하여 소리, 영상, 자료 또는 기타 정보를 송달하는 활동으로서 전화, 전신 및 텔</p>	

- 레이더 서비스업
- 통신위성 및 미사일의 유도서비스
- 통신위성지국 서비스업
- 데이터 전송서비스업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케이블서비스업
- 위성통신에 의한 음향 및 영상서비스업
- 무선에 의한 음향 및 영상서비스업
- 유선에 의한 음향 및 영상서비스업
- 기타 통신 서비스업

<p>J. 금융 및 보험업 (65~67)</p> <p>1. 개요</p> <p>이 대분류에는 보험, 연금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하는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p>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재분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통화금융과 비통화금융업을 수행하는 각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영업소의 활동이 포함된다.</p> ○ 보험 및 연금업 <p>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비생명상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보험업과 연금 등의 각종 보장기금을 조성관리하는 연금업이 포함된다.</p>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p>그 자체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은 아니지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p> 	<p>2. 타산업과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권 지출에 의하여 생산무능력자, 소득결손 또는 손실등을 보상하는 사회보장업무 (7530) ○ 운용리스활동 (71) ○ 특정사업목적 기금조성과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p>65 금융업 ; 보험, 연금제외</p> <p>보험 또는 연금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651 통화금융업.</p> <p>중앙은행, 일반은행, 어음할인 및 저축기관 등 통화창출효과를 수반하는 예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p> <p>6511 중앙은행</p> <p>65110 중앙은행 (81011)</p> <p>일반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간의 결재를 위하여 사용될 적립금을 받으며, 은행운영감독, 외국환관리, 통화발행과 통화량 관리업무, 정부의 국제준비금 보유 등의 은행업무와 관련된 정부규정의 운영·실시 및 관련 기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예금은행업 • 중앙은행 감독서비스업 • 중앙은행 외국환 관리서비스업 • 중앙은행 통화유통액 발행 서비스업 <p>6519 기타 통화금융업 (81012)</p> <p>중앙은행 이외의 통화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 어음할인은행, 저축은행 등이 포함된다.</p> <p>65191 외국은행</p> <p>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과 국제기구은행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65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통화금융업</p> <p>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통화금융업으로 중앙은행 외국은행의 지점 및 대리점 이외의 기타 통화금융기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화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행하는 금융증개 활동 등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예금은행 서비스업 • 기타 은행예금 서비스업 • 비중앙은행 통화유통액 발행서비스업 • 기타 예금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및 연금기금운영은 (66) <p>659 금융업</p> <p>6591 금융리스업</p> <p>69910 금융리스업 (81039에서 분리)</p> <p>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년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으로 정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최후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서비스업 (자산 저당하고)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리스는 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71)의 적당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p>6592 기타 여신금융업</p> <p>주로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비통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이외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소비자금 대부융자 또는 산업자금 장기융자, 주택구입 자금대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도 있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금대여 (금융리스 제외) 창업자금 지원회사 • 사업자금융자 (금융리스 제외) <p>65921 사업자금 대여회사 (81021)</p> <p>대부분의 운영자금을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자본계정을 통하여 조달하고 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리스 이외의 각종 사업자금의 대출을 업무로 하는 신용기관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리스업 (65910) • 운용리스업 (71) <p>65922 상호신용금고업 (81022)</p> <p>일반적으로 신용조합, 협동조합 및 유사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금융기관 활동으로서 유자격자로부터 정예금을 받아 들이고 고객에게 대부활동을 하는 은행이외의 저축기관을 말하며 고객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신용협동기구, 저축기구, 우체국의 저축부서 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할부 대부서비스업 • 신용카드 서비스업 <p>659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신용제공업 (81029)</p> <p>달리분류되지않은 비통화 금융기관으로 재할인 및 단기사업자금 대여회사, 개인대출회사, 상호이익조합, 수급자 금융기관, 저당기관 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신용서비스업 <p>65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금융업</p> <p>여신(대부)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분배하는 기타의 금융 활동으로서 주식, 채권, 어음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와 유가증권매매, 부동산투자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자산을 위하여 수행되며, 자산권의 선택매매 및 기타 자산 보조활동과 금융지주회사도 여기에 분류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리스 (6591) • 운용리스 (71) • 타인을 위한 증권매매 (6712) • 재산권의 임대 (70)
<p>65923 신용판매금융업 (81022)</p> <p>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이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65991 투자회사 (81023)</p> <p>채권이나 어음, 기타 재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단기유동자금을 흡수하고 이를 유가증권 및 부동산투자에 종사하는 은행이외의 기관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 금융 • 모험투자회사 • 투자회사 • 투자신탁 서비스업 <p>65992 신탁회사 (81025)</p> <p>정규적인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관리하며 주로 신탁과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자산 신탁서비스업 <p>65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업 (81022, 8102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업으로서 대부 대리인 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개별 신용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융중개서비스업 	<p>66 보험 및 연금업</p> <p>660 보험 및 연금업</p> <p>저축요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6601 생명보험 및 그 재보험업</p> <p>66011 생명보험업 (82010)</p> <p>본질적인 저축요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명보험 및 재보험, 기타 장기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기금의 모금 및 이의 투자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업 <p>66012 생명보험 재보험업 (82040)</p> <p>생명보험의 원차적인 위험의 일부를 인수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제 2 차 보험업자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6602 연금기금 운영업</p> <p>66020 연금기금 운영업 (82052)</p> <p>퇴직후의 수입보장기금의 운영활동으로서 기금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포 함>

- 퇴직연금기금 운영
- 공제기금 운영
- 연금기금 조성 및 운영
- 연금운영업

<제 외>

- 국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사업은 (7530)과 (853)

6603 비생명보험업

사고, 화재, 건강, 재산, 차량, 해상, 항공, 운송, 금전상의 손실 및 채무보상 등의 비생명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6031 손해보험업 (8202)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 및 기타운송, 화재, 도난 및 사고에 따른 여객, 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해상보험
- 철도사고보험
- 항공사고보험

- 도난보험
- 손해보험
- 자동차 보험업
- 해상, 항공 및 기타 운송보험업
- 화물보험업
- 화재 및 기타 자산손해보험업
- 금전손실 보험업
- 일반책임보험 서비스업

66032 보증보험업 (82030)

개인 및 산업체 신용 또는 재정보증보험, 부동산 및 물품보증보험, 부동산 및 물품보증보험, 재산권 및 기타 권리보증보험, 책임보증보험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6033 의료보험업 (82051)

국민의 질병, 상해, 분만, 사망 등에 대한 의료시혜 및 관련 보험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보 험>

- 상해 및 건강보험업

66034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32053, 82059)

근로자의 업무에 관련된 각종 산업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요양 및 급여등의 각종 산업재해보험과 실질보험, 수출보험 등의 각종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적 보험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

<p>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사회보험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기금 및 공제기금 운영 (66020) <p>66035 비생명보험 재보험업 (82040 중 생명재보험 제외)</p> <p>각종 비생명보험 사업체의 원천적인 위험의 일부를 인수하여 보험을 수행하는 제 2 차 보험업자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p> <p>그 자체가 금융 또는 보험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 금융 또는 보험업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671 금융관련 서비스업</p> <p>그 자체가 금융업은 아니지만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 보험 및 연금기금서비스활동은 제외한다.</p> <p>6711 금융시장 관리업</p> <p>67110 금융시장 관리업 (81039)</p>	<p>정부기관이 아니면서 금융시장 운영 및 감독활동과 증권거래 활동 및 기타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 또는 감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운영서비스업 • 금융시장 조절서비스업 • 금융시장 관리서비스업 <p>6712 증권거래업</p> <p>67120 증권거래업 (81024)</p> <p>금융시장에서 증권의 판매자 또는 매수자의 한편에 서서 증권을 매매, 중개 및 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업 • 증권발행 및 기재서비스업 • 포트폴리오 경영업 • 증권시장 관련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계정에 의하여 증권을 매수, 매도하는 활동은 (6599) <p>671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 (8103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금융관련 서비스활동으로서 금융자</p>
--	---

<p>문, 저당권 자문 및 중개, 상품 및 증권교환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과 연금에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대리인 등의 활동은 (6720) <p>67191 어음청산업 (81032)</p> <p>은행을 위해 수표를 교환해 주고 증권 및 금융상품의 교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대부 중개서비스업 • 금융상담 서비스업 <p>67192 상품교환업 (81031)</p> <p>현금거래 또는 선물거래 방식에 의하여 회원들과 계약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67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81039)</p> <p>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융 서비스업으로서 수표의 현금화, 외환교환서비스, 여행자수표의 발행 등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 특허와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 서비스업 • 통화포장 서비스업 •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p>67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p> <p>67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p> <p>보험 및 연금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반서비스 활동으로서 보험료 조정, 보험계리사, 보험구조행정, 보험대리 등의 활동이 분류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구조 (6313) <p>67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82091)</p> <p>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중개 및 알선서비스업 • 보험계리사 서비스 <p>67202 보험감정업 (82092)</p> <p>보험사업체를 위해 각종 손실, 손괴의 감정 및 기타 보험감정 및 기타 보험감정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67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820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험 및 연금관련 보조업으로서 연금 및 보험수리 자문서비스, 연금 및 보험조사보고 및 관련보조서비스, 연금 및 보험료 결정서비스, 연금 및 보험자문서비스, 연금 및 보험구조 행정사무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가 포함된다.

<포 함>

- 보험 및 연금상담 서비스업
- 보험손실 조정서비스업
- 보험구조행정 서비스업
- 기타 보험 및 연금보조서비스업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74)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 조작자없이 각종 기계장비,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 컴퓨터 관련산업,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이 포함된다.

○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묘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구매, 판매, 임대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임대업

개인·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없이 각종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과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컴퓨터 관련산업,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컴퓨터설비, 조직, 프로그램자료처리, 자료제공등 컴퓨터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및 개발활동,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서비스, 건축, 공학 및 기타 기술관련 서비스, 광고 및 기타 각종 일반사업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4520)
- 숙박시설의 운영 (5510)
- 조작자가 딸린 각종 운수장비의 임대 (60~62)
-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에 분류
- 컴퓨터판매 및 관련 부수활동 (5239)
- 도서관 및 기타 자료실운영 (9231)
- 농업, 운수, 금융, 보험등 특정산업관련 전문서비스 제공 활동은 그 특정 산업분야에 분류

70 부동산업

701 부동산 임대업

7010 부동산 임대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의 구매, 판매, 임대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 묘지 및 기타 재산권의 개발, 분양활동과 아파트식 호텔, 이동주택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포함>

- 부동산 임대
- 토지 및 묘지, 광업권등의 부동산관련 재산권을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 판매

<제 외>

-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 판매할 경우 (4520)
- 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 (5510)

70111 주거용건물 임대업 (83011)

주거용 건물을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주택 임대업
- 아파트 임대업
- 주거용건물 임대업
- 이동용건물 임대업
- 아파트식호텔 임대업
- 이동주택 임대업
- 주거용건물 임대업

70112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83011)

사무, 상업 및 기타 비주거용 건물을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사무실 임대업
- 상점 임대업
- 오피스텔 임대업
- 사무용건물 임대업

- 쇼펍센터 임대업
- 시장 임대업
- 상업용 임대업
- 비거주용건물 임대업

70119 달리분류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 (83019)

농업용 토지, 광물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토지 임대업
- 묘지 임대업
- 광업권 임대업
- 지상권 임대업

7012 부동산개발 판매업

묘지를 포함해서 택지, 공업용지등의 토지와 농장, 타인에게 등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등 각종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할 및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0121 건물분양 판매업 (8302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건물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건물등 각종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할 및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70121 건물분양 판매업 (8302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건물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70122 토지개발 판매업 (83022)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등 각종 용도의 토지를 개발·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702 부동산관련 서비스업</p> <p>7020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평가, 관리와 임대, 판매, 구매에 관련된 대리 및 중개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70201 부동산중개업 (8303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에 연관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건물 및 토지 판매, 구매 서비스업 ·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판매 또는 구매 서비스업 · 주거용 건물 및 토지 판매서비스(수수료 또는 계약) ·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 판매서비스(수수료 또는 계약) 	<p>70202 부동산 감정업 (8303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부동산 임대, 부동산 전매에 따른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70203 부동산 관리업 (83039)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건물 관리 서비스(수수료 또는 계약) · 비주거용 건물 관리 서비스(수수료 또는 계약)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청소 점검 및 기타 건물관련 특정부문 대리활동(74) <p>70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8303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부동산업으로서 부동산의 임대, 분양, 개발, 관리등에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조사 서비스활동이 포함된다.</p>
	<p>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p> <p>711 운수장비 임대업</p> <p>7111 육상운수장비 임대업 운전자가 딸리지 않고 철도차량, 승용차, 트럭, 트레일러와 오토바이, 마차, 캠프차 등과 같은 각종 육상운수장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유지활동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차량리스와 임대를 포함하며, 컨테이너의 임대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가 딸린 승용차량 및 트럭의 임대 (6022, 6023) • 자전거 임대 (7130) <p>71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173)</p> <p>운전자가 딸리지 않고, 모터싸이클, 소형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임대업 (운전자 없이) <p>71112 컨테이너 임대업 (84502)</p> <p>화물포장운반용 컨테이너를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71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육상운수장비임대업 (71173, 84502)</p> <p>운전자가 딸리지 않리지 않고, 승용자동차, 컨테이너를 제외한 기타 육상운수장비를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일러 임대 • 화물자동차 임대업 (운전자 없이) • 기타 육상수송장비 임대업 (운전자 없이) <p>7112 수상운수장비 임대업</p> <p>71120 수상운수장비 임대업 (71236)</p>	<p>승무원이 딸리지 않고, 상업용보우트 및 선박등의 수상운수장비를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유지활동과 결합 수행여부를 불문하고 선박리스와 임대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임대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무원이 딸린 수상운수장비 임대업 (61) • 금융리스 (6591) • 놀이용 보우트 및 관련 정박설비 임대업 (7130) <p>7113 항공운수장비 임대업</p> <p>71130 항공운수장비 임대업 (71320)</p> <p>승무원 없이 항공기등의 항공운수장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항공기의 리스와 임대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임대업 (운전자 없이)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무원이 딸린 항공운수장비 임대업 (62) • 금융리스 (6591) <p>712 기타 기계장비임대업 : 운전자 없이</p> <p>7121 농업용 기계장비임대업</p>
---	---

<p>71210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84502)</p> <p>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운전자 없이)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자가 딸린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0140) <p>712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p> <p>7122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84502)</p> <p>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운전자 없이)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 딸린 건설기계 장비 임대업 (4550) • 금융리스업 (6591) 	<p>스 및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 복사기 • 타자기 • 워드프로세서기 • 전자계산기 • 현금등록기 및 기타 계산 장치가 결합된 기계 • 회계기계장비 • 디지털형, 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 타입의 자동자료처리 기계 • 중앙처리단위, 주변기기 • 자기식 또는 광학식판독기 • 사무기계장비 (전기식 여부 불문) • 사무용기계 및 기계장비 (컴퓨터 포함) 임대업 (운전자 없이)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 회계, 계산기기의 유지 및 수선업 (72500) <p>71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기계장비임대업</p>
<p>7123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p> <p>71230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84503)</p> <p>조작자 없이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 회계, 계산시계를 리</p>	<p>7129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기계장비임대업 (8450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기계장비 임대업으로서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p>

중 기계장비를 임대(렌트 또는 리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기관 및 터어빈
- 기계공구
- 광산 및 유전용장비
- 상업용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
- 전문과학,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 상업, 산업용 기계장비
- 기타 기계 및 장비 임대업(조작자 없이)

<제 외>

- 금융리스업(6591)
- 농업용 기계장비임대업:운전자 딸린(7121)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임대업:운전자 딸린(7122)
- 사무기계장비 임대업(7123)

713 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0 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섬유, 의복 및 신발, 가구, 도자기 및 유리제품, 주방 및 식탁용품, 전기기기 및 가정용품, 오락용 기구 및 관련설비, 목마, 자전거, 물놀이기구, 장신구, 악기, 무대장치 및 무대의상, 서적, 정기간행물 및 잡지, 비디오테이프 및 레코오드등의 각종 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상품의 종합임대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 운전자 없이 승용차, 소형버스, 모터싸이클, 트레일러 임대업(7111)
-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관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92)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한다.

71301 종합물품 임대업(84501)

각종 개인 또는 가정용기계장비 및 용품을 종합적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카세트 및 관련기기 및 부속품 임대업

71302 서적 및 기타 기록물 임대업

각종서적, 정기간행물, 잡지, 비디오테이프 및 음반등의 기록물을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비디오테이프 임대업

<제 외>

- 도서관, 독서실, 자료실 및 시청각실 운영(9231)

71303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94970)

<p>각종 운동, 오락, 여가 및 유희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경기용 장비 • 오락용기구 및 관련설비 • 목마 및 자전거 • 물놀이기구 • 장난감 • 스키화 임대 • 오락용품 임대 • 오락용 기기 임대업 <p>71304 연극 및 영화용품 임대업 (94149)</p> <p>연극공연 및 영화제작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무대장치, 무대의상 및 관련 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및 방송용 필름 임대업 (92113) <p>71305 가구 임대업</p> <p>각종 가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및 기타 가정용 기기 임대업 	<p>7130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의복, 신발(스키화 제외)임대업 • 주방 및 식탁용품 임대업 • 도자기 및 유리제품 임대업 • 전기기기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장신구 임대업 • 악기 임대업 • 미술품 및 장식품 임대업 • 화환, 화분 임대업 • 가정용 또는 개인용품 임대업 • 기타 개인 및 가사용품 임대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의상 및 영화용품 임대 (71304) <p>72 컴퓨터 관련산업</p> <p>721 컴퓨터설비 자문업</p> <p>7210 컴퓨터설비 자문업</p> <p>72100 컴퓨터설비 자문업 (84311)</p>

고객의 욕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가장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할 컴퓨터 유형 및 배치,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등에 관한 자문활동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컴퓨터(하드웨어)설치 관련 서비스업

<제 외>

- 컴퓨터 제조 또는 판매단위에서 수행되는 유사활동은 (3000) 및 (5239)에 각각 분류

722 컴퓨터프로그램 자문 및 공급업

7220 컴퓨터프로그램 자문 및 공급업

72200 컴퓨터프로그램 자문 및 공급업(84311)

사용될 컴퓨터 하드웨어에 적용될 조직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를 디자인 및 프로그램화 하는데에 관련되는 활동으로서 통상적으로 고객의 욕구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을 고려하고, 이러한 해결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자문활동과 고객요구에 따라 단순히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특히 특정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공급하거나 주문없이 범용성의 소프트웨어의 개발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자문서비스업
- 시스템 분석 서비스업
- 시스템 설계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 서비스업

<제 외>

-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복제생산은(2230)
- 소프트웨어 소매 활동의 일부활동으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활동은(5239)
- 하드웨어 자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자문은(7210)

723 자료처리업

7230 자료처리업

72300 자료처리업(84313)

각종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거나 제표하는 활동으로서 고객이 제공한 자료의 완전처리와 보고서 작성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또는 문자로의 전환처리, 광학적 특성으로 전문화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직접 제공되거나 터미널을 경유하여 공급될 수 있으며 고객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간제나 시분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되며, 타인의 자료처리시설을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하

<p>는 활동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입력 준비업 • 자료처리 분할 시간제 서비스업 • 기타 자료처리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및 컴퓨터에 관련된 하드웨어, 계산기를 대여 또는 임대하는 활동은 (7123) • 사용될 컴퓨터조직의 개발과 프로그램화하는 활동은 (7220) • 컴퓨터 유지 및 수선활동은 (7250) <p>724 자료제공업</p> <p>7240 자료제공업</p> <p>72400 자료제공업 (84314)</p> <p>여기에는 다음 세가지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데이터베이스 개발-한 개 이상의 자료로부터 정보를 조합 2. 자료저장-사전에 결정된 형식으로 조합된 자료를 컴퓨터에 수록 3. 데이터베이스 활용-특정 주문 또는 상황에 부응하여 금융, 경제, 통계, 기술등의 각종 자료를 온라인으로 자료검색 또는 컴퓨터로 자료를 자동처리하여 제공, 이러한 자 	<p>료들은 모든 사람이나 한정된 이용자가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며, 요구에 맞도록 구분하여 제공될수있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제공되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 처리 활동은 (9231) <p>725 사무, 회계, 계산기기의 유지 및 수선업</p> <p>7250 사무, 회계, 계산기기의 유지 및 수선업</p> <p>72500 사무, 회계, 계산기기의 유지 및 수선업 (84319)</p> <p>사무 및 회계기,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의 유지·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기계 및 기기(컴퓨터포함) 유지 및 수선업 <p>7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컴퓨터관련업</p> <p>729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컴퓨터관련업</p> <p>7290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컴퓨터관련업 (84319)</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자료준비 서비스업
---	--

-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컴퓨터 서비스업

73

학술연구 및 개발업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의 활동이 포함된다.

1. 기초연구-특정용도나 응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행되는 기초연구, 실험, 이론정립활동
2. 응용연구-원칙적으로 명확한 실행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기본적 탐구활동
3. 실험개발-연구 또는 실제적 경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지식에 의하여 구도되는 조직화 작업으로서 새로운 재료, 생산품 및 장치를 생산하고 새로운 공정, 조직 및 업무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산 또는 설치된 것들을 본질적으로 개량하려는 활동

<제 외>

- 다양한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행정 및 지원활동은 (75)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관련된 국방행정 및 지원활동은 (7522)
- 교육활동에 결합된 연구활동은 (80)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731 자연과학연구개발업

7310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수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생명공학, 의학, 지구과학, 농학등의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의 세가지 유형면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창조적 노력이 포함된다. 이것은 지식의 축적을 증대시키고 축적된 지식의 이용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73101 물리 및 화학연구 개발업 (93210)

물리학 및 화학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학연구
- 무기화학연구
- 유기화학연구
- 물리화학연구
- 생화학연구
- 물리연구
- 핵물리연구
- 고체, 표면 및 플라스틱물의 연구
- 고, 저에너지분자 물리연구
- 물리연구 및 개발서비스업
- 화학 및 생물학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

73102 생명과학, 농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93210, 93230)

생명과학, 농학 및 수의학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 생명과학연구
- 식물학연구
- 세균학연구
- 곤충학연구
- 종묘학연구
- 생리학연구
- 유전학연구
- 우생학연구
- 우주생물학연구
- 농학연구
- 농경학연구
- 낙농학연구
- 어업연구
- 원예학연구
- 조경학연구
- 수의학연구
- 농학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

73103 의학 연구개발업 (93220)

인간 보건 의학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을 주로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포함>

- 암 및 기타 질환연구
- 정신의학연구
- 공중보건연구
- 인간생태학연구
- 물리요법연구
- 의학 및 약학연구 개발업

73104 공학기술 연구개발업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련되는 연구개발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 화학공학 연구
-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 기계공학
- 광업, 조선 및 선박, 해양, 항공공학, 위생공기조절, 냉난방, 환경, 음향, 핵 등의 분야에 관한 공학기술연구

73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93210, 93290)

물리 및 화학, 생명과학, 농학 및 수의학, 의학을 제외한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자연과학연구, 개발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과학 연구 • 광물학 연구 • 석유학 연구 • 고생물학 연구 • 지구물리학 연구 • 지구화학 연구 • 지진학 연구 • 토양학 연구 • 기상학 연구 • 천문학 연구 • 수학 연구 • 기타 자연과학 연구 • 기타 자연과학 연구 및 개발업 <p>732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p> <p>7320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p> <p>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언어학, 예술등의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연구, 개발의 세가지 유형면에서 체계적 연구와 창조와 노력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지식의 축적을 증대시키고</p>	<p>이들 축적된 지식의 이용성을 증대시킨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학 연구 • 사회학 연구 • 법학 연구 • 정치학 연구 • 언어학 연구 • 예술연구 • 문화학, 사회학 및 심리학 연구 개발업 • 법학 연구 개발업 • 언어학 연구 개발업 • 기타 인문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 기타 서로다른분야의 연구 개발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 활동은 (7413) <p>73201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73202 비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p>
---	--

<p>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기여금 등 각종 기금에 의하여 인문 및 사회분야에 관한 비상업적 연구 개발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기금제공 주체와의 계약 또는 요구에 따라 관련 연구활동이 수행될 수 있다.</p> <p>74 기타 사업서비스업</p> <p>여기에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서비스, 건축, 공학 및 기타 기술관련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탐정 및 경호 또는 건물 청소, 사진촬영 및 처리, 제품포장등 사무관련 서비스, 달리분류되지 않은 산업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조작자 없이 (71)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제공 (72) • 연구 및 개발업 (73) <p>741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사업체를 대리하여 법무, 회계, 부기 및 회계감사, 세무상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사업 및 경영상담에 관련된 전문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7411 법무관련 보조업</p>	<p>당사자를 대리하여 민사, 형사 및 기타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변호, 조언 및 상담, 법적문서 작성,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권리보호, 공중, 중재 및 심판중재등의 각종 법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74111 변호사업 (84111)</p> <p>당사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법률상담등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업 • 소송대리인 • 소송사건 법률상담 • 공중변호인 • 형법 관련 법률 자문대리 서비스업 • 기타 법률관련 사법절차 자문, 대리 서비스업 • 유사 사법적 심판, 법정대리등 법률관련 자문대리업 <p>74112 특허사무업 (84112)</p> <p>당사자를 대리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신청, 이의신청 등의 법률적 처리, 조언, 상담등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사무
--	---

- 저작권 사무
- 기타 비금융 무형자산 사무

74113 법무사업 (84113)

당사자를 대리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등에 관한 수속절차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법무사업
- 등기관계서류작성
- 공탁증서작성
- 법률서류작성
- 법률문서 및 증명 서비스업

74119 달리분류되지않은 법무관련서비스업 (84119)

달리분류되지않은 법무관련서비스업으로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사무, 행정대서사무등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일반행정서류작성
- 대서사무, 행정사무
- 기타 법률자문 및 안내서비스업

7412 회계 관련 서비스업

개인 또는 사업체의 상거래기록작성, 재무제표작성, 회계감사 및 그 정확성 증명, 개인 또는 사업체의 소득세 신고서 작성등의

활동과 고객을 대신하여 세무당국에 세무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조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특허 및 저작권의 구매 및 임대에 관한 중개서비스는 (6599)
- 변호사업 (74111)
- 자료처리 및 제표활동은 (7230)
- 회계조직의 설계, 비용계산 프로그램, 예산조정절차등의 경영상담 활동은 (7414)
- 수금활동은 (7499)

74121 공인회계사업 (84121)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재무회계 서류의 작성, 감사, 조사, 조정 및 기타 재무회계에 관련된 사무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공인회계사무소
- 회계감사 사무
- 공인회계감사 증명
- 재정회계감사 서비스업
- 회계조사 서비스업
- 재무제표 작성 서비스업

74129 달리분류되지않은 회계 관련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회계관련서비스업으로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세무대리, 세무서류의 작성, 재무회계장부의 기장 및 계산정리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세무사 사무소
- 세무자문 상담, 공인회계사 제외
- 세무관계서류 작성, 공인회계사 제외
- 부기전문사무, 공인회계사 제외
- 기타 회계 서비스업
- 부기 서비스(납세신고 제외)
- 법인 세금 계획 자문업
- 법인 세금준비 및 조사업
- 개인 세금준비 및 계획업
- 기타 세금관련 서비스업

74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13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84312)

· 상품의 판매촉진과 신제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잠재력, 생산품의 인지도와 친숙도, 소비자들의 구매습관등의 조사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쟁점에 관한 일반대중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시장조사업
- 상품의 시장잠재력 조사
- 상품 인기도 조사
- 소비구매습관 조사
- 여론조사업
- 시장조사 및 유사서비스업

7414 사업 및 경영 상담업

74140 사업 및 경영 상담업(84492)

· 사업에 관한 조언, 지도 또는 경영보조 중재 및 조정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유료광고, 복지 및 자선사업, 정책, 섭외(로비)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서 일반대중, 매체 또는 기타 다른대상과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미지 구축과 여론형성을 통한 공공관계(PR)활동, 사업계획, 조직, 능률 및 조정, 경영정보등에 관련된 활동, 농업경영학자와 농업경제학자에 의한 영농자문과 같이 실제 경영과 결합된 경영상담활동, 노사간의 중재와 화해활동 및 경영지주회사의 활동이 분류된다.

<포 함>

- 경영자문 서비스업
- 재정관리 자문서비스업
- 시장관리 자문서비스업
- 인력관리 자문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관리 자문서비스업 • 공공관계 자문서비스업 • 기타 경영자문 서비스업 • 사업 경영 서비스업 • 경영관계 중재 및 조정 서비스업 •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경영 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관련활동은 (72) • 법률상담, 변호활동은 (7411) • 회계, 부기 및 감사, 세무상담 활동은 (7412) • 시장조사 및 여론취합활동은 (7413) • 기술적인 자문활동은 (7421) • 광고활동은 (7430) <p>742 건축, 공학 및 관련 기술자문서비스업</p> <p>건축 및 공학관련 자문, 측량, 지질탐사 및 광물시굴활동이 포함되며, 건축관련활동은 건물설계 및 도안과 건축감리 활동이 분류되어, 도시계획 및 조경 건축술에 관련된다. 공학 및 기술활동은 토목공학, 수력공학,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교통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광산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산업 및 시스템공학, 공기조절, 냉각, 위생 및 공해방지공학, 음향공학등에 관련된 전문공학기술이 포함된다. 지질학적 시굴활동은 생지하구조에 관한 정보나 석유, 천연가스, 광맥, 지하수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지표면 측정과 관할조사를 하게된다.</p>	<p>지형항공측량, 수리측량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지도제작과 관련된 지형측량 활동도 포함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가스채굴활동에 결합된 시추와 시굴활동은 (1120) • 연구 및 개발활동은 (73) • 기술시험 활동은 (7422) • 실내장식업 (7499) <p>7421 건축, 공학 및 관련 기술자문서비스업</p> <p>측량, 건축 및 공학, 지질탐사등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74211 측량업 (84211)</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축 또는 지도제작에 관련된 토지, 도로, 트랙, 수로등을 측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항공측량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제작 및 지도제작에 관련된 지형측량 및 항공측량업 • 표면측량업 • 지도제작관련 과학 기술 자문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및 탐사에 관련된 지표면 측정과 관할조사는 (74213)
--	--

74212 건축설계 및 토목공학 관련 자문서비스업 (84212, 8422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형태의 건물 및 구조물의 건설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 제도, 작업도 작성, 건축감독, 도시계획, 조경설계, 골프장 설계등과 같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 도로, 교량, 터널, 주차시설, 운하, 항구, 수도 및 가스공급시설, 하수조작등의 건설에 관련된 토목공학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력 및 교통공학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설계도와 도안(건축용, 공학용, 공업용, 상업용, 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것 및 카본복사의 것
- 건축공학 서비스업
- 건축설계 서비스업
- 건축계약관리 서비스업
- 건축설계 관련 경영서비스업
- 기타 건축공학 서비스
- 지반구축 및 빌딩 구조물용 기계공학 설계업
- 운수지원 시설 종합공학서비스업
- 하수시설 관련 종합공학 서비스업
- 도시계획 서비스업
- 조경건축 서비스업

74213 지질조사 및 탐사업 (84292)

각종 지하자원의 매장 상태등을 탐지하기 위한 지질조사, 지구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에 관련된 항공측량 및 항공탐사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

<포 함>

- 지질조사, 지구물리학 및 기타 과학관련 개발업
- 지질측량업

74214 기계공학 및 공업디자인업 (84225, 84226)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기계장비, 엔진, 도구 등에 대한 기계공학 및 그 디자인과 기계모형, 차체형, 생산품모형, 포장등의 디자인과 제도 및 도안등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기계공학 자문 상담업
- 건물 기계 및 전기설비 설계서비스업
- 토목공사관련 기계공학 설계서비스업
- 산업생산물 관련 기계공학 설계서비스업
- 건설 및 설비단계 기계공학 서비스업

<제 외>

- 광고디자인업 (84412)
- 상업디자인업 (74991)

7421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축, 공학 및 관련기술 자문서비스업 (84229)

<p>건축 및 토목공학, 기계공학 및 공업디자인을 제외한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건축, 공학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으로서 전기, 전자공학, 화학공학, 산업보조적 공학, 광업, 조선 및 선박, 항공기 설계, 해양, 항공, 광학, 위생, 공기조절, 난방, 배관, 냉동 및 냉장, 오염 및 공해조절, 섬유, 핵, 음향등에 관한 공학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공학 설계서비스업 • 기계공학관련 자문업, 기타 • 제조공장시설 관련 종합공학자문업 • 시설관련 종합공학자문업, 기타 <p>7422 기술시험 및 분석업</p> <p>74220 기술시험 및 분석업(84291)</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학 및 물리시험 또는 검사, 기타 방법으로 재료 및 제품의 질적검사, 신뢰도나 결합분석 및 시험, 제품증명, 재료평가등 각종 기술적 검사, 평가, 분석을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순도측정 및 분석업 • 물리시험 및 분석서비스업 • 종합 기술적검사, 전기시스템검사 및 분석서비스업 • 기술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기술검사 및 분석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험(8519) • 농산물검사(0140) <p>743 광고업</p> <p>7430 광고업</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객을 대신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옥외 광고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유인, 광고물 및 건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의 임대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의 인쇄(2221) • 시장조사(7413) • 광고물을 직접 우편에 의하여 송달 처리하는 활동(7499) • 라디오, 텔레비전용 상업선전물 및 필름의 생산(921) <p>74301 광고대행업(84411)</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를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체에 광고를 설정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업체등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광고매체의 지면과 시간을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매체의 시간 및 지면을 판매, 임대 서비스업 <p>74302 광고문 작성업 (84412)</p> <p>각종 광고매체의 광고물을 위한 광고문안작성, 광고물도안, 광고물설계, 텔레비전 및 라디오용 상업선전문안등의 광고물을 작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계획, 창작 및 배치 서비스업 <p>74303 옥외광고업 (84412)</p> <p>광고대행은 하지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게시판, 광고판, 게시대, 창문, 진열실, 차량등 각종 옥외광고매체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74309 달리분류되지않은 광고업 (844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광고업으로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구방문 또는 거리에서 각종 광고물을 배포하고 쇼핑 뉴스를 제공하며, 카드 및 견본배부, 광고물을 배치 및 감독하여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을 검사하는 활동등 광고대행, 광고물작성, 옥외광고를 제외한 기타 광고관련 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광고 서비스업 	<p>749 달리분류되지않은 사업관련서비스업</p> <p>749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p> <p>모든 분야에서 고용에 관련된 인적조사, 구인조회 및 알선활동과 노동인력을 확보하여 특정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여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노동자 공급계약활동은 (0140) • 계약대리 활동은 (7499) • 노동문제 상담활동은 (8532) •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활동은 (9249) <p>74911 인력공급업 (84429)</p> <p>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 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인력 및 기타 인력공급 배치업 • 사무인력공급업 • 개인 및 가사인력공급업 • 산업 노동인력공급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인력공급업 • 기타 인력공급업 <p>74912 고용알선업 (84421)</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전산업분야의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행정서비스업 <p>7492 탐정 및 경호업</p> <p>74920 탐정 및 경호업 (84493)</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개인 또는 재산보호를 위한 조사, 감시, 경호 및 기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사람의 추적, 도난 및 횡령사행 조사, 지문채취, 거짓말탐지 및 유사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p> <p>사무실, 공장, 호텔, 극장등의 경호 및 경비경호컨 임대, 자금운송장갑차 서비스, 영상탐지장치 및 전기보호장치에 의한 감시, 산업안전, 화재예방상담, 지문 및 필체감정 등의 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서비스업 • 보호 자문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운송장갑차 서비스업 • 감시활동 서비스업 • 기타 보호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조직의 설치 (4530) • 보험에 관련된 조사 활동 (6720) •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 (75230) <p>7493 건물청소업</p> <p>74930 건물청소업 (92090)</p> <p>사무실, 공장, 상점, 기관, 기타 사업장 및 특정구내, 다세대 주거용 건물등의 내부청소, 바닥청소 및 윤내기, 내부벽 청소, 가구닦기등과 각종 건물의 내외부의 유리청소, 골뚝청소, 아궁이, 소각로, 보일러, 환기통 및 배기구등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소독 및 구충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소독 및 살균서비스업 • 건물 창문청소업 • 건물 청소관리업 • 기타 건물청소 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모래취부작업 및 유사활동과 건설활동이 완료된 후에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54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펫트,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은 (9301) • 개인가정 청소활동(9500) <p>7494 사진촬영 및 처리업</p> <p>상업용 소비자용의 인물사진, 산업용 사진 및 항공사진 등의 각종 사진촬영 및 처리활동으로서 동전조작식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사진 및 영화의 처리, 슬라이드제작, 복사와 오래된 사진의 복원 및 투명도 수정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및 영화산업에 관련된 영화필름 현상 (9211) <p>74941 사진촬영업 (95921)</p> <p>일반대중 또는 산업사업체를 위한 인물사진, 광고물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항공사진촬영과 자동식 사진촬영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상화 촬영업 • 광고관련 사진촬영업 • 활동사진촬영업 • 특수사진촬영업 • 영상촬영업 (영화, 텔레비전과 관련없는) <p>74942 사진처리업 (95923)</p>	<p>사진 및 영화의 처리현상, 인화 및 확대를 해주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슬라이드제작, 오래된 사진 복원 및 투명도 수정등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인화서비스업 • 사진모조, 복사 및 손질서비스업 • 기타 사진서비스업 <p>7495 포장업</p> <p>74950 포장업 (84499)</p> <p>수수료나 계약에 의하여 에어졸의 혼합 및 주입, 캔, 병, 포장,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포장, 상품에 카드부착, 봉합, 상표부착, 봉인 및 날인, 소포포장 및 선물포장등의 각종 상품포장 및 관련 서비스활동이 분류된다.</p> <p>이들이 자동처리 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에 관련된 화물포장 활동은 (6309) <p>74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p> <p>일반적으로 산업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각종 서</p>
---	--

비스활동이 포함된다. 증서수집,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 사업중개활동, 부동산, 보험이외의 감정업무, 패션디자인, 전시 및 전시람회 운영, 경매활동, 경품권, 연예인 대리활동 등이 분류된다.

<제 외>

- 신용카드 발행 운영업 (6592)
- 기계 및 산업디자인업 (7421)
- 광고물의 진열 및 기계 광고 디자인업 (743)

74991 상업디자인업 (8449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섬유제품, 의복, 신발, 장신구, 가구 및 기타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정해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업미술 활동을 포함한다.

<포 함>

- 실내장식 디자인업
- 전문디자인업

<제 외>

- 기계 및 산업디자인업 (8422)
- 광고디자인업 (8441)
- 전문직별 건설공사의 성격을 갖는 실내장식업 (5220)

74992 신용조사업 (8439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개인 또는 회사의 신용도, 사업실정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신용평가조사업

74993 연예인 대리업 (844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개별적인 배우, 가수, 코메디언 및 기타 연예인들을 대리하는 활동으로서 영화 및 연극제작가 또는 기타 흥행단체, 작가, 극작가, 미술가, 사진작가 등을 대리하여 책, 희극, 미술, 사진등의 출판사 또는 제작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업무도 포함된다.

74994 물품검사, 형량 및 견본추출업 (84494)

운수관련 유사 서비스를 제외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상품 품질관리 및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환경측정 및 분석증명, 금속 및 광고분석과 부동산 기술검사서비스는 제외한다.

74995 사업중개업 (84499)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의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도 포함한다.

74996 상품전시 대행업 (84499)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박람회, 산업전시회, 상품전시회, 주택전시회, 패션쇼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경매 활동 (5110) • 농산물 전시회 운영 (92499) • 과학 및 문화전시회 운영 (92321) <p>94997 사무관련 서비스업 (8419)</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서류의 복사, 속기, 번역, 통역 및 기타 사무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기사업 • 속기록 작성 (법정, 회의, 중개등에 관한 사항) • 테이프, 디스크 및 구술내용의 전사활동 • 타자업 • 복사업 • 번역업 • 통역업 • 전화응답업, 문서정서, 차드작성업 • 광고 또는 우편물 기록 및 발송업 <p>749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8449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으로서 편집, 마이크로 필름제작, 경품권 대리서비스, 사진제도 및 지도제작 등의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분류되지않은 사업서비스업
---	--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무 (75)

1. 개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업무가 포함된다.

- 공공행정 및 국방
입법, 사법, 행정부서를 포함한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입법사무, 통치행정, 중앙정부 또는 지방행정의 종합집행사무 등의 종합공공사무, 노동, 보건, 교육,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행정, 사업진흥행정, 정부기관 총괄서비스행정, 외교, 국방, 공공질서 및 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각 부, 처, 청, 국, 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 사회보장업무
사회보장사무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결손등을 보상하기 위한 이전지출사무를 말하며 질병, 사고 및 실직보험, 퇴직연금 및 기타 수입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사무를 포함한다.

2. 타 산업과의 관계

-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특정산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운영하는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생산, 시장 및 금융기관의 운영등의 특정산업에 각각 분류

- 수용 또는 비수용 복지시설 운영 및 기타 사회사업 활동 (853)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무

751 정부행정 및 공공경제, 사회정책사무

7511 종합중앙행정사무 (91110)

입법사무, 국가수반, 중앙종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업무의 규제 및 집행사무와 재정, 금융 및 국고, 조세정책, 공공기금 및 차관의 관리자금의 수급과 조절, 통화공급조절, 각급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경제사회 업무의 종합적인 기획업무와 통계업무에 대한 행정과 운영활동 등이 분류된다.

<제외>

- 국방에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관한 행정과 지원활동 (7522)

75111 입법사무 (91110)

국회 또는 지방의회 사무와 이들의 자문 및 전문위원회가

<p>수행하는 공공사무가 분류된다.</p> <p>75112 중앙행정종합사무 (91110)</p> <p>입법사무 이외의 종합중앙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분류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및 입법정부종합사무 • 재정 및 국고종합행정사무 • 경제 및 사회, 통계서비스등 종합정부사무 <p>75113 지방정부행정사무 (91200)</p> <p>입법 사무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와 관련위원회 및 독립사무를 말한다. 지방정부기관을 소분류 이하에서 더 세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사무의 세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p> <p>7512 사회서비스관련 관리행정사무</p> <p>개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 교육,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관련 공공기획 행정으로서 보건 및 건강증진, 예방계획행정, 각급 교육계획행정, 예술공연 등의 경기, 오락 및 문화서비스의 제공계획 행정, 예술가의 공인자격부여, 수도사업계획, 오염통제 등의 환경보호계획, 주택공급계획 등에 관한 공공기획 행정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활동업 (6411) • 전기통신업 (6420) • 연구 및 실험개발 활동업 (73) • 사회보장 활동업 (7530) • 교육활동업 (80) • 의료관련 활동업 (851) • 하수·폐기물 및 위생처리 활동업 (9000) • 도서관, 공공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시설 (923) • 경기 또는 기타 오락활동 (9241, 9249) <p>75121 교육행정 사무 (91150)</p> <p>종합교육분야, 행정, 교육감사서비스, 정부장학 계획행정 및 운영, 각급 학교에 관련된 서비스 등 정부교육업무의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행정 사무 <p>75122 문화 및 종교행정사무 (91170)</p> <p>문화재 보존계획을 포함한 문화업무행정, 야생동물보존행정, 공원개발, 체육계획행정과 오락 및 유사계획, 종교계획의 국가행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 문화, 종교행정사무 <p>75129 달리분류되지 않은 사회서비스관련 관리행정사무(91160, 91190)</p> <p>달리분류되지 않은 사회서비스 관리행정사무로서, 보건, 위생, 수도사업계획, 환경오염 등의 환경보호계획행정 등의 국가행정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부행정관련 연구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부행정사무 • 보건행정사무 • 주택 및 공동사회 행정사무 <p>7513 노동 및 산업진흥관리 행정사무</p> <p>농림어업 및 수렵, 연료 및 에너지관련산업, 광공업, 도소매 및 창고사업, 음식, 숙박, 무역관련사업 및 운수통신 등의 보조산업 부분에 대한 진흥행정과 일반적인 노동관련행정, 실업대책, 지역개발정책 등을 수행하는 행정부서를 말한다.</p> <p>75131 노동행정사무(91160 중 일부)</p> <p>실업정책 및 노동관련 일반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상업 및 노동업무에 관련 행정사무 <p>75132 농림 및 어업관련 행정사무(91180)</p> <p>농림수산업 및 수렵업관련 지원관리 행정부서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련행정 • 농지관리업무 • 농지개혁 및 농지개발업무 • 농산물가격 및 농가소득관련업무 • 농산물판매 및 보조배정규제 • 해충구제업무 • 농산물검사 및 등급결정 행정 • 수의업무행정 • 임업관련행정 • 어업 및 수렵관리행정 •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에 관련된 행정사무 <p>75133 광업 및 연료에너지관련 행정사무(91180)</p> <p>연료 및 에너지관리행정, 광물생산 관리행정을 수행하는 행정부서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 및 에너지관리행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 광물 연축관리행정 • 석유 및 천연가스행정 • 핵연료 및 기타 비상업적 연료관리행정 • 전기사업유지 행정 • 에너지산업, 인가 및 보조지원행정 • 광물탐사 채굴, 보존, 판매 및 지원행정 • 광물탐사관리행정 • 광물채굴관리행정 • 광물보호 및 판매행정 • 광업지원행정 • 연료, 에너지관련행정업무 • 광업 및 천연광물, 건설관련행정사무 <p>75139 달리분류되지않은 노동 및 산업진흥관리 행정사무(91180, 91190)</p> <p>달리분류되지않은 노동 및 산업진흥관리 행정사무로서 제도, 도·소매 및 음식, 숙박, 창고, 건설, 운수, 교통, 통신 및 기타 산업관련 지원관리 부서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 통신관련 행정사무 • 무역, 숙박, 음식관련 행정사무 • 관광사업관련 행정사무 • 다목적 개발사업관련 행정사무 	<p>7514 정부행정 종합보조사무</p> <p>75140 정부행정 일반보조사무(91190)</p> <p>인사, 중앙보급 및 구매, 정부기록이나 고문서보관, 정부건물 청사관리, 정부재산관리 및 기타 일반적인 정부보조사무활동이 분류된다. 총무처, 조달청 업무가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종합사무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정부사무 서비스업 <p>752 외무, 국방 및 치안행정사무</p> <p>7521 외무 행정사무</p> <p>75210 외무행정사무(91120)</p> <p>외교정책의 수립 및 집행, 대외관계취급, 대외경제원조, 공보 및 문화계획, 대사, 공사, 경제원조사절, 국제기구사절의 행정 및 운영 등과 같은 정치, 상업, 농업 또는 기타 성격의 대외업무의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을 위한 정부직원의 훈련 • 외무행정사무 • 대외경제원조 관련사무 • 대외군사원조 관련사무
---	--

<p>7522 국방행정사무</p>	<p>사회보장사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서를 말한다.</p>
<p>75220 국방행정사무 (91140)</p> <p>민방위대를 포함한 국방사무의 행정 및 국방력을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행정사무 • 민방위 관련행정사무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임신, 불구 등의 사회보장사무 • 노령, 무능력자의 연금사회보장사무 • 실업보장사무 • 가족 및 아동보호보장 행정사무
<p>7523 공공질서 및 안전행정사무</p>	
<p>75230 공공질서 및 안전행정사무 (91130)</p> <p>사법행정 및 법무, 경찰; 교도, 소방 등 공공질서와 안전유지 및 단속행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소방관련 행정사무 • 법무관련 행정사무 • 교도관련 행정사무 • 기타 공공질서 및 치안관련 행정사무 	
<p>753 사회보장 행정사무</p>	
<p>7530 사회보장 행정사무</p>	
<p>75300 사회보장 행정사무 (91160)</p>	

M. 교 육 (80)

1. 개 요

이 대분류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급, 중급 및 상급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초급 교육기관
학령된 유아교육기관과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중급 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상급 교육기관
전문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기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과정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일반 또는 전문강습소 및 개인교습소 등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개인과정에 고용되어 있는 가정교사 (9500)

- 골프 및 기타 체육학교, 레크레이션 관련학교 (9249)

80 교 육

유아교육기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등 국·공·사립 및 주야간 교육기관의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교육이외의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에서 자체 지원의 훈련을 위한 훈련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에는 공민학교 및 직업훈련을 위한 학원, 특수교육기관, 개인교사 등이 포함된다.

<제 외>

- 개인가정에 고용되어 있는 가정교사 (9500)
- 골프학교와 같은 레크레이션 관련학교 (9249)

801 초급교육기관

8010 초급교육기관

80101 유아교육기관 (93110)

주로 가정과 학교권과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으로 학교환경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통상 유치원, 유아원 등을 말한다.

<포 함>

- 유아교육업무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육원, 아동보호센터 등에 서 주로 마련하는 서비스 (8531) <p>80102 국민학교 (93120)</p> <p>통상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에게 읽기, 쓰기, 간단한 산 수, 역사, 지리, 사회 및 자연과학, 미술, 음악 등 건전한 상식 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학교 <p>802 중급교육기관</p> <p>일반, 기술 및 직업교육을 위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이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p> <p>8021 중학교</p> <p>80210 중학교 (9313)</p> <p>국민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교육을 보다 학과를 중심으 로 확장시키도록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일반, 기술 및 직업교육 을 위한 중학교 이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교육 서비스 	<p>8022 고등학교</p> <p>중학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교육을 주로 연장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학과내용이 보다 포괄적이며,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말 한다. 이 수준의 교육기관에서는 통상직업 또는 기술교과 과정 을 전공하기도 한다.</p> <p>80221 인문고등학교 (93140)</p> <p>일반교육과목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학교를 말한 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서비스 <p>80222 기술전문고등학교 (93140)</p> <p>기술 및 직업과목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학교를 말한다.</p> <p>803 상급교육기관</p> <p>8030 상급교육기관</p> <p>80301 전문대학교 (93150)</p> <p>중급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교육을 주로 기술 및 직업 적인 학과내용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교 <p>80302 대학교 (93160)</p> <p>중급학교 교과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전공분야에 관해서 역사적이고 보다 이론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조사, 연구케하고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을 말한다. 대학과정과 동일한 3군사관학교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대학 · 대학교 <p>80303 대학원 (93170)</p> <p>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학과정에서 전공한 동일주제에 관해 고도의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이수케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통상 석사학위를 수여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서비스 	<p>80901 특수교육기관 (93191)</p> <p>농아, 맹아, 정신박약자등 정신적 및 신체장애자를 교육하기 위한 각급 교육시설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전문학교 <p>80902 외국인 교육기관 (93192)</p> <p>주한 외교인의 교육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교육기관을 말한다.</p> <p>80903 상설직원 훈련기관 (93193)</p> <p>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각급 또는 각종 상설훈련기관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 분류안된 성인교육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교습소 (80909)
<p>809 달리분류되지않은 교육기관</p> <p>8090 달리분류되지않은 교육기관</p> <p>달리분류되지않은 교육기관으로서 지체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p>	<p>80904 전문강습소 (93194)</p> <p>이·미용, 양재, 요리, 자동차정비, 운전, 타자, 부기, 주산, 전산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편치등), 통신 (교환, 테렉스등) 등의 전문직 분야의 기술, 예능, 서예 특기 등의 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 등을 말한다.</p>

< 제 외 >

- 개인교습소 (80909)

80905 일반강습소 (93195)

상급학교진학 또는 각종 입시를 위한 과정 및 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원을 말한다.

8090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교육기관 (93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교육기관으로 개인교습소 등이 포함된다. 통신학교는 정규교과 과정에 따라 중, 고, 대학에 포함하여 또한 공민학교도 교과과정에 따라 중학교나 국민학교에 분류된다.

< 포 함 >

- 기타 교육서비스

<p>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p> <p>1. 개요</p> <p>이 대분류에는 의료사업 수의업과 사회복지사업 활동이 포함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사업 사람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 수의업 수의 의학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 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용복지시설, 또는 비수용복지 기구를 말한다. <p>2. 타산업과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및 검역소의 활동 (75129) ○ 치과의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조치아 및 보철물의 생산활동 (3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활동 (7530) <p>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p>851 의료사업</p> <p>내과, 외과, 치과 및 기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종합병원, 전문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기타 전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모자보건진료소, 자영간호사, 자영조산원, 내과의, 외과의 및 기타 개업의 상담실, 수족병 치료사, 물리요법사, 검안사 및 유사개업의, 치과의, 구급차 서비스, 의사 및 치과의사가 환자의 진료 또는 치료의 일부로 요청하여 제공하는 의료실험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p> <p><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에 의하지 않은 의치 및 인조치아의 조립업 (33112) <p>8511 병원</p> <p>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소, 예방소, 정신질환, 요양원, 나병원 및 유사보건기관에서 의사의 직접 감독하에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p> <p><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시설이 없는 치과 및 기타 의료업 (8512) <p>85111 일반병원 (93311)</p>
--	--

각종 신체부위의 전문부위별 내과적, 외과적 질병치료 전문의사의 감독하에 일반질환의 치료에 종사하는 일반종합 또는 일반 전문병원을 말한다.

<포 함>

- 일반병원
- 내과 전문병원
- 외과 전문병원

<제 외>

- 특수질환 전문치료병원과 특수기관(군, 교도소 등) 병원 (85119)

85112 치과병원 (93313)

치과 의사의 감독하에 치과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입원시설을 갖춘 치과병원을 말한다.

<포 함>

- 치과병원

85113 한방병원 (93314)

한방 의사의 감독하에 입원시설을 갖추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85119 달리분류되지 않은 병원 (93311)

달리분류되지 않은 병원으로 군사기지, 교도소 등 특수기관 병원을 포함하여,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결핵, 나병, 특정전염병 등의 치료를 하는 병원을 말한다.

8512 의 원

85121 일반의원 (93312)

치과 및 한의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일종으로서 입원실 등 시설설비를 임의로 하여 전문의 또는 일반의가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기관을 말한다.

85122 치과의원 (93313)

치과 의사의 감독하에 치과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치과의원을 말한다.

85123 한의원 (93314)

입원시설이 없이 한방 의사가 한방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한의원을 말한다.

<제 외>

- 입원시설을 갖춘 한방의료기관 (85113)

<p>8519 기타 의료사업</p> <p>치과의사, 일반의사 또는 전문의에 의하여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병원 또는 의원이외의 의료활동 및 의료보조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인공치아, 보철물 및 의치의 생산활동 (3311) • 식품위생시험소의 활동 (8519)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치과기공, 방사선 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을 말한다.</p> <p>85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의료사업 (933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업으로 혈액서비스, 식품위생검사서비스, 구급차서비스, 산소공급서비스, 의료기록서비스, 등을 행하는 의료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p>
<p>85191 간호 및 조산원 (93315)</p> <p>조산원이 조산업무를 행하는 조산진료기관을 말한다. 독립된 간호사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산원, 간호사, 물리요법사 및 준의료제공 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및 검역소의 활동은 (91) 에 분류한다. <p>852 수의업</p> <p>8520 수의업</p> <p>85200 수의업 (93320)</p>
<p>85192 유사의료업 (93316)</p> <p>물리요법사, 치과보조원, 검안사, 수족병치료사, 척추지압요법사, 직업적 치료사, 언어장애교정사, 가정치료사, 정골요법사, 침자사 등의 유사의료원의 감독하에 유사의료 행위를 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수의 의학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동물병원, 치료센터, 동물구급 및 보호소가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요법사 및 준의료제공서비스 (조산원, 간호사, 85191) <p>85193 병리실험서비스업 (93317)</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동물 수의업 • 기타 수의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훈련서비스 (0140)

<p>853 사회복지 사업</p> <p>적십자사, 자선기금모금 및 배정을 위한 기구, 여행자원호협회, 아동원호협회, 탁아소,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맹아원, 가족복지협회, 재정적법률구조협회 및 기타 자선기구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구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종사하는 기구를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사회보장활동 (7530) <p>8531 수용복지시설</p> <p>아동복지시설, 농아복지시설, 지체장애자시설 등과 같이 아동, 노령자 및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범주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시설을 말한다.</p> <p>85311 아동복지시설 (93411)</p> <p>고아원, 아동보호소, 입양시설, 육아시설, 영아시설, 청소년선도원 (소년원 제외), 미혼모자보호소 등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p>85312 성인복지시설 (93412)</p> <p>양로시설, 부녀보호소 등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수용복지시설 <p>85313 장애인복지시설 (93413)</p> <p>정신장애자, 맹인, 농아, 정신박약아 등의 장애인수용시설 등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수용복지시설 <p>85319 달리분류되지않은 수용복지시설 (934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수용복지시설로서, 약품중독자, 알콜중독자 등을 수용하여 비의료적인 치료활동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수용복지시설 <p>8532 비수용 복지기구</p> <p>달리분류되지않은 수용복지시설로서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해서, 개인 또는 가족에게 사회문제상담, 복지, 보호 및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수용기구 등이 포함된다.</p> <p>85321 비수용 아동복지기구 (93421)</p> <p>탁아소, 양자회, 청년선도회 등이 포함된다.</p>
---	--

< 포 함 >

- 탁아소
- 아동관련 안내 및 상담업 (비수용복지사업)

85322 재난구호기구 (93422)

적십자사, 교회구호기구 등이 포함된다.

85323 재활원 (93430)

정신 및 신체장애자, 개인성격 또는 문제점 등으로 직업전선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직업생활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직업재활상담 서비스도 포함된다.

< 포 함 >

- 재활원

8532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수용복지기구 (93429, 934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수용복지기구로 결혼알선업을 제외한 인생문제상담소 및 선교회, 박애기금을 모금하고 보건, 복지, 교육, 종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에 수익금을 배정하는데 주로 종사하는 기금조달기구등이 포함된다.

< 포 함 >

- 수용시설 없는 복지서비스업
- 기타 수용시설 없는 사회복지서비스업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 93)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공공, 사회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 회원단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 세탁, 이·미용, 장의 및 기타 달리분류되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분뇨 및 하수처리, 일반 또는 산업폐기물의 수집처리, 옥외 및 거리청소 서비스등이 포함된다.
- 회원단체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특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회원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단체의 조합, 연합회 및 지부, 종교, 정치 및 기타 회원 단체가 포함된다.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영화제작, 보급 및 상영, 방송,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 활동,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연예활동, 뉴스제공업,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운동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등이 포함된다.

- 기타 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소, 장의 및 관련서비스,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개인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 타 산업과의 관계

- 건물 및 설비의 청소소독 활동 (7493)
- 회원단체에 의한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 영화제작을 위한 범경설비, 영화장비, 스튜디오설비, 영화의상 등의 임대활동 (7130)
- 연예인 대리활동 (7499)
- 영화상영용 이외의 사진촬영 및 필름처리 활동 (7494)
- 오디오/비디오 필름원판의 복제생산 (2230)
- 보우트 및 오락장비 임대활동 (7130)
- 레코드 및 기타 기록매체 출판 (2213)
- 개인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 종사자 (95000)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0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가정, 상업 및 산업단위 또는 공공장소로부터 폐기물, 쓰레기, 오물 등을 수집, 수송하고 이를 소각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관형태의 하수수거조직, 배수로 및 기타

<p>방법으로 분뇨, 하수를 수집, 처리하는 활동, 또한 옥외 및 거리 청소, 보도주차장에 물뿌리기, 도로 또는 활주로의 제빙, 제설 작업 등을 포함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활동에 관련된 해충구제활동 (1140) • 쓰레기 및 폐품으로 재생재료 생산활동 (37) • 집수, 정수, 급수 등의 수도사업 (4100) • 하수시설의 건설과 수선활동 (4520) • 건물소독과 구충활동 (7493) <p>9001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92010)</p> <p>가정,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산업체, 공공지역으로부터 각종 쓰레기, 폐기물 및 기타 폐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90011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 (92010 에서 분리)</p> <p>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공지역으로부터 쓰레기, 폐기물 및 기타 폐물을 수집, 또는 처리 제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옥외 및 거리 청소, 오물 및 부패물처리 등 공공장소의 청결 관리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수집, 가정, 상가 및 공공지역 • 폐기물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수집처리 : 일반쓰레기 • 공공지역 청소 • 도로청소 및 제설작업 • 쓰레기 처리 : 일반쓰레기 • 쓰레기 소각 : 일반쓰레기 • 쓰레기 매립 : 일반 폐기물 • 폐기물 매립 : 일반 폐기물 • 쓰레기처리 서비스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재료의 가공처리 (37) <p>90012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92010 에서 분리)</p> <p>산업체로부터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수집 또는 처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수집 : 산업 • 폐기물 수집 : 산업 • 쓰레기 수집 및 처리 : 산업 • 폐기물 수집 및 처리 : 산업 • 핵 폐기물 처리
	<p>9002 하수 및 분뇨수거 처리업</p> <p>도관형태의 하수수거 조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뇨를 수거</p>

<p>하고 처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하수시설 운영 및 폐수처리 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p> <p>90021 하수시설 관리 운영업 (92020)</p> <p>도관형태의 하수수거 조직 및 기타 관련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시설 관리운영 • 배수시설 관리운영 • 배수펌프장 운영 • 하수시설 서비스업 <p>90022 분뇨수거 및 처리업</p> <p>분뇨수거 차량 및 이동장비에 의하여 분뇨를 수거하거나, 분뇨 종말처리 및 기타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p> <p>< 제 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관련 폐기물 수집처리 (01439) <p>9009 달리분류되지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p> <p>90090 달리분류되지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2090 일부, 건물청소 및 소독처리)</p> <p>달리분류되지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서 주차장, 고속도로, 활주로 등의 특정지역의 청소, 물뿌리기, 제설제반작업, 소금,</p>	<p>모래뿌리기 등의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 포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시설 및 유사서비스업 <p>< 제 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지역의 방역작업 (90011) <p>91 회원단체</p> <p>911 산업 및 전문가단체</p> <p>상공회의소, 경제단체, 무역협회,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의 산업단체, 변호사협회, 의학협회, 공학협회 및 기타 전문회원단체 및 노동조합과 유사노동기구를 말한다.</p> <p>9111 산업 및 경영자단체</p> <p>91110 산업 및 경영자단체 (93510)</p> <p>동일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체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개발 등을 위하여 조직된 조합, 연합회 및 지부등의 단체와 특정산업에 관계없이 특정지역의 개발,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조직된 지역단체 등을 말한다. 주된 활동은 정보전파, 정부에 대한 대표, 공공관계 (PR) 및 노동교섭 등이며, 특정산업활동은 제외된다.</p>
---	--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고용조직 단체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체에 의한 신문, 잡지의 출판활동 (221)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노동교섭 활동 (7414) <p>9112 전문가단체</p> <p>91120 전문가단체 (93520, 93590)</p> <p>의사협회, 유사 의료인협회,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교육자협회, 기술자협회 등 특정학술분야 또는 전문 및 기술분야에서 주로 회원의 이익을 위해 구성된 기구를 말하며 작가, 화가, 예능인, 신문기자 등의 문예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협회와 판매종사자등 특정 직업인의 단체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단체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단체에 의한 출판활동은 (22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 전문가단체에 의한 교육활동은 (80)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p>912 노동조합</p>	<p>9120 노동조합</p> <p>91200 노동조합 (93530)</p> <p>기구를 통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표명하고 조직활동을 대변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진 피고용자 회원들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전문적, 기술적, 문화적 및 산업근로자들의 조합 및 연합회등의 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에 의한 출판활동 (221) • 교육활동 (80) <p>919 기타 회원단체</p> <p>9191 종교단체 (9391)</p> <p>기독교교회, 회교사원, 불교사원 및 기타 종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종교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교육, 보건 및 복지서비스 또는 출판을 주로하는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이를 별도 분리파악할 수 있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p> <p>91911 불교 (93911)</p> <p>91912 기독교 (93912)</p>
--	--

<p>91913 천주교 (93913)</p> <p>91914 천도교 (93914)</p> <p>91920 정치단체</p> <p>정치단체 (93920) 정당 및 유사 정치기구, 정당의 청년기구 등을 말한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나 정권을 장악하려 하지않는 입력단체 등은 제외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단체 <p>9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회원단체</p> <p>9199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회원단체 (93990)</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회원단체로서 시민향상협회(보존 및 오염방지협회, 동물애호협회, 도로안전 및 사고예방협회 등), 여성교육을 위한 협회, 공공설비 지원협회, 우애협회, 애국협회(재향군인협회, 국방서비스클럽 등), 청소년회(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등), 문화동호인협회(사진클럽, 원예클럽, 공예클럽, 우표수집가협회), 소비자 보호단체, 자동차 소유자단체 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향상 및 공공시설 지원단체 • 특수집단 보호단체 • 청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분류되지않은 회원단체 <p>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p> <p>921 영화, 방송 및 기타 유흥관련산업</p> <p>9211 영화제작 및 배급업</p> <p>방영용 또는 상영용 극영화 및 문화영화, 필름 및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및 보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록영화, 만화영화의 제작도 포함하며, 이들은 공중홍행 또는 광고, 교육, 훈련, 시사뉴스제공, 종교등의 각종 목적용의 것이 될 수 있다. 스스로 계약에 의한 필름편집, 필름가공, 더빙등의 영화제작 관련보조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제작 및 영화산업용 이외의 영화 필름현상, 인화 및 처리업 (7494) •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 필름원판의 복제활동 (2230) • 테이프의 소매업은 (523) 또는 (525)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 일반대중에게 테이프를 임대하는 활동과 무대장치, 영화용 장비 및 의상을 대여하는 활동 (7130) • 배역서비스 등의 대리활동 (7499) • TV방송국에서 통상적으로 제작되는 필름, 테이프의 생산
--	--

<p>활동 (9219)</p> <p>92111 영화제작업 (94111)</p> <p>셀루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 공중홍행, 광고, 교육, 훈련, 시사뉴스 정보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만화영화의 제작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행 및 광고관련 영화제작 • 영화, 비디오제작 <p>92112 영화제작관련 서비스업 (94112)</p> <p>영화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필름 및 테이프편집, 더빙, 필름 검사 등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중을 상대로 판매될 수 있는 상태의 비디오필름의 단순한 복사 (2230) <p>92113 영화배급업 (94122)</p>	<p>환업 및 영화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 녹음된 라디오프로그램의 배달 및 보관서비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자, 영화상영업자를 대리해서 영화필름 및 비디오테이프, 녹음된 라디오프로그램을 임대 및 구매하는데 주로 종사하는 예약 대리서비스업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비디오배급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중을 상대로 임대하는 산업활동 (7130) <p>9212 영화상영업</p> <p>92120 영화상영업 (94121)</p> <p>영화관, 노천 또는 개인영사실 및 기타 상영시설에서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상영업 • 비디오상영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관 등의 상영장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70)
<p>영화관에서 상영 또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을 위한 영화 필름 및 테이프,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는 영화배급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필름교</p>	<p>9213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p> <p>방송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을 위한 시청각 생방</p>

송용 또는 기록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 및 전파하는데 주로 종사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국 및 스튜디오를 말한다.

<제 외>

- 폐쇄회로 TV서비스(6420)
- 중개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텔레비전 전송활동 (6420)
- 대리활동(7499)
- 영화제작소(9211)

92131 라디오 방송업 (94131)

라디오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라디오방송업

92132 텔레비전 방송업 (94132)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텔레비전 방송업

92133 유선방송업 (94130)

유선오디오 또는 비디오 방송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유선방송업

9214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산업

오페라단, 콘서트단, 레퍼터리식 전속극단, 하계극장 및 희극극장 및 같이 일반대중을 위한 실연극을 공연하는 극단과 그룹 또는 일행, 밴드 및 오케스트라, 독립적인 예술가의 활동, 무대장치 및 배경, 조명 및 음향장비, 콘서트홀 및 극장, 공연장, 경기장, 도박장 등의 입장권 및 행운권의 대리활동 등의 관련 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극장등의 공연장의 임대 (70)
- 연예인 대리활동은 (7499)

92141 극장 운영업 (94141)

극장, 음악당, 오페라극장 및 기타 실연극을 수행하는 흥행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숙박업소의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에서 보조적인 연예활동을 수행하는 활동 (5510)
- 영화상영관 (92120)

92142 연예단체 (94142)

그룹 또는 일행, 오케스트라 및 밴드의 활동이 분류되고, 연극, 무용, 음악등을 직업적 또는 아마추어로 공연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연극, 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연예단체

<제 외>

- 독립적인 자영연예인 활동 (92143)

92143 자영 예술가 (94150)

작가 및 저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작곡가 및 연예인, 자영홍행사 및 관련기술자 등의 독립적인 자영예술가, 연예인 및 기타 흥행 관련기술 및 디자인 전문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저술가
- 작 가
- 기고가
- 평론가
- 화가 및 관련 예술가
- 조각가
- 만화가

- 식각가
- 회화 복원가
- 창조예술가
- 화실 자영자 (강습소 제외)
- 작곡가 및 연예인
- 감 독
- 작사가
- 가 수
- 무용가
- 성 우
- 텔런트
- 배 우
- 기타 자영예술가
- 프로듀서 : 자영
- 디자이너 (무대 및 조명) : 자영
-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자영
- 강담사 : 자영
- 최면술가 : 자영
- 요술가 : 자영
- 서커스연예인 : 자영
- 마술가 : 자영
- 독립연예인

92149 달리분류되지않은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산업 (94149)

달리분류되지않은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산업으로서 연

극에 관련된 무대설치 및 배경, 조명 및 음향장치 설치운영, 입장권 사전예약 및 판매등의 서비스 관련업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연예서비스

9219 달리분류되지않은 유흥관련산업

92191 무도장 운영업 (94939)

무도장, 댄스홀, 댄스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무도장
- 댄스홀
- 댄스교습소
- 디스코텍, 사교춤, 댄스등 연예서비스

<제 외>

- 무도주점 (55222)
- 디스코홀, 주점 (5522)

92192 유원지 운영업 (94950)

용지위에 영구적인 기계적 동물, 오락장비, 사격장 등의 각종 유희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유원지를 관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서거스, 유원지 및 유사서비스

<제 외>

- 개별 유희시설을 운영 (92193)
- 유원지이외의 공원운영 (92493)

92193 오락장 운영업 (94934, 94939)

전자오락실, 미니골프장, 오락사격장, 목마등의 이동식,정치식 또는 동전조작식 등의 각종 오락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관광철도, 삭도 등 오락용 수송장비 운영 (92499)

92194 흥행장 운영업 (94990)

곡예 및 기타 흥행물을 관람할 수 있는 흥행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유흥관련산업 (9499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유흥관련산업으로서 운동 및 오락스쿨, 코치스쿨, 관망탑 및 천연동굴 및 기타 자연관람물 등의 운영과 경마 및 경주견 사육장 동물훈련소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922 뉴스 중개업</p> <p>9220 뉴스 중개업</p> <p>92200 뉴스 중개업 (84391)</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신문, 정기간행물의 발행사등에 뉴스리포터, 뉴스 사진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공급업 • 뉴스사진 공급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의 보조활동으로 수행될 경우는 (2212) • 자유기고가, 뉴스통신원, 기사작성자 및 만화가의 서비스는 (92143) • 자유기고 사진작가 서비스는 (92143)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기관 직원 전용부설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p>92311 도서관 운영업 (94201)</p> <p>열람실을 갖추고 비치된 도서열람 열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국·공, 사립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및 유사 산업체를 말한다. 대학도서실 및 전문도서실 등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p>92312 기록보존업</p> <p>각종 보존용 기록 및 문서등을 보관하는 산업체를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보존소
<p>923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문화관련산업</p> <p>9231 도서관, 독서실 및 기록보존업 (94201)</p> <p>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종사하는 국·공, 사립도서관, 독서실, 시청각실, 서류센터, 기록보존소 및 유사사업체를 말하며, 대학 도서실도 여기에 포함된다.</p>	<p>923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운영업</p> <p>일반대중이 열람할 수 있는 미술관, 예술관, 순수 또는 응용과학관, 일반박물관, 고궁 및 사적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92321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운영업 (94202)</p> <p>주로 일반 대중에게 미술공예품, 조각품, 순수과학물, 응용과학물,</p>

<p>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케하는 미술관 및 과학관, 일반 또는 전문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p>923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4204)</p> <p>역사적인 유적지, 건적지, 사적지, 고궁의 사적명소를 관리 운영으로 문화 또는 레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지 또는 역사적 건물보존 <p>923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보존관련업</p> <p>92331 식물원 및 동물원 (94203)</p> <p>주로 일반대중에게 각종 동물 및 식물을 관람케하는 문화 및 오락시설을 말하며 관람목적의 수족관 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원 및 동물원 <p>92332 야생보존관리업 (9420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문화서비스업으로 야생조수류 보존사업체, 조류보호지 운영사업체 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존원 (야생식물원 포함) <p>924 운동, 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사업</p> <p>9241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p> <p>동물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장려하는 경기후원단체 및 후원인의 산업활동과 직업 또는 준직업팀 및 개별경기자를 운영, 관리 및 후원하는 활동, 그리고 심판, 시간기록계원, 직업선수, 코치, 트레이너 등 자영체육인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올림픽경기 등의 국제시합을 주관하는 단체도 여기에 포함된다.</p> <p>92411 자영경기업 (94982)</p> <p>코치, 심판, 기록계원과 같은 자영전문가 및 직업골퍼, 권투선수, 테니스선수, 승마선수, 레슬링선수 등 자영경기인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운동알선업 <p>92412 경기단체 및 후원업 (94981)</p> <p>경마, 투견 및 기타 동물경기, 차량경주를 포함한 각종 시합, 경주등의 경기를 주관하고 후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산업활동과 직업 또는 준직업팀 및 개인을 관리·운영하거나 후원하</p>
--	---

<p>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및 오락학교, 코치스쿨의 운영 • 경기단체 후원업 <p>9242 경기장 운영업</p> <p>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경기를 일반대중에게 관람시킬 목적으로 관람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92421 실내경기장 운영업 (94921)</p> <p>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등 경기를 수행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춘 다목적 실내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92422 운동장 운영업 (94922)</p> <p>야구장을 제외하고 육상경기, 축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수행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춘 실외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92424 경마 및 유사경주장 운영업 (94924)</p> <p>관람석을 갖추고 주로 경마, 자동차 또는 자전거 경주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92429 달리분류되지않은 경기장 운영업 (9492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 운영업으로서 실내수영장, 투기장 및 기타 전문경기장의 운영업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스포츠경기 관련서비스업 <p>9243 운동설비 운영업</p> <p>실내 및 실외를 불문하고 체력단련 및 특수운동기술연마를 목적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관람석이 제한되거나 없는 체력단련장 무술수련장 및 기타 운동설비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사설의 운영업 (9219)
<p>92423 야구장 운영업 (94923)</p> <p>관람석을 갖추고 주로 야구경기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92431 체육관 운영업 (94911)</p> <p>개별인의 신체 단련 또는 특수운동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역도, 권투, 유도, 태권도 및 기타 무술도장 등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체조 및 헬스크럽도</p>

<p>포함된다.</p> <p>92432 정구장 운영업 (94912)</p> <p>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에만 주로 이용되는 관람석 없는 운동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92433 수영장 운영업 (94913)</p> <p>수영 및 기타 수중경기에 주로 이용되는 관람석이 없는 운동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92434 골프장 운영업 (94914)</p> <p>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92435 탁구장 운영업 (94915)</p> <p>탁구장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92436 보울링장 운영업 (94931)</p> <p>보울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92437 당구장 운영업 (94932)</p> <p>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92438 기원 운영업 (94933)</p> <p>바둑, 장기, 체스, 카드, 카드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92439 달리분류되지않은 운동설비 운영업 (949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관람석이 없는 설비운영업으로서 실내체육관과 같은 다목적 경기장, 롤러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어린이놀이터, 사격장등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용 사격장 (92193) <p>9249 기타 오락관련산업</p> <p>92491 배역 및 예약대행업 (84422, 84429)</p> <p>영화, 텔레비전, 연극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서비스와 연극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기타 예약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 (7499) <p>92492 녹음업 (94143)</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음반, 테이프 기타 기록매체에 녹</p>
--	---

<p>음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업 : 계약 또는 수수료 • 계약 녹음업 • 녹음 : 테이프 - 수수료 또는 계약 • 녹음 : 음반 - 수수료 또는 계약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디오 / 비디오 테이프 및 기타 기록매체 복제 (2230) • 레코드 및 기타 기록매체 출판 (2213) <p>92493 공원 운영업 (94941)</p> <p>유원지 등을 제외한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운영업 <p>92494 해수욕장 운영업 (94942)</p> <p>레크레이션 목적용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운영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탈의실, 의자, 비치 파라솔, 매트레스의 임대업 (71309) 	<p>92495 도박장 운영업 (94960)</p> <p>카지노, 스포트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마권영업, 내기도박업, 로터리운영 등도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장운영업 <p>92499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 오락관련산업 (94149, 94990)</p> <p>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 오락관련산업으로서 농업박람회운영 및 오락성의 전시장 운영, 관광철도, 레크레이션 목적용 삭도등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 오락관련산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 및 산업박람회장 운영 (7499) • 과학 및 문화박람회 (92321)
	<p>93 기타서비스업</p> <p>930 기타서비스업</p> <p>9301 세탁 및 염색업</p>

<p>93010 세탁 및 염색업 (95201, 95202)</p> <p>산업 및 상업사용자 또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모피제품, 의복 및 기타 직물제품을 세탁, 크리닝, 다림질 및 염색처리하는 산업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전조작 세탁기 설치운영 • 세탁물 수집업 • 섬유 및 모피제품 세탁업 • 드라이크리닝 • 다림질 • 염색처리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의복개조 및 수선활동과 세탁물의 임대활동 (71309) 	<p>여성의 머리손질, 얼굴맞사지, 손톱 및 발톱손질, 화장 및 기타 이용처리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장원 • 기타 미용서비스업
<p>9302 이발소 및 미장원</p>	<p>9303 장의사 및 관련 서비스업</p>
<p>93021 이발소 (95911)</p> <p>조발, 면도, 세발, 손질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발소 	<p>93030 장의사 및 관련 서비스업 (95911)</p> <p>동물사체 또는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처리와 이에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 장례장운영, 미이라 처리, 장의사 서비스, 관의 판매 또는 임대, 묘지관리 및 유지활동도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 및 화장서비스업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개발 및 분양업 (70122) • 인생상담서비스업 (85329)
<p>93022 미장원 (95912)</p>	<p>9309 달리분류되지않은 서비스업</p> <p>93091 예식장 (95993)</p> <p>일반대중에게 결혼예식 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93092 욕탕업 (95994)</p> <p>대중탕, 독탕, 터어키탕, 사우나탕, 증기탕, 일반욕실 및 기타 보건클럽, 온탕에서 요법치료 성격이 아닌 신체안락을 위해 마련된 안마시술소 등의 자영안마업은 여기에 포함된다.</p> <p>93093 결혼상담소 (95992)</p> <p>일반대중에게 결혼알선, 중매 활동을 주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93094 수하물보관소 (95995)</p> <p>간단한 수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93095 점술가 (95999)</p> <p>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심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930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서비스업 (95999)</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서 구두닦기, 포우터, 대리시장보기, 개인 여행안내, 부채청산 및 가계상담서비스 등이 포함된다.</p>	<p>93919 달리분류되지않은 종교단체 (93919)</p> <p>달리분류되지않은 종교단체로서 회교등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서비스업 	

P. 가사 서비스업 (95)

95 가사 서비스업

950 가사 서비스업

9500 가사 서비스업

95000 가사 서비스업 (95300)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부모, 유모, 침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 담당자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 포 함 >

- 개인 가사서비스업

< 제 외 >

- 가사서비스 인력을 공급, 감독하는 사업체 (7491)

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99)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0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외국대사관, 기타 외국지역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을 말한다.

<제 외>

- 해외 및 국제기구 사무처에서 주재하는 외교, 영사업무의 관리와 운영(7521)

99001 주한 외국공관(96010)

99009 달리분류되지않은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96090)

<포 함>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